

보건복지 서비스 부문 인력 수급 전망 및 인적자원개발

Manpower Forecasting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Health and Welfare Services Sector

연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책임자: 이 남 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서비스 부문 인력 수급 전망 및 인적자원개발

Manpower Forecasting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Health and Welfare Services Sector

연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책임자: 이 남 철

공동연구원: 이상돈

박종성

보건복지부

머 리 말

보건의료산업은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이며 경제와 고용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지식창출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보건의료기술의 고도화, 인구의 고령화,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보건의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과 배치 등 보건의료관련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개발과 배분은 우리나라의 국가인적자원개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인구고령화와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한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4대 바우처 사업으로 반영되어 간병인 및 활동보조인과 같은 복지서비스 부문의 인력양성 및 고용을 증대시키고 있다. 보건복지서비스 수요는 확대·다양화되고 있으나 관련 직종, 자격 등의 전문화 및 세분화가 미흡하여 서비스의 질 확보,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 인력양성 및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인력수요를 전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새롭게 대두되는 보건복지 분야의 미래 유망직업과 자격제도를 조망하여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노동시장 분석과 인력수요 전망에 따른 서비스 제공 인력양성 및 관리방안, 현행 자격제도 분석과 신설이 요구되는 자격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분석과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기업체, 공공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의 보건복지 분야의 직업과 자격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유망직업 및 자격제도의 개선방안과 외국 사례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직업 및 자격제도의 심층적인 실태과약 및 보건복지 분야 신규 유망 직업 발굴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자격제도 등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2010년 진행되었으며, 이남철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고, 이상돈 박사, 박종성 박사가 공동연구진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연구진과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은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준 보건복지부 기승훈 팀장, 장영진 사무관, 최기홍 박사와 박지혜, 박선영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0년 1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권 대 봉

목 차

I. 요약

I.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
1. 연구내용	2
2. 연구방법	3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5
제4절 선행연구 분석	5
1. 서비스산업 연구	5
2. 자격연구	7
3. 직업연구	8
4. 시사점	10

II. 보건복지 분야 인력수요 전망 11

제1절 보건복지서비스 산업현황	11
1.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사업현황	11
2. 보건복지 분야 실부가가치 전망	12
제2절 보건복지 분야 고용현황 분석	18
1. 보건복지 분야 산업 분야별 종사자 수	18
2. 보건복지 분야 업종별 종사자 수	20

3. 종사자 형태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2
4. 산업별 고용동향	26
제3절 보건복지 분야 인적자원개발 현황 분석	30
1.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취업률 현황	30
2.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교육훈련 현황	41
제4절 보건복지 분야 인력수요 전망	42
1. 보건복지 분야의 고용성장	43
2. 보건복지 분야의 직업성장	45
3. 보건복지 분야 고용 전망	47
4.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 인력수요 전망	52
III. 보건복지 분야 직업 및 자격제도 분석	63
제1절 보건복지 분야 국내외 직업 분석	63
1. 보건복지 분야 직업분류	63
2.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직업	72
3. 최대 증기수를 보이는 직업	75
4. 가장 빠른 하향세를 보이는 직업	76
5. 보건복지 분야 관련 직업 분석	78
제2절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자격 실태분석	154
1. 보건복지 분야 자격종목 실태	155
2. 의료법	163
3.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 운영실태	167
4.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 금지분야 실태	181
5. 민간자격 참여금지의 해제 관련 추진사항	186
6. 민간자격 참여금지 해제 관련 사례: 치료서비스업	187
7. 시사점	190

제3절 보건복지 분야 자격의 문제점	191
1.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191
2. 개별 자격종목별 문제점	195
제4절 보건복지 분야 자격의 개선방향	197
1.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향	197
2. 개별 자격 종목별 개선방향	203
3. 향후 보건복지 분야 자격제도 신설 방향	210
IV. 주요국의 보건복지 분야 유망직업 및 자격제도 분석	212
제1절 미국	212
1. 미국의 자격제도 개요	212
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자격 현황	213
3. 자격 신설 가능 종목	219
제2절 일본	220
1. 일본의 자격제도 개요	220
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 현황	221
3. 자격신설 가능 종목	227
제3절 소결	228
V. 정책 제언	238
제1절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인적자원개발	239
1.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통한 보건복지 분야 양적 및 질적 측면의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238
2. 보건복지 분야 유망직종 발굴	239
3. 보건복지 분야의 적극적인 교육훈련	239

4. 헬스케어와 관련된 인력양성	241
제2절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인력양성 및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242
1. 보건의료 분야 인프라 구축	242
2. 노동시장에 적합한 보건복지 분야 자격제도 도입 및 활용	243
참고문헌	247
부록 1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 종목별 응시자격 기준	249
부록 2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 종목별 합격기준 예시	273

<표목차>

<표 II-1>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체 수	12
<표 II-2> 보건복지서비스 매출액	12
<표 II-3> 67개 산업부문별 실질부가가치 전망(2010~2015년)	13
<표 II-4> 67개 산업부문별 실질부가가치 전망(2016~2020년)	15
<표 II-5> 산업부문별 실질부가가치 성장률 추이(2006~2020년)	18
<표 II-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종사자 수	19
<표 II-7> 기타 보건복지산업 분야의 종사자 수	20
<표 II-8> 대분류 업종별 종사자 수	21
<표 II-9> 소분류 업종별 종사자 수	22
<표 II-10> 종사자 형태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 종사자 수	23
<표 II-11> 종사자 형태별 기타 보건복지산업 분야 종사자 수	25
<표 II-12> 산업별 고용현황	27
<표 II-13>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고용현황	28
<표 II-14> 보건복지 계열 취업자 현황	31
<표 II-15> 보건복지 관련 학과 직업분야 현황	32
<표 II-16> 전문대학의 보건복지 계열 졸업자 종사 산업분야 현황(1) ...	34
<표 II-17> 4년제 대학의 보건복지 계열 졸업자 종사 산업분야 현황(2) ...	36
<표 II-18> 보건복지 계열 취업경로 현황	38
<표 II-19> 보건복지 계열 회사구분 현황	39
<표 II-20> 보건복지 계열 전공일치 현황	40
<표 II-21> 실업자 직업훈련 직무분야별 참여자 현황(2008년)	41
<표 II-22> 보건의료 직종의 세부 직종별 훈련참여자 현황	42

<표 II-23> 2008년 헬스케어 산업 부문에 따른 고용 및 2008~2018년 고용 퍼센트(%) 변화율	48
<표 II-24> 헬스케어 및 사회복지 분야 2008~2018년 예상 고용창출 직업군	50
<표 II-25>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결과	54
<표 II-26> 학력별 보건복지분야 인력수요 전망	56
<표 II-27> 직업별 보건복지분야 인력수요 전망	58
<표 II-28> 직업별 보건복지분야 인력수요 전망	60
<표 II-29> 산업별·학력별 보건복지분야 인력수요 전망	61
<표 III-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관련 산업분류	66
<표 III-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의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직업 분류	68
<표 III-3>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직업 분류	71
<표 III-4>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20개 직업군	73
<표 III-5> 최대 증가수를 보이는 20개 직업군	75
<표 III-6> 가장 빠른 하향세를 보이는 20개 직업군	77
<표 III-7> 해외 보건복지 분야 관련 직업 총괄	79
<표 III-8> 우리나라 관리주체별 자격유형에 따른 현황(2010년 6월 기준)	156
<표 III-9> 주무부처별 국가자격의 종목 및 직종(2010년 6월 기준) ..	157
<표 III-10> 소관부처별 국가공인 신청 민간자격 종목 수	159
<표 III-11> 국내 보건복지 분야 자격종목의 구분 및 규모(유사자격 포함)	160
<표 III-12>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직무별 자격	162
<표 III-13>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기준	164

<표 III-14>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 현황	168
<표 III-15>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검정기관별 민간자격 종목별 현황	170
<표 III-16> 보건복지 분야의 기관별 자격 운영 현황	173
<표 III-17> 보건복지 분야의 자격 종목별 응시자격 기준	175
<표 III-18> 보건복지 분야의 자격 종목의 검정방법	176
<표 III-19>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 종목별 검정방법 예시	176
<표 III-20> 분야별 자격 종목의 합격기준	180
<표 III-21> 기관 유형별 검정기관의 참여율	181
<표 III-22>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	181
<표 III-23> 부처별 민간자격의 공인률 및 금지종목 비율	184
<표 III-2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민간자격 참여제한 유형별 사 례	186
<표 III-25> 치료서비스 분야의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현황	188
<표 IV-1> 미국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종목	214
<표 IV-2> 미국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부여의 개요(일부)	216
<표 IV-3> 미국 사례에 근거한 국내 신설 가능 자격종목의 예	219
<표 IV-4> 일본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종목 및 구분 2	
<표 IV-5> 일본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자격 개요(일부)	224
<표 IV-6> 일본 사례에 근거한 신설가능 자격종목의 예	228
<표 IV-7> 한국, 미국, 일본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의 비교	230

[그림목차]

[그림 II-1]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고용 전망	44
[그림 II-2]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산업의 고용성장률(2006~2016년)	45
[그림 II-3] 의료·건강분야의 고성장 직업 전망(2006~2016년)	46
[그림 II-4] 의료·건강분야의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업 전망 (2006~2016년)	47
[그림 II-5] 2004년 헬스케어 분야 고용률 및 2004~2008년 각 직업군의 고용 성장률	49
[그림 III-1] 치료 관련 자격의 개선방향	198
[그림 III-2] 치료 분야 자격의 민간자격 등록 운영 방안	199
[그림 III-3] 사회복지 분야 자격의 개선방향	200
[그림 III-4] 민간자격 규제의 개선방향	201
[그림 III-5] 자격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202
[그림 III-6] 위생사 자격의 개선방향	204
[그림 III-7] 보건교육사 자격의 개선방향	204
[그림 III-8] 건강가정사 자격의 개선방향	205
[그림 III-9] 영양보호사 자격의 개선방향	206
[그림 III-10] 치료 분야 민간자격 금지분야 해제	207
[그림 III-11] 치료 분야 민간자격의 질관리 방향	208
[그림 III-12] 사회복지사 자격의 개선방향	210

요약

I. 연구의 개요

보건복지산업은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이며 경제와 고용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지식창출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보건복지서비스의 수요는 확대·다양화되고 있으나 관련 직종, 자격 등의 전문화·세분화가 미흡하여 서비스의 질 확보,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건복지 분야 인력양성 및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인력수요를 전망을 제시하였다. 또한 새롭게 대두되는 보건복지 분야의 미래 유망직업과 자격제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분석, 전문가 풀 구성 및 활용, 면담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 및 활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 분야 인력 양성 및 활용 정책과제 도출, 둘째, 보건복지 분야 유망직업 발굴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제시, 셋째, 보건복지 분야 새로운 자격 발굴을 통한 국가경쟁력 증진, 넷째,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보건복지 분야 선진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 모색, 다섯째,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중장기 인력수급·개발계획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등이다.

II. 보건복지 분야 노동시장 추이 분석

1. 보건복지 부문 실부가가치 전망

2010~2015년간 67개 산업부문별 실질부가가치 전망에서 의료보건서비스의 경우 2010년 32,267,368백만 원, 2011년 33,754,123백만 원, 2012년

35,285,723백만 원, 2013년 36,848,927백만 원, 2014년 36,848,927백만 원, 2015년 39,991,183백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은 2010년 5,717,839백만 원, 2011년 5,961,366백만 원, 2012년 6,213,465백만 원, 2013년 6,471,584백만 원, 2014년 6,728,611백만 원, 2015년 6,992,737백만 원의 실질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16~2020년간 67개 산업의 실질부가가치 전망에서 의료보건 서비스 산업은 2016년 41,611,344백만 원, 2017년 43,261,475백만 원, 2018년 44,940,429백만 원, 2019년 46,646,813백만 원, 2020년 48,378,941백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6년 41,611,344백만 원에서 4년 후인 2020년까지 약 6,767,597백만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셈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은 2016년 7,263,441백만 원, 2017년 7,540,725백만 원, 2018년 7,824,632백만 원, 2019년 8,115,170백만 원, 2020년 8,412,304백만 원의 실질부가가치를 창출할 증가할 전망이다.

2. 보건복지 부문 산업 분야별, 업종별, 종사자 형태별 종사자 수

2010년 6월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의 종사자 수는 112만 2,846명으로, 2009년 12월말 대비 11.0%(11만 1,583명) 증가하였다. 업종별 종사자 수는 2010년 6월말 보건복지관련 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191만 1,304명으로, 2009년 12월말 대비 9.5%(16만 5,464명) 증가하였다. 2009년 12월말 대비 종사자 수 증가 상위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만 1,583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만 8,200명), 도매 및 소매업(2만 886명)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형태별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의 종사자 지위별에서는 2010년 6월말 상용근로자가 89만 57명으로, 2009년 12월말 대비 79%(6만 4,843명) 증가하였다. 종사자 규모별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66%(2만 4,247명) 증가하였으며, 종사자 성별에서는 여성종사자 수가 116%(8만 9,632명) 증가하였다.

3. 보건복지 부문 산업별 고용동향

보건복지서비스 부문 고용현황은 전체 산업과 비교했을 때, 종사자 수의 경우,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산업은 총 874,000명으로 전체 산업의 종사자 중 4%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자의 월평균 수입, 평균학력, 주당 평균 근로 시간,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율 항목의 경우, 보건복지 서비스 관련은 대체로 전체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종사자 비율은 전체 평균 42.1%보다 2배 높은 80.3%로 나타났고, 임금 근로자 비율도 전체 평균 68.3%보다 높은 91.3%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평균 연령(43.4세)보다 약 8세가 적은 36.6세로 나타나 종사자가 다른 산업에 비해 젊은 연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 연수도 전 산업의 평균이 8.5년인 것에 비해 4년 정도 짧은 4.8년이었다.

4. 보건복지 부문 취업률 현황

보건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의약, 보건, 사회과학의 사회복지 계열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 계열의 교육은 전문 분야에 속하므로 5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며, 특히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86.5%의 취업률과 57.7%의 정규직 취업률로 4년제 대학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서비스업의 직업 분야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이 업종의 교육이 전문 지식 또는 기술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계열 졸업자 모두 모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4년제 대

학 계열 졸업자보다 다양한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교육훈련 현황

2008년 노동부에서 실시한 실업자직업훈련의 직무분야별 분포를 보면, 서비스 22.6%, 정보통신 20.9%, 사무관리 19.1%, 기계장비 14.0% 등으로 나타나 여전히 4대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분야는 3.0%로 비중이 매우 낮다.

III. 보건복지 분야 인력수요 전망

1. 우리나라 보건복지 부문 인력수요 전망

가. 산업별 전망

전산업 인력수요 전망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인력수요 전망결과를 살펴보면, 취업자 수는 2009년 1,148천명에서 연평균 3.7% 증가하여 2019년에는 1,65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로는 보건업이 2009년 64만 9천명에서 연평균 3.9%씩 증가하여 2019년에는 95만 6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09년 34만 9천명에서 연평균 3.5%씩 증가하여 2019년에는 49만 4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보건복지관련업은 연평균 3.2%씩 증가하여 2019년에 20만 6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출신에 대한 수요가 연평균 9.1% 증가하여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이어 전문대졸 5.2%, 고졸 3.0%, 대졸 0.8%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졸이하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가 연평균 4.5%씩

증가하여 2019년에는 29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대졸에서는 보건업(연평균 6.1%), 사회복지서비스업(연평균 2.0%), 기타 관련업(연평균 2.0%)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졸에서는 보건업(연평균 0.5%), 사회복지서비스업(연평균 1.7%), 기타 관련업(연평균 0.3%)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타학력에 비해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원에서는 보건업(연평균 10.2%)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19년에는 12만 3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복지서비스업(연평균 5.6%), 기타 관련업(연평균 8.5%) 등 보건복지분야 전반에서 높은 취업자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나. 직업별 전망

전직업에 대한 전망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분야의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결과를 살펴보면, 의사는 2009년 4만 8천명에서 연평균 5.5% 증가하여 2019년에는 8만 1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보건)는 2009년 3천명에서 연평균 4.8%씩 증가하여 2019년에는 5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 및 보건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2009년 4만 1천명에서 연평균 4.7%씩 증가하여 2019년에는 6만 5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치료사,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등도 보건복지분야 연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는 사회복지 및 상담전문가가 연평균 3.9%씩 증가하여 2019년에는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대졸에서는 사회복지 및 상담전문가(연평균 6.1%), 의료 및 보건서비스 관련 종사자(연평균 6.0%), 치료사(연평균 5.5%),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연평균 5.3%)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졸에서는 사회복지 및 상담전문가(연평균 2.1%), 의료 및 보건서비스 관련 종사자(연평균 2.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약사, 성직자 및 종교관련 종사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원에서는 사회복지 및 상담전문가(연평균 11.6%)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19년에는 1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 및 보건서비스 관련 종사자(연평균 11.5%), 수의사(연평균 11.2%) 등은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IV. 보건복지 분야 직업 및 자격제도 분석

1. 보건복지 분야 직업분류

보건복지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산업분류) 대분류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에 속하며, 중분류는 보건업(86)과 사회복지서비스업(87)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분류 중분류의 보건업(86)은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된 것이다. 보건업(86) 소분류에는 병원(861), 의원(862), 공중보건 의료업(863), 기타 보건업(869)이 포함되어 있다.

2.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직업 및 최대 증가수를 보이는 직업

최근 세계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20개의 직업군 가운데 절반은 헬스케어 분야와 관계가 있다. 헬스케어 분야의 빠른 성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 단계에 들어선 현상과 관계가 깊다. 이는 이들이 점차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의료적 케어 및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관련 업무 또한 비용절

감 차원에서 낮은 임금의 직업군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대의 증가 수를 보이는 직업군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직업군보다 더 다양한 범위의 직업적 카테고리를 포함한다. 최대의 증가수를 보이는 직업군은 건강관련 직업군들 또한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3. 보건복지 분야 관련 직업 분석

주요국들의 보건복지 분야 직업에 대한 분석을 위해 6개 의료분야(Health Care) 총 38개 직업과 3개 복지분야(Welfare Career) 총 10개 직업에 대하여 정의, 직업개요,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요구되는 자격증 및 연봉 등을 분석하였다.

4. 보건복지 분야 자격종목 실태

2010년 2월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살펴보면, 그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민간자격은 대다수가 순수 민간자격으로 개설되어 있다. 둘째,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자격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자격은 국가 자격이 많은 반면, 사회복지의 자격은 대다수가 민간자격이다. 셋째, 보건복지 분야의 민간자격은 동일한 자격을 사설 교육기관이나 단체들이 유사한 명칭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다.

5.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 운영실태

보건복지 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한 현황을 2010년 7월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총 130개의 민간자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의 민간자격은 39개 종목, 사회복지 분야의 민간자격은 91

개의 종목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보건·의료 분야에 비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자격이 2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자격을 기관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자격은 하나의 자격(이하 단일자격)만을 운영하는 기관과 2개 이상의 자격(이하 복수 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기관들은 복수 자격을 운영하는 기관보다 단일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은 64개인 반면, 복수 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은 단일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의 약 1/3 수준인 22개로 나타났다.

셋째,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 종목은 복수 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에 비해 단일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보유한 자격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이 보유한 자격은 64개에 비해 단일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이 보유한 자격은 66개로 나타났다.

넷째,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모두 복수자격을 운영하는 기관보다는 단일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단일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보유한 자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의 경우에는 복수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보유한 자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격 종목별 응시자격 기준, 자격 종목별 검정방법, 자격 종목별 합격기준,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 금지분야 실태, 민간자격 금지 분야의 법적 제한, 민간자격 참여금지 유형 및 사례, 민간자격 참여 금지의 해제 관련 추진사항 및 사례(치료 서비스업)를 분석하였다.

6. 시사점

보건복지 분야의 민간자격은 대다수가 순수민간자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사실 교육기관이나 단체들이 보건복지 분야의 민간자격을 유사한 명칭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학이나 약무 등 전문적인 영역의 자격들은 국가에서 법적 규제, 관리가 엄격하다는 의미이다. 보건복지 분야의 민간자격 금지분야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되는 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자격 신설 및 민간검정 금지자격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법적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보건복지 분야의 자격제도는 영역과 자격 유형에 따른 법이 엄격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V.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자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자격의 문제점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민간자격 금지분야 설정 문제를 들 수 있다. 자격종목 간 직무영역 마찰 및 포괄적 직무범위로 인한 문제가 야기된다. 보건의료 분야의 일부 자격종목은 포괄적 직무범위로 인하여 자격종목 간 직무영역에 대한 마찰을 겪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체와 학계, 협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66.0%)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보건의료분야의 자격은 면허범위로 자격종목 간 이해관계가 다름으로 인해 마찰 발생 소지가 많다.

시장에서 민간자격의 질 관리 문제로 자격검정에 따른 등급 기준(교

육수준, 응시요건, 시험과목 등)의 차이로 인해 자격시장에서의 질 관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현장에서의 자격적용 및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개별 자격종목별 문제점으로 보건의료 분야 자격은 66개 종목, 사회복지 분야 자격은 87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 크게 문제가 되는 자격종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위생사 및 보건교육사 등 일부자격은 타 국가자격에 비해 취업가능성, 고용안정성, 직무의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자격의 개선 방향

가.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

첫째, 민간자격 금지분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보건의료 분야의 민간자격은 유사의료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로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나 대법원은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유형이라 할지라도 ‘구체적 위험성’이 없다면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가자격 신설은 자격의 공신력을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향후 국가자격 취득자들에 대한 활용을 정부차원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등록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 분야별 학회 및 협회, 단체 등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민간자격을 운영한다면 민간자격종목 및 검정기관 난립을 줄임으로써 민간자격 시장의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자격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분야의 자격은

대부분 면허성 자격으로 자격종목 간 직무영역 마찰이 나타나고 있다. 부처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한데 자격정책심의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부처 간의 갈등 조종 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국무총리실 안에 비상설기구인 자격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자격 간 마찰, 영역 다툼 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민간자격 시장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민간자격의 경우는 동일한 성격 혹은 동일한 명칭의 자격일지라도 관리, 운영하는 기관에 따라 자격의 등급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이는 직무내용이나 검정과목, 응시자격 자체가 다르게 규정되는 경우로 이어져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며, 유사한 자격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자격 취득 후 현장에서 자격의 적용 및 활용을 저해하는 부작용 등이 나타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과 검정수준의 난이도가 필요한 전문분야(치료 등)의 자격을 일부 민간자격관리자들은 임의적으로 응시자격을 설정하고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자격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문분야별 자격종목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자격의 등급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보건복지 분야 자격제도 신설 방향

향후 보건복지 분야 자격제도 신설 가능한 자격증 현황을 살펴보고 신설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유망직업 선정기준, 국가기술 자격 선정 기준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의 연구진 협의회와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자격 신설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4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서비스요구도(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국민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정도) 둘째, 직무전문성(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의 고유성 정도)

셋째, 능력인정필요성(전문성 보유정도를 평가하여 인정할 필요성) 넷째, 일자리가능성(해당 직업분야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정도(취업·창업 포함) 등이다.

이러한 신설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보건·의료분야 신설자격 선정 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여 신설자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문항평균 3.5점 이상을 받은 자격종목은 언어치료사 자격이고, 3.0점 이상 3.5점 미만의 점수를 얻은 자격은 해부병리사(3.40)와 운동처방사(3.26), 인공심폐사(3.25), 침술사(3.24), 알코올 및 약물중독상담사(3.23), 카이로프랙틱스(3.22), 외과수술보조사(3.13), 검안사(3.11), 호흡기치료사(3.09), 뜰치료사(3.0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신과보조사와 마사지사, 약물관련 인허가 전문가, 금연관리자, 발치료전문가, 수술기구준비사, 일반약품판매사, 약무사무관리사, 약사보조사 등의 자격은 평균 3.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는 보건·의료 분야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자격신설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평균 4.0점 이상의 고득점을 얻은 자격으로는 학교사회복지사(4.16)와 의료사회복지사(4.13), 아동청소년사회복지사(4.04), 미술치료사(4.00) 등이 있었으며, 나머지 놀이치료사와 음악치료사, 교정사회복지사, 가족사회복지사, 장애사회복지사, 요양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사, 레크리에이션치료사, 군사회복지사, 재활용구 전문상담사 등도 모두 평균 3.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신설 논의가 향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VI. 주요국의 보건복지 분야 유망직업 및 자격제도 분석

미국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은 한국에는 없는 다양한 자격들이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검안사, 약사보조사, 지압사, 의사보조, 의학기구 준비자, 발병전문의, 언어 및 청각 치료사, 호흡기치료 기능공, 침술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등의 자격이 한국에는 없는 자격들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법으로 '치료'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언어치료사나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등이 자격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 자격에 해당하는 직무가 필요할 경우 미술심리상담사나 언어재활 전문가 등의 형태로 변형되어 민간에서 자격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 중에서 한국에 없는 자격종목으로는 대중약 등록판매자, 뜸사, 세포검사사, 시력훈련사, 안마·마사지 지압사, 언어청각사, 의료비서기능검정, 의료사무관리사, 의료사무원, 의사사무작업보조기능검정, 의사컴퓨터기능검정, 임상공학기사, 조제사무관리사기능검정, 진료보수청구사무관리능력검정, 진료정보관리사, 침술사, 보행지도원, 복지사무관리기능검정, 복지사환경코디네이터기능검정, 차일드마인더, 케어사무관리사, 케어시설관리사, 케어지원 전문원, 케어사무원 기능인정시험, 홈헬퍼 등이 있다.

한국의 자격제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특성과 함께 상당부분 일본의 자격제도를 참조하여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침술사나 뜸사 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자격으로 관리, 운영되어 오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침이나 뜸 등의 대체의학 금지분야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또다시 합헌판정(대법원 판결- 2010. 7. 16.)이 내려졌다. 즉, 법원 판정 결과 침, 뜸 등 대체의학에 대하여 재판관 9명 중에서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으로 판정하였지만, 위헌 정족수에 필요한 6명을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났다. 그러나 위법으로 판정한 ○○○ 재판관 등 5명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

도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대체의학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안마사 자격은 한국에서는 시각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인 데 반해, 일본에서는 일반인도 안마·마사지 지압사라는 자격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자격신설 시 한국에는 없지만 외국에는 있는 자격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국에서는 금지종목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격이지만 외국에서는 금지가 아닌 종목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설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과 일본의 자격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두 나라 모두 대체의학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안마사, 지압사 등의 자격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기존 자격의 영역이 세분화되어 자격종목의 독점영역이 줄어든 대신 자격을 통한 일자리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약사와 약사보조사, 의사와 의사보조사 등이 일자리 나눔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미국과 일본 모두 언어청각사 자격이 있어 이 분야 자격 신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일본의 경우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자격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가자격인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인해 관련분야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받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 분야 자격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VII. 정책 제언

보건복지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및 투자확대, 수요자

측과 공급자 측의 참여, 관련정책 간 연계 강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바탕으로 수급의 적정화, 질적 수준 제고, 접근성 확보, 개발양성 훈련, 효율적 관리 및 생산성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양질의 적정 보건복지 인력 공급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1.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인적자원개발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통한 보건복지 분야 양적 및 질적 측면의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보건복지 분야 유망 직종 발굴, 보건복지 분야의 적극적인 교육 훈련 및 헬스케어와 관련된 인력양성 및 활용이 필요하다.

2. 보건복지서비스 인력양성·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자격종목에 대한 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신설제안 자격 각각에 대한 부처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신설 시 각각 자격종목에 대한 수요공급 조사 및 자격종목 신설을 위한 직무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서비스 요구도 측면에서 우선 필요한 자격 등을 선정하거나 부처차원에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신설 시 기존자격과 직무영역 마찰 등을 줄이기 위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은 타 분야의 자격과는 다르게 직무영역에 대한

마찰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자격종목이 설정,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자격은 국가자격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민간자격은 관련법에서 활용정도가 낮아 국가자격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자격으로는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자격을 수용하기에는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 국가자격 신설 시 일반국민들은 취업보장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취업을 고려하여 국가자격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자격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력을 양성하면서 취업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따라서 꼭 국가차원에서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는 국가자격으로 접근하고, 민간차원에서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자격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자격이 신설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책차원의 규제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자격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금지분야 자격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의 신설, 통합, 폐지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격시장에서 자격종목의 경쟁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끝).

I.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보건의료산업은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이며 경제와 고용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식 창출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보건의료기술의 고도화, 인구의 고령화,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보건의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과 배치 등 보건의료관련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개발과 배분은 우리나라의 국가인적자원개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인구고령화와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한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4대 바우처 사업으로 반영되어 간병인 및 활동보조인과 같은 복지서비스 부문의 인력 양성 및 고용을 증대시키고 있다.

보건복지서비스 수요는 확대·다양화되고 있으나 관련 직종, 자격 등의 전문화·세분화가 미흡하여 서비스의 질 확보,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 인력 양성 및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인력수요를 전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새롭게 대두되는 보건복지 분야의 미래 유망직업과 자격제도를 조망하여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 개발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서비스 분

야 인력수요 전망에 따른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을 자격제도 도입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보건복지 분야 인력 양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보건복지 분야 고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및 보건복지 분야 인력수요 전망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다. 인력수요 전망 연구는 우리나라 인력정책의 기본적인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인력수요 전망 연구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중분류 수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중분류 수준의 인력수요 전망만으로는 정책적 직업정보 자료를 만드는 데 크게 유용하지 못하다. 따라서 보다 세부적인 수준에서 전망이 시도되어야 한다.

질적 전망 방법을 도입하여 양적 전망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질적 분석을 통해 기존의 양적 분석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인력전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산업을 중심으로 직업연구를 수행하면서 질적 전망의 방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 (유망)직업 분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석한다. 산업별 탐색적 접근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직업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별로 요구되는 핵심기술과 스킬, 작업방식, 작업장 조직 및 인력충원방식 등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산업별 탐색적 접근은 특정한 산업,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상세한 직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직업구조는 매우 유동적이고 급변하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탐색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보건복지 분야의 직업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양적 정보 생성을 위주로 하는 인력수급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직업 연구는 미시적 차원에서 직업소분류 이하의 개별 직업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직업별로 요구되는 지식, 능력, 태도 등의 질적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자격·면허와 관련된 제도분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분야 자격제도의 체계화, 보건복지 분야 자격의 현장성 제고, 보건복지 분야 자격의 국제통용성 제고,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의 질 관리,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 배양을 위한 전문자격 종목의 개발 등이 있다.

이를 위해서 주요국의 보건복지 분야 자격제도 분석과 주요국의 보건복지 분야 자격제도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보건복지산업의 직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수급, 자격,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제언을 한다.

2. 연구방법

가. 문헌 분석

국내·외 자료 수집 및 기존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OECD, ILO, World Bank 등의 자료를 분석한다.

나. 전문가 풀 구성 및 활용

연구 목적은 인적자원개발, 직업전망, 자격분야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및 연구 진행을 점검한다. 대상자는 인적자원개발(전망 포함) 분야(조준모-성대, 김종귀-한국은행, 전현중-동서대 등),

정부부처(보건복지부 등), 자격제도 전문가(직능원 등), 자격검정기관 관계자(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상공회의소-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서비스산업의 학계, 산업계, 연구소 전문가 등이다.

다. 면담조사

현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 및 자격 조사는 보건복지서비스산업 직업의 실태 분석(입직, 자격, 전망, 임금 등)을 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서비스산업 자격의 필요성 및 인식정도, 보건복지서비스산업 자격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보건복지서비스산업 자격의 활용, 보건복지서비스 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 절차 시 문제점, 보건복지서비스 산업의 유망 자격 발굴,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유망 자격종목 및 등급 수준 등이다.

면담 대상자 및 면담 대상자 수는 보건복지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라. 전문가협의회

전문가협의회는 목적은 관련 분야 전문가협의회를 통하여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 시기를 살펴보면 연구방향 정립(2010년 5월 초), 연구 중간 점검(2010년 8월 말), 정책방안 도출 및 연구 결과 점검(2010년 9월 말)을 하였다.

마. 정책토론회

정책토론회의 목적은 연구진의 연구결과의 현장 적합성 및 정책 실현성을 검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하는 것이다. 대

상자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관심 있는 연구소 및 대학교수, 보건복지 분야 정부관계자 등이다.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 및 활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 분야 인력 양성 및 활용 정책과제 도출, 둘째, 보건복지 분야 유망직업 발굴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제시, 셋째, 보건복지 분야 새로운 자격 발굴을 통한 국가경쟁력 증진, 넷째,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보건복지 분야 선진화방안에 대한 시사점 모색, 다섯째,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중장기 인력수급 및 개발계획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등이다.

제4절 선행연구 분석

1. 서비스산업 연구

강경중 외(2009)는 지식서비스 강국 실현을 위한 인적자원 형성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의료(글로벌 헬스케어), 교육(글로벌 교육서비스), 금융(녹색 금융), 관광, 문화 등의 지식서비스 분야별로 개념 및 현황,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 인력양성 정책 및 인프라를 분석하여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박동 외(2009)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연계한 학과 특성화 방안』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추진현황 및 권역별 실태 분석, 우리나라 서비

스산업의 인력수요 예측 및 양성 방안, 한국폴리텍대학 양성과정 전공분야별 특성화 현황분석, 국내 2년제 대학 서비스학과 특성화 사례분석,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연계한 학과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일부 학과만을 언급하였으며, 자격 분석 등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서비스산업의 고용전망 등은 서비스산업의 자격연구에서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문수(2009)는 『서비스산업 업종별 노동 생산성 변동요인과 시사점』 분석에서 서비스 산업을 4개 범주로 나누어 범주별 노동생산성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4개의 범주는 OECD에서 서비스 산업을 특징별로 분석한 것으로서 개인서비스, 사업서비스, 배분서비스,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서비스 구분 방법은 서비스 산업의 자격연구에서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진수(2005)는 지식서비스산업 전반,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의료 서비스산업, 교육 서비스산업, 창조 서비스산업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발전전략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식서비스 분야 인적자원 관련 발전방향으로 고등교육분야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고등교육분야 과제로는 대학 자율성 확대, 특수 분야 전문대학원 설치, 기업의 고등교육 학위과정 허용, 전문대학원 제도 확대 도입, 교육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오영호 외(2005)는 의료기사인력인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및 의무기록사의 수급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등 6개 의료기사인력의 양성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관련학과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취업률은 의무기록사(2002년 27.6%)를 제외하고, 물리치료사 60% 이상, 임상병리사 58.7%, 작업치료사 69.3%, 방사선사 93.2% 등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인력의 공급과 수요 추계 결과는 공급추계방법과 수요추계방법에 따라 수급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남으로 추계방법에 따라 수급정책의 방

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OECD 주요국가의 인구, 사회경제적 변수와 의료공급 변수가 포함된 패널분석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돈 외(2003)는 『국가인력수급 전망과 정책과제(Ⅲ)-서비스산업분야』에서 서비스산업 현황, 인력수요 전망, 서비스산업의 인력수요 및 취업구조 전망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서비스산업 자격의 실태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서비스산업의 고용규모 확대 산업 현황, 분류체계 등의 자료 등은 서비스산업의 자격연구에서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영 외(2003)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분야의 변화와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증대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인력과 직종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및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건의료 욕구를 기초로 새로운 의료서비스 직종으로서 가정중심 1차 진료 의사, 양·한방 통합인력, 노인의학전문의, 노인전문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노인요양서비스에 종사할 케어 매니저(Care Manager), 간병 및 가사 지원인력, 오락치료사, 호흡치료사, 언어치료사, 가정방문 물리치료사, 건강증진을 전담할 보건교육사, 예방의학전문의 등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지역보건사업을 위하여 보건기획전문가, 보건교육사, 운동지도사, 지역사회영양사,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와 함께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업무를 담당할 보건복지사, 보건전문간호사와 가정전문간호사 등의 직업을 제시하고 있다.

2. 자격연구

김현수 외(2003)는 『전문직 자격제도의 현황과 과제』에서 일부 전문직 자격(의사 등 6개 전문직)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직 인력의 양성체계 및 현황, 전문직 자격의 일-자격-교육훈련 연계 실태, 전문직

자격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전문직 중심으로 자격 실태를 살펴본 것으로서 새로운 자격의 수요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만, 자격의 현황을 분석한 틀 등은 서비스 산업의 자격연구에서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종성 외(2008)는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에 관한 연구』에서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 국가자격 간 역할, 자격의 관리운영 체계 등을 검토하고,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 민간자격 운영 방향, 개별법의 관할영역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개별 자격종목에 대한 실태 분석이나 문제점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자격의 신설, 통합, 폐지에 대한 자료 등은 서비스 산업의 자격연구에서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종성 외(2010)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산업의 자격 제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의 현황,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산업 및 직업 현황, 국내외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 현황을 심층 분석하였다. 특히 보건 및 사회 분야 서비스 자격의 신규 수요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분야 자격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직업연구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부는 구직자와 학생들을 위하여 진로선택 가이드, 캘리포니아 직업전망, 직업정보 등 다양한 직업연구를 수행하여 제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부에서는 현재 생명공학 산업, 건설업, 보건의료산업, 제조업 등 4개 산업분야의 직업연구를 생산하였다. 이 가운데 생명공학 산업에 관한 직업연구는 산업별 직업연구의 방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공학산업의 직업에 관하여 산업전망에서부터 관련된 개별 직업에 관한 정보까지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생명공학 산업의 개요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어서 생명공학 산업의 전망, 캘리포니아 생명공학 산업, 의약품(Drug)의 진화, 생명공학 관련 직업군(Occupational Cluster), 생명공학 직업 분야의 흥미, 생명공학 분야 직업을 위하여 준비할 사항, 직업군별 생명공학 직업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생명공학 분야 36개 직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보건의료산업의 직업 연구¹⁾에서는 SOC(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에 따라 직업별 종사자수와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2004년 보건의료 관련 직업(Healthcare Practitioner and Technical Occupations)의 종사자 규모는 총 646만 9,920명으로 전체 직업 종사자(1억 2,914만 6,700명)의 약 5%에 해당되며, 연간 평균 임금은 약 5만 8천 달러로 전체 직업의 평균 임금(약 3만 7천 달러)보다 약 2만 달러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보조 직업 종사자(Healthcare Support Occupations)는 330만 7,150명으로 전체 직업종사자의 약 2.6%이며 연간 평균 임금은 약 2만 3천불 내외로 낮았다.

박천수 외(2006)는 보건의료산업 현장과 긴밀한 네트워킹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 산업분야의 직업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보건의료산업의 주요 직업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스킬, 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인력수급, 교육 훈련과 자격 등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자격·면허, 교육훈련 등 인력양성과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고 보건의료산업의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분석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직업구성을 밝혔다.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산업별 직업 연구를 실시하여 지식·스킬, 태도, 임금 및 노동 조건, 직업 경로(Career Path) 등 직업별 특성을 밝혔다.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직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수급, 자격,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1) <http://www.bls.gov/soc/home.htm> Data extracted on January 20, 2006 참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204개 직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직무분석은 2001년에 실시한 의료정보시스템 1개 직종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컴퓨터그래픽디자이너 등 총 84개 직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보건의료산업 관련 직종은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의료 정보시스템 관리자, 병원코디네이터, 산후조리원 전문관리사 등 7개 직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였다.

4. 시사점

선행연구와 관련된 자격 관련 문헌들은 해당 과제의 연구 범위 내에서 각 연구 주제에 맞게 문제점과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건복지서비스 인적자원 개발 및 자격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직종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임금, 역할, 향후 전망, 기술변화와 역할, 수행성과, 비임금 근로조건,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직종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산업의 직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직업의 직무수행능력이나 교육훈련의 실태, 요구 및 개선에 관한 내용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II. 보건복지 분야 인력수요 전망

제1절 보건복지서비스 산업현황

1.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사업현황

보건복지서비스 산업현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별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II-1>에서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보건업은 5만 8,339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3만 5,688개로 보건업이 약 2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업의 경우, 일반의원, 치과의원 등이 포함된 의원이 5만 600개로 전체 보건업의 86.7%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비거주 복지시설이 32,619개로 91.4%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의 경우 장애를 가진 사람 등의 보호 계층을 위한 시설이 대부분인데 반해 비거주 복지시설은 보육시설과 같은 전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 II-1>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체 수

(단위: 개수, %)

구분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861 병원	862 의원	863 공중 보건 의료업	869 기타 보건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2008년	2,090 (3.6%)	50,600 (86.7%)	3,439 (5.9%)	2,210 (3.8%)	3,069 (8.6%)	32,619 (91.4%)
합계	58,339(100%)				35,688(100%)	

주: 한국통계연감(통계청, 2009).

<표 II-2>는 보건복지서비스 산업의 연매출액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건업의 매출액이 약 51조 원,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가 약 9조원 정도로 보건분야가 사회복지 분야에 비하여 약 5~6배 높은 매출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II-2> 보건복지서비스 매출액

(단위: 백만 원, %)

구분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861 병원	862 의원	863 공중보건 의료업	869 기타 보건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2008년	27,284,144 (52.8%)	22,083,543 (42.8%)	1,771,302 (3.4%)	516,475 (1%)	2,190,010 (24%)	6,952,153 (76%)
합계	51,655,464(100%)				9,142,163(100%)	

주: 한국통계연감(통계청, 2009).

2. 보건복지 분야 실부가가치 전망

<표 II-3>은 2010~2015년간 67개 산업부문별 실질부가가치 전망을 나타낸 수치이다. 의료보건서비스의 경우 2010년 32,267,368백만 원, 2011년

33,754,123백만 원, 2012년 35,285,723백만 원, 2013년 36,848,927백만 원, 2014년 36,848,927백만 원, 2015년 39,991,183백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은 2010년 5,717,839 백만 원, 2011년 5,961,366백만 원, 2012년 6,213,465백만 원, 2013년 6,471,584백만 원, 2014년 6,728,611 백만 원, 2015년 6,992,737백만 원의 실질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 된다.

<표 II-3> 67개 산업부문별 실질부가가치 전망(2010~2015년)

(단위: 백만 원)

실질부가가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작물	18,189,966	18,289,958	18,174,141	18,072,353	17,967,616	17,883,585
축산물	7,315,112	7,474,082	7,544,456	7,621,744	7,698,868	7,786,119
임산물	1,259,263	1,260,077	1,246,348	1,233,853	1,221,422	1,210,660
수산물	2,743,583	2,755,045	2,733,830	2,714,867	2,695,588	2,679,540
농림어업서비스	502,861	498,957	489,153	479,748	470,291	461,400
석탄	228,448	222,949	215,057	207,536	200,179	193,240
원유 및 천연가스	162,189	168,887	173,721	178,731	183,751	189,022
금속광석	14,196	14,056	13,774	13,512	13,256	13,024
비금속광석	1,497,513	1,484,768	1,456,579	1,431,562	1,408,258	1,388,418
식료품	9,114,234	9,081,901	9,001,921	8,900,258	8,768,037	8,617,532
음료품	1,909,599	2,026,416	2,146,280	2,273,816	2,406,930	2,548,943
담배	1,519,389	1,546,631	1,571,621	1,597,872	1,623,869	1,651,909
섬유(화학섬유 포함)	3,642,331	3,698,331	3,756,199	3,824,045	3,898,085	3,983,654
의류	6,633,304	6,733,359	6,836,324	6,957,743	7,090,901	7,245,580
가죽 및 모피 제품, 신발	780,302	784,790	789,288	795,500	802,603	811,656
목재 및 나무제품	1,015,121	1,031,274	1,047,667	1,066,607	1,087,042	1,110,456
펄프 및 종이	4,135,165	4,232,872	4,331,055	4,438,876	4,551,907	4,676,305
인쇄, 출판 및 복제	2,654,648	2,787,962	2,924,791	3,072,103	3,227,552	3,396,190
석유 및 석탄제품	7,272,270	7,555,560	7,849,601	8,141,566	8,421,853	8,700,313

실질부가가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산업용화학품	12,033,730	12,315,218	12,612,003	12,904,189	13,177,565	13,448,894
의약품 및 화장품	8,566,034	9,203,988	9,892,649	10,618,753	11,371,460	12,165,481
기타 화학제품	2,903,511	3,017,667	3,138,392	3,260,291	3,379,462	3,499,999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11,859,304	12,127,409	12,407,113	12,678,024	12,925,833	13,166,789
유리 및 유리제품	3,841,214	3,911,644	3,985,577	4,056,236	4,118,996	4,179,117
도기 및 자기제품	651,228	664,359	678,393	692,239	705,131	717,978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4,186,274	4,226,341	4,273,919	4,322,506	4,367,586	4,415,038
철강	18,983,884	20,231,744	21,499,625	22,736,585	23,903,121	25,014,778
비철금속제품	2,868,129	2,921,176	2,981,012	3,042,655	3,102,793	3,165,575
금속제품	10,947,804	11,282,618	11,649,482	12,030,040	12,411,803	12,811,697
일반산업용 기계	10,853,465	11,349,745	11,881,086	12,429,090	12,980,026	13,550,423
특수산업용 기계	10,844,083	11,353,243	11,888,722	12,431,267	12,966,318	13,509,123
가정용 전기기기	2,395,767	2,472,454	2,550,004	2,623,919	2,690,965	2,754,231
컴퓨터 및 사무기기	1,718,094	1,773,941	1,828,746	1,879,050	1,922,494	1,961,225
전기기계 및 장치	11,024,235	11,477,284	11,955,449	12,439,222	12,914,088	13,395,715
반도체 및 전자부품	54,729,607	59,385,856	64,448,568	69,848,715	75,525,145	81,583,712
영상음향기기 및 통신기기	15,967,201	17,000,822	18,077,131	19,162,664	20,230,052	21,297,913
정밀기기	4,695,595	4,947,412	5,218,590	5,501,282	5,789,353	6,089,926
자동차	26,188,757	26,884,231	27,644,378	28,429,091	29,208,865	30,022,786
조선	14,757,030	15,056,225	15,380,326	15,704,043	16,009,990	16,318,958
기타 수송기계	1,352,403	1,428,560	1,510,320	1,594,449	1,678,237	1,762,721
가구, 기타 제조업제품	3,748,474	3,894,245	4,035,773	4,181,828	4,327,872	4,479,253
전력	16,144,955	16,946,004	17,565,557	18,212,295	18,870,634	19,566,801
도시가스 및 열공급업	3,898,350	4,277,914	4,625,006	4,988,958	5,364,541	5,757,973
수도	2,333,866	2,442,015	2,525,878	2,615,215	2,708,063	2,808,453
건설	62,614,826	65,165,803	66,934,808	68,691,462	70,366,874	72,047,939
도소매	72,686,615	75,669,766	78,025,107	80,422,517	82,780,458	85,205,491
음식점 및 숙박	20,001,176	20,970,731	21,782,125	22,618,696	23,458,001	24,330,613
운수 및 보관	42,052,941	45,511,448	48,770,561	52,238,667	55,872,769	59,753,995
통신	22,483,584	23,954,954	25,261,189	26,617,033	27,995,926	29,434,062
금융 및 보험	69,910,929	75,173,629	80,039,700	85,156,036	90,443,403	96,020,175
부동산	68,688,090	73,363,928	76,307,279	79,454,121	82,757,731	86,342,048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844,476	865,805	865,726	867,966	871,904	878,753
광고	653,042	687,651	704,734	722,647	740,864	760,400
사업관련 서비스	54,990,951	59,458,814	62,536,064	65,758,327	69,080,050	72,596,276

실질부가가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산업 및 전문단체	4,399,812	4,608,247	4,700,997	4,801,586	4,906,791	5,023,526
공공행정 및 국방	56,276,085	57,916,364	59,461,208	61,044,127	62,603,343	64,216,919
교육서비스	52,941,774	55,045,798	56,684,719	58,316,577	59,881,655	61,451,704
의료보건서비스	32,267,368	33,754,123	35,285,723	36,848,927	36,848,927	39,991,183
사회복지서비스	5,717,839	5,961,366	6,213,465	6,471,584	6,728,611	6,992,737
위생서비스	5,638,166	5,950,835	6,225,236	6,515,288	6,815,795	7,136,740
방송	3,318,108	3,590,874	3,847,858	4,120,986	4,407,071	4,712,593
영화 및 연예	1,151,919	1,256,886	1,358,061	1,466,483	1,581,161	1,704,565
기타 오락문화서비스	13,043,359	14,304,789	15,527,342	16,835,694	18,217,387	19,699,516
대개인서비스	5,564,179	5,837,181	6,070,687	6,317,184	6,571,495	6,843,115
수리서비스	2,624,121	2,752,612	2,862,349	2,978,111	3,097,447	3,224,820
기타 사회서비스	4,290,779	4,433,730	4,548,500	4,675,488	4,811,153	4,962,818
가사서비스	242,456	260,966	278,305	296,789	316,207	337,049

주: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통계는 비가법적 특성에 의해 총량(또는 상위부문) 금액과 그 구성항목 금액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

자료: 산업연구원(2010). 인력수급전망을 위한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 연구.

<표 II-4>는 2016~2020년간 67개 산업의 실질부가가치 전망을 나타낸 수치이다. 의료보건서비스 산업은 2016년 41,611,344백만 원, 2017년 43,261,475백만 원, 2018년 44,940,429백만 원, 2019년 46,646,813백만 원, 2020년 48,378,941백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6년 41,611,344백만 원에서 4년 후인 2020년까지 약 6,767,597백만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셈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은 2016년 7,263,441백만 원, 2017년 7,540,725백만 원, 2018년 7,824,632백만 원, 2019년 8,115,170백만 원, 2020년 8,412,304백만 원의 실질부가가치를 창출할 증가할 전망이다.

<표 II-4> 67개 산업부문별 실질부가가치 전망(2016~2020년)

(단위: 백만 원)

실질부가가치	2016	2017	2018	2019	2020
작물	17,818,267	17,771,278	17,742,449	17,731,648	17,738,785
축산물	7,883,114	7,990,151	8,107,632	8,235,994	8,375,702

실질부가가치	2016	2017	2018	2019	2020
임산물	1,201,411	1,193,633	1,187,298	1,182,379	1,178,856
수산물	2,666,412	2,656,136	2,648,677	2,644,004	2,642,094
농림어업서비스	453,007	445,085	437,614	430,573	423,942
석탄	186,672	180,449	174,550	168,952	163,635
원유 및 천연가스	194,533	200,293	206,309	212,589	219,142
금속광석	12,813	12,622	12,449	12,294	12,155
비금속광석	1,371,764	1,358,162	1,347,509	1,339,722	1,334,734
식료품	8,448,380	8,261,087	8,056,355	7,835,012	7,598,021
음료품	2,700,073	2,860,715	3,031,264	3,212,089	3,403,527
담배	1,682,064	1,714,558	1,749,645	1,787,599	1,828,709
섬유(화학섬유 포함)	4,080,779	4,189,857	4,311,366	4,445,829	4,593,821
의복	7,421,919	7,620,744	7,843,045	8,089,916	8,362,563
가죽 및 모피제품, 신발	822,602	835,460	850,260	867,038	885,836
목재 및 나무제품	1,136,849	1,166,322	1,198,992	1,234,988	1,274,449
펄프 및 종이	4,812,051	4,959,518	5,119,126	5,291,308	5,476,505
인쇄, 출판 및 복제	3,578,983	3,777,278	3,992,592	4,226,599	4,481,146
석유 및 석탄제품	8,975,515	9,246,665	9,512,982	9,773,618	10,027,652
산업용 화학물	13,716,883	13,981,258	14,241,770	14,498,064	14,749,677
의약품 및 화장품	13,001,190	13,879,768	14,802,391	15,770,089	16,783,708
기타 화학제품	3,621,478	3,743,726	3,866,567	3,989,796	4,113,167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13,399,399	13,623,188	13,837,728	14,042,511	14,236,945
유리 및 유리제품	4,236,169	4,290,049	4,340,674	4,387,939	4,431,717
도기 및 자기제품	730,721	743,353	755,870	768,263	780,51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4,464,636	4,516,498	4,570,749	4,627,485	4,686,766
철강	26,056,143	27,013,918	27,875,449	28,628,734	29,262,674
비철금속제품	3,230,883	3,298,842	3,369,591	3,443,246	3,519,901
금속제품	13,229,990	13,667,967	14,127,010	14,608,466	15,113,638
일반산업용 기계	14,139,714	14,748,313	15,376,663	16,025,096	16,693,810
특수산업용 기계	14,057,787	14,611,345	15,168,819	15,729,081	16,290,838
가정용 전기기기	2,813,174	2,867,474	2,916,843	2,960,996	2,999,655

실질부가가치	2016	2017	2018	2019	2020
컴퓨터 및 사무기기	1,994,810	2,023,003	2,045,609	2,062,465	2,073,438
전기기계 및 장치	13,882,547	14,373,974	14,869,380	15,368,000	15,868,908
반도체 및 전자부품	88,037,379	94,905,128	102,206,666	109,961,481	118,188,593
영상음향기기 및 통신기기	22,358,462	23,405,164	24,431,335	25,429,985	26,393,860
정밀기기	6,402,570	6,727,270	7,064,009	7,412,711	7,773,243
자동차	30,870,412	31,753,640	32,674,540	33,635,053	34,636,978
조선	16,629,717	16,942,277	17,256,680	17,572,838	17,890,531
기타 수송기계	1,846,654	1,928,829	2,007,980	2,082,797	2,151,957
가구, 기타 제조업제품	4,635,493	4,796,407	4,961,798	5,131,407	5,304,917
전력	20,302,141	21,079,795	21,903,346	22,776,651	23,703,861
도시가스 및 열공급업	6,168,719	6,596,590	7,041,365	7,502,737	7,980,307
수도	2,916,871	3,034,097	3,161,017	3,298,602	3,447,920
건설	73,725,912	75,397,755	77,060,921	78,712,660	80,350,012
도소매	87,690,683	90,235,864	92,841,449	95,507,600	98,234,198
음식점 및 숙박	25,235,379	26,173,067	27,144,627	28,150,957	29,192,884
운수 및 보관	63,892,485	68,303,548	73,003,765	78,010,428	83,341,518
통신	30,930,665	32,487,238	34,105,538	35,787,290	37,534,172
금융 및 보험	101,889,419	108,061,260	114,546,477	121,355,506	128,498,310
부동산	90,223,810	94,428,784	98,986,039	103,927,386	109,287,657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888,528	901,342	917,349	936,734	959,716
광고	781,266	803,543	827,321	852,695	879,766
사업관련 서비스	76,312,759	80,241,325	84,394,940	88,787,001	93,431,289
산업 및 전문단체	5,152,067	5,293,168	5,447,700	5,616,614	5,800,942
공공행정 및 국방	65,881,048	67,596,907	69,366,086	71,189,983	73,069,760
교육서비스	63,019,004	64,580,505	66,133,432	67,674,690	69,200,834
의료보건서비스	41,611,344	43,261,475	44,940,429	46,646,813	48,378,941
사회복지서비스	7,263,441	7,540,725	7,824,632	8,115,170	8,412,304
위생서비스	7,479,321	7,845,441	8,237,233	8,657,012	9,107,287
방송	5,038,581	5,386,517	5,758,042	6,154,917	6,579,030
영화 및 연예	1,837,256	1,979,975	2,133,537	2,298,827	2,476,792
기타 오락문화서비스	21,287,073	22,986,855	24,806,234	26,752,996	28,835,335
대개인서비스	7,132,957	7,442,593	7,773,787	8,128,448	8,508,638
수리서비스	3,360,647	3,505,654	3,660,654	3,826,529	4,004,231
기타 사회서비스	5,131,461	5,318,625	5,526,086	5,755,827	6,010,074
가사서비스	359,411	383,429	409,253	437,045	466,984

주: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통계는 비가법적 특성에 의해 총량(또는 상위부문) 금액과 그 구성항목 금액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

자료: 산업연구원(2010). 인력수급전망을 위한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 연구.

<표 II-5>는 2006~2020년까지의 산업부문별 실질부가가치 성장률 추

이의 연평균 증감률을 전망한 것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문은 2006~2009년 6.8% 증감하였고, 2010~2015년 3.9%, 2016~2020년 또한 3.9%의 성장 증감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산업연구원, 2010).

<표 II-5> 산업부문별 실질부가가치 성장률 추이(2006~2020년)

(단위: %, 연평균 증감률)

	2006 ~ 2009	2010 ~ 2015	2016 ~ 2020
농업임업 및 어업	3.2	0.1	0.1
광업	-1.3	-1.0	-0.5
제조업	4.0	4.6	3.7
(경공업)	-0.5	2.4	2.3
(중화학공업)	4.8	5.0	3.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7	4.8	4.5
건설업	1.0	2.6	2.2
서비스	3.3	4.5	4.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5	3.1	3.1
운수창고 및 통신업	2.8	6.7	6.4
금융보험업	5.9	6.1	6.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1	4.9	4.9
공공행정국방	3.2	2.7	2.6
교육서비스업	2.9	2.8	2.4
의료보건	-	4.4	3.9
사회복지	-	4.1	3.8
기타 서비스업	3.2	6.3	6.2

자료: 산업연구원(2010). 인력수급전망을 위한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 연구.

주: “-”는 자료 미비로 도출이 불가함.

제2절 보건복지 분야 고용현황 분석

1. 보건복지 분야 산업 분야별 종사자 수

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2010년 6월말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종사자 수는 112만 2,846명으로 2009년 12월말 대비 11.0%(11만 1,583명) 증가하였다(<표 II-6> 참조). 거주복지시설 운영업은 29.3%(1만 9,844명), 기타 보건업은 21.6%(2,020명),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은 19.1%(5만 3,448명), 병원은 6.9%(2만 3,701명), 의원은 4.4%(1만 2,443명), 공중보건의료원은 0.4%(127명) 증가하였다.

<표 II-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종사자 수

(단위: 명)

	2009.12.	2010.2.	2010.6.	2009.12 대비		2010.2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체	1,011,264	1,024,232	1,122,846	111,583	11.0%	98,614	9.6%
병원	341,532	346,100	365,233	23,701	6.9%	19,133	5.5%
의원	283,822	283,951	296,265	12,443	4.4%	12,314	4.3%
공중보건의료업	28,613	28,424	28,741	127	0.4%	316	1.1%
기타보건업	9,357	9,484	11,377	2,020	21.6%	1,892	20.0%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67,789	70,147	87,633	19,844	29.3%	17,486	24.9%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	280,151	286,126	333,598	53,448	19.1%	47,472	16.6%

자료: 보건복지부 용역 관련 통계 자료,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2010)/보건복지부 용역 관련 통계 내부자료(2010).

나. 기타 보건복지산업 분야

2010년 6월말 기타 보건복지산업 분야의 종사자 수는 9만 8,591명으로 2009년 12월말 대비 2.4%(2,307명) 증가하였다(<표 II-7> 참조). 건물산업

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은 24.0%(2,348명), 사회 및 산업정책행정은 17.9%(930명),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은 10.4%(959명)씩 각각 증가하였고, 숙박시설 운영업은 2.7%(1,931명) 감소하였다.

<표 II-7> 기타 보건복지산업 분야의 종사자 수

(단위: 명)

	2009.12.	2010.2.	2010.6.	2009.12 대비		2010.2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체	96,285	95,825	98,591
숙박시설 운영업	72,046	70,758	70,115	-1,931	-2.7%	-643	-0.9%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9,262	9,490	10,222	959	10.4%	732	7.7%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9,794	10,239	12,142	2,348	24.0%	1,903	18.6%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5,183	5,337	6,113	930	17.9%	775	14.5%

자료: 보건복지부 용역 관련 통계 자료,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2010)/보건복지부 용역 관련 통계 내부자료(2010).

2. 보건복지 분야 업종별 종사자 수

가. 대분류 업종별 종사자 수

2010년 6월말 보건복지관련 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191만 1,304명으로 2009년 12월말 대비 9.5%(16만 5,464명) 증가하였다(<표 II-8> 참조). 2009년 12월말 대비 종사자 수 증가 상위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만 1,583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만

8,200명), 도매 및 소매업(2만 886명)순으로 나타났고, 2009년 12월말 대비 종사자 수 증가율 상위 업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4.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17.9%), 도매 및 소매업(1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8> 대분류 업종별 종사자 수

(단위: 명)

	2009.12.	2010.2.	2010.6.	2009.12 대비		2010.2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체	1,745,840	1,766,634	1,911,304
제조업	97,528	97,735	100,016	2,489	2.6%	2,282	2.3%
도매 및 소매업	174,370	174,755	195,255	20,886	12.0%	20,500	11.7%
숙박 및 음식점업	72,046	70,758	70,115	-1,931	-2.7%	-643	-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262	9,490	10,222	959	10.4%	732	7.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794	10,239	12,142	2,348	24.0%	1,903	18.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	5,183	5,337	6,113	930	17.9%	775	14.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11,264	1,024,232	1,122,846	111,583	11.0%	98,614	9.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366,395	374,087	394,595	28,200	7.7%	20,508	5.5%

자료: 보건복지부 용역 관련 통계 자료,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2010)/보건복지부 용역 관련 통계 내부자료(2010).

나. 소분류 업종별 종사자 수

보건복지관련 소분류 업종별로 살펴보면, 2009년 12월말 대비 종사자 수 증가 상위 업종은 비거주 복지시설운영업(5만 3,448명), 병원(2만 3,701명), 거주복지시설운영업(1만 9,844명) 순으로 나타났고, 2009년 12월말 대비 종사자 수 증가율 상위 업종은 거주복지시설운영업(29.3%), 기타보건업(21.6%) 순으로 나타났다(<표 II-9> 참조).

<표 II-9> 소분류 업종별 종사자 수

(단위: 명)

	2009.12.	2010.2.	2010.6.	2009.12 대비		2010.2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병원	341,532	346,100	365,233	23,701	6.9%	19,133	5.5%
의원	283,822	283,951	296,265	12,443	4.4%	12,314	4.3%
공중보건의료업	28,613	28,424	28,741	127	0.4%	316	1.1%
기타 보건업	9,357	9,484	11,377	2,020	21.6%	1,892	20.0%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67,789	70,147	87,633	19,844	29.3%	17,486	24.9%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	280,151	286,126	333,598	53,448	19.1%	47,472	16.6%
소계	1,011,264	1,024,232	1,122,846	111,583	11.0%	98,614	9.6%

자료: 보건복지부 용역 관련 통계 자료,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2010)/보건복지부 용역 관련 통계 내부자료(2010).

3. 종사자 형태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의 종사자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지위별에서는 2010년 6월말 상용근로자가 89만 57명으로 2009년 12월

말 대비 7.9%(6만 4,843명) 증가하였다(<표 II-10> 참조). 종사자 규모별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6.6%(2만 4,247명) 증가하였으며, 종사자 성별에서는 여성종사자 수가 11.6%(8만 9,632명) 증가하였다.

<표 II-10> 종사자 형태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 종사자 수
(단위: 명)

		2009.1 2.	2010.2.	2010.6.	2009.12 대비		2010.2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체		1,011,264	1,024,232	1,122,846	111,583	11.0%	98,614	9.6%
종사자 지위	상용근로자	825,214	835,962	890,057	64,843	7.9%	54,095	6.5%
	자영업자	79,734	80,315	84,034	4,300	5.4%	3,720	4.6%
	무급가족종사자	9,518	9,507	5,310	-4,208	-44.2%	-4,197	-44.1%
	소계	96,797	98,448	143,445	46,648	48.2%	44,997	45.7%
	임시 및 일용 근로자	60,821	62,255	73,449	12,628	20.8%	11,194	18.0%
	기타 종사자	9,753	10,293	17,592	7,839	80.4%	7,300	70.9%
	파견종사자	26,223	25,900	52,404	26,181	99.8%	26,503	102.3%
종사자 규모	1~4인	192,706	196,264	207,784	15,079	7.8%	11,520	5.9%
	5~9인	199,988	201,098	239,216	39,228	19.6%	38,119	19.0%
	10~19인	132,171	132,927	137,170	5,000	3.8%	4,243	3.2%
	20~49인	117,314	120,624	145,344	28,030	23.9%	24,720	20.5%

		2009.1 2.	2010.2.	2010.6.	2009.12 대비		2010.2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50인 이상	369,084	373,319	393,331	24,247	6.6%	20,012	5.4%
종사자 성별	남성	238,163	238,224	260,114	21,950	9.2%	21,890	9.2%
	여성	773,100	786,008	862,733	89,632	11.6%	76,724	9.8%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512,849	519,461	567,049	54,200	10.6%	47,588	9.2%
	회사법인	56,745	57,164	68,174	11,429	20.1%	11,011	19.3%
	회사이외 법인	311,700	316,233	345,707	34,007	10.9%	29,473	9.3%
	비법인단체	49,337	50,264	61,754	12,417	25.2%	11,490	22.9%
	국가지방단체	80,633	81,110	80,162	-471	-0.6%	-948	-1.2%

자료: 보건복지부 용역 관련 통계 자료,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2010)/보건복지부 용역 관련 통계 내부자료(2010).

기타 보건복지산업 분야의 종사자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종사자상 지위 별에서는 2010년 6월말 상용근로자가 3만 7,799명으로 2009년 12월말 대비 2.7%(981명) 증가하였다. 종사자 규모별에서는 50인 이상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16.6%(2,417명) 증가하였으며, 종사자 성별에서는 여성종사자 수가 2.8%(1,542명) 증가하였다(<표 II-11> 참조).

<표 II-11> 종사자 형태별 기타 보건복지산업 분야 종사자 수

(단위: 명)

		2009.12	2010.2.	2010.6.	2009.12 대비		2010.2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체		96,285	95,825	98,591	2,307	2.4%	2,767	2.9%
종사자 지위	상용근로자	36,818	36,172	37,799	981	2.7%	1,627	4.5%
	자영업자	27,179	27,129	27,054	-125	-0.5%	-75	-0.3%
	무급가족종사자	15,252	15,215	16,536	1,285	8.4%	1,322	8.7%
	소계	17,036	17,309	17,202	166	1.0%	-107	-0.6%
	임시 및 일용 근로자	13,737	15,007	16,507	2,770	20.2%	1,499	10.0%
	기타 종사자	2,994	1,979	268	-2,726	-91.0%	-1,711	-86.5%
	파견종사자	305	323	427	122	39.9%	104	32.4%
종사자 규모	1~4인	63,719	62,948	62,589	-1,130	-1.8%	-359	-0.6%
	5~9인	10,425	10,109	10,986	562	5.4%	877	8.7%
	10~19인	4,367	4,832	4,363	-4	-0.1%	-470	-9.7%
	20~49인	3,185	3,209	3,647	462	14.5%	438	13.6%
	50인 이상	14,589	14,726	17,006	2,417	16.6%	2,280	15.5%
종사자 성별	남성	41,513	41,137	42,278	765	1.8%	1,141	2.8%
	여성	54,771	54,687	56,313	1,542	2.8%	1,626	3.0%

		2009.12	2010.2	2010.6	2009.12 대비		2010.2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74,252	73,015
	회사법인	13,086	13,710	15,833	2,747	21.0%	2,123	15.5%
	회사이의 법인	2,574	2,570	2,265	-309	-12.0%	-305	-11.9%
	비법인단체	137	134	123	-14	-10.0%	-11	-8.1%
	국가지방단체	6,237	6,396	7,736	1,499	24.0%	1,340	21.0%

자료: 보건복지부 용역 관련 통계 자료,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2010)/보건복지부 용역 관련 통계 내부자료(2010).

4. 산업별 고용동향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고용현황은 전체 산업과 비교했을 때 <표 II-12>와 같다.

종사자 수의 경우, 보건복지 서비스 관련 산업은 총 874,000명으로 전체 산업의 종사자 중에서 4%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자의 월평균 수입, 평균학력, 주당 평균 근로 시간,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율 항목의 경우, 보건복지서비스 관련은 대체로 전체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종사자 비율은 전체 평균 42.1%보다 2배 높은 80.3%로 나타났고, 임금 근로자 비율도 전체 평균 68.3%보다 높은 91.3%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평균 연령(43.4세)보다 약 8세가 적은 36.6세로 나타나 종사자가 다른 산업에 비해 젊은 연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 연수도 전 산업의 평균이 8.5년인 것에 비해 4년 정도 짧은 4.8년이었다.

<표 II-12> 산업별 고용현황

구분 (대분류)	종사자 수 (천명)	월평균 수입	평균 학력 (년)	평균 연령 (세)	여성 비율 (%)	평균 근속 년수 (년)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임금 근로자 비율 (%)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율 (%)
농업, 임업 및 어업	1,833	88.9	9.7	61.6	51.0	32.6	47.2	6.4	97.3
광업	22	269.6	12.1	48.1	3.5	12.2	49.2	96.8	67.1
제조업	3,928	228.0	12.9	40.3	29.6	7.0	48.5	86.8	77.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7	341.2	14.6	40.8	14.1	11.5	42.8	99.3	63.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2	203.1	12.8	41.7	22.3	5.3	48.8	90.8	95.9
건설업	1,799	223.0	12.6	43.9	8.9	8.6	47.4	77.4	95.3
도매 및 소매업	3,619	191.8	12.6	42.2	45.5	6.6	53.9	50.9	96.4
운수업	1,239	212.2	12.2	45.8	9.6	8.2	52.1	62.6	89.2
숙박 및 음식점업	2,006	159.6	11.6	44.2	68.9	4.8	59.2	51.6	98.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03	279.2	14.9	36.1	28.2	6.5	45.9	91.4	81.6
금융 및 보험업	834	312.4	14.3	38.7	51.5	7.7	43.7	90.1	87.8
부동산업 및 임대업	478	172.8	12.7	48.2	35.6	5.0	52.7	66.5	97.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7	286.7	15.3	36.8	32.5	5.9	46.1	82.8	85.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04	128.2	11.5	48.1	41.3	4.6	47.6	94.4	94.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5	250.8	14.0	43.3	31.8	10.1	42.6	100.0	62.9
교육서비스업	1,807	229.7	15.5	38.4	68.1	7.0	40.6	83.5	92.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74	189.7	14.2	36.6	80.3	4.8	46.2	91.3	86.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51	188.4	13.3	37.8	45.2	4.7	52.0	59.8	93.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15	170.3	12.5	42.9	43.8	7.8	52.6	55.1	97.7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	143	62.8	10.1	54.8	98.8	4.6	36.5	79.8	97.5
국제 및 외국기관	18	235.3	13.8	46.7	27.5	14.8	41.9	98.8	42.3
합계(평균)	23,734	203.7	12.8	43.4	42.1	8.5	49.3	68.3	89.8

주: 직업지도(한국고용정보원, 2008).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직업 세분류에 따른 고용현황은 <표 II-13>과 같다. 종사자 수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업이 전체의 3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보육교사가 155.0명으로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월평균 수입은 의료진료 전문가가 479.9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중 전문의사가 593.5백만 원으로 중분류 의료진료 전문가에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가장 높았다.

평균학력, 평균연령은 전체적으로 큰 편차가 없었고, 종사자의 여성비율은 간호사 99.4%, 간호조무사가 95.5%로 가장 많은 여성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고용현황

직업	종사자 수 (천명)	월평균 수입	평균 학력 (년)	평균 연령 (세)	여성 비율 (%)	평균 근속 년수 (년)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임금 근로자 비율 (%)	300인 미만 사업 종사자 비율 (%)
보건복지 관련 관리직									
보건의료관련 관리자	2.0	485.9	16.8	47.9	55.4	18.1	46.7	71.2	75.9
사회복지관련 관리자	1.8	262.3	15.2	54.8	36.1	5.3	43.3	87.3	100.0
소계	3.8	374.1	16.0	51.4	45.8	11.7	45.0	79.3	87.6
의료진료 전문가									
전문의사	33.7	593.5	18.1	43.7	18.9	8.6	49.9	58.4	76.1
일반의사	15.9	386.4	16.7	35.7	30.2	5.0	56.0	82.5	51.7
한 의사	11.4	510.1	17.2	42.7	14.2	9.5	52.1	10.9	97.5
치과 의사	13.1	599.7	17.6	39.8	24.9	8.9	48.3	24.9	96.2
수의사	6.6	310.0	16.4	40.4	23.3	8.5	54.7	26.0	91.4
소계	80.7	479.9	17.2	40.5	22.3	8.1	52.2	40.5	82.6
약사 및 한약사	37.3	347.3	16.0	45.5	50.0	10.9	57.5	34.2	95.0
간호사	158.7	214.8	15.3	33.2	99.4	5.9	44.6	99.6	68.6
영양사	35.1	174.3	15.3	31.3	98.2	4.0	42.3	98.7	90.4
치료사 및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15.7	206.0	14.9	32.2	74.1	5.5	44.5	100.0	78.0
방사선사	16.9	245.5	15.3	35.5	33.2	6.1	46.7	100.0	77.7
치과기공사/	13.3	216.9	14.6	34.9	26.5	4.2	49.5	76.8	100.0

직업	종사자 수 (천명)	월평균 수입	평균 학력 (년)	평균 연령 (세)	여성 비율 (%)	평균 근속 년수 (년)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임금 근로자 비율 (%)	300인 미만 사업 종사자 비율 (%)
의지보조기기사									
치과위생사	24.7	169.6	14.9	28.0	98.6	3.8	48.2	100.0	97.9
물리 및 작업 치료사	29.3	204.2	15.1	31.5	63.3	3.4	46.4	98.6	95.1
임상심리사 및 기타 치료사	7.3	170.2	16.3	35.2	88.2	5.0	29.9	78.3	84.2
소계	17.9	202.0	15.2	32.9	64.0	4.7	44.2	92.3	88.8
보건의료관련종사자									
응급구조사	4.3	279.9	14.1	33.9	19.9	7.6	64.1	100.0	84.4
안경사	19.0	249.7	14.5	36.3	27.4	5.6	60.8	54.6	100.0
안마사/위생사	2.2	179.8	12.8	36.5	34.8	6.5	62.6	100.0	100.0
의무기록사	2.3	203.0	14.9	31.7	78.5	5.1	44.2	100.0	62.9
간호조무사	100.0	130.9	12.5	31.7	95.5	4.1	48.2	100.0	91.5
간병인	68.7	93.9	10.6	51.1	97.3	2.5	47.3	95.7	94.6
기타 의료복지 관 련 서비스 종사원	22.9	108.8	12.0	42.1	83.7	3.2	45.1	97.5	90.0
소계	31.3	178.0	13.1	37.6	62.4	4.9	53.2	92.5	89.1
사회복지관련종사자									
사회복지사	56.6	180.0	15.3	34.8	74.9	5.4	44.2	98.8	87.4
보육교사	155.0	130.2	14.4	33.8	99.2	3.5	47.2	83.3	99.6
육아 도우미	74.6	69.5	11.0	51.2	98.9	2.8	46.0	69.0	97.9
직업상담사 및 취업 알선원	32.2	232.3	14.0	44.2	27.3	5.3	47.5	59.1	96.3
상담 전문가 및 청소년 지도사	6.4	157.2	16.4	37.5	77.1	4.3	42.3	87.8	85.3
시민단체 활동가	2.7	185.8	15.8	33.3	83.7	1.7	41.5	93.2	100.0
기타 사회복지 관련 종사원	21.7	77.4	11.7	47.4	92.4	2.1	35.8	98.9	94.5
소계	349.2	147.5	14.1	40.3	79.1	3.6	43.5	84.3	94.4
경찰·소방·보안 관련 서비스 종사자									
경찰관	131.5	307.3	14.4	40.1	7.2	11.2	49.5	100.0	69.0
소방관	29.4	299.6	14.0	40.0	1.2	12.3	58.0	100.0	94.2
소년보호관 및 교도관	16.6	300.8	14.7	40.2	1.9	11.8	45.3	100.0	69.9

직업	종사자 수 (천명)	월평균 수입	평균 학력 (년)	평균 연령 (세)	여성 비율 (%)	평균 근속 연수 (년)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임금 근로자 비율 (%)	300인 미만 사업 종사자 비율 (%)
소계	177.5	302.6	14.4	40.1	3.4	11.8	50.9	100.0	77.7
합계(평균)	891.5	268.9	15.2	39.2	58.3	7.3	48.2	80.2	86.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8), 직업지도.

평균 근속 연수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가 3.6년으로 가장 낮았고, 경찰·소방·보안 관련 종사자가 11.8년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임금 근로자 비율도 경찰·소방·보안 관련 종사자가 100.0%를 차지하며, 이 업종의 모든 종사자는 임금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종사자 비율은 사회복지관련 관리자, 치과기공사/의지 보조기기사/안경사, 안마사/위생사, 시민단체 활동가가 100%로 나타났다.

제3절 보건복지 분야 인적자원개발 현황 분석

1.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취업률 현황

보건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의약, 보건, 사회과학의 사회복지 계열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표 II-14>에서와 같이 보건복지 계열의 교육은 전문 분야에 속하므로 5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며, 특히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86.5%의 취업률과 57.7%의 정규직 취업률로 4년제 대학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14> 보건복지 계열 취업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취업률 (%)	정규직 취업률(%)	취업자	취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간호	93.1	89.5	8,059	7,743	311	5
간호	93.1	89.5	8,059	7,743	311	5
전문대학						
치료·보건	88.3	61.6	13,606	9,949	4,050	62
보건	88.2	60.7	7,940	5,465	2,448	27
재활	88.3	55.9	2,878	1,822	1,037	19
의료장비	89.7	72.2	1,646	1,326	308	12
의무행정	86.8	67.0	1,142	881	257	4
가족·사회·복지학	82.8	53.8	18,138	11,785	5,337	1,162
계	83.7	61.0	39,803	29,477	9,698	1,229
전문대학 계	86.5	57.7	162,608	108,408	50,390	3,738
대학교						
의료	93.4	22.5	4,360	1,051	3,278	31
의학	93.8	8.2	3,162	276	2,885	1
치의학	94.2	51.4	475	259	215	1
한의학	91.1	65.0	723	516	178	29
간호	95.4	91.9	3,514	3,385	127	2
간호	95.4	91.9	3,514	3,385	127	2
약학	86.0	69.2	1,023	824	190	9
약학	86.0	69.2	1,023	824	190	9
치료·보건	76.7	45.3	1,992	1,177	793	22
보건학	72.0	36.7	667	340	322	5
재활학	82.1	49.0	926	553	359	14
의료공학	73.5	52.3	399	284	112	3
가족·사회·복지학	69.0	41.1	6,199	3,692	2,331	176
계	76.4	45.3	17,088	10,129	6,719	240
대학 계(평균)	68.2	39.6	169,277	98,257	67,894	3,126

주1: '전문대학계'는 국내 전문대학 모든 학과의 취업자 수를 의미함.

주2: '대학계'는 국내 대학 모든 학과의 취업자 수를 의미함.

주3: 200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2009).

한편 보건복지서비스업의 직업 분야는 <표 II-15>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업종의 교육이 전문 지식 또는 기술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 II-15> 보건복지 관련 학과 직업분야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직업 분야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타
간호	8,059	4	7,953	33	30	25	14
간호	8,059	4	7,953	33	30	25	14
치료·보건	13,606	93	9,900	1,203	896	482	1,032
보건	7,940	70	6,037	481	351	258	743
재활	2,878	10	2,298	177	146	121	126
의료장비	1,646	8	1,270	105	79	66	118
의무행정	1,142	5	295	440	320	37	45
가족·사회·복지학	39,803	924	27,300	5,253	1,961	1,600	2,765
계	39,803	924	27,300	5,253	1,961	1,600	2,765
전문대학 계	162,608	4,571	64,114	30,273	21,084	11,363	31,203
의료	4,360	9	4,186	8	18	-	139
의학	3,162	2	3,096	-	-	-	64
치의학	475	-	436	4	-	-	35
한의학	723	7	654	4	18	-	40
간호	3,514	5	3,472	13	6	4	14
간호	3,514	5	3,472	13	6	4	14
약학	1,023	1	970	33	2	14	3
약학	1,023	1	970	33	2	14	3
치료·보건	1,992	36	1,406	378	73	31	68
보건학	667	13	419	158	35	15	27
재활학	926	2	801	73	28	8	14
의료공학	399	21	186	147	10	8	27
가족·사회·복지학	6,199	161	3,758	1,466	243	259	312
계	17,088	212	13,792	1,898	342	308	536
대학 계	169,277	3,243	82,526	50,982	7,005	9,321	16,200

주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이 포함됨.

주2: '전문대학계'는 국내 전문대학 모든 학과의 취업자 수를 의미함.

주3: '대학계'는 국내 대학 모든 학과의 취업자 수를 의미함.

주4: 200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2009)

이와 함께 <표 II-16>과 <표 II-17>은 각각 전문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의 보건복지 계열 학과의 졸업자가 종사하는 산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계열 졸업자 모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문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 계열 졸업자보다 다양한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6> 전문대학의 보건복지 계열 졸업자 종사 산업분야 현황(1)

(단위: 명)

구분	합계	산업분야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 하수,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숙박, 출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 기관	
전문 대학	간호	8,059	1	12	4	20	17	1	-	5	1	30	34	7,916	7	12	-	-
	간호	8,059	1	12	4	20	17	1	-	5	1	30	34	7,916	7	12	-	-
	치료·보건	13,606	30	1,350	451	728	433	128	15	273	220	275	216	9,189	91	204	2	1
	보건	7,940	13	392	408	419	236	48	7	195	137	175	108	5,665	44	91	1	1
	재활	2,878	6	44	12	143	83	14	1	45	27	68	60	2,257	32	85	1	-
	의료 장비	1,646	4	878	15	92	45	16	5	19	7	10	23	510	6	16	-	-

구분	합계	산업분야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 하수,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숙박, 출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 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 기관
의무 행정	1,142	7	36	16	74	69	50	2	14	49	22	25	757	9	12	-	-
가족·사회·복지학	116	1,419	1,419	495	1,090	882	740	88	304	252	1,268	1,333	8,795	190	1,156	7	3
계	21,781	1450	2,781	950	1,838	1,332	869	103	582	473	1,573	1,583	25,900	288	1,372	9	4
전문대학 계	162,608	862	25,621	9,636	14,763	22,468	4,116	1,054	8,504	4,945	6,620	10,912	35,406	7,352	10,223	88	38

주1: '전문대학계'는 국내 전문대학 모든 학과의 취업자 수를 의미함.
주2: 200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2009)

<표 II-17> 4년제 대학의 보건복지 계열 졸업자 종사 산업분야 현황(2)

(단위: 명)

구분	합계	산업분야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 하수,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숙박, 출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 기관	
대학교	의료	4,360	9	4,186	8	18	-	-	-	3	1	507	28	3,816	-	3	-	-
	의학	3,162	2	3,096	-	-	-	-	-	-	1	218	9	2,932	-	1	-	-
	치의학	475	-	436	4	-	-	-	-	-	-	157	4	312	-	1	-	-
	한의학	723	7	654	4	18	-	-	-	3	-	132	15	572	-	1	-	-
	간호	3,514	5	3,472	13	6	4	9	-	3	-	40	34	3,404	-	3	-	-
	간호	3,514	5	3,472	13	6	4	9	-	3	-	40	34	3,404	-	3	-	-
	약학	1,023	1	970	33	2	14	-	-	8	1	4	10	327	-	-	-	-
	약학	1,023	1	970	33	2	14	-	-	8	1	4	10	327	-	-	-	-

구분	합계	산업분야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 하수,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숙박, 출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 기관
치료·보건	1,992	36	1,406	378	73	31	35	2	52	17	70	131	1,152	15	38	-	1
보건학	667	13	419	158	35	15	26	1	37	7	29	37	377	3	10	-	1
재활학	926	2	801	73	28	8	5	-	3	3	27	79	707	7	24	-	-
의료공학	399	21	186	147	10	8	4	1	12	7	14	15	68	5	4	-	-
가족·사회·복지학	6,199	19	227	80	251	313	264	17	95	97	454	697	3,201	139	340	3	2
계	17,088	70	10,261	512	350	362	299	19	161	115	1,075	900	11,900	154	378	3	3
대학 계	169,277	1,076	28,284	8,847	11,079	20,340	10,879	928	12,515	3,499	14,359	27,479	16,241	8,129	5,374	95	153

주1: '대학계'는 국내 대학 모든 학과의 취업자 수를 의미함.

주2: 200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2009).

이 계열의 취업경로는 <표 II-18>과 같이 학교, 공개채용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낮은 취업 경로는 전문기관을 통한 취업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을 전문적으로 연계해 줄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예상된다.

<표 II-18> 보건복지 계열 취업경로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취업경로							
		학교	공개 채용	취업 전문 기관	친인척	자영	인 넷· 문· 송	터 신· 방	기타
전문 대학	간호	8,059	3,821	3,116	3	34	24	853	208
	간호	8,059	3,821	3,116	3	34	24	853	208
	치료·보건	13,606	6,111	2,142	193	684	327	2,775	1,374
	보건	7,940	3,548	1,289	116	356	198	1,670	763
	재활	2,878	1,074	605	38	146	57	705	253
	의료장비	1,646	936	115	11	134	52	195	203
	의무행정	1,142	553	133	28	48	20	205	155
	가족·사회·복지학	18,138	3,395	3,163	580	959	1,509	1,819	6,713
	계	39,803	13,327	8,421	776	1,677	1,860	5,447	8,295
	전문대학 계	162,608	57,069	23,461	3,412	11,573	6,530	27,043	33,520
대학 교	의료	4,360	1,146	2,548	1	65	26	211	363
	의학	3,162	906	2,070	-	9	1	129	47
	치의학	475	125	214	-	19	-	54	63
	한의학	723	115	264	1	37	25	28	253
	간호	3,514	1,063	1,862	2	15	2	192	378
	간호	3,514	1,063	1,862	2	15	2	192	378
	약학	1,023	164	261	3	43	14	443	95
	약학	1,023	164	261	3	43	14	443	95
	치료·보건	1,992	622	399	44	93	69	517	248
	보건학	667	193	119	15	24	23	190	103
	재활학	926	284	159	19	39	18	281	126
	의료공학	399	145	121	10	30	28	46	19
	가족·사회·복지학	6,199	911	1,692	124	395	336	1,616	1,125
계	17,088	3,906	6,762	174	611	447	2,979	2,209	
대학 계	169,277	35,130	51,986	2,712	11,996	5,226	37,776	24,451	

주1: '전문대학계'는 국내 전문대학 모든 학과의 취업자 수를 의미함.

주2: '대학계'는 국내 대학 모든 학과의 취업자 수를 의미함.

주3: 200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2009).

관련 계열의 회사구분에 대한 <표 II-19>를 보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차이는 없으며, 모두 병원과 공공기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19> 보건복지 계열 회사구분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회사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병원	학교	행정기관	공공기관	종교단체	기타 비영리법인	기타 (소속 없음)	
전문대학	간호	8,059	4	60	6,944	40	34	735	9	127	106
	간호	8,059	4	60	6,944	40	34	735	9	127	106
	치료·보건	13,606	257	3,539	7,650	148	249	236	11	443	1,073
	보건	7,940	174	1,719	4,943	79	151	179	6	196	493
	재활	2,878	25	394	1,853	38	70	33	5	201	259
	의료장비	1,646	18	1,162	142	13	9	6	-	17	279
	의무행정	1,142	40	264	712	18	19	18	-	29	42
	가족·사회·복지학	18,138	791	7,586	1,335	608	1,192	410	377	3,900	1,939
	계	39,803	1,052	11,185	15,929	796	1,475	1,381	397	4,470	3,118
	전문대학 계	162,608	12,837	92,710	18,533	4,821	5,332	2,724	635	9,680	15,336
대학교	의료	4,360	-	62	2,888	69	547	574	1	55	164
	의학	3,162	-	3	2,174	52	250	500	-	52	131
	치의학	475	-	2	281	4	159	28	-	1	-
	한의학	723	-	57	433	13	138	46	1	2	33
	간호	3,514	9	71	2,701	30	34	645	-	4	20
	간호	3,514	9	71	2,701	30	34	645	-	4	20
	약학	1,023	58	383	245	8	4	62	-	33	230
	약학	1,023	58	383	245	8	4	62	-	33	230
	치료·보건	1,992	60	602	873	97	73	75	4	161	47
	보건학	667	36	195	301	27	27	40	-	31	10
	재활학	926	2	121	514	61	33	27	4	130	34
	의료공학	399	22	286	58	9	13	8	-	-	3
	가족·사회·복지학	6,199	214	2,043	235	326	403	252	194	1,893	639
	계	17,088	341	3,161	6,942	530	1,061	1,608	199	2,146	1,100
	대학 계	169,277	29,064	73,969	8,166	12,104	12,187	7,268	1,972	8,393	16,154

주1: '전문대학계'는 국내 전문대학 모든 학과의 취업자 수를 의미함.

주2: '대학계'는 국내 대학 모든 학과의 취업자 수를 의미함.

주3: 200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김창환 외, 2009).

<표 II-20>은 관련 분야 계열 전공일치 현황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 전공일치 여부는 차이가 없었으며, 다만 계열에서 가족·사회·복지학은 보건 및 의료학에 비해 전공일치와 다른 전공분야 비율이 50:50으로 나타났다.

<표 II-20> 보건복지 계열 전공일치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전공일치여부		
		전공분야	다른 전공분야	
전문대학	간호	8059	7,970	89
	간호	8059	7,970	89
	치료·보건	13,606	11,220	2,386
	보건	7,940	6,601	1,339
	재활	2,878	2,349	529
	의료장비	1,646	1,352	294
	의무행정	1,142	918	224
	가족·사회·복지학	18,138	9,179	8,959
	계	39,803	28,369	11,434
전문대학 계	162,608	115,462	47,146	
대학교	의료	4,360	4,353	7
	의학	3,162	3,160	2
	치의학	475	473	2
	한의학	723	720	3
	간호	3,514	3,495	19
	간호	3,514	3,495	19
	약학	1,023	1,011	12
	약학	1,023	1,011	12
	치료·보건	1,992	1,646	346
	보건학	667	530	137
	재활학	926	797	129
	의료공학	399	319	80
	가족·사회·복지학	6,199	3,834	2,365
	계	17,088	14,339	2,749
	대학 계	169,277	111,560	57,717

주1: '전문대학계'는 국내 전문대학 모든 학과의 취업자 수를 의미함.

주2: '대학계'는 국내 대학 모든 학과의 취업자 수를 의미함.

주3: 200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2009).

2.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교육훈련 현황

<표 II-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노동부에서 실시한 실업자 직업훈련의 직무분야별 분포를 보면, 서비스 22.6%, 정보통신 20.9%, 사무관리 19.1%, 기계장비 14.0% 등으로 나타나 여전히 4대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분야는 3.0%로 비중이 매우 낮다(김철희, 2009).

<표 II-21> 실업자 직업훈련 직무분야별 참여자 현황(2008년)

구분	훈련참여자	
	빈도(명)	구성비(%)
농림농업광업	59	0.3
섬유	654	2.9
화학제품 및 요업	26	0.1
기계장비	3,205	14.0
건설	919	4.0
전기	340	1.5
전자	732	3.2
정보통신	4,787	20.9
운송장비제조	152	0.7
산업응용	1,351	5.9
공예	350	1.5
서비스	5,196	22.6
사무관리	4,386	19.1
금융보험	48	0.2
의료	697	3.0
환경	45	0.2
계	22,947	100.0

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전국 확대 실시에 따른 모니터링 및 분석(김철희, 2009)의 재인용.

보건의료 분야의 세부 훈련 직종을 보면, 간호조무사와 산후조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52.6%, 산후조리원이 46.2%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9년 3월 이후부터는 간호조무사 비중이 100%로 나타났다(<표 II-22> 참조).

<표 II-22> 보건의료 직종의 세부 직종별 훈련참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8. 09.	2008. 10.	2008. 11.	2008. 12.	2009. 01.	2009. 02.	2009. 03.	2009. 04.	2009. 05.	2009. 06.	계
간호조무사	185 (54.4)	170 (21.1)	32 (5.8)	34 (7.6)	308 (42.5)	587 (65.5)	800 (99.9)	510 (100)	59 (100)	40 (100)	2725 (52.6)
산후조리원	155 (45.6)	608 (75.5)	517 (93.8)	402 (89.5)	411 (56.7)	299 (33.4)	1 (0.1)	0 (0.0)	0 (0.0)	0 (0.0)	2393 (46.2)
병원코디네이터	0 (0.0)	27 (3.4)	2 (0.4)	13 (2.9)	6 (0.8)	10 (1.1)	0 (0.0)	0 (0.0)	0 (0.0)	0 (0.0)	58 (1.1)
계	340	805	551	449	725	896	801	510	59	40	5176

제4절 보건복지 분야 인력수요 전망

인력수요 전망 연구는 우리나라 인력정책의 기본적인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인력수요 전망 연구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중분류 수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중분류 수준의 인력전망만으로는 정책적인 직업정보 자료를 만드는 데 크게 유용하지 못하다. 보다 세부적인 수준에서 전망이 시도되어야 한다.

질적 전망 방법을 도입하여 양적 전망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질적 분석을 통해 기존의 양적분석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인력전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산업을 중심으로 직업 연구를 수행하면서 질적 전망 방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1. 보건복지 분야의 고용성장

인구가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보건·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높은 고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산업의 고용은 2016년까지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산업의 10% 평균과 비교할 수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에 따르면, 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는 가장 큰 산업 중의 하나로써 2016년까지 1,9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은 2006년~2016년까지 10년 동안 4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는 2006년~2016년까지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산업의 하나로 조사되고 있다.

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는 2006년~2016년까지 매년 평균 2.4% 일자리 창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체 산업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그중 일부 의료 서비스가 가장 빨리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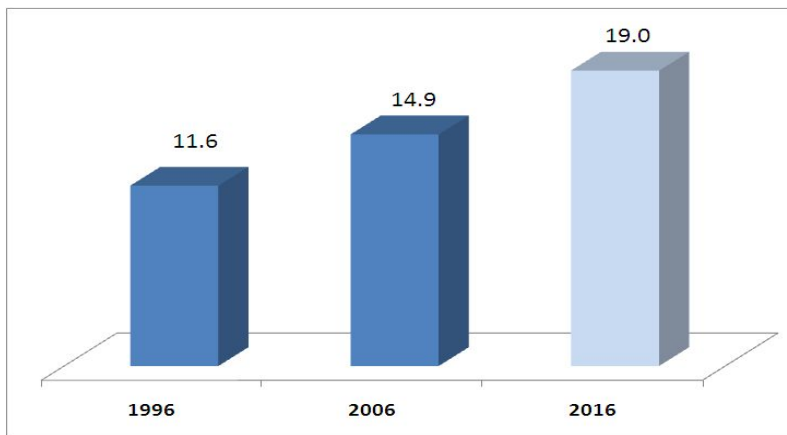
외래 의료서비스(거주간호)는 150만 명 이상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가장 둔화된 고용성장을 보이는 분야는 거주간호(재택요양)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68만 7,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고용은 2016년까지 4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연평균 고용 성장률은 2006년에서 2016년까지 4.1%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II-1]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고용 전망

(단위: 백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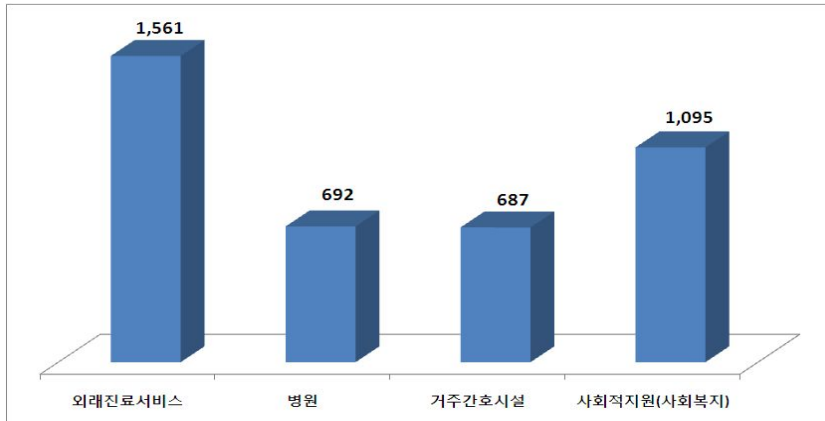
주: 2016년 수치는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NAS(2008), Healthcare Workforce Outlook to 2016.

[그림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래의료서비스는 15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평균 고용 성장률은 2.6%로 전망하였다. 반면에, 간호주거관리시설은 2006년~2016년까지 약 68만 7,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고용 성장률은 2.1%로 예측된다.

[그림 II-2]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산업의 고용성장률(2006~2016년)

(단위: 천 명)



자료: NAS(2008), Healthcare Workforce Outlook to 2016.

2. 보건복지 분야의 직업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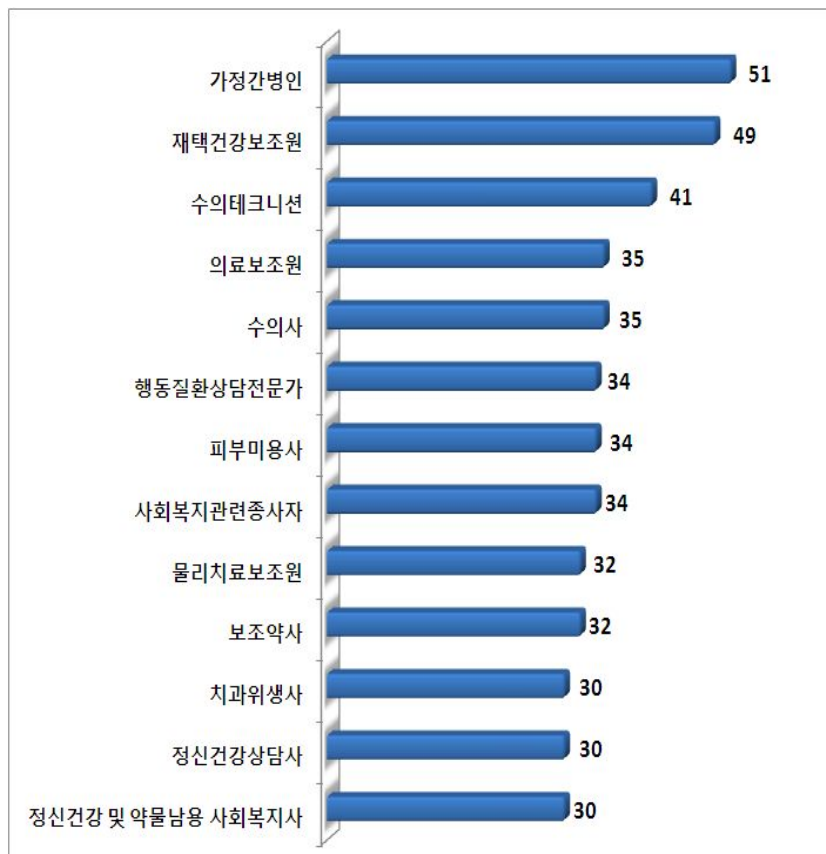
의료지원 직업은 2006~2016년 동안 약 27% 성장과 99만 7,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렇듯 의료지원 직업은 다른 서비스 직업보다 더 많은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2006~2016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 20개 중에서 13개가 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야의 고성장 직업전망에서 가정간병인은 5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그다음으로는 재택건강보조원이 49%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직종의 일자리 증가는 노인 인구 증가 때문이다. 이는 요양 기관에 비해 가정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저렴하므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분야의 고성장 직업전망에서 가정간병인은 의료서비스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고성장 직업 중에서 39%가 의료 보조와 관련되는 직업으로 조

사되었다.

[그림 II-3] 의료·건강분야의 고성장 직업 전망(2006~2016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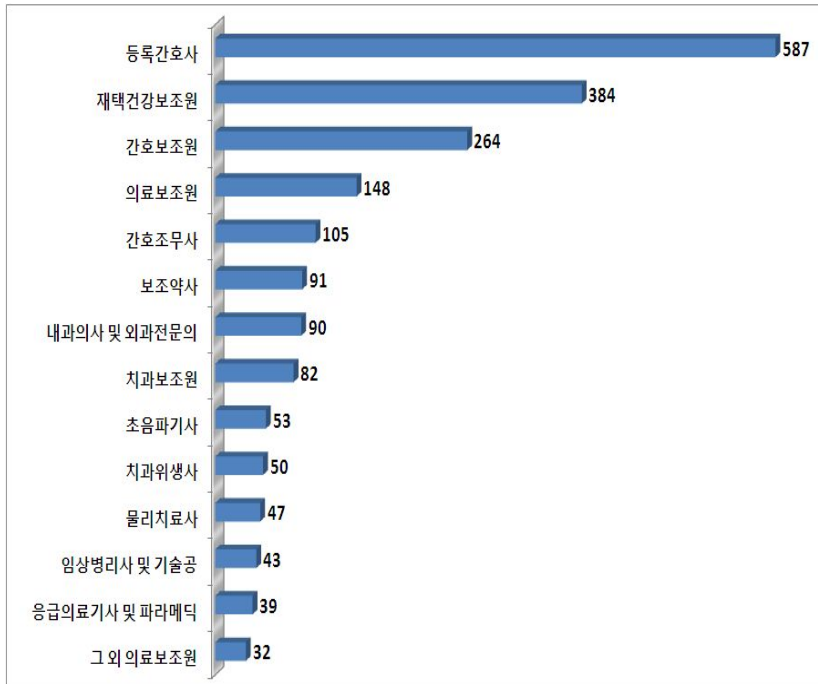


자료: NAS(2008), Healthcare Workforce Outlook to 2016.

의료·건강분야의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업 전망에서 등록간호사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그림 II- 4] 참조).

[그림 II-4] 의료·건강분야의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업 전망(2006~2016년)

(단위: 천)



주: 파라메딕은 일반적으로 긴급의료원, 준의료 활동종사자를 의미함.

자료: NAS(2008), Healthcare Workforce Outlook to 2016.

3. 보건복지 분야 고용 전망

미국의 경우 헬스케어 분야에서 2008~2018년 동안 3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하며 다른 어떠한 산업보다 높은 고용 창출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개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직업 가운데 10개 직업군은 헬스케어 분야와 관계가 있다(BLS, 2010).

헬스케어 부문에서의 고용은 2018년까지 2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표 II-23> 참조). 헬스케어 산업의 다양한 부문에서 고용성장률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표 II-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 및 민간 병원 부문의 고용은 2018년까지 10.1% 밖에 증가하지 않는 것에 반해, 홈 헬스케어 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약 46.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건강의료 보조 시설 산업에서도 2018년까지 고용이 41.3% 증가되는 등 높은 고용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홈 헬스케어 서비스 부문과 각종 의료 관련 시설의 고용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기대 수명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가족 구성원이 직접 노인층을 부양하지 않고 점차 각종 요양시설에 노인층의 질병 치료 및 간호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II-23> 2008년 헬스케어 산업 부문에 따른 고용 및 2008~2018년 고용 퍼센트(%) 변화율

산업 부문	2008년 고용(명)	2008~2018년 (고용) 변화(%)
총 헬스케어 산업	14,336.0	22.5
국립 및 민간 병원	5,667.2	10.1
간호 치료 시설	3,008.0	21.2
내과전문 병원	2,265.7	34.1
홈 헬스케어 서비스	958.0	46.1
치과전문 병원	818.8	28.5
기타 건강의료 보조 시설	628.8	41.3
외래환자 집중 치료센터	532.5	38.6
기타 외래 의료 서비스	238.5	6.8
종합 검진 및 진단 실험실	218.5	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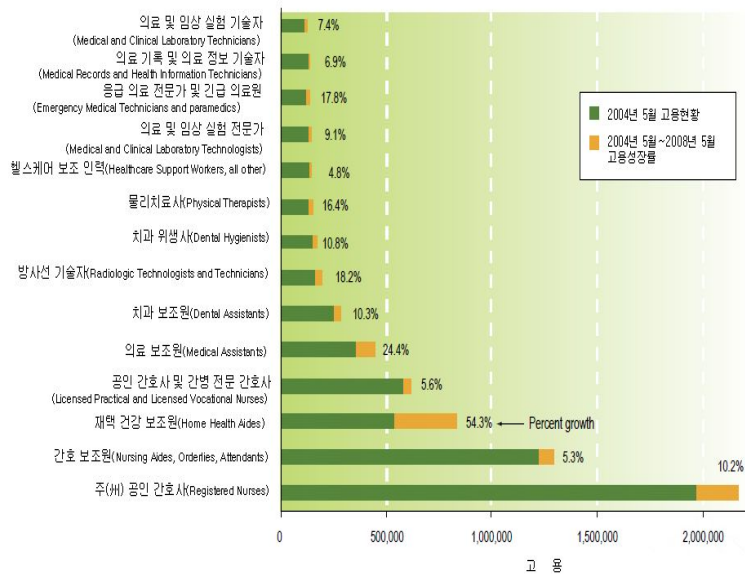
자료: BLS National Employment Matrix, 2008-18.

미국의 경우 헬스케어 산업의 많은 종사자가 시간제 근무(Part-Time)를 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헬스케어 시설이 24시간 진료를 하기 때문에

상시 직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사와 같이 헬스케어 부문의 교대 근무는 매우 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헬스케어 부문의 시간제 근무 제도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산업보다도 높은 고용 창출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림 II-5]는 2004년 헬스케어 분야 고용률 및 2004~2008년 각 직업군의 고용 성장률을 설명한 것이다. [그림 II-5]에서 볼 수 있듯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헬스케어 분야에서 고용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은 재택건강보조원(54.3%)이며, 그다음으로 의료보조원(24.4%), 방사선 기술자(18.2%)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5] 2004년 헬스케어 분야 고용률 및 2004~2008년 각 직업군의 고용 성장률



자료: BLS(2008).

<표 II-24>는 헬스케어 및 사회복지 분야의 2008~2018년까지 예상 고

용창출 직업군을 설명한 것이다. 동기간 동안 가장 많은 고용이 예상되는 간호사(주 공인간호사, 등록간호사, 급성환자 간호사, 정신과 전문간호사, 중환자실 전문간호사)로써 103만 9,000명, 그다음으로 재택건강보조원 55만 2,700명, 간호 간병인 42만 2,300명이다.

<표 II-24> 헬스케어 및 사회복지 분야 2008~2018년 예상 고용창출 직업군

직업	예상채용 (2008~2018년)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s)	98,400
치과보조사(Dental Assistants)	161,000
외과기술자(Surgical Technologists)	46,300
심혈관기사 (Cardiovascular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19,100
물리치료사 보조(Physical Therapist Aides)	23,400
물리치료사 보조원(Physical Therapist Assistants)	30,500
의료보조원(Medical Assistants)	217,800
의료사무원(Medical Secretaries)	189,000
방사선 전문치료사(Radiation Therapists)	6,900
재택 건강보조원(Home Health Aides)	552,700
호흡치료사(Respiratory Therapists)	41,400
직업치료사 보조(Occupational Therapist Aides)	3,500
간호 간병인(Nursing Aides, Orderlies, and Attendants)	422,300
의사보조사(Physician Assistants)	42,800
마취전문 의사 보조사(Anesthesiologist Assistants)	
의학기구 준비자(Medical Equipment Preparers)	11,200
내시경 기술자(Endoscopy Technicians)	
임상병리사 (Medical and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세포유전학 전문가(Cytogenetic Technologists) 세포검사기사(Cytotechnologists) 조직학검사기사 및 전문가 (Histotechnologists and Histologic Technicians)	53,300
작업치료 보조원(Occupational Therapist Assistants)	11,800
주(州) 공인 간호사/등록간호사(Registered Nurses) 급성환자 간호사(Acute Care Nurses) 정신과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Psychiatric Nurses) 중환자실 전문간호사(Critical Care Nurses)	1,039,000
물리요법사(Physical Therapists)	78,600

직업	예상채용 (2008~2018년)
의무기록사 (Medical Records and Health Information Technicians)	70,300
수련간호사 (Licensed Practical and Licensed Vocational Nurses)	391,300
의료와 공공건강 사회사업가 (Medical and Public Health Social Workers)	65,900
건강 기술자 및 기능공 그 외 (Health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All Other)	260,500
뇌파 전위 진단 전문가 (Electroneurodiagnostic Technologists) 보청기전문가(Hearing Aid Specialists) 안과치료사 (Ophthalmic Medical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내과 의사와 외과 의사(Physicians and Surgeons) 마취과 의사(Anesthesiologists) 가정의학과 의사(Family and General Practitioners) 내과 의사(Internists, General) 산부인과 전문의(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소아과 의사(Pediatricians, General) 정신과 전문의(Psychiatrists) 외과 의사(Surgeons) 내과/외과 전문의, 그 외 (Physicians and Surgeons, All Other) 알레르기 및 면역 의사(Allergists and Immunologists) 피부과 전문의(Dermatologists) 입원환자 전문의(Hospitalists) 신경과 전문의(Neurologists) 핵의학 의사(Nuclear Medicine Physicians) 안과 의사(Ophthalmologists) 병리학자(Pathologists) 물리 재활 치료 의사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Physicians) 예방 의학 의사(Preventive Medicine Physicians) 방사선 전문의(Radiologists) 스포츠 의학 의사(Sports Medicine Physicians) 비뇨기과 전문의사(Urologists)	
정신건강 상담 전문가(Mental Health Counselors)	50,100
보건지원 근로자 그 외 (Healthcare Support Workers, All Other) 언어 병리 보조사 (Speech-Language Pathology Assistants)	56,700

직업	예상채용 (2008~2018년)
보건서비스관리자(Medical and Health Services Managers) 임상전문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sts)	99,400
정신보건 및 약물남용 사회복지사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Social Workers)	61,300
작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s) 저시력치료사, 방향 및 운동 전문가, 시력재활치료사 (Low Vision Therapists, Orientation and Mobility Specialists, and Vision Rehabilitation Therapists)	45,800
약물남용 및 행동질환상담전문가 (Substance Abuse and Behavioral Disorder Counselors)	35,500
치과교정전문의를(Orthodontists)	3,600
가정간병인(Personal and Home Care Aides)	477,800
미취학아동교사, 유치원교사(Preschool Teachers, Except Special Education)	178,300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보조원(Social and Human Service Assistants)	153,900
헬스케어 사업자와 기술근로자 그 외 (Healthcare Practitioners and Technical Workers, All Other) 산파, 조산사(Midwives) 유전자상담사(Genetic Counselors)	29,100
검안사, 시력측정 의사(Optometrists)	20,100
보철과전문의를(Prosthodontists)	300
청각학자(Audiologists)	5,800
척추지압사(Chiropractors)	18,200
운동트레이너(Athletic Trainers)	11,500
의료장비기술자(Medical Equipment Repairers)	23,200
약사보조(Pharmacy Technicians)	182,000
의학자(역학자 제외) (Medical Scientists, Except Epidemiologists)	66,200
응급치료 관리 전문가 (Emergency Management Specialists)	5,600
생체의학 엔지니어(Biomedical Engineers)	14,900

자료: BLS National Employment Matrix, 2008~18.

4.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 인력수요 전망

본 연구에서 총량 전망은 기존 전망 결과(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연구)

를 노동시장의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대외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보정하였다.

총량 차원의 수급전망은 총 노동공급과 총 노동수요를 도출하여 주어진 시점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의 수급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총량 수급전망과 일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초과수급 현황을 전망, 즉 수급차전망을 실시하는 신규인력수급 전망으로 구분된다.

총 인력수요 전망은 KIET 산업경제계량모형²⁾을 적용하여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액을 추계한 후 취업계수³⁾를 적용하여 연도별로 취업자 수 추계한다. 산업×직업 구성행렬을 바탕으로하여 직업별 취업자 수를 추계한 후 이를 토대로 학력별 취업자 수를 추계하게 된다.

인력수급 전망의 목적은 미래 교육-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변화 정보를 학생, 학부모,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에 제공하여 진로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인재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정책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2009년도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되, 최근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의 주요 변수를 조정하여 2008년도 중장기 전망치를 보정하여 2010~2019년 전망을 실시하였다.

총량 차원의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하여 보건복지 분야를 산업별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와 연계하였고, 직업별로는 한국고용직업분류와 연계하여 인력수요전망을 실시하였다.

가. 산업별 전망

2)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산업별 부가가치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실시할 목적으로 구축된 중장기 계량모형임. 인력수요 전망 시 요구되는 중장기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을 도출함.

3) 해당 산업의 10억 원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인력으로, 수요 전망 시 꼭 필요한 통계임. 기술발전과 노동생산성 증대로 인해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임.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결과를 살펴보면, 전산업에서 2009년에 23,506,000명에서 연평균 1.0% 증가하여 2019년에는 25,962,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II-25> 참조). 농림업 및 어업의 취업자 수는 2009년 1,648,000명에서 2019년에는 1,204,000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009년 5,536,000명에서 연평균 0.6% 씩 감소하여 2019년에는 5,234,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은 2009년 3,836,000명에서 연평균 0.2%씩 감소하여 2019년에는 3,76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1.5%씩 증가해 2009년 대비 약 297만 명이 증가한 20,96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25>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결과

(단위: 천명, %)

산업	취업자			연평균 증감률		
	2009	2014	2019	2009~ 2014	2014~ 2019	2009~ 2019
전산업	23,506	24,705	25,962	1.0	1.0	1.0
농림업 및 어업	1,648	1,438	1,204	-2.7	-3.5	-3.1
광공업	3,859	3,814	3,792	-0.2	-0.1	-0.2
제조업	3,836	3,788	3,764	-0.3	-0.1	-0.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17,998	19,453	20,965	1.6	1.5	1.5
건설업	1,720	1,899	1,946	2.0	0.5	1.2
도소매·음식숙박업	5,536	5,454	5,234	-0.3	-0.8	-0.6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7,981	8,973	10,264	2.4	2.7	2.5
전기·운수·통신·금융	2,761	3,127	3,522	2.5	2.4	2.5

전산업 인력수요전망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분야의 인력수요 전

망결과를 살펴보면, 취업자 수는 2009년 1,148천명에서 연평균 3.7% 증가하여 2019년에는 1,65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로는 보건업이 2009년 64만 9,000명에서 연평균 3.9%씩 증가하여 2019년에는 95만 6,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09년 34만 9천명에서 연평균 3.5%씩 증가하여 2019년에는 49만 4,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보건복지관련업은 연평균 3.2%씩 증가하여 2019년에 20만 6,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출신에 대한 수요가 연평균 9.1% 증가하여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이어 전문대졸 5.2%, 고졸 3.0%, 대졸 0.8%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II-26> 참조). 고졸 이하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가 연평균 4.5%씩 증가하여 2019년에는 29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대졸에서는 보건업(연평균 6.1%), 사회복지서비스업(연평균 2.0%), 기타 관련업(연평균 2.0%)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졸에서는 보건업(연평균 0.5%), 사회복지서비스업(연평균 1.7%), 기타 관련업(연평균 0.3%)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타학력에 비해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원에서는 보건업(연평균 10.2%)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19년에는 12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복지서비스업(연평균 5.6%), 기타 관련업(연평균 8.5%) 등 보건복지분야 전반에서 높은 취업자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표 II-26> 학력별 보건복지분야 인력수요 전망

(단위: 천 명, %)

학력	산업	취업자			취업자 증감			연평균 증감률		
		2009	2014	2019	2009~ 2014	2014~ 2019	2009~ 2019	2009~ 2014	2014~ 2019	2009~ 2019
고졸 이하	보건업	205	220	240	15	20	35	1.4	1.7	1.6
	사회복지 서비스업	190	211	295	22	83	105	2.2	6.9	4.5
	기타 관련업	60	82	76	22	-6	16	6.5	-1.5	2.4
	소계	455	513	610	59	97	155	2.5	3.5	3.0
전문 대	보건업	230	308	417	78	110	187	6.0	6.3	6.1
	사회복지 서비스업	71	78	87	7	8	16	2.0	2.0	2.0
	기타 관련업	45	73	72	28	-2	26	10.0	-0.4	4.6
	소계	346	459	575	112	117	229	5.8	4.6	5.2
대 학	보건업	168	170	176	3	5	8	0.3	0.6	0.5
	사회복지 서비스업	72	74	85	3	11	13	0.7	2.8	1.7
	기타 관련업	36	46	37	10	-9	1	5.1	-4.4	0.3
	소계	276	291	298	16	7	23	1.1	0.5	0.8
대 학 원	보건업	47	75	123	29	48	76	10.1	10.4	10.2
	사회복지 서비스업	16	18	27	2	10	11	2.2	9.0	5.6
	기타 관련업	9	18	21	8	4	12	13.3	4.0	8.5
	소계	72	110	172	39	61	100	9.0	9.2	9.1
전 체	보건업	649	773	956	124	183	307	3.6	4.3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349	382	494	33	112	145	1.8	5.3	3.5
	기타 관련업	151	219	206	68	-13	55	7.8	-1.2	3.2
	소계	1148	1374	1655	225	282	507	3.6	3.8	3.7

주: 기타 관련업은 사회보장 행정사무, 수의업 등을 포함한 기타 보건복지 관련 산업을 의미함.

나. 직업별 전망

직업별 취업자 수의 전망은 학교를 졸업한 후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졸업생이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직업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러한 직업정보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직업별 전망이 요구되나, 이하에서의 전망은 통계적 한계로 인하여 직업 소분류 수준에서 제시되었다(<표 II-27> 참조).

<표 II-27> 직업별 보건복지 분야 인력수요 전망

(단위: 천명, %)

직업	취업자			연평균 증감률		
	2009	2014	2019	2009~ 2014	2014~ 2019	2009~ 2019
전직업	23,506	24,705	25,962	1.0	1.0	1.0
관리직	335	365	397	1.7	1.7	1.7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3,487	3,767	4,059	1.6	1.5	1.5
금융, 보험 관련직	614	700	811	2.6	3.0	2.8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424	1,518	1,589	1.3	0.9	1.1
법률등 관련직	257	297	337	2.9	2.6	2.7
보건·의료 관련직	621	744	886	3.7	3.6	3.6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477	565	684	3.4	3.9	3.7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 련직	474	564	669	3.6	3.5	3.5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59	1,651	1,740	1.2	1.1	1.1
영업 및 판매 관련직	3,537	3,472	3,362	-0.4	-0.6	-0.5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120	1,304	1,516	3.1	3.1	3.1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 츠 관련직	750	823	895	1.9	1.7	1.8
음식서비스 관련직	1,678	1,669	1,649	-0.1	-0.2	-0.2
건설관련직	1,301	1,356	1,398	0.8	0.6	0.7
기계관련직	1,092	1,167	1,248	1.3	1.3	1.3
재료관련직	376	393	404	0.9	0.6	0.7
화학관련직	174	182	191	1.0	1.0	1.0
섬유 및 의복 관련직	343	296	267	-2.9	-2.0	-2.5
전기전자관련직	769	820	886	1.3	1.6	1.4
정보통신관련직	407	473	556	3.1	3.3	3.2
식품가공관련직	241	253	272	0.9	1.5	1.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 단순직	645	658	675	0.4	0.5	0.5
농림어업관련직	1,824	1,668	1,469	-1.8	-2.5	-2.1

직업별 취업자 수의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2009년~2019년 사이
에 가장 큰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은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3.7%)’이며, 그 뒤를 이어 보건·의료 관련직(3.6%),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3.5%), 정보통신관련직(3.2%), 경비 및 청소관련직(3.1%) 등이다. 반면, 섬유 및 의복관련직은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림어업관련직(2.1%), 영업 및 판매관련직(0.5%) 등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업에 대한 전망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분야의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결과를 살펴보면, 의사는 2009년 4만 8,000명에서 연평균 5.5% 증가하여 2019년에는 8만 1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서비스관련관리자(보건)는 2009년 3,000명에서 연평균 4.8%씩 증가하여 2019년에는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2009년 4만 1,000명에서 연평균 4.7%씩 증가하여 2019년에는 6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치료사,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등도 보건복지분야 연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는 사회복지 및 상담전문가가 연평균 3.9%씩 증가하여 2019년에는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대졸에서는 사회복지 및 상담전문가(연평균 6.1%), 의료 및 보건서비스 관련 종사자(연평균 6.0%), 치료사(연평균 5.5%),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연평균 5.3%)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졸에서는 사회복지 및 상담전문가(연평균 2.1%),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연평균 2.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면 약사, 성직자 및 종교관련 종사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원에서는 사회복지 및 상담전문가(연평균 11.6%)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19년에는 1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연평균 11.5%), 수의사(연평균 11.2%) 등은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표 II-28> 직업별 보건복지분야 인력수요 전망

(단위: 천명, %)

산업	취업자			취업자 증감			연평균 증감률		
	2009	2014	2019	2009~2014	2014~2019	2009~2019	2009~2014	2014~2019	2009~2019
사회서비스관련관리자(보건)	3	4	5	1	1	2	4.7	4.9	4.8
의사	48	62	81	14	19	34	5.3	5.6	5.5
수의사	5	6	7	1	1	2	3.8	3.5	3.6
약사	27	27	27	0	0	0	0.1	-0.4	-0.1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71	212	257	41	45	86	4.4	3.9	4.2
치료사	34	44	53	10	9	19	5.5	3.8	4.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65	80	92	15	12	27	4.3	2.9	3.6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41	53	65	12	12	24	5.5	4.0	4.7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279	322	386	44	63	107	2.9	3.6	3.3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91	113	139	22	26	48	4.4	4.2	4.3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298	353	426	55	73	128	3.4	3.8	3.6
성직자 및 종교관련 종사자	88	98	119	10	21	31	2.2	3.9	3.1
소계	1,148	1,374	1,655	225	282	507	3.6	3.8	3.7

<표 II-29> 직업별 · 학력별 보건복지분야 인력수요 전망

(단위: 천명, %)

학력	산업	취업자			연평균 증감률		
		2009	2014	2019	2009~ 14	2014~ 2019	2009~ 2019
고졸 이하	사회서비스관련관리자(보건)	0	0	0	2.0	2.5	2.2
	의사	0	0	0	-	-	-
	수의사	0	0	0	-	-	-
	약사	2	2	2	0.6	1.3	0.9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3	3	4	2.3	3.5	2.9
	치료사	2	2	3	3.3	3.1	3.2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6	7	7	2.1	2.4	2.3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5	6	7	3.8	3.7	3.7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242	275	328	2.6	3.6	3.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28	33	40	3.5	4.2	3.9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51	170	202	2.3	3.6	3.0
	성직자 및 종교관련 종사자	16	15	16	-0.9	1.0	0.0
	소계	455	513	610	2.5	3.5	3.0
	전문 대	사회서비스관련관리자(보건)	0	0	0	5.3	3.7
의사		0	0	0	-	-	-
수의사		0	0	0	-	-	-
약사		0	0	0	3.8	2.5	3.1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10	145	183	5.6	4.7	5.2
치료사		19	27	33	6.6	4.3	5.5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43	56	67	5.4	3.6	4.5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	25	32	7.2	4.9	6.0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28	37	47	5.9	4.8	5.3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20	28	37	6.9	5.4	6.1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02	135	170	5.6	4.8	5.2
성직자 및 종교관련 종사자		4	5	5	2.3	2.1	2.2

학력	산업	취업자			연평균 증감률		
		2009	2014	2019	2009~ 14	2014~ 2019	2009~ 2019
	소계	346	459	575	5.8	4.6	5.2
대 학	사회서비스관련관리자(보건)	1	1	1	1.0	-0.1	0.5
	의사	27	28	28	0.9	-0.1	0.4
	수의사	4	5	5	2.2	1.1	1.7
	약사	24	23	22	-0.4	-1.2	-0.8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54	58	61	1.3	1.0	1.1
	치료사	10	12	12	2.3	0.6	1.4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5	16	16	1.2	-0.1	0.5
	의료 및 보건서비스 관련 종사자	16	18	19	2.8	1.1	2.0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8	9	10	1.7	1.0	1.3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39	44	47	2.6	1.6	2.1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43	46	49	1.4	1.0	1.2
	성직자 및 종교관련 종사자	34	31	29	-1.8	-1.5	-1.7
	소계	276	291	298	1.1	0.5	0.8
대 학 원	사회서비스관련관리자(보건)	1	1	2	10.2	9.6	9.9
	의사	21	34	53	10.1	9.6	9.8
	수의사	1	1	2	11.4	10.9	11.2
	약사	1	2	2	8.6	8.3	8.5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4	6	10	10.5	10.7	10.6
	치료사	2	3	5	11.6	10.3	10.9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	1	2	10.3	9.5	9.9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2	4	6	12.2	10.9	11.5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0	1	1	10.8	10.7	10.8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5	9	15	11.8	11.4	11.6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2	3	4	10.5	10.8	10.7
	성직자 및 종교관련 종사자	33	47	68	7.1	8.0	7.5
	소계	72	110	172	9.0	9.2	9.1

III. 보건복지 분야 직업 및 자격제도 분석

제1절 보건복지 분야 국내외 직업 분석

산업별 탐색적 접근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직업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현실에서 산업별로 요구되는 핵심 기술과 스킬, 작업방식, 작업장 조직 및 인력충원방식 등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산업별 탐색적 접근은 특정한 산업,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상세한 직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산업분야의 직업구조는 매우 유동적이고 급변하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탐색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보건복지 분야의 직업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양적 정보 생성을 위주로 하는 인력수급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직업 연구는 미시적 차원에서 직업소분류 이하의 개별 직업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직업별로 요구되는 지식, 능력, 태도 등의 질적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1. 보건복지 분야 직업분류

보건복지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산업분류) 대분류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에 속하며, 중분류는 보건업(86)과 사회복지서비스업(87)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분류 중분류의 보건업(86)은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된 것이다. 보건업(86) 소분류에는 병원(861), 의원(862), 공중보건의료업(863), 기타 보건업(869)이 포함되어 있다.

병원(861)의 세분류는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병원(8610)이 있고, 병원(8610)의 세세분류는 100인 이상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86101), 30인 이상 입원시설을 갖춘 일반병원(86102), 치과 입원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치과병원(86103), 입원환자를 한방으로 치료하는 한방병원(86104)이 포함되어 있다.

의원(862)의 세분류에는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원(8620)이 있고, 의원(8620)의 세세분류는 전문의 또는 일반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인 일반의원(86201), 치과의사가 외래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원(86202), 한의사가 외래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한의원(86203), 혈액검사 및 진단촬영을 포함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인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의원(86204)이 포함되어 있다.

공중보건의료업(863)의 세분류는 보건소와 같이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공중 보건 의료업(8630)이 있고 세세분류에는 공중보건의료업(86300)에 해당되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병·의원 이외의 보건 의료 활동을 하는 기타 보건업(869)의 세분류로는 기타 보건업(8690)이 있고, 세세분류로는 훈련된 직원이 조작하는 응급구조장비를 갖추고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이송과 응

급치료를 하는 앰블런스 서비스업(86901), 침구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하는 유사 의료업(86902), 혈액은행이나 의무기록 서비스를 수행하는 그 외 기타 보건업(86909)에 해당되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의 산업분류 중분류인 사회복지서비스업(87)은 아동, 노령자, 장애인 등과 같이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 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을 말한다. 산업 소분류로는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2)이 있다.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의 세분류에는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1),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2),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3) 기관이 포함된다.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1)은 심신적·사회적·경제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을 수용 및 거주하는 기관을 말하며, 세세분류에는 입소한 노인을 주거와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이 추가된 노인요양 복지시설(87111) 운영업과 주거의 지원이 주체를 이루는 노인양로 복지시설(87112) 운영업이 있다.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2)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심신 장애인이 거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세세분류에는 신체부자유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21),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22)이 있다.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3)의 세세분류에는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31),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39)이 포함된다.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2)의 세분류에는 보육시설 운영업(8721)과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8729) 기관이 포함된다. 보호자의 위탁을 받

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육시설운영업(8721)의 세세 분류에는 보육시설운영업(87210) 관련 기관이 포함된다.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업(8729)의 세세분류에는 직업재활원운영업(87291),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업(87299) 기관이 있다.

대분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의 기타는 <표 III-1>에서 관련업에 제시하였다.

<표 III-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관련 산업분류

(단위: 개수)

구분	대분류	중분류(2)	소분류(6)	세분류(9), 세세분류(24)
사회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861 병원	8610 병원
				86101 종합병원 86102 일반병원 86103 치과병원 86104 한방병원
			862 의원	8620 의원
				86201 일반의원 86202 치과의원 86203 한의원 86204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863 공중보건 의료 업	8630 공중보건의료업 86300 공중보건의료업			
869 기타 보건업	8690 기타 보건업			
	86901 앰블런스 서비스업 86902 유사 의료업 86903 그 외 기타 보건업			

구분	대분류	중분류(2)	소분류(6)	세분류(9), 세세분류(24)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871 거주 복지 시설 운영업	8711 노인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1 노인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7112 노인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1 신체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2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1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9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 시설 운영업	8721 보육시설 운영업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7291 직업재활원 운영업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관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의사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인조치아 및 인체 교정장치의 생산활동은 '27192' • 사회보장 행정사무는 '84500' • 수의서비스 활동은 '73100' 	

자료: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통계청, 2007).

<표 III-2>는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의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직업 분류를 설명한 것이다.

<표 III-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의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직업 분류

구분(4)	대분류(5)	중분류(9)	소분류(31), 세분류(57)
1 관리자	13 전문서비스 관리자	133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1331 보건의료관련 관리자
			13310 보건의료관련 관리자
			1332 사회복지관련 관리자
			13320 사회복지관련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2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225 사회복지학 연구원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1 의료진료전문가	2411 전문의사
			24111 내과 전문의사
			24112 외과 전문의사
			24113 소아과 전문의사
			24114 산부인과 전문의사
			24115 정신과 및 신경과 전문의사
			24116 안과 및 이비인후과 전문의사
			24117 피부과 및 비뇨기과 전문의사
			24118 방사선과 및 병리과 전문의사
			24119 그 외 전문의사
			2412 일반의사
			24120 일반의사
			2413 한의사
			24130 한의사
			2414 치과의사

구분(4)	대분류(5)	중분류(9)	소분류(31), 세분류(57)
			24141 치과 전문의사
			24122 치과 일반의사
			2415 수의사
			24150 수의사
		242 약사 및 한약사	2420 약사 및 한약사
			24201 약사
			24202 한약사
		243 간호사	2430 간호사
			24301 전문간호사
			24302 일반간호사
			24303 보건교사
			24304 조산사
		244 영양사	2440 영양사
			24401 영양사
			24402 영양교사
		245 치료사 및 의료 기사	2451 임상병리사
			24510 임상병리사
			2452 방사선사
			24520 방사선사
			2453 치과기공사
			24530 치과기공사
			2454 치과위생사
			24540 치과위생사
			2455 의지보조기기사
			24550 의지보조기기사
			2456 물리 및 작업치료사
			24561 물리치료사
			24562 작업치료사
			2459 임상심리사 및 기타 치료사
			24591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4592 전통의료 치료사
			24593 언어치료사
			24594 음악 및 미술 치료사

구분(4)	대분류(5)	중분류(9)	소분류(31), 세분류(57)
			24599 그 외 치료사
		246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2461 응급구조사
			24611 119 구조대원
			24612 구급요원
			2462 위생사
			24620 위생사
			2463 안경사
			24630 안경사
			2464 의무기록사
			24640 의무기록사
			2465 간호조무사
			24650 간호조무사
			2466 안마사
			24660 안마사
			247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24710 사회복지사	
		2472 보육교사	
		24720 보육교사	
		2473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24731 헤드헌터	
		24732 직업상담사	
		24733 취업알선원	
		2474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24741 상담전문가	
		24742 청소년지도사	
		2475 시민단체 활동가	
		24750 시민단체 활동가	
		2479 기타 사회복지관련 종사원	
		24791 복지시설 생활지도원	
		24799 그 외 사회복지관련 종사원	
3 사무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	31421 약국 전산관리원

구분(4)	대분류(5)	중분류(9)	소분류(31), 세분류(57)
4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소방 및 보안관련 서비스직	-	4113 소년보호관 및 교도관
			41131 소년보호관
			41132 교도관

주1: () 숫자는 각각의 개수임.

자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2007).

<III-3>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직업 분류를 설명한 것이다.

<표 III-3>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직업 분류

대분류(2)	중분류(9)	소분류(34)
01 관리직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	0134 보건 및 의료서비스 관리자
		0135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
06 보건의료 관련직	061 의사	0611 전문의사
		0612 일반의사
		0613 한의사
		0614 치과의사
	062 수의사	0620 수의사
	063 약사	0630 약사 및 한약사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0641 간호사
		0642 치과위생사
	065 치료사	0651 물리 및 작업치료사
		0652 임상심리사 및 기타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066	0661 임상병리사
		0662 방사선사
		0663 치과기공사
		0664 의지보조기기사
		0665 안경사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067	0671 안마사
		0672 위생사
		0673 영양사
		0674 의무기록사
		0675 응급구조사

대분류(2)	중분류(9)	소분류(34)
07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0681 간호조무사
		0682 간병인
		0689 기타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원
	071 사회복지사 및 상담 전문가	0711 사회복지사
		0712 상담 전문가 및 청소년 지도사
		0713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0714 시민단체 활동가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0721 보육교사
		0722 육아도우미
		0729 기타 사회복지 관련 종사원
	073 성직자 및 종교관련 종사자	0731 성직자
		0739 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

주1: () 숫자는 각각의 개수임.

자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2007).

2.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직업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20개의 직업군 가운데 절반은 헬스케어 분야와 관계가 있다(<표 III-4> 참조). 헬스케어 분야의 빠른 성장은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화 단계에 들어선 현상과 관계가 깊다. 이는 나이를 들어가면서 더 많은 의료적 케어 및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관련 업무 또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낮은 임금의 직업군으로 이동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혹은 다른 헬스케어 전문가가 담당했던 일들이 의료 보조자(Physician Assistant/Medical Assistant), 치과 위생사나 물리치료사들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현상이다. 게다가, 환자들은 고(高)비용을 요구하는 병원이나 기타 헬스케어 관련 시설의 대안으로서 홈 케어(Home Care)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 홈 헬스케어/재택 건강보조원(Home Health Aides)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록 헬스케어 분야 인력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재택 건강보조원들은 이러한 홈 헬스케어 수요 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표 III-4>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20개 직업군

직업	비율(% 변화)	새로운 직업의 수 (단위: 1,000)	임금 (2008.05 평균) \$	교육/ 훈련의 범주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	72	11.6	\$ 77,400	학사학위
네트워크 시스템 및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분석가	53	155.8	71,100	학사학위
재택 건강보조원	50	460.9	20,460	단기(短期) OJT
홈 케어 보조원	46	375.8	19,180	단기 OJT
금융조사관	41	11.1	70,930	학사학위
의료과학자 [역학자(疫學者)제외]	40	44.2	72,590	박사학위
의료 보조자	39	29.2	81,230	석사학위
스킨케어 전문가	38	14.7	28,730	중등직업학교
생화학자 및 생물물리학자	37	8.7	82,840	박사학위
운동 트레이너	37	6.0	39,640	학사학위
물리치료 보조원(aides)	36	16.7	23,760	단기 OJT
치과위생사	36	62.9	66,570	관련학위
수의학 공학사 및 기술사	36	28.5	28,900	관련학위
치과보조원	36	105.6	32,380	중기(中期) OJT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및 어플리케이션즈	34	175.1	8,5430	학사학위
의료보조원	34	163.9	28,300	중기 OJT
물리 치료 보조사(assistant)	33	21.2	46,140	훈련 연관 정도
수의사	33	19.7	79,050	first professional degree
자기계발 교육교사	32	81.3	35,720	관련 직업에서의 근무경력
특별 감사 책임자(농업, 건설, 헬스, 안전 및 운송분야 제외)	80.8	80.8	48,890	장기(長期) OJT

자료: BL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and Division of Occupational Outlook(2008).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직업군 가운데 두 번째는 컴퓨터 전문가 직업 그룹이다. 네트워크 시스템 및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분석가는 경제

발전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직업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력에 대한 수요는 조직이 지속적으로 정보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구체화함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무선 인터넷 의존도에 대한 증가 또한 네트워크 시스템과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분석가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또한 2008~2018년까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장된 인터넷 기술은 인터넷, 인트라넷, 웹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인력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바이오기술의 발전은 의료 기술, 치료, 약 분야의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할 것이다. 그 결과, 의료 과학자, 의료 생화학자, 의료 생물 물리학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의료기술개발로 증가된 의료 연구와 수요는 생물 의학 엔지니어 등의 직업군 창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는 인구의 증가와 노화현상이 생물 의학 엔지니어 등 의료 관련 인력에게 더 나은 의료 장비를 고안해 내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 규제에의 증가는 금융 조사관 및 농업, 건설, 의료, 안전 및 수송을 제외한 분야에서 특별 감사 책임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할 것이다.

자기계발 교육교사와 스킨케어 전문가들도 소비자들이 점차 자기계발 및 관리에 집중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자기계발 교육교사는 개개인들이 점차 능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부수적인 트레이닝 과정을 찾게 될수록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스킨케어 전문가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개인의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수록 증가할 것이다.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20개의 직업군 가운데 12개 직업군은 관련 학위나 더 높은 범주의 교육수준을 필요로 한다. 나머지 8개 직업군 가운데 6개의 직업군은 직장 내 훈련(OJT: On-the-Job Training) 범주에, 1개의 직업군은 관련 직업군에서의 근무경력, 그리고 나머지 1개의 직업군은 중등직업학교의 학력 수준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직업군 가운데 11개

의 직업군은 2008년 5월을 기준으로하여 국내 평균임금이 32,390 달러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평균임금보다 최소한 1만 달러 이상 높게 소득을 올렸다.

3. 최대 증가수를 보이는 직업

<표 I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 증가수를 보이는 20개 직업군들은 2008~2018년에 걸쳐 새롭게 창출될 580만 개의 직업 가운데 1/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5> 최대 증가수를 보이는 20개 직업군

직업	비율(%) 변화	새로운 직업의 수 (단위: 1,000)	임금 (2008.05 평균)	교육/ 훈련의 범주
공인 간호사	581.5	22	\$ 62,450	관련학위
채택 건강 보조원	460.9	50	20,460	단기(短期) OJT
고객 서비스 담당자	399.5	18	29,860	중기(中期) OJT
케이atering 서비스, 패스트푸드를 포함한 음식 서비스 종사자	394.3	15	16,430	단기 OJT
홈 케어 보조원	375.8	46	19,180	단기 OJT
소매 판매원	374.7	8	20,510	단기 OJT
사무실 직원	358.7	12	25,320	단기 OJT
회계사 및 회계 감사관	279.4	22	59,430	학사학위
간호조무원	276.0	19	23,850	중등직업학교
중등교사	256.9	15	58,830	박사학위
건설 노동자들	255.9	20	28,520	중기 OJT
초등학교 교사(특수교육 제외)	244.2	16	49,330	학사학위
트럭운전사	232.9	13	37,270	단기 OJT
조경 기사 및 정비원	217.1	18	23,150	단기 OJT
부기, 회계, 감사 사무원	212.4	10	32,510	중기 OJT
비서실장, 행정 보조원	204.4	13	40,030	관련 직업에서의 근무경력
경영 분석가	178.3	24	73,570	학사학위

직업	비율(% 변화)	새로운 직업의 수 (단위: 1,000)	임금 (2008.05 평균)	교육/ 훈련의 범주
				이상, 근무경력 우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175.1	34	85,430	학사학위
리셉션니스트	172.9	15	24,550	단기 OJT
목수	165.4	13	38,940	장기(長期) OJT

자료: BL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and Division of Occupational Outlook(2008).

최대 증가수를 보이는 직업군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직업군보다 다양한 범위의 직업적 카테고리를 포함한다. 최대 증가수를 보이는 직업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육, 세일즈 및 외식 서비스산업 분야의 직업들이 그러하듯 건강관련 직업군들 또한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사무실 및 행정 지원 서비스 분야의 직업군들은 130만 개의 직업군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는 20개의 직업군 가운데 대략 1/5을 차지한다. <표 III-5>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직업군은 매우 다양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직업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할 것이다.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20개의 직업군 가운데 채택 건강 보조원, 홈 케어 보조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3개의 직업군 또한 최대의 증가 수치를 보이는 20개의 직업군에서 높은 고용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증가수를 보이는 20개의 직업군 가운데 10개의 직업은 2008년 5월 기준의 국내 평균임금보다도 낮은 소득을 올렸다.

4. 가장 빠른 하향세를 보이는 직업

직업고용감소는 산업고용, 기술진보의 감소 및 사업 환경의 변화와 그 밖의 다른 요인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기술의 발전과 섬유산업의 지속

적인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은 2008~2018년간 채용률 기사가 7만 1,500 명까지 감소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표 III-6> 참조). 가장 큰 수치의 감소를 보이는 20개의 직업군 가운데 15개의 직업군은 생산관련 직업군이거나 사무실 및 행정 보조 관련 직업군이다. 이러한 직업군들은 공장의 증가와 시설의 자동화 혹은 사무실 기술의 발전 및 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또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사무실 및 행정 보조원같이 가장 큰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직업군과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직업군의 차이점은 어떠한 직업의 기능이 쉽게 자동화되거나 다른 인력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이고 상호간의 대화를 필요로 하는 비서실장과 행정 보조원의 경우 일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반면에 비즈니스와 관련한 기록을 추가 재정리, 삭제하는 등 문서 정리원이 처리하는 일은 자동화되거나 다른 인력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표 III-6> 가장 빠른 하향세를 보이는 20개 직업군

직업	비율(%) 변화	새로운 직업의 수 (단위: 1,000)	임금 (2008.05. 평균)	교육/ 훈련의 범주
직물 표백 및 염색 기계 기사	-45	-7.2	\$ 23,680	중기(中期) OJT
직물 감기, 비틀기 기사	-41	-14.2	23,970	중기 OJT
직물 뜨기, 직기(織機) 기사	-39	-11.5	25,400	장기(長期) OJT
신발 제작 기사	-35	-1.7	25,090	중기 OJT
압출기 기사, 합성 및 유리섬유 기사	-34	-4.8	31,160	중기 OJT
채봉틀 기사	-34	-71.5	19,870	중기 OJT
반도체 가공 처리사	-32	-10.0	32,230	중등직업학교
섬유 가공 기계 기사	-31	-6.0	22,620	중기 OJT
우편 분류기 및 가공, 처리 기사	-30	-54.5	50,020	단기(短期) OJT
직물 수선사(의복 제외)	-30	-0.3	28,470	중기 OJT
수원(水源) 펌프 사용자	-28	-5.3	37,860	중기 OJT
직물 및 의복 모형 도안가	-27	-2.2	37,760	장기(長期)

직업	비율(%) 변화	새로운 직업의 수 (단위: 1,000)	임금 (2008.05. 평균)	교육/ 훈련의 범주
				OJT
시추기 기구 설치기 및 작동기	-27	-8.9	30,850	중기 OJT
선반 및 터닝기 설치기 및 작동기	-27	-14.9	32,940	중기 OJT
수주(受注) 담당자	-26	-64.2	27,990	단기 OJT
마감재 마무리공	-25	-5.6	27,730	단기 OJT
사진 인화 기계 기사	-24	-12.5	20,360	단기 OJT
문서 정리원	-23	-49.6	23,800	단기 OJT
기중기 작동기	-23	-5.8	41,920	중기 OJT
노트북 생산자	-23	-5.9	36,600	중등직업학교

자료: BL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and Division of Occupational Outlook(2008).

20개의 최퇴 직업군 가운데 다른 직업군들은 교육에 있어서 모두 직장 내 훈련(OJT: On-the-Job Training)을 필요로 하지만, 반도체 가공 처리사와 노트북 생산자는 중등직업학교의 교육수준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직업군 가운데 11개의 직업군은 2008년 5월을 기준으로 국내 평균 임금인 3만 2,390달러보다도 낮은 3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얻었다.

5. 보건복지 분야 관련 직업 분석4)

<표 III-7>은 해외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한 직업군 가운데 헬스케어 6개 분야 총 38개 직업, 사회복지 3개 분야 총 10개 직업을 총괄한 것이다.

4) 관련 직업을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유망직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표 III-7> 해외 보건복지 분야 관련 직업 총괄

보건 분야	
부가 보건직(업): 기술전문가, 보조원 및 조력원 (Adjunctive Health-Care Careers: Technologists, Technicians, Assistants, and Aides)	사혈(瀉血) 전문 의사 (Phlebotomist)
	정시(正視) 훈련 전문가 (Orthoptist)
	줄기세포 검사 연구원(Cytotechnologist)
	체외순환사 (Perfusionist)
	정신건강 상담전문가 (Mental Health Counselor)
	혈액은행 전문가 (Blood Bank Specialist)
	폐 기능 전담 전문가 (Pulmonary Function Technologist)
	뇌파 전위 기록장치 분야 전문가 (Electroencephalograph Technologist)
	심혈관 기술 전문가 (Cardiovascular Technology Personnel)
	진단의학 초음파 검사자 (Diagnostic Medical Sonographer)
	임상 실험 기술자 (Clinical Laboratory Technician)
	임상 실험 전문가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식품 공학자 (Food Technologist)
	조직학 기술자 (Histology Technician)
	뇌파 전위(電位) 기록장치 기술자 (Electroencephalograph Technician)
	핵의학 기술자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
방사선 치료 전문가 (Radiation Therapy Technologist)	
방사선 기술자 (Radiological Technologist)	
약국 판매 보조원 (Pharmacy Technician)	

진단 및 치료 분야 (Diagnosing and Treating Practitioners)	발(足) 치료 전문가 (Podiatrist)
	척추지압사 (Chiropractor)
헬스케어 관련 직업군: 의료 과학자, 교육 전문가 (Affiliated Health-Care Careers: Medical Scientist, Educations and Information Workers)	건강교육전문가 (Health Educator)
	건강교육 전문교사 (Health Teacher)
	의료 일러스트레이터 (Medical Illustrator)
재활 직업: 치료전문가, 치료보조원 및 조력원 (Rehabilitation Careers: Therapists, Therapy Assistants, and Aides)	호흡기관 치료 전문가 (Respiratory Therapists)
헬스케어 연관 직업군 (Associated Health-Care Careers)	유전학 전문 상담가 (Genetic Counselor)
재활 직업군 (Rehabilitation Careers)	핵의학기사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s)
	무용/동작 치료사 (Dance/Movement Therapists)
	작업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s)
	환자대리인 (Patient Representative)
	정신치료 조력원 (Psychiatric Aides)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Recreational Therapist)
	물리치료 보조원 및 조력원 (Physical Therapist Assistants and Aides)
	작업치료 보조원 및 조력원 (Occupational Therapists Assistants and Aides)
	의료필사원 (Medical Transcriptionists)
	의무기록사 (Medical Records and Health Information Technicians)
	간호, 정신치료 및 가정보건 조력원 (Nursing, Psychiatric, and Home Health Aides)
	운동치료사 (Athletic Trainers)
	복지 분야
아동복지 분야	아동복지전문가 (Child Welfare Specialist)

	아동복지 지식 및 미디어 전문가 (Child Welfare Knowledge and Media Specialist)
의료복지 분야	의료 분야 전문 사회복지사 (Medical Social Worker)
복지혜택 자격 심사 및 운영 전문가 분야	복지 자격 면접심사관 (Welfare Eligibility Interviewer)
	복지사례 전문가 (Welfare Case Technician)
	복지혜택 운영 행정가 (Welfare Benefits Operations Administrator)
	해외 이주민 전문 사회복지사(Welfare Advice Worker)
	교육 복지 행정가 (Education Welfare Officer)
	보건복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Project Coordinator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 분야 혜택 전문가 (Senior Benefits Specialist - Health and Welfare)

가. 헬스케어 (6개 분야 총 38개 직업)

- 1) 부가 보건직(업): 기술전문가, 보조원 및 조력원 (Adjunctive Health-Care Careers: Technologists, Technicians, Assistants, and Aides)

(1) 사혈(瀉血) 전문의사 (Phlebotomist)

가) 정의

사혈 전문의사는 정맥 천자(穿刺)⁵⁾나 현미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의 혈액 시료(샘플)를 수집하는 전문의이다.

5) 속이 빈 가는 침을 몸속에 찔러 넣어 체액을 뽑아내는 일.

나) 직업개요

사혈 전문의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정맥 천자와 현미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 것으로서 사혈 전문 의사의 가장 주된 업무라 할 수 있다. 둘째, 환자의 혈액 데이터를 입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병원에서 환자의 수혈 및 헌혈을 담당하고 혈액은행 및 실험실 등에서 각종 의학 연구를 위해 피를 뽑는 역할도 담당한다. 넷째, 각종 의학 실험실에서 실험실 표본 실험 표본의 수집 및 운송을 보조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사혈 전문의사는 대개 대학병원 및 개인병원, 혈액병원 및 의학 실험실에서 근무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사혈 전문의사의 경우 높은 학력 수준이나 의학 전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으로서 사혈 전문 의사 과정이 인정된 2년제 전문대학이나 직업학교에서 사혈 전문 의사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받으면 사혈 전문 의사로 근무할 수 있다.

사혈 전문의사는 환자의 피를 직접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를 잘 다루고, 환자의 마음 상태를 침착하게 만들 수 있는 성품이 요구된다. 또한 샘플을 채취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므로 정확한 업무 능력이 요구된다. 많은 양의 일을 단기간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환자의 혈액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타인의 혈액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안전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라) 연봉

사혈 전문의사의 연봉은 경력, 교육수준, 의학 기술 수준에 따라 다르다. 보통 시간당 급여를 받으며, 병원 근무의 경우 평균적으로 11불 70센트, 개인병원의 경우 12불 15센트, 연구소일 경우 11불 25센트의 급여를 받고 있다.

(2) 정시(正視) 훈련 전문가 (Orthoptist)

가) 정의

정시 훈련 전문가는 시각 기능에 장애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안구 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의이다.

나) 직업개요

정시 훈련 전문가는 안과학에서 창출된 직업군으로서 시각에 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안구 질환을 진단하고, 쌍안시(雙眼視) 및 안구운동의 강조를 통하여 환자들의 시각 장애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이들은 특히 선천적으로 약시 및 사시증의 안구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안구 검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러한 진단 방식을 통하여 각종 질환의 원인을 진단하고 안구운동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안구의 선천적 질환을 치료한다.

정시 훈련 전문가는 대개 소아 안과학 분야에서 근무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쌍안시 장애 및 질환이 선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하여 대부분의 환자가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정시 훈련 전문가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의

학전문대학원, 임상연구소,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안구검사 프로그램의 전문위원 및 총 책임자로 근무한다. 이밖에도 보건소나 학교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도 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정시 훈련 전문가의 직종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 학력의 학위와 2년여 간의 정시 훈련 전문가 인턴십 수료가 요구된다. 기초과학이나 헬스케어 분야의 전공은 필수적 요인은 아니나 자격증 획득에 가산점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각종 안구 질환들의 원인을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진단능력과 치료 기술을 획득해야 한다.

라) 요구되는 자격증

본 직종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미국공인정시(正視)훈련전문가협회(AACO: The American Association of Certified Orthoptists)가 인증하는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본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인된 정시 훈련 전문가 프로그램에서 2년의 펠로우십(fellowship)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시 훈련 전문가 펠로우십을 마친 후 미국공인정시훈련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통과해야만 국가 공인 정시 훈련 전문가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마) 연봉

정시 훈련 전문가의 평균 연봉은 약 4만 5천~5만 달러 수준이다.

(3) 줄기세포 검사 연구원 (Cytotechnologist)

가) 정의

줄기세포 검사 연구원은 암의 초기 진단과 각종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세포와 관련한 다양한 물질의 변화를 연구하는 직종이다.

나) 직업개요

줄기세포 검사 연구원은 현대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병의 원인을 밝혀내는 일을 담당한다.

줄기세포 검사 연구원은 줄기 세포 분석, 면역조직화학, 전자현미기술, 분자진단과정 및 자동화와 같은 현대의 광범위한 기초화학 및 생물학 지식을 활용하여 실험표본 준비 등 다양한 일을 담당한다. 그리고 악성종양의 검사에서부터 실험실 경영 및 질 개선, 교육 및 연구 영역에까지 다양하다.

줄기세포 검사 연구원은 병리학자들과 일반 전문의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의사들이 환자에게 진단을 내리기 위해 줄기세포 검사 연구원이 제공해 준 각종 줄기 세포 관련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줄기세포 검사 연구원은 병원, 각종 줄기세포 관련 국책 및 민간 연구소나 실험실 등에서 근무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줄기 세포 검사 연구원은 일년간의 임상 인턴 과정이 포함된 의학, 임상기술 전공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후에야 줄기세포 검사 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국가공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학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4년, 박사학위 소지자는 3년여 간 관련분야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대된다.

줄기 세포 검사 연구원은 모든 종류의 신체 표본 검사에 있어서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연구직이므로 고도의 집중력과 우수한 판단 능력이 요구된다.

라) 연봉

줄기세포 검사 연구원의 평균 연봉은 약 3만 3천~4만 8천 달러이다.

(4) 체외순환사 (Perfusionist)

가) 정의

체외순환사는 흉부외과의 심장 수술 시 환자의 심장, 폐를 정지시키고 산소 및 피가 순환될 수 있도록 인공심폐기를 가동하는 전문직종이다.

나) 직업개요

체외순환사는 흉부외과의 심장수술이 끝날 때까지 환자의 심장과 폐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혈액을 펌핑하여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전문 의료인이다.

체외순환이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체내 순환계를 떠나 체외에 존재하는 인공회로를 따라 순환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스템을 의미한다.

체외순환사는 심장수술에 따라 심폐바이패스를 운용하면서 환자의 혈

압, 체온, 산소공급, 혈액의 순환 시스템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혈류역학 정보 등을 점검한다. 이 정보는 수술 후 환자의 회복에 도움을 준다.⁶⁾

국내에는 대형 대학병원에 남자 간호사 위주의 체외순환사가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체외순환사는 미국보다 본 직종에 대한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의 대한체외순환사협회는 체외순환사 직종의 근무환경 개선 등 본 직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체외순환사는 수술실에서 오랜 시간 집중하여 환자의 상태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라) 요구되는 자격증

체외순환사는 전문 의료 직종이기 때문에 자격증 획득이 필수적이다. 체외순환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의학기술, 호흡기 치료, 생화학이나 간호학 분야 등 의료관련 전공의 학사학위가 필수적이다.

체외순환사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1년~4년까지 다양하며 입학은 매우 치열하다. 체외순환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150회 이상의 임상 실습을 포함하여 미국체외순환화위원회(American Board of Cardiovascular Perfusion)에서 주관하는 구두 및 필기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마) 연봉

6) 대한체외순환사협회(<http://www.kosect.or.kr/>) 참조함.

체외순환사의 평균 연봉은 8만 6천 4백 달러이다. 상위 10%의 연봉은 9만 8천 2백 달러이며 하위 10%의 연봉은 6만 5천 7백 달러 수준이다.

(5) 정신 건강 상담 전문가 (Mental Health Counselor)

가) 정의

정신 건강 상담 전문가는 정신적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들이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상담 전문가이다.

나) 직업개요

정신 건강 상담 전문가는 관찰, 인터뷰, 각종 테스트를 통해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해 정보를 얻는다. 정신 건강 상담 전문가들이 상담하는 분야는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자살, 가정불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정신 건강 상담 전문가는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함으로써 환자들이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선 상담을 통해 환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평가한다. 이를 위해 환자와의 상담 내용, 환자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해 정확히 기록하여 필요 시 집중 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환자의 치료 개선에 집중한다.

정신 건강 상담 전문가는 병원에서의 상담뿐만 아니라 환자가 집에서 상담을 원할 경우 환자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정신 건강 상담 전문가는 필요에 따라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 가족문제 치료 상담사, 학교 상담교사 등과 함께 일하기

도 한다.

대부분의 정신 건강 상담 전문가는 약물 복용 치료 상담사, 청소년 전문 상담가 등 자신만의 특수화되고 전문화된 분야를 개발하여 한 분야의 상담 전문가로 성장한다.

정신 건강 상담 전문가는 정신과 병동이 있는 병원, 개인 상담 센터, 정부 기관 및 기업의 상담 센터, 청소년 쉼터 등에서 근무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정신 건강 상담 전문가는 상담학이나 이와 관련한 정신 건강 훈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석사학위를 받은 후 상담인증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위원회(CACREP: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에서 2년에 걸친 임상 실습 과정을 거치고 국가 공인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라) 연봉

정신 건강 상담 전문가는 시간당 상담료를 받는다. 미국의 경우 정신 건강 상담사와의 상담은 1시간당 평균 63달러이다. 이는 정신과 전문의의 경우 평균 75달러, 임상사회복지사 및 가족문제 치료 상담사의 시간당 상담료가 평균 60달러인 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신과 전문의보다는 낮지만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 상담사들보다는 약간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6) 혈액은행 전문가 (Blood Bank Specialist/Technologist)

가) 정의

혈액은행 전문가는 혈액은행에서 혈액과 관련한 전반적인 의학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나) 직업개요

혈액은행 전문가는 혈액의 항원과 항체 테스트, 용혈성 빈혈 등 용혈성 질환과 같은 몸의 이상 진단, 응고장애가 있는 환자 치료 보조, 혈액수집과 바이러스성 검사 등 혈액과 관련한 전반적인 의학 분야의 일을 담당한다.

혈액은행 전문가는 보건소의 혈액센터, 병원 혈액은행, 수혈 및 이식 실험실, 혈액은행 장비나 공급 업체 등에서 근무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혈액은행 전문가는 의료 과학, 생물학, 자연과학 분야 전공의 학사학위가 요구된다. 의료 과학 학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1년간 혈액은행에서의 임상실험 경험이 우대되고 생물학, 자연과학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2년간 혈액은행에서의 임상실험 경험이 우대된다.

라) 요구되는 자격증

혈액은행 전문가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미국임상병리학학회(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Pathology)에서 수여하는 혈액은행 전문가 자격증(Certification as a Specialist in Blood Bank Technology)을 획득해야 한다.

마) 연봉

혈액은행 전문가의 연봉은 평균적으로 4만 1천~5만 6천 달러이며,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7) 폐 기능 전담 전문가 (Pulmonary Function Technologist)

가) 정의

폐 기능 전담 전문가는 폐 조직의 이상을 체크하기 위하여 환자의 폐 기능에 대해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이다.

나) 직업개요

폐 기능 전담 전문가는 기관지, 기체 확산, 수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테스트 진행을 통해 환자의 폐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전문가이다. 폐 기능 전담 전문가는 테스트 장비들을 고르고 테스트 결과를 해독하여 환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준다. 폐 기능 전담 전문가는 환자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 그다음에는 그 결과와 환자의 반응을 평가한다. 그리고 다양한 테스트 결과를 취합하여 진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치료 방법을 제공하기도 한다.

폐 기능 전담 전문가는 병원이나 클리닉, 개인병원, 재활센터, 진단센터 등에서 근무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폐 기능 전담 전문가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등학교의 학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직종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정규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폐 기능 전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증 프로그램이 있는 2년제 전문대학 혹은 4년제 정규대학에서 폐 기술 전공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거나 대학 졸업 후 메디컬 센터 혹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폐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본 직종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좋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손재주와 솜씨가 필요하다.

라) 자격증

폐 기능 전담 전문가 호흡기 관리에 대한 국가 위원회(National Board for Respiratory Care)가 주관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본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폐 기술 혹은 호흡기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련 분야에서 최소 6개월의 경력이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이 분야에서 2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5) 연봉

연봉은 2만 3천~3만 8천 달러 수준이다.

(8) 뇌파 전위 기록장치 분야 전문가(Electroencephalograph Technologist)

가) 정의

뇌파 전위 기록장치 분야 전문가는 뇌파 전위 기록 장치를 통해서 환자 뇌의 손상 정도를 밝혀내는 직업이다.

나) 직업개요

뇌파 전위 기록장치 분야 전문가는 환자에게 뇌의 검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뇌파 전위 기록장치의 전극을 환자의 두피에 연결한다. 환자를 위해 기계가 최상의 상태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하여 환자의 상태와 행동을 모니터링한다.

뇌파 전위 기록장치 분야 전문가는 반드시 장비가 적정 작동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 생명 과학과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적성, 손재간, 원만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호의적이고 친절한 성격이 요구된다. 이는 본 직종이 아픈 사람들, 특히 뇌손상을 입은 환자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 자격증

현재 뇌파 전위 기록장치 전문가를 채용할 때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 뇌파 전위 및 잠재적 전문가 등록을 위한 협회 (America Board of Registration for Electroencephalograph and Evoked Potential Technologist)에서 뇌파 전위 기록장치 분야 전문가 등록증을 획득할 수 있다. 본 등록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1년간의 트레이닝 과정

과 시험을 거쳐야 한다.

마) 연봉

뇌파 전위 기록장치 분야 전문가의 평균 연봉은 2만~3만 8천 달러 수준이다.

(9) 심혈관 기술 전문가 (Cardiovascular Technology Personnel)

가) 정의

심혈관 기술 전문가는 심혈관 측정 기계를 이용하여 환자의 심혈관을 측정하고 그 결과물을 기록하는 사람이다.

나) 직업개요

심혈관 기술 전문가는 심혈관 전문 기계를 활용하여 심장 근육계(heart musculature)에 의해 전송된 전기 충동을 그래픽적으로 감지하고 추적한다. 심혈관 기술 전문가는 장비를 준비하고, 환자에게 검사 과정을 설명하며, 검사를 통해 다양한 모니터링 결과물을 기록한다.

의사들은 심장과 순환계 시스템의 진단 지표로서 심혈관 기술 전문가가 검사하고 체크한 심박동 곡선의 결과물을 활용한다.

심혈관 기술 전문가는 심장동맥질환 집중 치료실 혹은 병원 내과 집중 치료실 등에서 근무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현재까지 심혈관 기술 전문가와 관련한 자격증이나 면허 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심혈관 기술 전문가 채용은 OJT(On-the-job training: 직장 내 훈련)를 통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병원은 인재를 채용하여 OJT를 통해 심혈관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병원내의 OJT는 보통 심혈관 기술 전문가의 감독하에 6주~16주의 트레이닝을 받는다. 병원뿐만 아니라 보통 2년제 대학과 같은 직업학교에서도 1학기 동안 심혈관 기술 전문가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라) 연봉

심혈관 기술 전문가의 평균 연봉은 대략 2만 5천~4만 5천 달러 수준이다.

(10) 진단(검사)의학 초음파 검사자 (Diagnostic Medical Sonographer)

가) 정의

진단(검사)의학 초음파 검사자는 진단검사를 목적으로 초음파 기계를 사용하여 신체 기관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사람이다.

나) 직업개요

진단(검사)의학 초음파 검사자는 초음파 기계를 사용하여 신체 기관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이것을 통해 영상 이미지를 확인한다. 진단(검사)의학 초음파 검사자가 검사 후 영상 이미지의 질을 확인하는 것은 의사들이 핵심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진단(검사)의학 초음파 검사자는 또한 초음파검사 결과를 파일작업하고, 새로운

장비들을 평가하며, 초음파검사(Ultrasound) 정보에 관한 참고 문헌들을 업데이트하는 작업도 담당한다.

진단(검사)의학 초음파 검사자는 병원, 클리닉, 산부인과 및 방사선 전문 병원, 연구 시설 등에서 근무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진단(검사)의학 초음파 검사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필수적이다. 대학에서 초음파 관련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졸업 후 진단(검사)의학 초음파 검사자 프로그램 이수 시 건강학과 관련한 지식이나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우대된다.

진단(검사)의학 초음파 검사자에게는 꼼꼼한 성격, 인내심, 환자와 다른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간의 친밀감이 요구된다.

라) 자격증

진단(검사)의학 초음파 검사자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진단(검사)의학 초음파 검사자 양성 프로그램 이수 후 진단(검사)의학 초음파 검사자 학회(Society of Diagnostic Medical Sonographers)에서 공인하는 필기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마) 연봉

진단(검사)의학 초음파 검사자의 평균 연봉은 3만~6만 5천 달러 수준이다.

(11) 임상 실험 기술자 (Clinical Laboratory Technician)

가) 정의

임상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실험 및 연구를 보조해 주는 직무이다.

나) 직업개요

임상 실험 기술자는 임상 실험 전문가의 보조적 역할로서, 비교적 간단한 실험을 실시하며 연구실에 할당된 일상적인 연구들을 진행한다. 혈구 수치를 검사하고, 미시적으로 의학용 시료를 검사하며, 배양조직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임상 실험 기술자들의 업무는 임상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다양한 영역의 일을 대부분 담당한다. 조직학 기술자, 사혈(瀉血) 전문 의사 등이 하는 업무를 임상 실험 기술자가 맡아서 하기도 한다.

임상 실험 기술자의 근무지는 대학병원, 민간 실험실, 보건기관(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클리닉, 제약회사 등과 같은 기업체 등이다.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의 보건 관련 기관은 때에 따라 임상 실험 기술자를 고용하기도 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본 직종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임상 실험 기술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2년제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다. 이처럼 관련 분야 전공 이외에 병원, 의학전문학교, 직업교육 기관 등에서 임상 실험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임상 실험실 개선 법안은 관련 분야에서의 학위가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의학 실험 과학 분야에서 건강 교육학교

인증 관리국(Accrediting Bureau of Health Education Schools), 임상 실험 과학에 대한 국가기관(National Agency for Clinical Laboratory Sciences) 두 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임상 실험 기술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임상 실험 기술자를 배출하고 있다.

임상 실험 기술자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 화학에 대한 지식, 조직력, 세밀함, 강도 높은 업무 스트레스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라) 자격증

본 직종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다.

본 자격증은 의학연구소국가인증기관(National Certification Agency for Medical Laboratory Personnel), 건강교육학교인증관리국(Accrediting Bureau of Health Education Schools), 임상실험과학에 대한 국가기관(National Agency for Clinical Laboratory Sciences)에서 인증하는 시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마) 연봉

임상 실험 기술자의 평균 연봉은 약 2만 5천~3만 8천 달러 수준이다.

(12) 임상 실험 전문가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가) 정의

임상 실험 전문가는 임상 실험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포괄적인 실험

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직무이다.

나) 직업개요

임상 실험 전문가는 다양한 질병의 발견, 진단, 치료에 있어서 핵심적인 일을 담당한다. 임상 실험 전문가는 생리 체액, 인체 조직 및 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세포 조직의 각종 실험을 수행한다. 임상 실험 전문가의 실험은 세포학, 조직학, 혈청학, 세포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각종 실험을 모두 포괄적으로 다룬다.

임상 실험 전문가는 컴퓨터 자동화 기계를 사용하여 다양한 범주의 실험을 동시에 시행한다. 현미경을 사용하여 조직 흐름에 있어서의 비정상적인 세포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기생충, 미생물 등을 찾고 발견한다.

임상 실험 전문가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특정한 치료에서 환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약물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정 결과는 의사들에게 전달되어 환자들의 상태를 기록하고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임상 실험 전문가는 의료 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본 직종에서는 생물과학/생명과학(biological sciences)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적성, 정확성, 꼼꼼함, 강도 높은 업무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헬스케어팀을 이끌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라) 자격증

임상 실험 전문가 자격증은 실험실 인재에 대한 국가 자격 심사기관 (National Credentialing Agency for Laboratory Personnel), 임상 실험 기술을 위한 국제 사회 자격심사 위원회(Credentialing Commiss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y), 임상 실험 과학을 위한 국가 인증기관(National Accrediting Agency for Clinical Laboratory Sciences)의 세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획득할 수 있다.

마) 연봉

임상 실험 전문가의 평균 연봉은 대략 2만 8천~4만 5천 달러 수준이다.

(13) 식품 공학자 (Food Technologist)

가) 정의

식품 공학자는 식품의 연구개발, 새로운 식품 가공의 테스트, 식품의 진공 포장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는 직종이다.

나) 직업개요

식품 공학자는 식품의 연구개발, 새로운 식품 가공과 장비의 예비 테스트, 식품의 진공 포장 시스템에 대해 연구한다. 이들은 식품 조성 및 구성에 대한 화학적 분석 작업도 책임진다. 식품 공장의 안전, 품질관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관리, 감독 업무 또한 식품 공학자의 업무이다.

많은 식품 공학자들이 식품의약품관리국, 환경보호국, 미국항공우주국 등 연방정부에서 근무한다. 식품공학자들은 대학기관, 음식협회 뿐만 아

나라 같은 UN, 국제보건기구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근무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식품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식품공학 전공의 학사학위가 필요하며, 그 외 전공은 영양학이 인정된다.

식품 공학자는 식품과학에 대한 깊은 관심, 조직적 사고와 일의 조직력, 인내심, 원만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팀워크 기술이 요구된다.

본 직종에서는 현재까지 공인된 자격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공학 전공의 학사학위와 5년여의 식품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우대된다.

라) 연봉

식품 기술자의 연봉은 평균 3만 3천~6만 8천 달러 수준이다.

(14) 조직학 기술자 (Histology Technician)

가) 정의

조직학 기술자는 현미경 검사를 위해 세포 조직의 샘플에 대한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나) 직업개요

조직학 기술자는 현미경 검사를 통해 미세한 세포 조직의 형상을 육안으로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세포 조직을 결빙, 절단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인체 세포의 슬라이드를 준비한다. 조직학 기술자의 업

무는 매우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이러한 세포 슬라이드 준비작업은 병리학적인 진단과 평가를 위해서 매우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조직학 기술자들은 의료센터나 병원에서 근무한다. 그 외 연구소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최소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필요하지만 본 직종의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생물학과 화학전공의 학사학위가 요구된다.

조직학 기술자는 생물 의학 과학에 대한 깊은 관심, 꼼꼼함, 통찰력, 손재간이 있어야 하며,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도 지루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인내심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라) 자격증

학사학위 소지자에 한하여 미국 임상병리학 위원회(Board of Registry of the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Pathology)에서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조직학 기술자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마) 연봉

조직학 기술자의 평균 연봉은 약 2만 3천~3만 8천 달러 수준이다.

(15) 뇌파 전위(電位) 기록장치 기술자 (Electroencephalograph Technician)

가) 정의

뇌파 전위 기록장치 기술자는 뇌파 전위 기록장치를 관리하는 의료 분

야의 기술직이다.

나) 직업개요

뇌파 전위 기록장치 기술자는 의사들이 뇌파전위 기록 장치를 활용하여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뇌파 전위 기록 장치를 수리, 관리한다. 뇌파 전위 기록장치 기술자는 뇌파전위 기록장치 분야 전문가의 감독하에 근무한다.

뇌파 전위 기록장치 기술자의 근무지는 보통 병원이나 보건기관이다. 간혹 신경외과 전문의 개인병원에서 고용되어 일하기도 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뇌파 전위 기록장치 기술자 직종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특별한 자격증이나 면허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 연봉

뇌파 전위 기록장치 기술자의 평균 연봉은 1만 8천~3만 달러 수준이다.

(16) 핵의학⁷⁾기술자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

가) 정의

핵의학 기술자는 환자의 핵의학 영상 이미지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7) 뇌, 심장, 간, 갑상선, 기타 기관의 질병을 검사하는 의학 분야임.

나) 직업개요

핵의학 기술자의 주된 업무는 의사들의 환자 진료 시 필요한 핵의학 의학영상 이미지를 만들고 준비하는 일이다. 그 외에 핵의학 기술자가 하는 업무를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환자에게 검사 과정을 설명하고, 치료 시 필요한 방사능의 양을 계산한다. 둘째, 감마선 (Gamma Ray) 탐지 장비를 작동시켜 장비의 영상 품질을 체크하고, 데이터를 정리하여 그것을 필름으로 인화한다. 셋째, 방사성 분석 시험으로 알려진 실험을 시행한다. 넷째, 방사선 약물의 주문에서부터 처리, 적절한 폐기 절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책임진다. 다섯째, 방사선 핵종의 데이터 기록을 담당한다. 여섯째, 의사들의 지시 하에 각종 테스트에 필요한 약물을 제조하는 것도 핵의학 기술자의 업무이다.

핵의학 기술자의 근무지는 대학병원, 방사선 전문 병원, 공공보건 기관, 연구소, 교육기관 등이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핵의학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이 요구된다. 핵의학 기술자에게는 강한 체력, 언어적·수학적 능력, 꼼꼼함 등이 요구된다.

라) 요구되는 자격증

핵의학 기술자 자격증은 미국 방사선 기술자 등록부(American Registry of Radiologic Technologists)나 핵의학 기술 인증 위원회(Nuclear Medicine Technology Certification Board)에서 인증받을 수 있다.

마) 연봉

핵의학 기술자의 평균 연봉은 대략 3만 4천~6만 2천 달러 수준이다.

(17) 방사선 치료 전문가 (Radiation Therapy Technologist)

가) 정의

방사선 치료 전문가는 방사선 장비를 관리하고 방사능의 방출량을 조절하는 직무이다.

나) 직업개요

방사선 치료 전문가는 방사선 장비에서 방사선이 적절한 양만큼 방출되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 환자의 방사선 치료 시 정확한 부위에 방사선이 방출되도록 담당한다. 방사선 치료 전문가는 방사선 장비의 유지 보수 및 관리,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방사선 물리학자와 방사선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기도 한다.

방사선 치료 전문가는 각종 테스트 및 실험에서 사용될 방사능 물질을 준비하고 다루는 일을 돕기도 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본 직종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수준이다. 방사선 치료 전문가는 우수한 수학적 능력, 꼼꼼함, 정확함, 방사선 치료의 정확한 기록 능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안전 준수 사항을 꼭 지켜

야 하며, 방사선 위험 물질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라) 요구되는 자격증

미국 방사선 전문가 등록회(American Registry of Radiologic Technologists)에서는 방사선 치료 전문가 자격증을 발행하고 있다. 본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방사선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고 4 시간에 이르는 능력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마) 연봉

방사선 치료 전문가의 평균 연봉은 대략 3만~4만 5천 달러 수준이다.

(18) 방사선 기술자 (Radiological Technologist)

가) 정의

방사선 기술자는 X-ray, MRI, CT 등의 방사선 기기를 사용하여 사진 촬영을 담당하는 헬스케어 전문가이다.

나) 직업개요

방사선 기술자는 의학적인 진단에 사용되는 환자들의 몸을 방사선 기기로 촬영하여 그 결과를 X-ray 필름으로 생성한다.

방사선 기술자는 방사선 촬영 전 환자들에게 적절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지시 사항을 환자들에게 설명해 준다. X-ray가 통과할 수 없

는 보석 등 각종 장신구의 착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세세한 설명에서부터 환자들이 방사선에 최소한으로 노출되어 촬영받도록 환자들의 자세와 위치까지 점검한다. 이는 방사선 기술자의 업무 가운데 환자들이 방사선에 최소한으로 노출되어 적절한 촬영을 받도록 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방사선 기술자의 중요한 역할이며 능력으로, 환자가 불필요한 부분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방사선 장비들이 환자의 몸에 정확한 위치와 각도로 설치되었는지 각종 장비들을 점검한다.

방사선 기술자는 의사의 지시에 정확히 따르고, 방사선으로부터 환자와 동료, 스스로를 최소한으로 노출시키기기 위하여 방사선 사용 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방사선 기술자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미국방사선기술자등록협회(American Registry of Radiologic Technologist)라는 기관으로부터 치러지는 시험을 통과한 후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실제로 대학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 자격증 획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방사선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방사선 기술자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다. 둘째, 고등학교 졸업 후 21~24개월의 수료증 수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체 해부학, 병리 생리학, 방사선의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병원에서의 인턴십을 거치면 방사선 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라) 연봉

방사선 기술자의 평균 연봉은 5만 2,210달러이며, 상위 10%는 7만

4,970달러 이상이며, 하위 10%는 3만 5,100달러 미만이다.

(19) 약국 판매 보조원 (Pharmacy Technician)

가) 정의

약국 판매 보조원은 약사의 다양한 업무를 보조해 주는 직종이다.

나) 직업개요

약국 판매 보조원의 모든 업무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 약사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약국 판매 보조원의 업무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주문하고, 약국에 비치되어 있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의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둘째, 새로 입고된 약들이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될 수 있도록 각종 약의 보관 및 관리를 담당한다. 셋째, 환자가 약국에 직접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직접 처방전을 배달하고 판매된 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록한다. 넷째,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가 지불해야 할 처방전의 가격을 책정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다섯째, 약국의 경영 상태를 관리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약국 판매 보조원 직종은 대개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요구한다. 본 직종에서는 세일즈 능력과 약사의 지침을 잘 따르고 일할 수 있는 의지와 성실함이 필요하다.

라) 자격증

일반적으로 약국 판매 보조원 채용의 경우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약국 판매 보조원이 많은 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판매보조원협회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은 점차 수요가 커질 전망이다.

마) 연봉

약국 판매 보조원의 연봉은 평균 2만~3만 달러 수준이다.

2) 진단 및 치료 전문가 (Diagnosing and Treating Practitioners)

(1) 발(足) 치료 전문가/ 발(足)병 전문가 (Podiatrist)

가) 정의

발 치료 전문가는 발과 하퇴 부분의 기능 장애, 질환, 부상 등을 치료하는 의사이다.

나) 직업개요

우리 몸의 신체 부위 가운데 발은 관절염,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질환의 징후가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예민한 부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발 부위를 치료 및 관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도록 치료하는 것이 발 치료 전문가의 역할이다.

발 치료 전문가는 발가락 사이의 티눈, 굳은살, 발톱이 살로 파고드는 질환, 발톱 및 발뒤꿈치 등에 나타난 각종 질병, 무릎과 발의 부상, 발의

기형, 발과 관련한 전염병을 비롯하여 당뇨병과 각종 병과 관련된 발 통증 질환을 치료한다. 또한 발 부위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X-ray 촬영뿐만 아니라 연구실에서 각종 임상연구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치료 이외에 발 치료 전문가는 발 깁스에 사용할 석고모형, 발 기형 환자가 사용할 치료 전용 신발 등을 직접 디자인한다.

발 치료 전문가는 대부분 개인 병원이나 발 전문 클리닉을 개원하여 진료한다. 개인병원에서 진료 이외에 양로원이나 요양원, 일반 병원 혹은 외래 진료 센터에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나가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을 담당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발 치료 전문가에게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소질과 타고난 손재간, 환자를 대하는 데 필요한 원만하고 친근한 대인관계 기술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발 치료 전문가가 졸업 후 개인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의료 지식 및 능력뿐만 아니라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감각 또한 필요하다.

라) 요구되는 자격증

발 치료 전문가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 치료 전문가 면허가 있어야 한다. 우선 3~4년의 정규대학 교육을 마치고 4년의 발병학 전문대학 교육을 이수한 후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마) 연봉

발 치료 전문가의 평균 연봉은 11만 3,560~11만 4,768 달러 수준이다.

(2) 척추지압사 (Chiropractor)

가) 정의

척추지압사는 몸의 근육, 신경, 골격 시스템, 특히 척추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직종이다.

나) 직업개요

척추지압사는 몸의 뼈 근육 이상으로 두통, 목의 뻣뻣함, 등의 통증, 피로 등 척추와 관련한 부위에 만성적인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치료한다.

우선 의료 기록을 통해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척추 자세 분석, X-ray 시행 및 평가, 측정 등 각종 병 진단 테스트를 수행한다. 테스트를 통해 병을 진단하고, 몸의 기형이나 이상을 바로잡기 위해 부러진 뼈의 견인, 고주파를 이용한 투열요법, 자외선 리프트, 마사지, 등유 목욕, 냉욕이나 온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환자의 척추 뼈 구조를 바로잡는다.

척추지압사는 척추뼈 시스템에 장애가 왔을 때 몸의 정상적인 기능에 손상이 가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킨다고 믿는다. 그들은 약물을 쓰지 않고 자연적이며 수술을 행하지 않는 건강 치료요법을 행하고, 신체에 내재해 있는 회복 능력에 의존하여 식사, 운동, 잠자는 습관 등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것을 권유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척추지압사가 되기 위해서는 2년제 전문대학에서의 생물학, 화학, 물리학 전공의 학위가 필수적이다.

척추지압사는 손재간, 원만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꼼꼼함, 뛰어난 관찰 기술이 필요하다.

라) 요구되는 자격증

대학에서 생물학, 화학, 물리학 분야 전공의 학위를 받은 후 3~4년 과정으로 보통 8학기제로 운영되는 척추지압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 이수 후 주 위원회가 주관하는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척추지압사로 근무할 수 있다.

마) 연봉

척추지압사의 연봉은 평균적으로 6만~12만 달러 사이이다.

3) 헬스케어 관련 직업군: 의료 과학자, 교육 전문가 (Affiliated Health-Care Careers: Medical Scientist, Educations and Information Workers)

(1) 건강교육전문가 (Health Educator)

가) 정의

건강교육전문가는 사람들이 질병 및 질환을 예방하고 환자들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각종 건강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나) 직업개요

건강교육전문가는 각종 질병 및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관련 정

보를 제공하고 교육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건강교육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포괄적이다. 우선, 적절한 식단관리, 지속적인 운동의 중요성,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 및 생활습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등 각종 건강과 관련한 주제들에 대해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시키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환자들이 병을 치료하고 호전될 수 있도록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고 치료과정에 조언을 하는 것 또한 건강교육전문가의 주된 업무이다. 이러한 업무 이외에도 건강 교육전문가는 중고등학교에 고용되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수업을 강의하고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건강교육전문가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 주로 공중보건 및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보건복지 분야에 소속되어 건강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연구한다.

건강교육전문가는 건강 관련 수업이나 프로그램 개발, 책자와 웹사이트를 통한 건강 상식 배포 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및 각종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업무 교류를 진행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건강교육전문가는 건강교육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250여 개가 넘는 대학에서는 건강교육과 관련한 전공에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건강교육 이론 및 기술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고 있다.

학부에서 심리학, 인간개발학 과목을 이수했거나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할 경우, 인턴십이나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건강교육전문가로 채용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한다.

건강교육전문가의 경우 석박사 학위 취득은 점차 필수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고학력자일수록 직접 현장에 나가 건강교육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중보건 분야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평가하고 다른 건강교육전문가를 관리, 평가하는 상층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요구되는 자격증

National Commission of Health Education Credentialing, Inc.는 건강교육관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자격증은 건강교육 분야의 전반적인 이론을 다룬 시험을 통과한 후에 수여가 가능하다. 시험은 건강교육 분야에서의 학위를 마쳤거나 3개월간의 자격증 이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자격증을 획득한 후에도 75시간 동안 승인된 교육 과정을 마치거나 5년에 걸친 세미나를 이수하여야만 건강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다. 자격증 획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중보건 분야의 경우 건강교육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

마) 연봉

건강 교육전문가의 연봉은 약 4만 4천 달러이다. 상위 10%는 7만 8,300달러 이상, 하위 10%는 2만 6,200달러 이하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2) 건강교육 전문교사 (Health Teacher)

가) 정의

건강교육 전문교사는 국가 건강 교육을 기준으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건강에 대해 교육시키는 건강교육전문교사이다.

나) 직업개요

건강교육 전문교사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대의 청소년들이 지키고 알아야 하는 건강지식에 대해 교육하는 건강 교육한다.

건강교육 전문교사는 크게 여섯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킨다. 첫째,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둘째, 흡연, 셋째, 신체의 비활동성, 넷째, 불충분한 영양상태, 다섯째,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상해를 초래하는 행동들, 여섯째, 원하지 않는 임신, 성병 및 에이즈 감염이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건강교육 전문교사는 건강 및 보건학, 생물학 분야의 학사학위가 요구된다. 건강 및 보건학, 생물학 이외에 체육교육학 전공자도 건강교육 전문교사로 점차 선호되고 있다.

(3) 의료 일러스트레이터 (Medical Illustrator)

가) 정의

의료 일러스트레이터는 시각적 매체인 그림을 통하여 의료지식의 기록 및 전파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직업개요

의료 일러스트레이터는 생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과 동물의 해부

학 구조, 병원에서의 수술진행 과정, 유기체 및 인체 조직 등 의학과 관련한 부분을 그림으로 그린다. 이들이 그린 그림은 의료지식의 기록 및 전파를 위하여 의료용 출판물이나 의료교육을 위한 시청각교재로 사용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의료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 그리는 능력과 인간과 동물의 해부학 구조, 수술진행 과정, 유기체 및 조직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미술, 디자인 전공자뿐만 아니라 생물학, 의학 전공자 또한 선호된다.

의료 일러스트레이터의 경우 특별한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라) 연봉

의료 일러스트레이터의 평균 연봉은 4만 2,700달러정도 이다. 상위 10%의 소득은 8만 3,400달러 이상이며, 하위 10%의 소득은 2만 8백 달러 이하이다.

4) 재활 직업: 치료전문가, 치료보조원 및 조력원 (Rehabilitation Careers: Therapists, Therapy Assistants, and Aides)

(1) 호흡기관 치료전문가 (Respiratory Therapists)

가) 정의

호흡기관 치료전문가는 호흡기관과 심폐 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전문가이다.

나) 직업개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호흡기관 치료전문가는 우선적으로 환자의 호흡기 장애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담당한다. 호흡기관 치료전문가의 일차적 진단을 바탕으로 호흡기관 치료전문가와 다른 전문의 및 여러 스텝들은 환자의 진료 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호흡기 치료전문가는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환자, 만성천식, 폐기종을 앓고 있는 환자, 심장마비, 심장발작, 심장쇼크 등 호흡기관과 관련하여 응급상황에 있는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각종 호흡기 관련 장비를 사용하여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호흡기관 치료전문가는 환자를 상담한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단시험을 시행한다. 우선 환자의 폐활량을 테스트하고, 환자의 혈액 속의 산소 집중도와 혈액의 산성과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pH를 측정한다. 환자의 폐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호흡기관 치료전문가는 각종 호흡기 진단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들숨과 날숨 시 산소의 용량과 흐름을 측정한다. 호흡기관 치료전문가는 이러한 측정결과와 환자의 나이, 키, 몸무게, 성별을 고려하여 환자가 어떠한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을 내리는데 정보를 제공한다.

호흡기에 이상이 있는 환자나 산소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 산소 호흡기라도 숨을 쉴 수 없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호흡기관 치료전문가는 산소 호흡기를 비롯하여 흉부 물리치료를 통해 환자의 폐에 있는 점액을 제거하여 환자가 쉽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치료 이외에도 약물치료를 병행하여 환자의 원활한 호흡기능과 심폐기능을 돕는다.

호흡기관 치료전문가는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와 각종 치료기구를 점

검합과 동시에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산소 호흡기를 비롯한 생명연장기 구들의 사용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는 역할 또한 담당한다.

호흡기관 치료전문가는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환자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각종 호흡기 관련 장비를 점검하고 환자가 머무르고 있는 집의 환경과 환자를 치료하는 장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호흡기관 치료전문가는 산소호흡기 장비 등 각종 가스가 압축된 의료기기 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 예방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호흡기관 치료전문가에게는 환자들의 육체적·정신적 필요가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민감함과 세심함이 필요하다. 의료기구 장비 사용 시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컴퓨터 능력 또한 호흡기관 치료전문가에게 필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호흡 치료 장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계적인 조작능력과 손재주가 뛰어나야 한다.

라) 요구되는 자격증

호흡기관 치료전문가의 경우 자격증은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우 호흡기 치료 국가 위원회(National Board for Respiratory Care)에서 호흡기관 치료전문가의 자격증(CRT: Certified Respiratory Therapist)을 인증하고 있다. 호흡기관 치료 국가 위원회는 CAAHEP와 호흡기 치료를 위한 인증 위원회(Committee on Accreditation for Respiratory Care)에서 공인된 초급 단계나 고급 단계의 호흡기관 치료전문가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거나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호흡기관 치료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호흡기관 치료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서의 학업을 통하여 프로그램 및 교육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아야 한다. 호흡기관 치료전문가의 직업훈련은 2년제 전문대학, 4년제 정규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직업기술학교와 군(軍)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은 31개의 초급단계, 346개의 고급 단계 호흡기관 치료전문가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 연봉

호흡기관 치료전문가의 평균 연봉은 5만 2,200달러이다. 상위 10%의 연봉은 6만 9,800달러 이상이며, 하위 10%의 연봉은 3만 7,920달러 이하이다.

5) 헬스케어 연관 직업군 (Associated Health-Care Careers)

(1) 유전학 전문 상담가/유전학 전문 상담가 (Genetic Counselor)

가) 정의

유전학 전문 상담가는 가계(家系)에서 공통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유전적 위험 인자를 분석하는 전문가이다. 유전자를 기본으로 하는 생명공학 시대의 중심이 되는 직업으로서 머리카락, 구강 상피세포를 통한 유전자검사를 하여 얻은 선천적 유전정보의 결과에 따라 예측 가능한 부분의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이다.

나) 직업개요

유전학 전문 상담가는 선천적 결손증, 유전적 장애 등 유전적 위험 인자가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유전적 인자를 분석하고, 유전적 질환 및 치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유전학 전문 상담가는 선천적 요인으로 인하여 각종 병을 얻을 수 있는 가계를 조사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위험 인자 및 질환에 대해 진단한다. 유전적 위험 인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유전적 패턴과 병의 발병 및 재발 위험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유전적 테스트 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업무도 유전학 전문 상담가의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유전학 전문 상담가는 유전적 요인에 대한 분석 작업 만 아니라 보조적인 상담사의 역할도 담당한다. 유전적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나 그 가족에서 유전적 위험 인자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치료 과정 뿐만 아니라 복잡한 계몽 의학 용어 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일 또한 유전학 전문 상담가가 담당하는 직무이다.

학습관련 유전자검사를 통해 개인의 선천적인 재능과 적성을 알아내는 학습 및 진로관련전문상담과 질병관련유전자검사를 통해 각종 질병 및 성인병 관련 유전자의 발현가능성을 가늠하고, 그에 알맞은 운동, 심리치료를 통해 질병 예방을 유도하도록 상담하는 건강관련 전문상담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유전학 전문 상담가는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유전학자 등과 한 팀을 이루어 헬스케어 센터, 소아치료센터, 성인유전센터 등에서 근무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유전학 전문 상담가는 생물학, 유전학, 간호학, 심리학, 공중보건학 전공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 요구되는 자격증

유전학 전문 상담가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공인한 유전학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아야 한다. 유전학 관련 학과에서는 유전학, 심리학이론, 윤리학, 상담학 등에 대해 공부한다. 학과 전공과목을 이수한 후 임상 실습을 거쳐야 미국 유전학 전문 상담가 협회(The American Board of Genetic Counseling)가 인증하는 유전학 전문 상담가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마) 연봉

유전학 전문 상담가의 평균 연봉은 평균 5만 8,522달러이다. 상위 10%의 연봉은 6만 5,394달러이며, 하위 10%의 연봉은 5만 4,617달러이다.

6) 재활 직업군 (Rehabilitation Careers)

(1) 핵의학기사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s)

가) 정의

핵의학기사는 환자들에게 방사성 의약품을 투여한 후, 투여된 장기나 신체조직의 기능과 특성을 살피는 업무를 담당한다.

나) 직업개요

핵의학기사는 환자에게 검사 과정을 설명하고, 방사성 의약품을 적당량 준비하여 입에 투약하거나 주사 또는 기타 방법으로 투여하는 업무를 한

다. 또한 체내의 방사능 물질 활동을 평가하는 방사면역검정법 분야를 다룬다. 예를 들면 호르몬이나 치료약품의 적정 수준량을 결정하기 위해 혈이나 혈청에 방사능 물질을 첨가하는 일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핵의학 훈련과정은 1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되며,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이나 준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료 과정은 종합병원에서 개설하고 있으며, 준학사학위는 2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는 4년제 대학에서 수여한다. 교과과정은 자연과학 과목과 방사능 노출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 방사능 보호 및 처리, 방사선 의약품 사용법, 영상 기법, 그리고 컴퓨터 응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핵 의학기사는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요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세세한 사항에 집중하고 지시를 따르며 팀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복잡한 장비를 작동하기 위해서 기계적 재능이나 손재주가 필요하다.

라) 요구되는 자격증

자격증은 미국방사선기사협회와 핵의학기사협회에서 수여하는데 방사선기사는 방사성 약물 및 방사선 탐지 장치에 관한 연방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모든 핵의학기사는 방사능 약물 투여와 방사능 탐지장비 작동에 관한 연방정부의 최소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절반 이상의 주정부에서는 핵의학기사가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증이나 자격증은 The American Registry of Radiologic Technologists나 The Nuclear Medicine Technology Certification Board에서 수여하고 있다.

마) 연봉

핵의학기사의 연봉은 평균 5만 6,000달러이다. 평균 4만 8,000~6만 7,000달러 정도된다. 하위 10%는 4만 1,000달러의 임금을 받고 상위 10%는 8만 달러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무용/동작 치료사 (Dance/Movement Therapists)

가) 정의

무용/동작 치료사는 내담자들이 자신이 가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해결방법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담자들의 자아 존중감과 신체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과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며 신체언어를 확장하여 행동패턴에 대한 통찰을 얻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나) 직업개요

무용/동작 치료사는 인간의 고유한 움직임을 이용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표현예술로써 환자를 치료한다. 무용/동작 치료는 호흡이나 자세, 일상적인 움직임은 물론, 춤과 같은 리듬적 움직임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서와 내면을 탐색하고 궁극적으로 몸과 마음의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병원 및 복지관, 교육시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정신질환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몸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대사회의 성인들에게 효과적인 자기관리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관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동료, 부부, 가족, 애인들에게도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 방법으로 유

용하며, 일반인들에게도 언어 및 매체를 넘어서는 이미지와 상징, 그리고 무의식적 표현을 통해서 자기통찰과 성장을 도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치료 자체가 즉흥적이고 고유한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며,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스스로를 복동위 옹과워링 할 수 있는 치료이다.

(3) 작업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s)

가) 정의

작업치료사(OT)는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장애를 가진 환자가 일상생활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시키는 업무를 한다.

나) 직업개요

작업치료사는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장애를 가진 환자가 일상생활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시키는 업무를 한다. 이들은 또한 환자가 일상생활 및 작업 기술을 유지, 개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기본적인 기능과 이성적인 능력, 영구적으로 손상된 기능을 치료할 수는 없으나 환자들이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작업치료사는 환자들이 컴퓨터의 사용부터 옷을 입고 요리하고 음식을 먹는 등의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환자의 시각적 예리함과 패턴을 식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이와 연필 놀이를 하고 근력과 민첩성의 강화를 위해 신체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작업치료사는 척추손상, 뇌성마비, 근육수축증과 같은 영구적으로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하여 휠체어, 부목, 그리고 밥먹기와 옷입기를 위

한 보조기구를 제공하며, 집이나 작업장에서 필요한 특별한 장치를 만들거나 고안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화와 걷기, 전화와 텔레비전 조작, 기타 주변 환경을 통제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돕는 초소형 연산장치와 같은 컴퓨터제어장치의 조작방법을 가르친다.

특히, 노인을 돕는 작업치료사도 있는데 이들은 적응 장비의 사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년층이 더욱 생산적·활동적·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운전자 훈련전문 작업치료사는 임상 테스트와 도로테스트를 함께 사용한다. 이를 통해 작업치료사는 적합한 장비, 혼자 운전하기 전에 필요한 훈련, 대안 교통수단에 대한 제안을 한다. 또한 집안의 위험요인이나 낙상을 유발하는 요인이 없는지 평가하기도 한다.

정신건강분야의 작업치료사는 정신병과 정신지체,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료한다. 이런 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사들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대처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작업동작을 선택한다. 동작에는 시간관리 기술, 예산잡기, 물건사기, 가사,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이 있다. 또한 이들은 알코올중독, 약물남용, 우울증, 식사장애, 그리고 스트레스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상대로 일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작업치료학 학사학위는 이 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지만, 2007년부터는 석사학위자로 요구되고 있다. 작업치료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인교육과정을 졸업하고,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공인작업치료사(OTR)의 명칭을 부여받게 된다. 어떤 주는 학교나 조기치료과정을 하기 위한 작업치료사들에게 추가 요구조건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관련과목의 이수와 교육훈련이수, 조기치료자격 등을 포함한다.

작업치료 학위과정은 122개의 석사학위과정, 65개의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통합과정, 5개의 박사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주말 및 시간제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풀타임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2007년부터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해지면서 작업치료의 학사학위과정이나 학사 후 과정은 더 이상 제공되고 있지 않다. 작업치료사 과정에는 물리학, 생물학, 행동과학, 작업치료 이론과 기술응용이 있다. 학위 이후 6개월의 현장수련의 과정도 필요하다.

작업치료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에서 생물학, 화학, 물리학, 보건, 예술, 그리고 사회학을 전공해야 한다. 또한 단과대학 입학 시 보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한다.

환자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뛰어난 대인관계 기술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개인적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독창력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가정보건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환경에 잘 적응해야 한다.

병원 및 기타 보건시설,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는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도 모임이나 기타 활동에 참여한다. 2004년 현재 작업치료사의 1/4 이상이 시간제로 근무한다.

라) 요구되는 자격증

세계작업치료연맹(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산하기구로 각국의 작업치료협회의 대표를 구성하여 작업치료사를 양성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의 협회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의 정관이나 구성, 학교의 학과과정과 교수진 등을 평가하여 연맹기준에 부합하는 나라의 협회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이 연맹에서 인정한 학교의 졸업자는 각국가의 자국법에 의

해서 작업치료사 면허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다.

마) 연봉

작업치료사의 평균 연봉은 5만 4,660달러이다. 중간 50%는 4만 5,690~6만 7,010달러까지의 연봉을 받았으며, 하위10%는 3만 7,430달러 이하를, 상위 10%는 8만 1,600달러 이상을 받는다.

(4) 환자대리인 (Patient Representative)

가) 정의

환자대리인은 환자와 그 가족의 요구 사항을 의료기관과 잘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 직업개요

환자대리인은 환자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환자 불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와 함께,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직원 교육을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진료 중에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 진료를 보조해 주는 스텝이 환자의 의견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불충분할 뿐더러 환자 입장에서 보면 스텝을 병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편으로 본다. 또한 지나치게 환자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스텝을 볼 때 무엇인가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환자 스스로가 까다롭게 자기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의료진들에게 환영 받지 못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환자대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

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환자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학과 과정을 준비해야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용주는 학사 학위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라) 연봉

환자대리인의 평균 연봉은 2만 달러~4만 달러이다.

(5) 정신치료 조력원 (Psychiatric Aides)

가) 정의

정신치료 조력원은 병원, 간호 및 개인보호시설, 정신요양원에 수용된 육체적 정신 이상자, 부상자, 장애인, 노인 등을 돌보는 일을 한다.

나) 직업개요

정신치료 조력원은 정신건강 조력원과 정신간호 조력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정신장애나 정서적 혼란이 있는 환자를 돌본다. 이들은 정신과전문의, 심리학자, 정신과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치료사 등과 팀을 이루어 근무한다. 환자들이 옷을 입고, 목욕하고, 몸치장을 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외에도 교육과 여가활동을 통해 그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조력원은 환자와 카드놀이 등의 게임을 하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포츠나 소풍과 같은 집단

활동에 참가하기도 한다. 이들은 환자를 관찰하고 전문가들이 보기에 중요할 수 있는 일부 행동변화에 하여 보고하며, 환자들을 검사실과 치료실로 데려간다. 이들은 환자들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환자 상태의 예측과 치료에 큰 영향을 끼친다.

대부분의 조력원은 주당 약 40시간 정도 근무한다. 하루 24시간 내내 환자를 보살펴야 하므로 일부 조력원은 저녁시간, 밤, 주말, 그리고 휴일에도 업무를 수행한다. 대다수의 조력원이 시간제로 근무한다. 조력원은 많은 시간을 서 있거나 돌아다녀야 하며,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다. 이들은 환자를 병상에 눕히거나 일으켜야 하고 서거나 걷는 것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환자를 보살필 대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또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환자를 돌보기도 하는데, 이들의 업무 수행 시 정신적으로 큰 노력이 요구되나 많은 조력원은 환자를 돕는 업무를 통해 만족을 느낀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간호조력원이나 정신치료조력원이 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근무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훈련이나 경력 요구사항을 요구하는 고용주도 있다. 병원의 경우 간호보조나 재택의료보조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사립요양원에서는 흔히 경력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최소 75시간의 의무훈련을 수료하고, 고용된 후 4개월 내에 적성평가과정을 통과하도록 한다. 이 과정을 수료하는 조력원은 주립등기소에 간호 조력원으로 등록된다. 일부 주의 경우 정신과 치료 조력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공식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연방정부에서는 가정보건 조력원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연방법에 의해 이들은 12가지 영역의 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대화법, 관찰력, 환자의 상태와 제공된 서비스 내용 기록, 주요 장기의 특징에

대한 파악 및 기록, 간단한 감염진찰, 신체기능 및 변화요소 파악, 비상진료, 환자의 특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회복적 특성, 개인위생, 안전한 환자이송 기술, 정상적인 움직임 및 자세 범위, 기초영양 등이 있다.

가정보건조력원은 능력 시험을 치르기 전에 연방법으로 제정된 정식 간호사가 주관하는 이론교육 및 실습을 적어도 75시간은 받아야 한다. 훈련 및 시험 프로그램은 보건 당국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고용 기관에서 주관하나, 대부분은 The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주의 규제를 따르는 훈련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The Nation Association for Home Care에서 국내 가정보건조력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간호보조 업무와 관련된 훈련은 종종 고등학교, 직업기술센터, 일부시설 요양원, 그리고 지역 전문대학에서 제공된다.

훈련과정에는 신체구조학, 영양학, 해부학, 생리학, 전염병통제, 대화술, 거주권 등의 과목이 포함된다. 환자를 목욕시키고 식사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등 각종 환자 관리 방법 또한 배워야 한다. 시설요양원을 제외한 일부 시설에서는 신규 채용된 조력원에게 실내교육을 제공하며, 일부에서는 간호사나 경험이 많은 조력원에게 비공식적인 사내훈련을 제공한다. 이러한 훈련은 일주일에서 몇 달 동안 진행되는데, 조력원은 강의, 현장, 연수훈련에 참여할 수도 있다. 야간 및 주말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 분야에 관심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학기 중에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원자는 건강하고, 신속하고, 인내성이 있고, 이해심이 강하며,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하며, 믿음직해야 하고, 남을 돕고자 하는 열의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여러 명이 함께 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성격이 원만하고, 반복적이며 따분한 일상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보건조력원은 일반 가정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정직해야 하고, 사려 깊게 행동해야 한다. 조력원은 건강상태가 양호해야 하므로 주에서 실시하는 결핵과 같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간호, 정신치료 및 가정보건조력원의 승진기회는 제한되어 있다. 다른 의료 관련 직종에 종사하려면 조력원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공식훈련을 받아야 한다.

라) 연봉

정신치료조력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1.19달러이다. 중간 50%는 9.09~14.09달러를 받고 하위 10%는 7.63달러 이하, 상위 10%는 16.74달러 이상을 받는다.

(6)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Recreational Therapist)

가) 정의

레크리에이션 치료사는 장애인, 일반환자, 기타 장애조건이 있는 사람에게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레크리에이션 치료사는 미술, 공예, 동물, 스포츠, 게임, 댄스 및 율동, 연극, 음악, 소풍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환자의 육체적·정신적·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고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나) 직업개요

레크리에이션 치료사는 우울증, 스트레스 근심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들은 또한 기본적 자동치유기능 및 이성능력을 회복시켜주고, 자신감을 심어 주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며, 질병이나 장애 증상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정보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이용하

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레크리에이션 치료사는 오락을 주요 목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와는 다르다.

종합병원이나 재활센터와 같은 의료분야에서 레크리에이션 치료사는 일반적으로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등과 함께 의학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개인을 치료하고 재활시키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가활동 및 의료 활동을 장기 거주 보호시설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의학적 문제와 질병 및 장애와 관련된 이차적 합병증을 예방하는 업무를 한다.

또한 표준화된 평가, 관찰, 의료기록, 의료진, 가족이나 환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초로 환자를 평가하며 환자의 욕구 및 이익에 부합하는 치료 활동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신입직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치료 레크리에이션 분야의 학사 학위 취득자나 레크리에이션 분야 중에서 치료 레크리에이션학을 세부 전공한 자여야 한다. 치료 레크리에이션이나 보건 관련 분야의 준학사학위 소유자는 보조원으로 응시할 수 있다. 미술, 연극, 음악 치료 분야의 훈련과정을 이수했거나 관련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자는 요양소에서 활동지도자로 근무할 수 있다.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양성 프로그램은 대략 150개 정도가 있다. 일부는 준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제공하는 일부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사학위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판단, 치료 및 프로그램 기획, 관리, 평가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은 인체해부학, 생리학, 비정상심리학, 의학 및 정신의학 전문용어, 질병과 장애의 특성, 전문가 윤리 등의

학문분야를 연구하고 보조 장비 및 기술을 사용한다.

라) 요구되는 자격증

자격증이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는 공인치료 레크리에이션전문가(CTRS) 자격이 있는 응시자를 선호한다.

(NCTRC: The National Council for Therapeutic Recreation Certification)에서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 자격을 수여하고 있으며 자격 취득을 위해서 학사학위 소지자로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최소 480시간 이상의 인턴을 마쳐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부가조건사항이 있는데 치료 레크리에이션 업무를 할 수 있는 수료증이나 면허를 요구하기도 한다.

레크리에이션 치료사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편하게 느껴야 하고, 다양하고 특별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인내심과 재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개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독창력, 유머 감각, 상상력도 필요하며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해야 한다.

레크리에이션 치료사는 행정직이나 감독직위로 승진하기도 한다. 일부는 교육, 연구수행, 건강이나 사회복지단체에 자문을 하기도 한다.

마) 연봉

레크리에이션 치료사의 평균 연봉은 3만 2,900달러이다. 중간 50%는 2만 5,520~4만 2,130달러를 받고, 하위 10%는 2만 130달러 이하, 상위 10%는 5만 1,800달러 이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양소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2만 8,130달러를 받는다.

(7) 물리치료 보조원 및 조력원 (Physical Therapist Assistants and Aides)

가) 정의

물리치료 보조원 및 조력원은 공인 물리치료사의 감독 하에 물리치료 진료 준비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물리치료사를 도와 환자의 운동 능력을 개선시키고 고통을 덜어주며, 부상이나 질병에서 오는 신체적 장애를 회복시키거나 예방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환자의 전반적인 체력 및 건강을 회복, 유지, 증진시켜 주는 업무를 한다.

나) 직업개요

물리치료 보조원 및 조력원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물리치료사의 감독하에 운동, 마사지, 전기충격, 파라핀목욕, 초음파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기록하고 각각의 치료 성과를 물리치료사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치료 장소를 청소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고, 각각의 환자들의 치료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며, 환자들이 치료 장소로 이동할 때 휠체어를 밀거나 환자들을 부축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물리치료 보조원 및 조력원은 직장 내에서 훈련을 받지만, 물리치료보조원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물리치료 보조과정을 졸업한 후 준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물리치료 보조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모든 주에서 면허나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면허가 필요한 주에서는 특정교육 및 시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활동법규 및 규제에 관한 정보는 해당 주 면허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그 외 부가적인 요구사항으로 심폐기

능소생 및 기타 응급치료, 최저임상경력 시간 등이 필요하다.

라) 요구되는 자격증

병원이나 민간진료소 등에서 임상실습을 하기 전에 한 학기 과정의 해부학, 생리학을 이수해야 하고, 심폐기능소생과 응급치료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마) 연봉

물리치료 보조원 및 조력원의 연봉은 3만 7,890달러이며 평균적으로 3만 1,000~4만 4,000달러를 받는다. 하위 10%는 2만 4,000달러를 받고 상위 10%는 5만 2,000달러를 받는다.

(8) 직업치료 보조원 및 조력원 (Occupational Therapists Assistants and Aides)

가) 정의

작업치료 보조원 및 조력원은 작업치료사의 감독하에 정신적, 신체적, 감성적, 혹은 발달상의 장애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한다.

나) 직업개요

작업치료 보조원 및 조력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상당한 근로자들의 운동기능을 증진시켜 다시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록 도와주거나, 학습장애인 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면서 독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작업치료 보조원 및 조력원은 작업치료사가 고안한 치료계획에 따라 환자의 회복활동과 실습과정을 보조한다. 작업치료 보조원 및 조력원은 환자들의 활동을 체크하여 그들이 해당 활동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환자의 회복기록을 작성하여 작업치료사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치료가 예상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거나 고객의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작업치료사는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치료계획을 변경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환자의 의료보험 청구서를 상세하게 문서화한다. 작업치료 보조원은 일반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치료에 사용된 장비를 정리하고, 각종 사무 업무를 책임진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작업치료 보조원 및 조력원은 승인된 지역 전문대학이나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준 학사학위나 수료증을 취득해야 한다. 작업치료 보조원 및 조력원은 보통 직장 내에서 대부분의 훈련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작업치료 보조 과정이 개설 운영되고 있는데, 보통 입학연도에는 보건의 소개와 기본적인 의료전문용어, 해부학, 생리학을 배우며, 그다음 해에는 정신의료, 노인학, 소아과 같은 영역의 작업이론 과정을 배우게 된다. 또한 감독하에 진료소 및 사회단체에서 실습을 한다. 고등학교에서 생물학과 의료관련 과정을 이수하고, 영양소, 물리치료원 혹은 기타 의료보호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다면 작업치료 보조과정에 입학할 때 유리하다.

라) 요구되는 자격증

작업치료 보조원 및 조력원이 되려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이 시험에 통과한 사람을 공인자격치료보조원이라고 한다.

자격을 얻고자 하는 지원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원활한 대인관계 유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마) 연봉

작업치료 보조원 및 조력원의 연봉은 3만 8,000달러이다. 평균적으로 3만 1,000~4만 4,000달러를 받는다. 하위 10%는 2만 5,000달러 이하를 받는 반면 상위 10%는 5만 2,000달러를 받는다.

(9) 의료필사원 (Medical Transcriptionists)

가) 정의

의료필사원은 의사 및 기타 보건전문가의 구술 녹음을 듣고 의료보고서, 서신 및 기타 행정적 자료에 기록하는 업무를 한다.

나) 직업개요

일반적으로 특수한 헤드폰을 쓰고 기록을 들으며, 녹음을 멈추는 발 페달을 이용하고 작성하는 문서에는 퇴원기록, 병력 및 신체검진기록, 수술실 기록, 상담 기록, 부검기록, 진단영상연구, 위탁문서 등이 포함된다. 의료필사원이 기록한 문서는 수정, 서명, 검토를 위해 관련 담당자에게 다시 보내 환자의 영구 파일로 저장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의료필사원은 명확하고 포괄적인 형식으로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 의학술어학, 해부학 및 생리학, 진단과정 및 치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의학전문어 및 약어를 해석하여 기록할 수 있어야 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인쇄물이나 전자물로 된 표준의학 참고물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의료필사 분야의 고등학교 이후의 훈련을 이수한 필사원을 선호한다. 해부학, 의학술어학, 법의학사전, 영어문법 및 구두점 과정을 포함한 2년의 준학사학위 과정이나 1년의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러한 사항이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필사원, 특히 간호사나 의학비서로 근무해 본 경험이 있어 의학용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실습을 통해 의료 전문필사원이 될 수 있다.

라) 요구되는 자격증

의료필사원은 해부학, 의학술어학, 법의학사전, 영어문법 및 구두점 과정을 포함한 2년의 준 학사학위 과정이나 1년의 자격증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AAMT: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Medical Transcription)에서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한 필사원에게 공인의료필사원(CMT)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의료필사원은 의학용어가 계속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기술을 향상시켜야 하며,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 계속 교육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의료필사원은 의학용어 이해뿐만 아니라 뛰어난 영어문법 및 구두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컴퓨터 및 워드프로세스 소프트웨어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마) 연봉

의료필사원의 시간당 임금은 13달러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11~16달러를 받고 있다. 하위 10%는 9달러 이하, 상위 10%는 19달러 이상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의무기록사 (Medical Records and Health Information Technicians)

가) 정의

보건치료 전문요원이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자신이 관찰한 내용과 처방사항을 기록한다. 이 기록은 환자의 증상 및 병력, 검진결과, X-ray 및 병리검사 결과, 그리고 진단 및 치료계획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의무기록사는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며, 기록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나) 직업개요

의무기록사는 우선 진료 차트가 완전한지를 확인한다. 이들은 점검 항목이 정확하게 확인되고 표시되었는지와 필요한 정보가 전산파일에 모두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의사 및 다른 직원들과 진단사항을 명확히 하거나 추가정보를 얻기 위해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

한편, 의무기록사는 환자치료를 개선시키고 비용관리를 하며, 소송문제 또는 조사에 대한 응답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도표화하고 분석하여 전산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암 등록 의무기록사는 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 활동에 참고하고자 암환자의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의무기록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역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제공하는 2년제 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 요구되는 자격증

AHIMA에서 주관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등록의무기록사(Registered HE미소 Information Technicians: RHIT) 고용을 선호한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학협회의 (CAAHEP: The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Allied Health Education programs)로부터 공인된 2년제 준 학사학위 과정을 졸업해야 한다. CAAHEP 공인과정 이외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직장에서 훈련을 받은 기록사는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다.

마) 연봉

의무기록사의 연봉은 2만 5,000달러이며 평균적으로 2만~3만 3,000달러를 받는다. 하위 10%는 1만 7,000달러 이하를 받고 상위 10%는 4만 1,000달러를 받는다.

(11) 간호, 정신치료 및 가정보건 조력원 (Nursing, Psychiatric, and Home Health Aides)

가) 정의

간호 및 정신치료 및 가정보건 조력원은 병원, 간호 및 개인보호시설,

정신요양원에 수용된 신체적·정신적 환자, 부상자, 장애인, 노인 등을 돌보는 일을 한다. 가정보건조력원의 업무도 이와 유사하나 환자의 집이나 보호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점이 다르다.

나) 직업개요

간호조력원은 간호조무사 또는 노인 조력원, 무면허보조원, 병원간병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간호 및 의료진의 감독을 받으며 근무한다. 이들은 환자로부터 응급전화가 오면 응답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준비한다. 환자가 식사를 하고 옷을 입거나 목욕할 때도 도움을 준다. 조력원은 환자들의 피부 손질을 해 주거나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을 측정하며 환자가 침대에 오르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때, 그리고 산책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조력원은 환자의 신체, 정신, 감정 상태를 항상 관찰하고 환자의 변화에 대해 간호, 의료진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력원은 주로 간병인 역할을 하고 다른 의료진보다 자주 환자들과 접촉한다.

가정보건조력원은 보건시설 대신에 노인, 회복기 환자, 장애인의 가정에서 돌본다. 간호 및 의료진의 감독하에 이들은 약복용 관리 등의 보건 관련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조력원과 마찬가지로 가정보건조력원은 맥박, 체온, 호흡을 체크하기도 하고 간단한 처방된 운동을 도와주며 환자의 방을 청결하게 유지시킨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간호조력원이나 정신치료조력원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나 근무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때에 따라 특정 훈련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고용주도 있다.

병원의 경우 간호보조나 재택의료보조 업무를 해 본 경력자를 채용하는데, 사립요양원의 경우 경력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최소 75시간의 의무훈련을 수료한 뒤에 4개월 내에 적성평가과정을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하는 조력원은 주립등기소에 간호조력원으로 등록된다. 일부 주의 경우 정신치료조력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공식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라) 요구되는 자격증

연방정부에서는 가정보건조력원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연방법에 의해 이들은 12가지 영역에서 해당 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대화법, 관찰력, 환자의 상태와 제공된 서비스내용 기록, 주요 장기의 특징에 대한 파악 및 기록, 간단한 감염진찰, 신체기능 및 요소 파악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가정보건조력원은 능력시험을 치르기 전에 연방법으로 제정된 정식 간호사가 주관하는 최소 75시간의 이론교육 및 실습을 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국가가정보건협회(The Nation Association for Home Care)에서 국내 가정보건조력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마) 연봉

간호조력원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10달러이다. 일반적으로 8.5~12달러 정도를 받고 있다. 한편, 가정보건조력원의 시간당 임금은 8.8달러이며 7.5~10달러를 받고 있다.

(12) 운동치료사(Athletic Trainers)

가) 정의

운동치료사는 환자의 부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돕는다. 그들이 담당하는 환자는 전문 운동선수에서 산업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다.

나) 직업개요

운동치료사는 근골격계 부상의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운동치료사는 부상이 발생한 장소에서의 1차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며, 부상을 인식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 시에는 즉각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재활 치료에 관여하기도 한다. 운동치료사는 면허가 있는 내과 의사의 감독하에 근무를 하며 다른 건강관리사와 함께 업무를 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운동치료사로 취직하기 위해서는 인증받은 단과대학 혹은 종합대학의 학사학위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해야만 BCC가 될 수 있다.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관련 교과목과 실습의 표준을 계속적으로 익혀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훌륭한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라) 요구되는 자격증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운동치료사로 근무하려면 BCC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마) 연봉

대부분의 운동치료사는 전일제로 일하고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운동치료사의 평균 연봉은 3만 3,000달러이다. 일반적으로 2만 7,000~4만 3,000달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위 10%는 2만 달러를 받고 상위 10%는 5만 3,000달러를 받아 연봉차가 크다.

나. 복지 분야 (3개 분야 총 10개 직업)

1) 아동복지 분야

(1) 아동복지 사례별 사회복지사 (Child Welfare Case Worker⁸⁾) / 아동복지전문가 (Child Welfare Specialist)

가) 정의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 및 그 가정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나) 직업개요

아동복지 사례별 사회복지사는 학대받고 방치된 아동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개인 및 가족의 배경을 고려한 사례별 사회복지사업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다. 우선적으로 학대받는 아동과 가족의 필요에 대해 진단하고, 부모와 상담 및 교육을 통하여 그 가정의 방치된 아동을 위

8) 미국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가정을 돕는 사례별 사회복지사를 가리킴.

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 기록보관기관과 법정심문에서 기록되고 사용될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역할 역시 아동복지 사례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아동복지 사례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분야에서의 석사학위가 요구된다. 특히 본 직종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범죄 및 음주음전 경력이 없어야 하며, 근무하면서도 고용적합 상태 유지를 위해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아동복지 지식 및 미디어 전문가 (Child Welfare Knowledge and Media Specialist)

가) 정의

아동복지 지식 및 미디어 전문가는 출판물, 웹사이트 등의 매체를 통해 아동복지와 관련한 자료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사람이다.

나) 직업개요

아동복지 지식 및 미디어 전문가는 아동복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의 보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아동복지와 관련한 기구 및 조직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 작업을 한다. 각종 출판물, 웹사이트, 이메일, 모바일 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아동복지에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사회 복지부문 담당자나 아동복지 전문가 등 기타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복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본 직종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나 관련 분야에서의 학사학위가 필요하다. 공공 혹은 비영리 아동복지 분야나 마케팅 및 카피라이팅(Copywriting) 분야에서의 3~5년의 경력이 필수적이며, 정보경영 분야에서의 경력은 매우 우대된다.

아동복지 지식 및 미디어 전문가는 아동복지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적인 기사작성 및 편집능력, 능숙한 마이크로소프트 활용능력, 웹 프로그램 활용 기술 및 단시간에 다양한 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필요하다.

2) 의료복지 분야

(1) 의료 분야 전문 사회복지사 (Medical Social Worker)

가) 정의

의료 분야 전문 사회복지사는 환자와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해 상담해 주는 전문가이다.

나) 직업개요

의료 분야 전문 사회복지사는 환자와 환자 가족의 사회적·정서적·심리적 필요를 측정한다. 이러한 측정 결과와 환자의 치료의 진행 상태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최대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 장소와 시설을 조언해주고,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의료 서비

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의료 분야 전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공의 석사학위 소지자가 우대된다. 호스피스 관련 분야의 업무 경력과 보건복지 시설, 의료 및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정책, 환자와 환자 가족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제도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3) 복지혜택 자격 심사 및 운영 전문가 분야

(1) 복지 자격 면접심사관 (Welfare Eligibility Interviewer)

가) 정의

사회복지 센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직종이다.

나) 직업개요

복지 자격 면접심사관은 빈곤자, 장애인, 노령자 등 정부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사람이다. 정부의 정책에 의거하여 지원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모든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공적부조(扶助) 심사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심사한다.

공적부조 지원자에 대한 자격심사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정부의 각종 생활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나 규정을 설명하기도 하고, 무료 진료

소, 무료 급식소, 커뮤니티 푸드뱅크 등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 준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복지 자격 면접심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컴퓨터 과학 분야 및 이와 관련한 분야에서의 학사학위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센터에 고용된 후에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심사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조례에 대해 직장 내 훈련(OJT: On-the-Job Training)을 받는다.

경제적 빈곤층을 대상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친절함, 세심함, 배려심이 있어야 한다. 공적부조가 꼭 필요한지 적격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및 각종 규례에 맞추어 심사할 수 있는 공정성이 요구된다. 또한 모든 정보가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컴퓨터 능력이 필요하다.

라) 연봉

복지 자격 면접심사관의 수당은 일주일에 약 290~670달러 수준이다.

(2) 복지사례 전문가 (Welfare Case Technician)

가) 정의

복지사례 전문가는 공적부조를 위한 적격심사에 있어서 연구자료 및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루는 전문가이다.

나) 직업개요

복지사례 전문가는 공적부조를 신청한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자를 인터뷰하여 그들의 경제적 상황, 재정적 필요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임대주, 고용주, 변호사, 의사, 은행, 인력자원개발부 등 기타 기관들과 접촉을 통하여 신청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을 수집한다. 공적 부조 수급자들이 구인정보, 주거정보, 식비예산 등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복지사례 전문가의 역할이다. 복지사례 전문가는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통하여 공적부조 수급자들에 대한 재정적인 데이터를 포함한 각 사례를 상세하게 분류하여 문서화하는 작업을 한다. 복지사례 전문가는 이러한 사례에 대한 분류작업을 통하여 공적부조 수급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복지사례 전문가는 심리학, 경영학을 포괄하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사학위가 필수적이다. 복지분야, 인적서비스와 관련한 정책 및 규정,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식과 각기 다양한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컴퓨터 사용능력과 운전면허증도 필요하다.

라) 연봉

복지사례 전문가의 급여는 시간당 14달러 84센트~24달러 82센트 수준이다.

(3) 복지혜택 운영 행정가 (Welfare Benefits Operations Administrator)

가) 정의

복지혜택을 운영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복지행정전문가이다.

나) 직업개요

복지혜택 운영 행정가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복잡한 복지혜택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각 문제들을 분석함으로써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둘째, 복지혜택을 받는 대상자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시스템을 정비한다. 셋째, 복지혜택에 대한 업무처리 시 정확성을 위해 설문지 조사 방법과 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복지혜택 운영 행정가의 경우 경영학 전공의 학사학위자가 선호된다.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업무 지식,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Multi-Player)의 역할, 우수한 연구 및 분석, 계산 능력이 요구된다.

(4) 해외 이주민 전문 사회복지사 (Welfare Advice Worker)

가) 정의

해외 이주민과 관련한 복지혜택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나) 직업개요

해외 이주민 전문 사회복지사는 해외 이주민들이 정착국가에 잘 적응하도록 각종 복지혜택에 대해 설명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해외 이주민 전문 사회복지사는 해외 이주민들이 복지혜택 신청서 작성 시 언어구사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에는 번역 및 통역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의 혜택을 받는 해외 이주민들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각각의 복지사례에 대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해외 이주민 전문 사회복지사의 경우 지역사회를 비롯한 각종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경험, 주택 및 재정과 관련한 기구 및 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 복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요구되며, 다양한 국가의 사람을 대상으로 일하기 때문에 제2외국어 구사 능력은 필수이다.

라) 연봉

해외 이주민 전문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한 달에 대략 416 파운드 수준이다.

(5) 교육 복지 행정가 (Education Welfare Officer)

가) 정의

교육 복지 행정가는 잦은 결석, 정학 등 학교 재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 아이를 대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학교 적응을 돕는 전문가이다.

나) 직업개요

교육 복지 행정가는 잦은 결석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정학 위기에 처한 학생 등 학교 재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 학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이, 학부모, 학교 등과 연합하여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우선적으로 학교 부적응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부모, 학교, 기타 교육기관 단체 등과 그 밖의 정보에 대해 자료를 공유한다. 그 후 아이들과의 상담을 통해 집과 학교의 관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관계 개선을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출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조언해 준다. 학교와 학부모들 간의 연결망을 통해 학생들의 재적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그들의 학교 적응에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해 나간다.

대부분의 교육 복지 행정가는 정부에 고용되어 근무하며, 간혹 학교에 직접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교육 복지 행정가의 경우 교육복지, 사회복지, 사회학, 보건학 분야 전공의 학사학위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분야의 근무 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교육 복지 행정가는 아이, 학부모와 신뢰를 쌓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교육관련 법률적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하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능력 또한 요구된다.

라) 연봉

교육 복지 행정가의 연봉은 대략 1만 8천 파운드~5만 5천 파운드 수준이다.

(6) 보건복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Project Coordinator Health and Welfare)

가) 정의

보건복지 계획이나 프로젝트에 구축될 각종 복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가이다.

나) 직업개요

복지계획에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 관리하여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Centralized Database)에 입력하는 작업을 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복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의 경우 통계학 전공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선호된다. 데이터 구축과 관련한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기본적인 시스템 체제를 이해하는 업무적 지식과 컴퓨터 에러 문제 및 각종 결함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보건복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요구된다.

(7) 보건복지 분야 혜택 전문가 (Senior Benefits Specialist - Health and Welfare)

가) 정의

보건복지 분야 이슈와 관련하여 전화 설문 조사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통해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것에서 도출된 각종 이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전문가이다.

나) 직업개요

보건복지 분야 혜택 전문가는 자동전화를 통해 들어온 복지혜택, 복지혜택 신청 및 자격 등의 문의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각종 조사를 통해 얻은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트렌드를 분석한다.

다) 관련 전공 및 요구되는 기술

보건복지 분야 혜택 전문가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우대되나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경우 콜센터 등 고객센터 분야의 2년 정도 경력과 의료 분야의 3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복지 분야 혜택 전문가는 데이터 및 트렌드를 분석, 복지혜택에 대한 지식,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된다.

제2절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자격 실태분석

본 절에서는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의 자격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보건복지 분야의 자격종목 실태 분석, 둘째 의료법 분석, 셋째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 운영실태 분석, 넷째 보건복지 분야의 민간자격의 금지분야 실태분석이다.

1. 보건복지 분야 자격종목 실태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자격종목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격 종목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한 후,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종목의 종류 및 특성과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국가자격 종목과 민간자격 종목을 살펴보았다.

가. 자격 종목의 유형

자격의 관리주체에 따라서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격기본법의 구분에 의하면 국가자격은 해당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민간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일컫는다(법제처, 2010). 이때 국가가 관할하는 자격은 크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 법령에 의거한 국가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면 국가자격 중에서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따로 국가기술자격이라 칭하고 별도로 관리, 운영한다.

한편 민간자격의 경우는 다시 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 사업내자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관리주체별 자격 유형에 따른 현황을 정리하면 <표 III-8>과 같다.

<표 III-8> 우리나라 관리주체별 자격 유형에 따른 현황(2010년 6월 기준)

	구분	종목 수	관련법	시행기관
국가 자격	국가기술자격	556개	국가기술자격법(노동부)	17개 부처(7개 기관)
	기타 국가자격	132개	개별사업법	22개 부처·청· 위원회(67개 기관)
민간 자격	공인민간자격	87개 ⁹⁾	자격기본법(교육부)	11개 부처(46개 기관)
	등록민간자격	1,250개	자격기본법(교육부)	440여 개 기관
	사업내자격	85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44개 사업체

주: 민간자격정보서비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국가기술자격검정안내서(한국산업인력공단, 2010), Q-net(한국산업인력공단, 2010).

주: 박종성 외(2010). 서비스 산업의 자격연구(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다음으로 국가기술자격, 개별법상의 국가자격, 민간자격에 따른 자격제도의 특징을 각각 살펴보았다. 첫째, 국가기술자격은 크게 기술·기능계 자격과 서비스 분야 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기술·기능계 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통상 5단계의 등급으로 나뉜다. 이들 자격은 정부 20여 개 소관부처청이 관장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고, 검정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분야 자격은 16개 종목의 기초사무와 18개 종목의 전문사무 분야로 구분된다. 이때 직종별로 1~3등급 범위 내에서 구성되며, 검정업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이동임 외, 2008).

둘째, 개별법상의 국가자격은 자격 관련 부·처·청 및 각종 위원회의 필요성에 의해 신설, 운영하고 있는 자격이다. 즉,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면허성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기술자격 이외에 22개 부·처·청 및 각종 위원회에서 66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자격을

9) 민간자격은 등록과정을 거친 후에 국가의 공인을 받아 공인민간자격화가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공인민간자격 87개'는 등록민간자격 종목 수 1,118개 안에 중복되어 있다.

말한다(이동임 외, 2008). 주무부처별로 <표 III-9>와 같이 개별법상의 국가자격 종목을 관장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32개 종목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토해양부(31개), 교육과학기술부(15개), 문화체육관광부(13개)순으로 자격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표 III-9> 주무부처별 국가자격의 종목 및 직종(2010년 6월 기준)

소관부처	종목 수	국가자격 명칭
국토해양부	31	감정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건축사(예비), 검량사, 검수사, 공인중개사, 교통안전관리자, 구명정수, 기관사, 도선사, 물류관리사, 사업용 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수산질병관리사, 운송용 조종사, 운항사, 의료관리자, 자가용 조종사, 주택관리사보, 철도차량운전면허, 택시운전자격, 통신사, 항공공장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 항해사, 화물운송종사자
해양경찰청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사
공정거래위원회	1	가맹거래사
교육과학기술부	15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 평생교육사,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면허(취급자)
관세청	2	관세사, 보세사
국세청	2	세무사, 주조사
금융위원회	4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계사, 손해사정사
노동부	4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농림수산식품부	6	가축인공수정사, 경매사, 농산물검사원, 농산물품질관리사, 수의사, 환지사
방송통신위원회	2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법무부	1	변호사
법원행정처	1	법무사
문화체육관광부	13	경기지도사, 경주선수, 경주심판,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무대예술전문인,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사서, 생활체육지도사,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문화재청	2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보건복지부	32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보건교사, 보건

소관부처	종목 수	국가자격 명칭
		교육사, 사회복지사1급, 안경사, 안마사, 약사, 영양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의무기록사, 의사, 의지·보조기기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조산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한의사
지식경제부	3	ISO14000 인증심사원, ISO9000 인증심사원, 유통관리사
중소기업청	2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특허청	1	변리사
행정안전부	1	행정사
경찰청	5	기계경비지도사, 일반경비지도사,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면허, 자동차운전전문강사
소방방재청	3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환경부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3급, 환경측정분석사(수질, 대기)
계	134	

주1: Q-net(한국산업인력공단, 2010)

주2: 여기서는 동일한 자격명칭을 사용하는 자격종목의 경우 다른 분야, 혹은 다른 등급일지라도 하나의 자격으로 취급함(예: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우 가공석공, 대목수, 도금공, 드잡이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동일한 자격명칭을 사용하므로 여기서는 하나의 종목으로 취급). 분야별 구체적인 국가자격은 [부록 4-6] 참조.

주3: 박종성 외(2010). 서비스 산업의 자격연구(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셋째, 민간자격은 국가자격이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민간자격은 1959년 주산, 부기, 타자 등 사무관리 분야에서 검정이 시작되어 오다가 1997년 자격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민간자격 종목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이동임 외, 2008). 이들 민간자격은 국가자격이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경영, 금융, 무역, 컴퓨터, 어학, 미용, 사회체육, 교양, 취미, 의료, 대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교육, 사회복지 분야와 스포츠, 건강분야, 컴퓨터 및 정보기술 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다(박종성 외, 2008). 소관부처별 국가공인을 신청한 민간자격 종목 수는 <표 III-10>과 같다.

<표 III-10> 소관부처별 국가공인 신청 민간자격 종목 수

(단위: 개)

사업년도 소관부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방송통신위원회	23	20	15	12	10	9	9	7	8	0	113
금융위원회	0	0	0	2	1	3	0	0	1	0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	0	0	0	0	0	1	1	0	0	2
공정거래위원회	0	0	0	0	0	0	1	0	0	0	1
기획재정부	11	6	6	3	3	2	4	1	1	0	37
교육과학기술부	31	25	21	20	10	27	21	14	20	12	201
법무부	4	2	1	3	2	0	1	0	0	0	13
행정안전부	1	2	3	1	0	0	0	0	0	0	7
문화체육관광부	25	4	4	4	8	10	10	9	10	12	96
농림수산식품부	1	0	0	1	0	1	1	1	0	2	7
지식경제부	5	1	6	8	5	6	6	9	14	11	71
보건복지부	73	32	25	25	11	31	28	18	9	9	261
고용노동부	31	16	12	11	5	0	1	1	1	1	79
국토해양부	5	4	4	12	6	1	1	3	4	2	42
환경부	0	0	0	1	0	0	0	0	0	0	1
조달청	1	0	1	0	0	0	0	0	0	0	2
소방방재청	0	0	0	0	0	2	1	1	3	0	7
경찰청	4	1	1	1	2	2	2	0	0	1	14
산림청	1	1	1	0	1	0	0	0	0	1	5
농촌진흥청	0	0	0	0	0	0	0	2	0	0	2
중소기업청	1	0	0	0	0	0	0	0	0	0	1
해양경찰청	0	0	2	2	2	0	0	0	0	1	7
미소관	0	0	0	0	0	2	0	0	1	4	7
신규공인 계	217	114	102	106	66	96	87	67	72	56	983
변경승인	-	3	2	1	1	4	2	7	7	8	35
재공인(연장승인)	-	-	6	6	7	23	15	17	12	12	98
총계	217	117	110	113	74	123	104	91	91	76	1,116

자료: 박종성(2009). 민간자격제도 현황과 과제, 포럼발표자료.

나. 보건복지 분야의 자격 특징

2010년 2월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살펴보면, 그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민간자격은 대다수가 순수 민간자격으로 개설되어 있다. <표 III-11>과 같이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자격은 9개의 국가기술자격, 32개의 개별법상의 국가자격 및 112개의 민간자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간자격의 경우,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자격은 보건·의료 분야의 1개 종목과 사회복지 분야의 2개 종목으로 총 3개(2.68%)에 불과한 반면, 순수 민간자격은 109개(97.32%)의 종목으로 집계되었다. 즉, 민간자격은 대다수가 순수민간자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현저히 낮게 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1> 국내 보건복지 분야 자격종목의 구분 및 규모(유사자격 포함)

서비스 분야	구분	국가기술자격	개별법의 자격	민간자격		합계
				공인	비공인	
보건복지 서비스	보건·의료	5	26	공인	1	66
				비공인	34	
			소계	35		
	사회복지	4	6	공인	2	86
				비공인	75	
			소계	77		
계		9(21.95%)	32(78.05%)	공인	3(2.68%)	152
		41 (100%)		비공인	109(97.32%)	
				소계	112(100%)	

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종목 데이터는 2010년 2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 및 자격 관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내외부 자료를 통합하여 적용한 것임.

주: 박종성 외(2010). 서비스 산업의 자격연구(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둘째,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자격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자격은 국가 자격이 많은 반면 사회복지의 자격은 대다수가 민간자격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자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의 국가자격을 더한 국가자격이 31개, 국가공인 민간자격과 순수 민간자격을 합한 민간자격이 35개인 반면,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는 국가자격이 10개, 민간자격이 77개로 집계되었다. 즉, 보건·의료 분야의 자격은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국가에서 지원, 관리하는 면허성의 자격이 많은 반면에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은 보건·의료 분야에 비해 민간 차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자격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다는 의미이다.

셋째, 보건복지 분야의 민간자격은 동일한 자격을 사설 교육기관이나 단체가 유사한 명칭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병원행정 분야의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자격은 10여 개 이상의 기관들이 유사한 자격명칭으로 등록하여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심리상담사’나 ‘베이비시터’ 등의 자격종목은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20여 개의 기관이 유사한 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사자격을 포함한 민간자격의 종목과 유사·중복된 민간자격의 종목을 제외한 분야별 종목 수를 비교한 결과, 민간자격의 유사한 자격명은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위 인기 있는 직업 자격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바 이들 자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엄격하게 자격에 대한 질 관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다. 보건복지 분야의 자격 종목 현황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자격종목을 직무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소분류상의 ‘의료기술 및 시설’, ‘병원행정’ 영역만을 제외하고는 국가자격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간병사나 언어치료사, 병원코디네이

터, 병원행정 및 보험 관련 업무 등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무의 자격은 민간자격이 존재하는 편이지만, 의학이나 약무 등 전문적 영역의 자격은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구체적인 직무별 자격은 <표 III-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I-12>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직무별 자격

중분류	소분류	자격분류	
		종목	자격구분
보건	의료기술 및 시설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국가기술자격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보건교육사, 안경사, 안마사, 영양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의료관리자, 의무기록사, 의지·보조기기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개별법의 국가자격
		간병사, (수상)인명구조, 언어발달(장애/재활)치료사, 자세교정사, 청각관리사, 청능사 등	민간자격
	병원행정	-	국가기술자격
		-	개별법의 국가자격
		병원경영관리자, 병원국제마케팅전문가,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병원행정사, 병원행정실무, 보험심사간호사, 의료보험사, 의료정보관리사 등	민간자격
약무	-	국가기술자격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사	개별법의 국가자격	
의료	간호	-	민간자격
		-	국가기술자격
		간호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간호사, 조산사	개별법의 국가자격
	임상의학	-	민간자격
		-	국가기술자격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개별법의 국가자격
		-	민간자격
		-	국가기술자격
기초의학	-	국가기술자격	
	-	개별법의	

중분류	소분류	자격분류	
		종목	자격구분
	입상지원	-	국가자격
		-	민간자격
		-	국가기술자격
		-	개별법의 국가자격
		-	민간자격
사회 복지	사회 보장	-	국가기술자격
		-	개별법의 국가자격
	사회 복지 서비스	건강보험사무관리사, 건강보험청구심사자격증, 보험심사 평가사, 사회보험사, 전문보험심사청구사	민간자격
		소비자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국가기술자격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개별법의 국가자격
		발달심리자격증, 발달장애상담사, 발달진단평가사, 수화 통역사, 재활레크리에이션전문가, 재활태권도전문가, 점 역교정사자격증, 특수교육경영사, 특수체육치료사, 베이 비시터,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아동발달상담사, 아동상담 사자격증, 유아비디오증후군 재활전문가, 유아아동레크 리에이션, 교정교화상담사, 노인복지체육, 노인복지레크 리에이션, 실버재활운동사, 가정행복설계사, 가족상담사,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 부모사랑양육사, 성폭력상담사, 학교폭력상담사, 도형상담사, 독서심리상담사, 미술심리 상담사, 상담심리사, 심리상담사, IDK심리상담사, 심리 분석사, 심리장애상담사, 심리재활전문가, 임상미술심리 사, 전문상담사, 리딩아트카운슬러, 스트레스관리사, 옷 음코디네이터, 사회복지모금전문가, 사회복지서비스관리사, 생활안전관리사, 자원봉사관리사, 행복컨설턴트, 호스피 스전문봉사자 등	민간자격

2. 의료법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이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들은 종별에 따른 임무를 각각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법제처, 2010). 종별에 따라 ①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②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③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④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妊婦), 해산부(解産婦), 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⑤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이들과 관련된 의료인의 자격, 의료행위의 법적 제한 및 의료인의 법적 의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가. 의료인의 자격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는데 종별에 따라 응시 자격과 면허 기준은 약간씩 다르며, 이를 정리하면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기준

관련 법조항	의료인의 응시 자격과 면허 기준
의료법 제5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나. 의료행위의 법적 제한

동법 제1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라고 규정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동법 제27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제한된다. 첫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①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이거나, ②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③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둘째,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법제처, 2010).

셋째,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영리 목적에 해당된다. 다만, ①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넷째, 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③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하는데,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② 제27조 제3항 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다. 의료인의 법적 의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의료인의 진료 의무이다.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즉,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의료인의 기록 의무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동법 제22조에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등'이라고 규정하였다.

셋째, 의료인의 비밀유지 의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전자의무기록'이라 하는데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법제처, 2010).

넷째, 의료인의 신고 의무이다. 제25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26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 운영실태

본 절에서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범위에 속하는 민간자격을 대상으로 자격종목의 현황 및 응시자격의 기준, 검정방법 및 합격

기준, 자격기관별 유형을 각각 조사하였다.

가. 현황

보건복지 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한 현황을 2010년 7월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총 112개의 민간자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pqi.or.kr>, 2010).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의 민간 자격은 35개 종목, 사회복지 분야의 민간자격은 77개의 종목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보건·의료 분야에 비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자격이 2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민간자격에는 동일한 자격을 기관 별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을 5개 기관들이 동일한 자격 명칭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심리상담사’ 자격을 6개 기관이 동일한 자격 명칭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표 III-14>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 현황

구분	민간자격	종목수
보건·의료	간병사(2), 기본인명구조원, 병원경영관리자, 병원경영컨설턴트, 병원 국제마케팅전문가, 병원서비스매니저,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4),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병원코디네이터 전문가 자격증, 병원코디네이터 (5), 병원코디네이터자격증(3), 병원행정사, 병원행정실무 코디네이터, 병원행정실무, 보험심사관리사, 보험심사평가사, 수상인명구조(2), 수상인명구조원, 의료보험사, 의료서비스코디네이터, 의료정보관리사, 자세교정사, 청각관리사, 청능사 등	35
사회복지	건강보험사무관리사, 건강보험청구심사자격증, 사회보험사, 전문보험심사청구사, 가정행복설계사, 가족상담사(2), 교정교회상담사,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 도형 상담사, 독서심리상담사(2), 미술심리상담사(5), 미술정서인지상담사, 발달심리자격증, 발달장애상담사, 발달진단평가사, 베이비시터(4), 부모사랑양육사, 사회복지모금전문가, 사회서비스	77

구분	민간자격	종목수
	관리사, 상담사, 상담심리사, 생활안전관리사, 성폭력상담사, 수화통역사, 실버재활운동사, 심리상담사(6), 심리상담사자격증, 심리운동재활교육사, 심리장애상담사, 심리재활전문가(2), 아동미술 심리상담사, 아동발달상담사(2), 아동발달전문가, 아동상담사자격증, 웃음코디네이터(3), 유아비디오증후군재활전문가, 인성·심리상담사자격증, 임상미술심리사, 요리심리상담사, 원예복지사, 자원봉사관리사, 재활레크리에이션, 재활레크리에이션전문가, 재활태권도전문가, 전문보험심사청구사, 전문상담사, 전문카운슬러 자격, 점역교정사자격증, 특수교육경영사, 특수체육치료사, 학교폭력상담사, 행복컨설턴트(2), 호스피스전문봉사자, IDK 심리상담사 등	

주: 2010년 6월 기준

나. 보건·의료 분야의 검정기관별 민간자격 현황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자격을 기관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자격은 하나의 자격(이하 단일자격)만을 운영하는 기관과 2개 이상의 자격(이하 복수 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최대 3개의 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주)유니드파트너스, (주)중앙 지식인력개발원]이 있었으며, 사회복지의 경우에는 최대 11개의 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주)국제MBPA과학본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기관들은 복수 자격을 운영하는 기관보다는 단일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은 65개인 반면, 복수 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은 단일 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의 약 1/4 수준인 16개로 나타났다.

셋째,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 종목은 복수 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에 비해 단일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보유한 자격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이 보유한 자격은 47개

에 비해 단일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이 보유한 자격은 65개로 나타났다.

넷째,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모두 복수자격을 운영하는 기관보다 단일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복수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은 7개로 나타난 것에 비해 단일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은 19개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에도 복수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은 9개로 나타난 것에 비해 단일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은 46개로 나타났다. 즉 분야에 관계없이 하나의 자격만을 운영하는 기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모두 단일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보유한 자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단일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총 19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고, 복수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총 16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에도 단일자격을 운영한 기관에서는 총 46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고, 복수자격을 운영한 기관에서는 총 31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검정기관별 민간자격의 종목별 현황과 자격 운영 현황은 <표 III-15>와 <표 III-16>과 같다.

<표 III-15>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검정기관별 민간자격의 종목별 현황

구분	기관명	자격명	종목 수
보건 · 의료	(사)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간병사	1
	(사)대한간호협회	보험심사관리사	1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병원행정사	2
		의료보험사	
	(사)대한수증협회	수상인명구조	1
	(사)전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1
	(사)한국EDI 정보관리협회	의료서비스코디네이터	1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간병사	2	

구분	기관명	자격명	종목 수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사)한국산업잡수기술인협회	수상인명구조	1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1
	(사)한국전문자격협회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1
	(사)한국체육지도자 총연합회	기본인명구조원	2
		수상인명구조원	
	(사)한국평생교육기구	자세교정사	1
	(주)세마그룹	병원코디네이터	2
		병원코디네이터자격증	
	(주)유니드파트너스	병원경영관리자	3
		병원경영컨설턴트	
		병원코디네이터	
	(주)이어로직코리아	청각관리사	1
	(주)중앙지식인력개발원	병원코디네이터	3
		병원코디네이터자격증	
		병원행정실무	
	(주)청능사자격검정원	청능사	1
	(주)코세아서비스개발원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1
	(주)한국보험심사평가사인증원	보험심사평가사	1
	대한병원코디네이터협회	병원코디네이터	1
	사단법인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병원서비스매니저	1
	한국병원코디네이터협회	병원코디네이터 전문가 자격증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병원국제마케팅전문가	1
	한국의료정보교육협회	의료정보관리사	1
	CSM아카데미평생교육원	병원코디네이터	2
		병원행정실무 코디네이터	
	hsguidance교육원	병원코디네이터자격증	1
	(사)국제민간자격전문협회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	1
	(사)국제MBPA학문진흥협회	심리재활전문가	2
		아동발달상담사	
	(사)기독교문화선교총회	성폭력상담사	2
		심리상담사	
	(사)다사랑건강가정복지협회	도형 상담사	1
	(사)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	표현예술상담사(EAC)	1
	(사)예성	아동상담사자격증	1

구분	기관명	자격명	종목 수
	(사)한국 EDI 정보관리협회	건강보험사무관리사	1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사	1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미술심리상담사	4
		베이비시터	
		상담사	
		심리상담사	
	(사)한국농아인협회	수화통역사	1
	(사)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베이비시터	2
		호스피스전문봉사자	
	(사)한국레크리에이션연합회	재활레크리에이션	1
	(사)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미술심리상담사	1
	(사)한국사회서비스산업협회	사회서비스관리사	1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
	(사)한국시각장애인협회	점역교정사자격증	1
	(사)한국심리상담학회	심리상담사자격증	1
	(사)한국심리학회	발달심리자격증	1
	(사)한국심리협회	발달진단평가사	1
	(사)한국심성교육개발원	가족상담사	4
		독서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사)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생활안전관리사	1
	(사)한국자원봉사협회	자원봉사관리사	1
	(사)한국전문자격협회	미술심리상담사	1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아동미술 심리상담사	1
	(재)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심리상담사	1
	(재)한국간호평가원	보험심사관리사	1
	(주)국제MBPA과학본부	발달장애상담사	11
		실버재활운동사	
		심리장애상담사	
		심리재활전문가	
		아동발달상담사	
		아동발달전문가	
		유아비디오중후군재활전문가	
		재활레크리에이션전문가	
		재활태권도전문가	
		특수교육경영사	
		특수체육치료사	

구분	기관명	자격명	종목 수
	(주)세마그룹	건강보험청구심사자격증	1
	(주)아이앤드디코리아	IDK 심리상담사	1
	(주)한국보험심사평가사인증원	보험심사평가사	1
	(주)한국자격개발원	베이비시터	1
	건국대학교	미술심리상담사	1
	대한웃음협회	행복컨설턴트	1
	대한자격개발검정원	베이비시터	1
	사회보험사협회	사회보험사	1
	사회복지법인인애복지재단	전문카운슬러 자격	1
	서서울생명의전화	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2
	세계독서치료학회	독서심리상담사	1
	영진사이버대학	심리상담사	1
	이엠사회서비스교육개발원	미술정서인지상담사 사회복지모금전문가	2
	평생교육진흥연구원	교정교화상담사	1
	학교폭력예방센터	학교폭력상담사	1
	한국노인대학복지연구원	부모사랑양육사	1
	한국보험청구심사협회	전문보험심사청구사	1
	한국사회교육개발원	인성·심리상담사자격증	1
	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	임상미술심리사	1
	한국아동재활교육협회	심리운동재활교육사	1
	한국아동요리지도자협회	요리심리상담사	1
	한국웃음치료사협회	행복컨설턴트	1
	한국웃음행복연구소	웃음코디네이터	1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원예복지사	1
	한국 행복웃음연구협회	웃음코디네이터	1
	한국 행복컨설턴트협회	웃음코디네이터 행복웃음코디네이터	2
	행복창조학교	가정행복설계사	1

주1: 2010년 6월 기준

<표 III-16> 보건복지 분야의 기관별 자격 운영 현황

(단위: 개)

분야	단일자격		복수자격	
	기관 수	자격종목	기관 수	자격종목
보건·의료	19	19	7	16

분야	단일자격		복수자격	
	기관 수	자격종목	기관 수	자격종목
사회복지	46	46	9	31
합계	65	65	16	47

주1: 2010년 6월 기준

다. 자격 종목별 응시자격 기준¹⁰⁾

보건복지 분야의 민간자격을 종목별로 응시자격을 살펴본 결과 크게 일곱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는 경우이고, 둘째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이고, 셋째는 특정 기관의 교육자나 수료자로 제한을 두는 경우이고, 넷째는 특정 학력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이고, 다섯째는 일정기간의 경력자나 전공자로 제한을 두는 경우이고, 여섯째는 특정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을 두는 경우이고, 일곱째는 기타로 제한을 두는 경우이다.

보건복지 분야의 자격 종목별 응시자격의 기준을 살펴본 결과 <표 III-17>과 같이 제한사항이 없거나 기타로 제한을 두는 경우(6.2%)는 거의 드물게 나타난 반면, 특정 학력 및 특정 교육자나 수료자로 제한하는 경우는 52.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특정 자격증소지자(16.6%), 경력이나 전공의 제한(14.7%), 나이 제한(9.7%)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학력(39.7%)에 가장 제한을 많이 두고 있었고, 다음으로 특정 기관의 교육자나 수료자(22.1%)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특정 기관의 교육자나 수료자(26.2%), 학력(23.0%)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0)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 종목별 응시자격 기준”은 본 연구보고서 부록 1 참조 바람.

<표 III-17> 보건복지 분야의 자격 종목별 응시자격 기준

(단위: 개, %)

제한사항	보건·의료	사회복지	합계
제한없음	2(2.9)	5(2.6)	7(2.7)
나이	9(13.2)	17(8.9)	25(9.7)
학력	27(39.7)	44(23.0)	72(27.8)
교육자, 수료자	15(22.1)	50(26.2)	65(25.1)
경력, 전공	10(14.7)	28(14.7)	38(14.7)
자격증소지자	3(4.4)	40(20.9)	43(16.6)
기타	2(2.9)	7(3.7)	9(3.5)
합계	68(100)	191(100)	259(100)

주1: 2010년 6월 기준임.

주2: 등급별 응시자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등급별로 수치를 환산하였음.

라. 자격 종목별 검정방법

민간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방법은 <표 III-18>과 같이 필기, 실기, 면접, 혼합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기와 실기, 필기와 면접, 필기와 실기와 면접을 모두 보는 혼합형이 50.89%로 가장 많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기와 실기시험(84.21%)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필기와 면접시험(10.53%), 필기와 실기와 면접시험(5.26%) 순으로 나타났다.

혼합형 다음으로 필기시험이 46.4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실기시험만으로 검정하는 자격은 보건 분야의 경우, 수상인명구조와 수상인명구종원의 자격증이 해당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사)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점역교정사자격증이 해당되어 단 한 개 종목만이 해당되어 1.30%에 불과했다.

분야별로 검정방법을 살펴본 결과 보건·의료 분야는 필기(51.43%), 혼합(42.86%)순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혼합(54.54%), 필기(44.16%), 실기(1.3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보건복지 분야의 자격 종목의 검정방법

(단위: 개, %)

구분		보건·의료		사회복지		전체
필기		18(51.43)		34(44.16)		52(46.43)
실기		2(5.71)		1(1.30)		3(2.68)
혼합	필기+실기		14 (93.34)		34 (80.95)	57(50.89)
	필기+면접	15 (42.86)	0 (0)	42 (54.54)	6 (14.29)	
	필기+실기+면접		1 (6.66)		2 (4.76)	
합계		35(100)		77(100)		112(100)

주1: 2010년 6월 기준임.

주2: 등급에 따라 검정방법에 차이가 있는 종목은 최하등급의 검정방법을 기준으로 수치를 산출함.

주3: 2010년 6월 기준임.

<표 III-19>는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 종목별 검정방법 예시를 제시한 것이다.

<표 III-19>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 종목별 검정방법 예시

분류	자격 종목	검정방법		
		필기	실기	면접
보건	간병사	○	○	-
보건	간병사	○	-	-
보건	기본인명구조원	○	○	-
보건	병원경영관리자	○	-	-
보건	병원경영컨설턴트	○	-	-
보건	병원국제마케팅전문가	○	○	-
보건	병원서비스매니저	○	○	-

분류	자격 종목	검정방법		
		필기	실기	면접
보건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	○	-
보건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	-	-
보건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	○	-
보건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	-	-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	-	-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전문가 자격증	○	○	○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	-	-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	○	-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	-	-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	-	-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	-	-
보건	병원코디네이터자격증	○	-	-
보건	병원코디네이터자격증	○	-	-
보건	병원코디네이터자격증	○	○	-
보건	병원행정사	○	○	-
보건	병원행정실무 코디네이터	○	-	-
보건	병원행정실무	○	-	-
보건	보험심사관리사	○	○	-
보건	보험심사평가사	○	○	-
보건	수상인명구조	○	○	-
보건	수상인명구조	-	○	-
보건	수상인명구조원	-	○	-
보건	의료보험사	○	-	-
보건	의료서비스코디네이터	○	-	-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	-	-
보건	자세교정사	○	○	-
보건	청각관리사	○	-	-
보건	청능사	○	○	-
사회보장	건강보험사무관리사	○	-	-
사회보장	건강보험청구심사자격증	○	○	-
사회보장	사회보험사	○	-	-
사회보장	전문보험심사청구사	○	○	-
사회복지	가정행복설계사	○	○	-
사회복지	가족상담사	○	-	-
사회복지	가족상담사	○	-	○
사회복지	교정교화상담사	○	-	-
사회복지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	○	○	-
사회복지	도형 상담사	○	-	○
사회복지	독서심리상담사	○	○	-

분류	자격 종목	검정방법		
		필기	실기	면접
사회복지	독서심리상담사	○	-	-
사회복지	미술심리상담사	○	-	-
사회복지	미술심리상담사	○	○	-
사회복지	미술심리상담사	○	○	-
사회복지	미술심리상담사	○	○	-
사회복지	미술심리상담사	○	-	-
사회복지	미술정서인지상담사	○	-	-
사회복지	발달심리자격증	○	○	-
사회복지	발달장애상담사	○	○	-
사회복지	발달진단평가사	○	○	○
사회복지	베이비시터	○	○	-
사회복지	베이비시터	○	-	-
사회복지	베이비시터	○	-	-
사회복지	베이비시터	○	○	-
사회복지	부모사랑양육사	○	-	-
사회복지	사회복지모금전문가	○	-	-
사회복지	사회서비스관리사	○	○	-
사회복지	상담사	○	-	-
사회복지	상담심리사	○	○	○
사회복지	생활안전관리사	○	-	-
사회복지	성폭력상담사	○	-	○
사회복지	수화통역사	○	○	-
사회복지	실버재활운동사	○	-	-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	-	○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	-	○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	-	-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	-	-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	○	-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	-	-
사회복지	심리상담사자격증	○	-	-
사회복지	심리상담사자격증	○	-	-
사회복지	심리운동재활교육사	○	○	-
사회복지	심리장애상담사	○	-	-
사회복지	심리재활전문가	○	-	-
사회복지	심리재활전문가	○	-	-
사회복지	아동미술심리상담사	○	○	-
사회복지	아동발달상담사	○	-	-
사회복지	아동발달상담사	○	-	-
사회복지	아동발달전문가	○	-	-

분류	자격 종목	검정방법		
		필기	실기	면접
사회복지	아동상담사자격증	○	-	-
사회복지	요리심리상담사	○	○	-
사회복지	웃음코디네이터	○	○	-
사회복지	웃음코디네이터	○	-	-
사회복지	웃음코디네이터	○	○	-
사회복지	원예복지사	○	○	-
사회복지	유아비디오증후군재활전문가	○	-	-
사회복지	인성·심리상담사자격증	○	-	-
사회복지	임상미술심리사	○	○	-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사	○	○	-
사회복지	재활레크리에이션	○	○	-
사회복지	재활레크리에이션전문가	○	-	-
사회복지	재활태권도전문가	○	-	-
사회복지	전문보험심사청구사	○	○	-
사회복지	전문상담사	○	-	○
사회복지	전문카운슬러 자격	○	○	-
사회복지	점역교정사자격증	-	○	-
사회복지	특수교육경영사	○	-	-
사회복지	특수체육치료사	○	○	-
사회복지	표현예술상담사	○	○	-
사회복지	학교폭력상담사	○	○	-
사회복지	행복웃음코디네이터	○	○	-
사회복지	행복컨설턴트	○	○	-
사회복지	행복컨설턴트	○	○	-
사회복지	호스피스전문봉사자	○	○	-
사회복지	IDK 심리상담사	○	○	-

주1: 2010년 6월 기준임.

마. 자격 종목별 합격기준

합격기준은 평균 6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이상으로 <표 III-20>과 같이 자격 종목별로 합격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었다(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 종목별 합격기준 예시'는 본 연구보고서 부록 2 참조 바람). 주목할 점은 최대 합격기준인 평균 80점 이상에서 분야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회복지 분야(2.20%)에 비해 보건의료 분야(10.26%)는

약 5배 이상이나 합격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III-20> 분야별 자격 종목의 합격기준

(단위: %)

구분	보건·의료	사회복지	전체
60점 이상	61.54	74.72	70.77
70점 이상	28.21	23.08	24.62
80점 이상	10.26	2.20	4.61
계	100	100	100

주1: 2010년 6월 기준임.

주2: 등급에 따라 합격기준에 차이가 있는 종목은 최하등급의 검정방법을 기준으로 수치를 산출함.

주3: 백분율로 환산하여 수치를 산출함.

바. 유형별 검정기관 실태

보건·의료 분야의 민간자격 관리자의 기관 현황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단법인, 임의단체, 대학 및 평생교육원, 주식회사, 특수법인, 재단법인, 개인 등 다양한 기관 및 단체에서 민간자격 검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관유형별 검정기관의 참여율을 살펴본 결과 <표 III-21>과 같이 사단법인(46.51%), 주식회사(19.77%), 임의단체(12.79%)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나 사회복지 분야에 관계없이 사단법인이나 임의단체에서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지만, 주식회사의 유형은 보건·의료(27.59%) 분야가 사회복지(15.79%) 분야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 기관 유형별 검정기관의 참여율

(단위: %)

구분	보건·의료	사회복지	전체
사단법인	44.83	47.37	46.51
주식회사	27.59	15.79	19.77
임의단체	13.78	14.04	12.79
대학 및 교육원	6.9	5.26	5.81
재단법인	6.9	5.26	5.81
개인	0	10.53	6.98
기타	0	1.75	2.33

주1: 2010년 6월 기준임.

4.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 금지분야 실태

가. 민간자격 금지분야의 법적 제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안전 등의 문제와 직결된 분야, 혹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에 대해서는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 운영함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자격기본법 제17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되는 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와 제19조 등에서는 국가자격 신설 및 민간검정 금지자격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민간참여 금지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표 III-22>의 범조항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2>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

관련 법령 및 조항	내용
자격기본법 제17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관련 법령 및 조항	내용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자격기본법 제11조 (국가자격 신설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국방·치안·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3.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4.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인된 민간자격(이하 ‘공인자격’이라 한다)과 동일한 명칭의 국가자격을 신설하지 못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 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3. 국가의 기간(基幹)·전략산업 유지·발전 및 신산업(‘산업발전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산업을 말한다)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4.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②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① 국가가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종목)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19와 같다. ☞ 별표 19: 기계제작기술사, 대기환경기사, 미용사 등 총 288개 자격종목

그러나 이처럼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서 민간자격의 신설이나 금지 등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민간자격 신설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나아가 서비스산업 및 IT분야 등의 세계적인 발전 추세를 따라가기 어렵고, 자격의 국제적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¹¹⁾ 이와 함께 자격기본법에서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 규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강제성이 없다. 이로 인하여 제한 종목의 자격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 사례¹²⁾도 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민간자격 금지종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민간자격 참여금지 유형 및 사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료(민간자격 정보서비스, 2010)에 의하면 민간자격의 참여금지 유형은 크게 ‘분야’ 전체를 제한하는 경우(이하 분야금지)와 ‘명칭’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경우(이하 명칭금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정부 부처별로 자격기본법이나 국가기술자격법, 개별법 등의 근거에 따라 기존의 국가자격과 배치(背馳)되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등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정하

11) '정보처리, 농업, 섬유분야'의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1조 ①의 1항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 ①의 2항에 근거하여 '안전분야'로 제한되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이들 분야의 자격은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여 경쟁력을 상실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상에서 '국가 외 검정금지종목에 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박중성 외, 2008).

12) 금지 대상 판정에 대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의 상담사례도 다수 발생(사례: 뚝요법사, 고려수지요법사, 흡수식냉방설비관리사, 건물종합관리사, 빌딩경영관리사, 스포츠마사지, 발관리사 등)하고 있다. 기업채권관리사(생산성본부)와 같은 경우에는 금감위소속협회(신용분석협회)에 전담시키기 위해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격은 공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경쟁업체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고 자율경쟁 체제가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서준호, 2004).

고 있다.

부처별 민간자격의 공인률과 금지종목 비율은 <표 III-23>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자격의 금지비율이 7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비해 국가공인 비율은 1.2%에 불과해 공인률 50% 이상을 기록하는 행정안전부나 조달청, 산림청 소관의 자격에 비하여 자격의 공인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종성, 2009).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격의 대부분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분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표 III-23> 부처별 민간자격의 공인률 및 금지종목 비율

(단위: 개, (%))

소관부처	신청종목 (a)	공인종목 (b)	공인률 (b/a)	금지종목 (c)	금지종목 비율(c/a)	순수 공인률 (b/(a-c))
방송통신위원회	113(12.2)	10(12.3)	8.8	0(0.0)	0.0	8.8
금융위원회	7(0.8)	2(2.5)	28.6	0(0.0)	0.0	28.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	0(0.0)	0.0	0(0.0)	0.0	0.0
공정거래위원회	1(0.1)	0(0.0)	0.0	0(0.0)	0.0	0.0
기획재정부	37(4.0)	7(8.6)	18.9	2(0.9)	5.4	20.0
교육과학기술부	189(20.4)	20(24.7)	10.6	1(0.4)	0.5	10.6
법무부	13(1.4)	0(0.0)	0.0	7(3.1)	53.8	0.0
행정안전부	7(0.8)	4(4.9)	57.1	1(0.4)	14.3	66.7
문화체육관광부	84(9.1)	5(6.2)	6.0	1(0.4)	1.2	6.0
농림수산식품부	5(0.5)	0(0.0)	0.0	1(0.4)	20.0	0.0
지식경제부	60(6.5)	11(13.6)	18.3	2(0.9)	3.3	19.0
보건복지부	252(27.2)	3(3.7)	1.2	169(74.1)	67.1	3.6
노동부	78(8.4)	14(17.3)	17.9	22(9.6)	28.2	25.0
국토해양부	40(4.3)	0(0.0)	0.0	22(9.6)	55.0	0.0
환경부	1(0.1)	0(0.0)	0.0	0(0.0)	0.0	0.0
조달청	2(0.2)	1(1.2)	50.0	0(0.0)	0.0	50.0

소관부처	신청종목 (a)	공인종목 (b)	공인률 (b/a)	금지종목 (c)	금지종목 비율(c/a)	순수 공인률 (b/(a-c))
소방방재청	7(0.8)	0(0.0)	0.0	0(0.0)	0.0	0.0
경찰청	13(1.4)	2(2.5)	15.4	0(0.0)	0.0	15.4
산림청	4(0.4)	2(2.5)	50.0	0(0.0)	0.0	50.0
농촌진흥청	2(0.2)	0(0.0)	0.0	0(0.0)	0.0	0.0
중소기업청	1(0.1)	0(0.0)	0.0	0(0.0)	0.0	0.0
해양경찰청	6(0.6)	0(0.0)	0.0	0(0.0)	0.0	0.0
미소관	3(0.3)	0(0.0)	0.0	0(0.0)	0.0	0.0
합 계	927	81	8.7	228	24.6	11.6

자료: 박종성(2009). 민간자격제도 현황과 문제, 포럼발표자료

특히, 이 가운데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금지종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모두 ‘분야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의 자격 신설 및 참여를 금하고 있다.

우선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첫째,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안마사 등’에 대하여 면허소지자 이외의 민간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치료’나 ‘요법’, ‘테라피’ 등의 직무도 모두 유사의료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로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되고 있다. 둘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종목, 즉 ‘약, 한약에 대한 제조, 투약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격종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규제에 의하여 민간의 참여가 제한된다.

한편,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여 ‘노인복지와 장애인 수발, 병간호 등의 직무 분야’에 대하여 민간에서 자격신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은 복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민간자격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민간자격 참여제한 유형별 사례는 <표 III-24>와 같다.

<표 III-2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민간자격 참여제한 유형별 사례

분야	관계부처	금지유형	금지사례	부처의견	근거	비고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분야금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안마사 등 의료법상 해당 면허의 소지자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및 유사 의료행위를 포함한 자격분야	면허소지자 외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치료’, ‘요법’, ‘테라피’ 등의 직무도 유사 의료행위에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청	분야금지	약, 한약에 대한 제조, 투약, 품질관리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여야 함.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
사회복지	보건복지부	분야금지	노인복지 사회 복지 등 노인 및 장애인의 수발, 병간호 등을 직무로 하는 자격분야	사회복지사와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란 우려, 특히 노인수발, 병간호 등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관련있음.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노인 대상 체육활동(댄스, 스포츠 등)은 노인복지와 관련없는 것으로 민간자격 운영 가능

5. 민간자격 참여금지의 해제 관련 추진사항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관련 자격종목의 민간참여가 금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자격이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언어치료사’나 ‘음악치료사’ 등의 자격종목은 발생 초기에는 ‘치료사’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07년부터 소관부처에서 ‘치료’라는 용어사용을 금하고 있어 이미 운영되던 민간자

격 명칭에서 ‘치료’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자격을 운영하던 민간기관들은 치료라는 용어 대신 상담사나 지도사 등으로 자격명칭을 바꾸어 검정, 관리하고 있다. 예컨대 ‘언어치료사’의 경우 언어 재활지도사나 언어발달교육사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미술치료사’의 경우도 미술심리상담사나 미술심리지도사 등의 명칭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자격 중 ‘치료사’나 ‘심리사’ 등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자격 중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뿐이며, 민간자격 중에는 ‘특수체육치료사’가 유일하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1974년부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검정을 실시하여 왔으며, 임상치료사 역시 2003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 운영해 오고 있다. 민간자격인 특수체육치료사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유아의 발달이나 심리재활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으로 2008년 신설되어 치료사라는 명칭으로 운영 중이다. 이 외의 자격종목에는 ‘치료사’나 ‘요법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고령화, 서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언어, 발달, 적응장애, 비만, 심리치료 등 ‘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치료서비스 영역에 대한 민간자격 금지분야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6. 민간자격 참여금지 해제 관련 사례: 치료서비스업

본 연구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민간자격 참여금지 영역 중 ‘치료서비스업’ 관련 자격에 대한 논의를 사례로 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치료서비스 분야의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격종목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이 있는데, 이 중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1974년부터 연 1회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자격시험을 검증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또 임상심리사는 국가기술자격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검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2급은 200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제1급은 2009년부터 시험을 시행, 자격을 발급하고 있다. 2007년 10월을 기준으로 물리치료사는 30,428명, 작업치료사는 2,846명, 임상심리사 2급은 278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표 III-25> 치료서비스 분야의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현황

구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제1·2급
자격의 구분	국가자격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기관	보건복지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보건복지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정연혁	1974년부터 연 1회	1974년부터 연 1회	2003년부터 연 1회
발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0,428명 (1907.10) • 1905년:2,490명 • 1906년:2,426명 • 1907년:2,41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846명 (1907.10) • 1905년:500명 • 1906년:606명 • 1907년:59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78명 ('07.10) • 2003년:73명 • 2004년:48명 • 2005년:77명 • 2006년:80명

자료: 보건복지부 '일자리창출을 위한 치료서비스 자격 체계화' T/F회의자료(2007).

한편,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영역에서 치료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은 크게 ① 언어장애(언어, 청각치료), ② 적응장애(놀이, 원예, 음악, 미술, 예술, 웃음치료), ③ 운동장애(운동, 비만치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언어치료 관련 자격은 1997년부터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와 (사)전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등 2개 기관에서 실시되어 오다가 치료서비스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언어치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때문에 언어치료영역의 자격은 언어재활이나 언어발달 등의 명칭으로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어 운영되거나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언어장

에전문가 과정'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청능사는 2002년 처음 시행되어 2003년 한국언어청능치료전문가협회가 한국청각협회와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로 분리되면서 각각 청능사와 언어치료사 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어 왔다. 현재 청능사 자격은 2008년 (주)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민간자격으로 등록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언어치료의 경우 언어치료라는 용어 대신 언어재활지도사, 언어발달교육사, 언어발달장애지도사 등의 명칭으로 다수의 민간기관이 자격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청각협회에서는 청능사 자격을 관리, 운영 중에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2010).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언어치료자는 총 4,001명이며, 청능사는 659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등 적응장애 치료관련 자격들의 경우 (사)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등에서 발급하던 치료서비스 자격을 2004년 모두 폐지하고, 명칭을 '00심리지도사' 등으로 바꾸어 발급하고 있다. 2007년 10월 기준으로 치료 관련 자격의 총 취득자 수는 약 15,0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7). 적응장애 관련 자격으로는 놀이치료사와 원예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예술치료사, 웃음치료사 등의 자격이 존재하였는데, 현재는 치료사라는 용어 대신 발달놀이교육사, 유아놀이교육사, 원예복지사, 음악심리지도사, 미술재활지도사, 미술심리상담사, 표현예술상담사(EAC), 웃음지도사, 웃음코디네이터 등의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미술치료사·음악치료사·놀이치료사 자격이 치료라는 용어 사용으로 민간자격으로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가 치료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경정신과 의사의 영역일 수 있으나 음악 및 미술 등을 통한 치료는 또다른 직무영역으로 별도의 자격으로 신설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사회적인 수요가 있는 자격은 언어

치료사처럼 국가 자격화를 추진하거나 민간자격으로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치료에 대한 용어사용 금지를 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7. 시사점

본 절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의 자격을 분석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 자격 종목 실태와 자격의 관련법 및 민간자격 금지분야 실태에 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 분야의 자격은 국가 자격이 많은 반면 사회복지의 자격은 대다수가 민간자격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 분야의 민간자격은 대다수가 순수민간자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사설 교육기관이나 단체들이 보건복지 분야의 민간자격을 유사한 명칭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학이나 약무 등 전문적인 영역의 자격들은 국가에서 법적 규제, 관리가 엄격하다는 의미이다.

둘째, 보건복지 분야의 민간자격 금지분야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되는 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자격 신설 및 민간검정 금지자격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법적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자격의 참여금지 유형은 분야 전체를 제한하는 경우와 명칭사용에 제한을 두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보건복지 분야의 자격은 분야금지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 신설 및 참여를 금하고 있다. 그중 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높은 수요와 관심으로 민간자격 금지분야를 해제한다는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보건복지 분야의 자격제도는 영역과 자격 유형에 따른 법이 엄격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국가자격에 비해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은 매우 엄격하다. 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치료라

는 용어사용은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치료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며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치료는 신경정신과의 영역일 수 있으나 음악이나 미술 등을 통한 치료는 또 다른 직무영역으로 별도의 자격으로 신설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등의 자격은 언어치료사처럼 국가자격화를 추진하던지 민간자격으로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치료에 대한 용어 사용 금지를 푸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보건복지 분야 자격의 문제점¹³⁾

1.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가. 민간자격 금지분야 설정 문제

보건·의료 분야의 민간자격은 현재 ‘치료’나 ‘요법’, ‘테라피’ 등의 직무를 모두 유사의료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로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되고 있다. 자격명이나 직무 내용에 ‘치료’, ‘요법’, ‘테라피’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의료법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정하고 있다.

예시) 유사 의료행위 제한 사례(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심리치료사, 장애인치료사 등)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업무중복

13) 본 내용은 박종성 박사가 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과제 ‘서비스산업의 자격연구 (I)—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를 재인용한 것임.

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여 ‘노인복지와 장애인 수발, 병간호 등의 직무 분야’에 대하여 민간에서 자격신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예시) 사회복지사 업무와 중복으로 인한 제한(케어복지사, 개인복지사, 노인복지사, 노인심리상담사 등), 이·미용사 업무와 중복으로 인한 제한(네일아티스트, 메이크업아티스트, 퍼머넌트메이크업 등)

그러나 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의 자격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자격신설의 규제나 제한이 심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분야로 제한되고 있는 자격이 외국에는 존재하고 있다.

예시) 미국 - 언어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 행동치료사, 예술치료사, 레크리에이션치료사 등
캐나다 -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행동치료, 청능치료 등
호주 -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청능치료 등
프랑스 - 언어치료, 놀이치료, 예술치료, 청능치료 등
독일 -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청능치료 등
영국 -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예술치료, 청능치료 등
일본 -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행동치료, 예술치료, 청능치료 등

우리나라는 관련분야 국가자격도 없으면서 치료 분야를 민간자격 금지분야로 설정하여 과잉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민간자격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

격기본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부처의 제한 기준에 대한 적용이 포괄적이고 다양하여 각종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시) '재활' 분야의 경우 2008년에는 제한분야가 아니었으나 2010년부터는 제한분야로 판단하고 있고, 반대로 간병사의 경우 2008년에는 제한분야로 판단했다가 2009년 2차부터 제한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등 행정공무원의 재량에 의한 정책차원에서의 규제와 완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민간자격 금지분야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시장에서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등의 자격종목 등이 요구되고 있었으나 부처의 치료 명칭 사용규제로 인하여 그동안 민간자격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예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아동 재활 치료 서비스' 사업에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으로 등록된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자격증을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명시하였으나, 현재 치료용어를 사용하는 자격은 등록되지 못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제도의 모순(치료서비스사업에서는 등록된 치료자격 활용근거 있으나 실제 치료자격 등록 금지임.)이 발생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을 받은 치료관련 자격을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관련법에 제정되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치료' 용어사용을 민간자격종목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 민간자격 국가공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등록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예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5월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중 치료지원과 관련된 ‘제28조 (치료지원 등) ① 치료지원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치료, 심리·행동치료 등을 포함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의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자로 채용, 배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나. 자격종목 간 직무영역 마찰 및 포괄적 직무범위로 인한 문제

보건·의료 분야의 일부 자격종목은 포괄적 직무범위로 인하여 자격종목간 직무영역에 대한 마찰을 겪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체와 학계, 협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66.0%)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예시) 한의사-한약조제사-약사의 관계, 혹은 안과의사-안경사, 정형외과 의사와 물리치료사 등의 관계

보건의료 분야의 자격은 면허범위로 자격종목 간 이해관계가 다름으로 인해 마찰 발생 소지가 많다.

예시) 한약분쟁 및 의약분업분쟁의 이익집단 간의 갈등 사례, 대체의학 금지 합헌

다. 시장에서 민간자격의 질관리 문제

자격검정에 따른 등급 기준(교육수준, 응시요건, 시험과목 등)의 차이로 인해 자격시장에서 질관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현장에서의 자격적용 및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치료분야의 민간자격은 자격종목의 직무수행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응시자격을 설정하고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자격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분야별 자격종목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자격 등급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개별 자격종목별 문제점

보건·의료 분야 자격은 66개 종목, 사회복지 분야 자격은 87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 크게 문제가 되는 자격종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위생사 및 보건교육사 등 일부자격은 타 국가 자격에 비해 취업가능성, 고용안정성, 직무의 전문성이 낮다. 건강가정사, 요양보호사, 재활관련 자격, 복지보험관련 자격, 발달장애관련 자격, 심리상담관련 자격, 사회복지사 제2·3급 자격 등이 3.0(보통)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5점 리커트 척도). 따라서 위에 제시된 민간자격 등에 대한 전문가 협의회 및 면담조사를 통하여 문제원인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가. 위생사

임상병리사 및 영양사 시험: 해당 학과(임상병리학, 식품영양학) 졸업한자만 응시가능

위생사 시험: 학과 구분 없이 한 과목만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인력배출이 과잉되고 있다. 따라서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관련법의 활용성이 부족하여 취업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나. 보건교육사

신설된 국가자격으로 자격의 활용을 관련법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이다.

다. 건강가정사

과정 이수형 자격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종목과 중복되어 기존 사회복지사 자격과의 차별화가 부족하다.

라. 영양보호사

자격시험의 변별력문제 자격종목의 전문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등급 간의 차별화가 부족하다. 발달장애관련 및 재활관련 자격(발달장애상담사, 언어재활,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미등록 민간자격이 노동시장에서 활용되는데 특히 법적인 규제로 인하여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격을 등록(예: 언어장애상담사 등)하고 있으며, 분야별 인력요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마. 심리상담관련 자격(심리상담사 등)

자격검정 기관이 다양하고 운영기관별로 응시자격, 시험과목, 출제기준, 검정과목 등이 상이하여 민간자격에 대한 질관리에 문제가 있다.

바. 복지보험관련 자격(보험심사평가사 등)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보험 청구관련 업무를 비전문가들이 수행하고 있

고, 일부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들이 수행하는 있는 실정이다.

사. 사회복지사 제2·3급

과정 이수형 자격으로 자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제3급은 노동시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취업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제2급은 제1급에 비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일부에서는 ‘제1·2급 통합’ 의견과 2급을 존치할 경우 검정형 이수 자격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제4절 보건복지 분야 자격의 개선방향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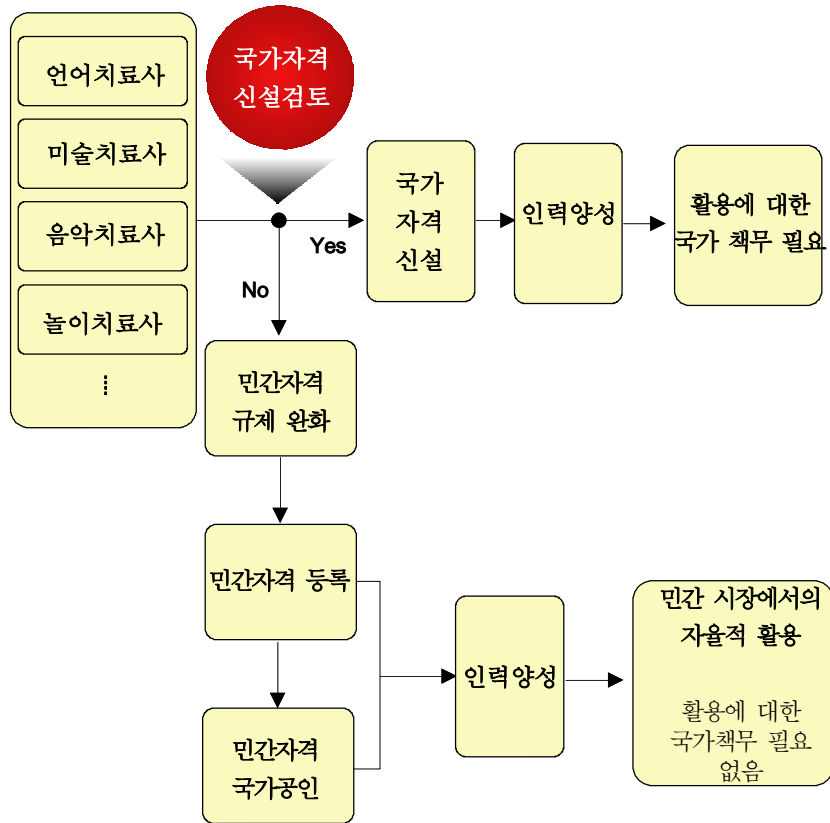
1.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향

가. 민간자격 금지분야 규제 완화 필요

보건·의료 분야의 민간자격은 유사 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로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나 대법원은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유형이라 할지라도 ‘구체적 위험성’이 없다면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언어치료사는 국가자격을 추진하고 있으나 언어치료사 이외의 치료 자격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그림 III-1] 참조).

14) 본 내용은 박종성 박사가 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과제 ‘서비스 산업의 자격연구 (I)—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를 재인용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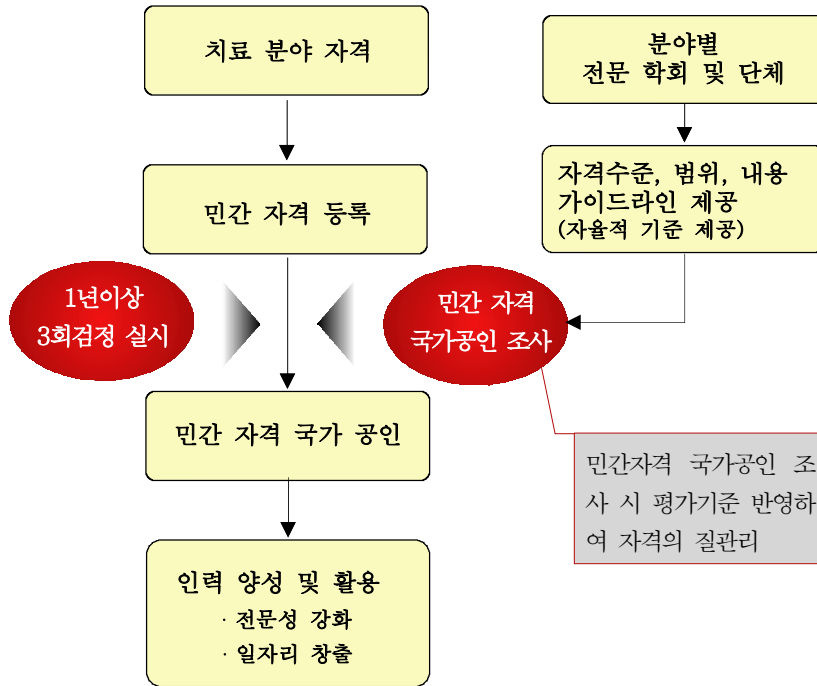
[그림 III-1] 치료 관련 자격의 개선방향



[그림 III-1] 은 치료 관련 자격제도의 개선방향을 설명한 것이다. 국가자격 신설은 자격의 공신력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향후 국가자격 취득자들에 대한 활용을 정부차원에서 일정부분 책임져야 하는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등록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 분야별 학회 및 협회, 단체 등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민간자격을 운영한다면 민간자격종목 및 검정기관 난립을 줄임으로써 민간자격 시장의 질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림 III-2] 는 치료

분야 자격의 민간자격 등록 운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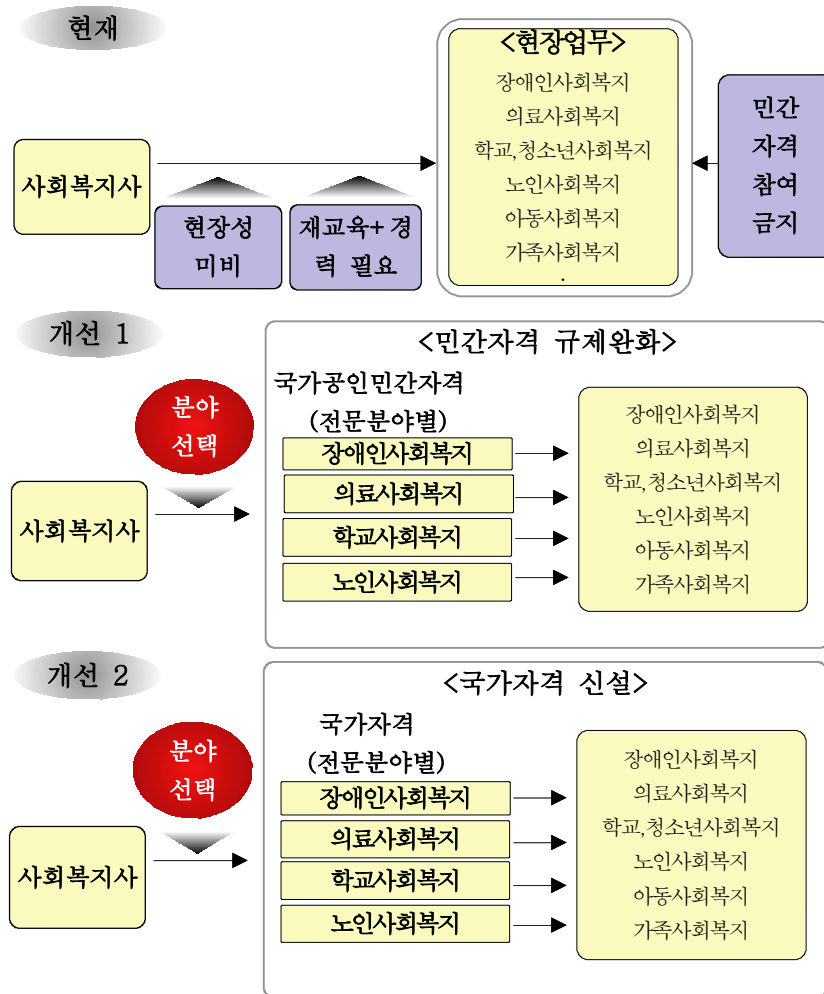
[그림 III-2] 치료 분야 자격의 민간자격 등록 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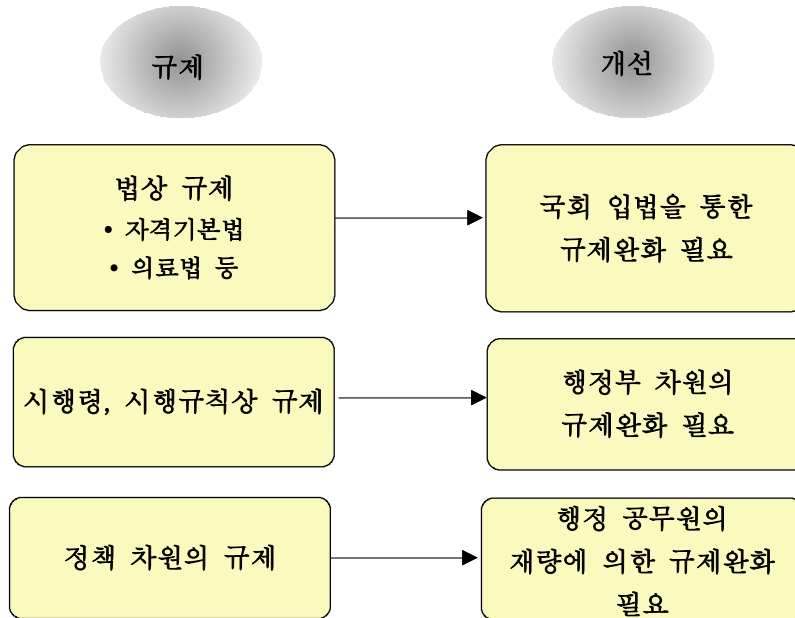
[그림 III-3] 은 사회복지 분야 자격(사회복지사)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여 ‘노인복지와 장애인 수발, 병간호 등의 직무분야’에 대하여 민간에서 자격신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업무영역과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민간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의 다양한 영역에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새로 교육을 배우고 경력을 쌓아서 각 전문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의 직무영역이라고 해서

민간자격 금지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판단된다([그림 III-3] 참조).

[그림 III-3] 사회복지 분야 자격의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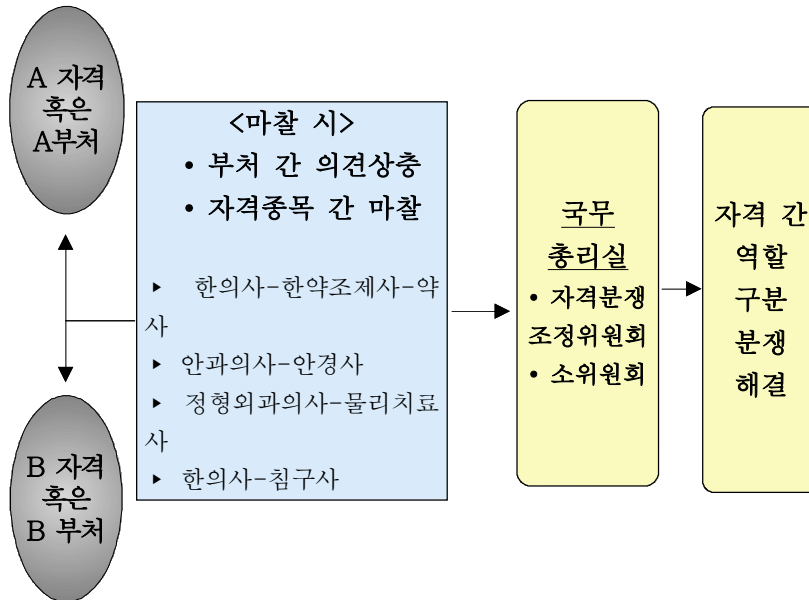
[그림 III-4] 민간자격 규제의 개선방향



나. 자격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필요

보건·의료 분야의 자격은 대부분 면허성 자격으로 자격종목 간 직무 영역 마찰이 나타나고 있다. 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자격정책심의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부처 간의 갈등 조종 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국무총리실 안에 비상설기구인 자격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자격 간 마찰, 영역 다툼 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5] 자격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다. 민간자격 시장의 질 관리

민간자격의 경우는 동일한 성격 혹은 동일한 명칭의 자격일지라도 관리·운영하는 기관에 따라 자격의 등급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이는 직무내용이나 검정과목, 응시자격 자체가 다르게 규정되는 경우로 이어져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며, 유사한 자격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자격 취득 후 현장에서 자격의 적용 및 활용을 저해하는 부작용 등이 나타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과 검정수준의 난이도가 필요한 전문분야(치료 등)의 자격을 일부 민간자격 관리자들은 임의적으로 응시자격을 설정하고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자격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문분야별 자격종목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자격의 등급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개별 자격 종목별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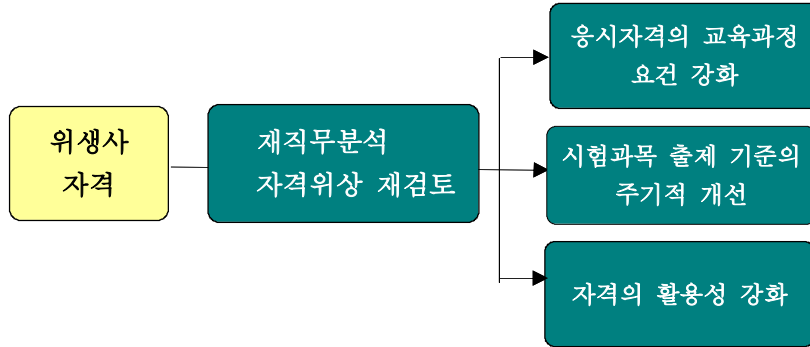
개별 자격 종목별 측면의 개선방향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자격은 66개 종목,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은 87개 종목 중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자격 종목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¹⁵⁾ 다음은 위생사, 보건교육사, 건강가정사, 영양보호사, 발달 장애관련 및 재활관련 자격, 심리관련 자격, 복지보험관련 자격, 사회복지사 2·3급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가. 위생사

위생사 자격은 응시자격 및 활용성에 문제가 있다. 현재의 자격보다 보다 전문성 있는 자격종목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III-6] 참조).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한 과목 이수 요건을 확대하고 전국의 지역보건소 등에서 위생사 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 구체적인 내용은 박종성 외(2010). '서비스산업의 자격연구(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참조바람.

[그림 III-6] 위생사 자격의 개선방향



나. 보건교육사

보건교육사 자격은 국가자격으로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관련법의 활용여부 등이 반영되지 못하여 취업가능성, 고용안정성, 직무 전문성 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그림 III-7] 참조).

[그림 III-7] 보건교육사 자격의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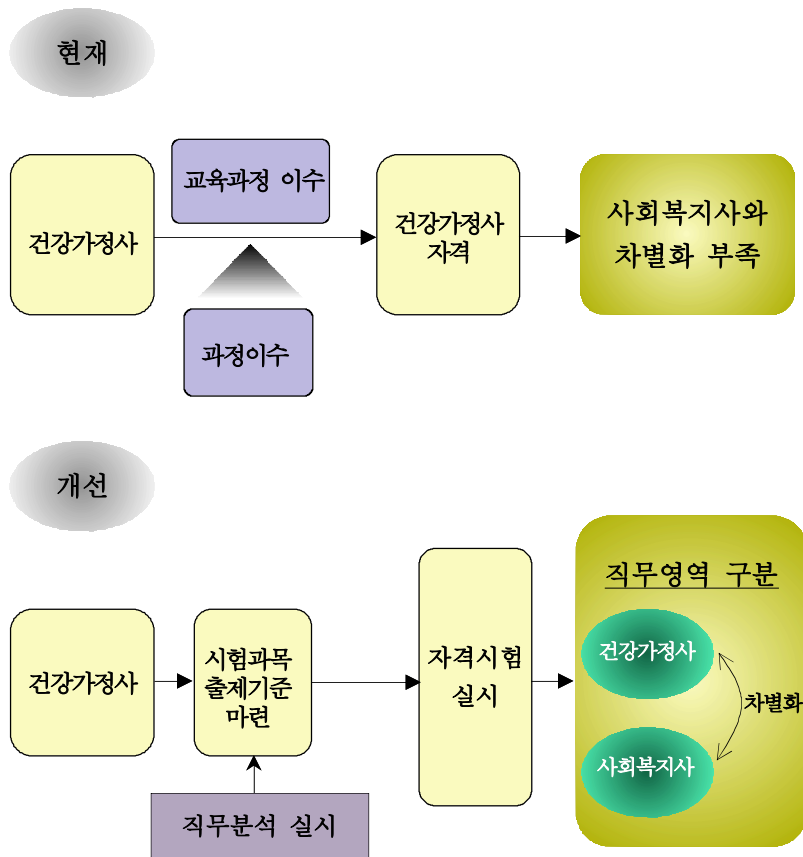


다. 건강가정사

이수형 자격으로 자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며, 이수교과목 내용에

사회복지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복지사 자격과도 중복되고 있다([그림 III-8] 참조). 검정을 실시하는 자격 형태의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복지사 자격과의 차별성을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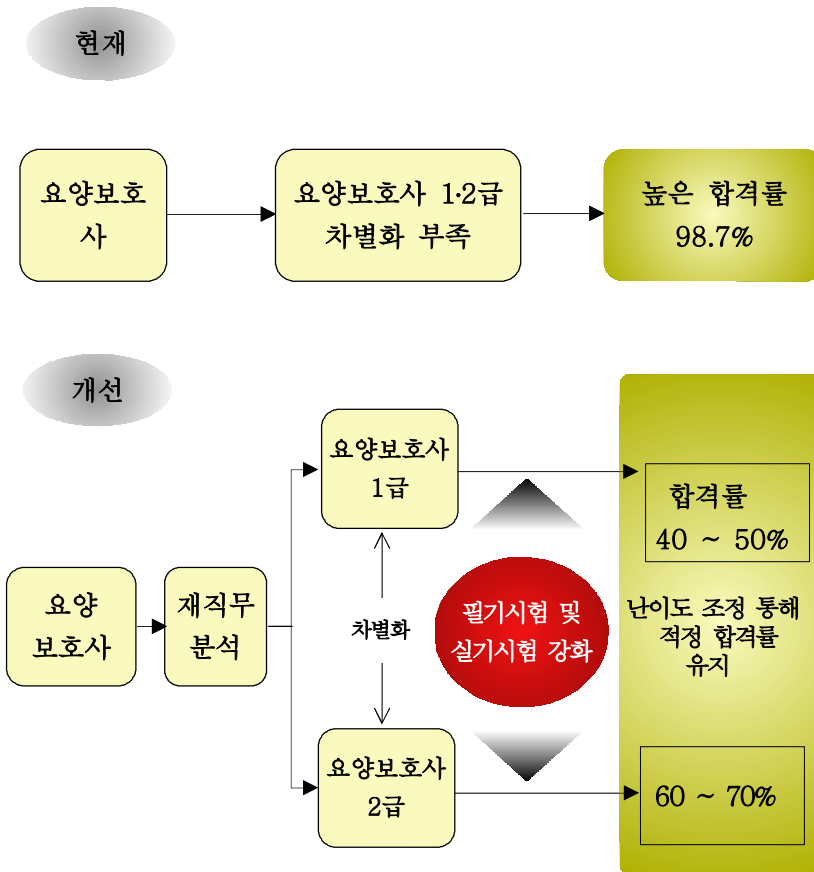
[그림III-8] 건강가정사 자격의 개선방향



라.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은 자격시험의 변별력문제 자격종목의 전문성 문제 및 요양보호사 1·2급간의 차별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그림 III-9] 참조). 자격검정 시험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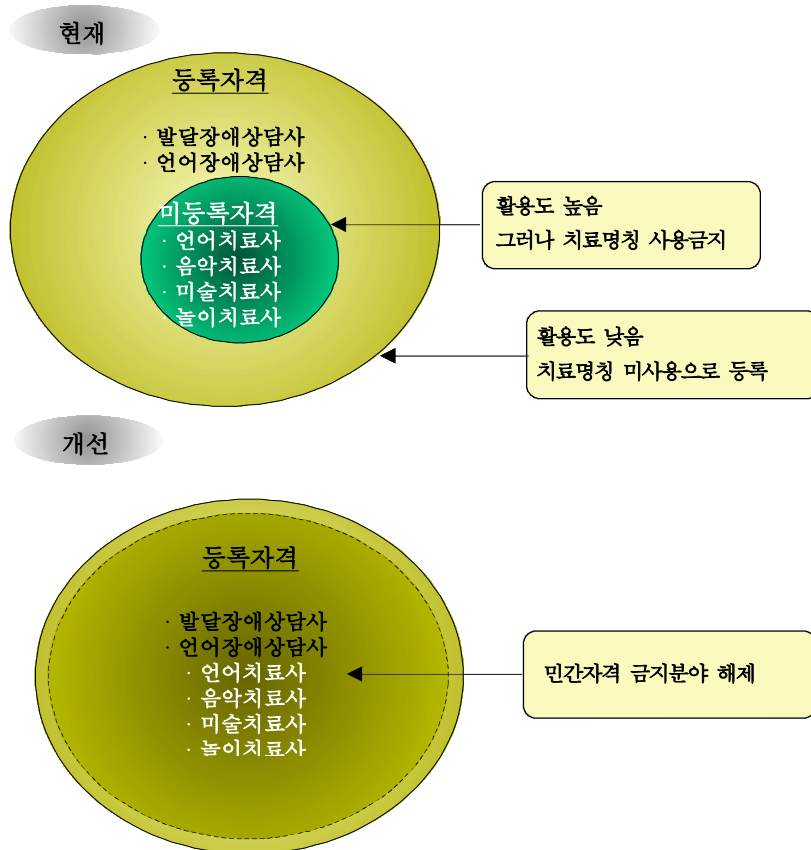
[그림 III-9] 요양보호사 자격의 개선방향



마. 발달장애 관련 및 재활 관련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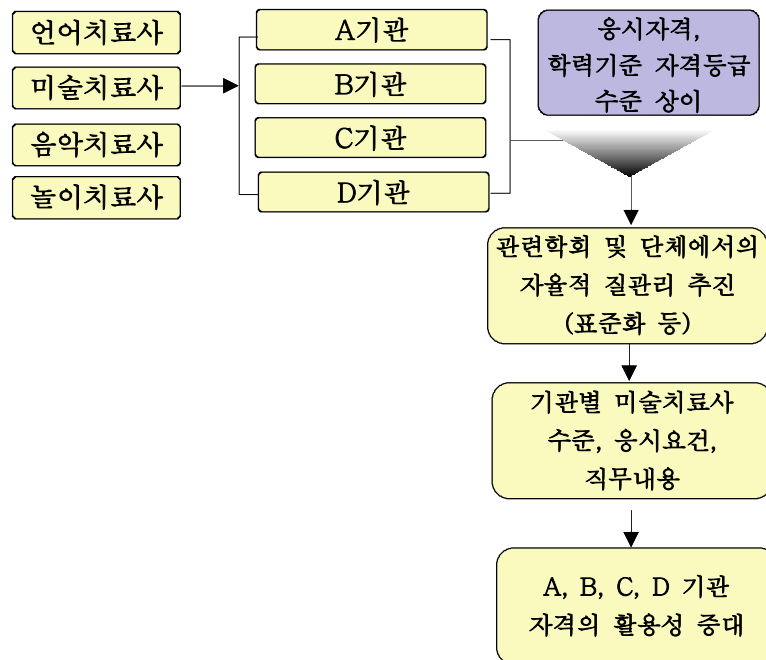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민간자격이 노동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 자격 등은 시장에서 필요한데 법적인 규제로 인하여 민간자격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여러 단체에서 민간자격을 운영하다 보니 분야별 인력요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그림 III-10] 참조 및 [그림 III-11] 참조).

[그림 III-10] 치료 분야 민간자격 금지분야 해제



민간자격 규제 완화를 통하여 치료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자격으로 사용이 어렵다면 국가자격으로의 자격신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자격으로 유지되더라도 관련 학회 단체 등에서 자율적 기준(응시자격, 관련전공 기준, 교육내용 등)을 제시하여 민간자격 국가공인 시 분야별 기준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III-11] 치료 분야 민간자격을 질관리 방향



바. 심리상담 관련 자격

자격검정 기관이 다양하고 운영기관별로 응시자격, 시험과목, 출제기준, 검정과목 등이 상이하야 민간자격에 대한 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 있다. 민간자격 관련 학회 단체 등에서 자율적 기준(응시자격, 관련전공 기준, 교육내용 등)등을 제시하여 이 분야의 자격운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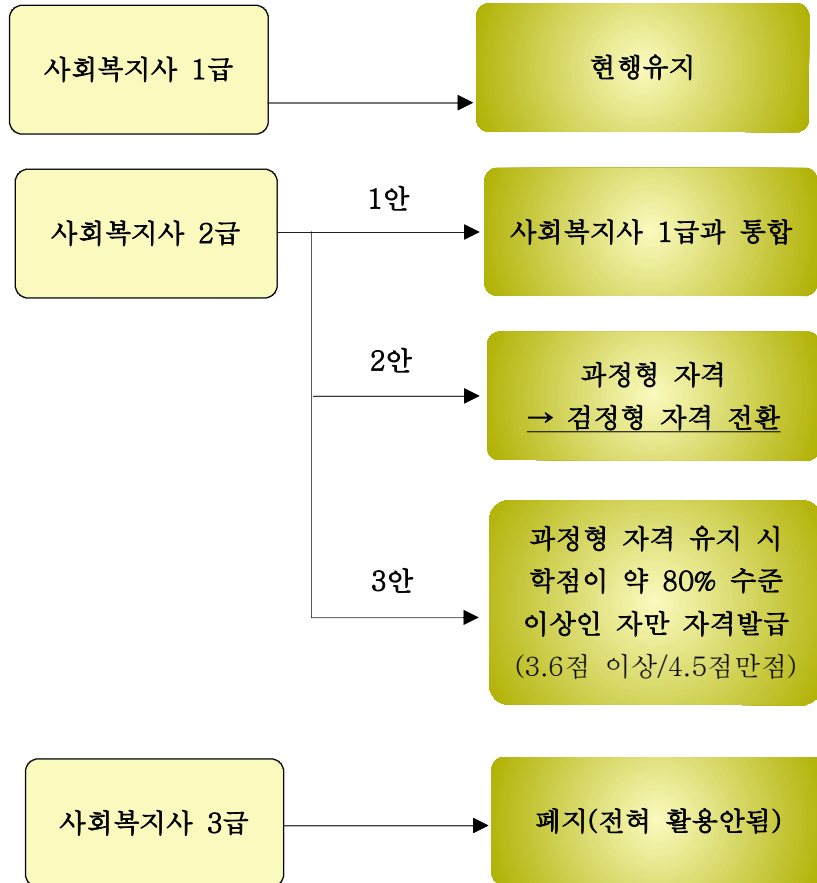
사. 복지보험 관련 자격

보험 청구관련 업무를 준전문가나 비전문가들이 수행하고 있고 일부는 간호사 자격취득자들(준전문인력)이 수행하는 있는 실정인데(대략 7만명 정도가 보험청구 업무 수행), 복지보험관련 대부분의 자격이 시험과목 등에 건강보험 청구 방법 등의 포함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자격의 활용성을 부족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자격검정시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준 전문인력 및 비전문인력을 전문인력으로 교체해 나간다면 자격의 활용성 등이 강화될 것이다.

아. 사회복지사 2·3급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자격을 발급하고 있어, 자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며, 특히 3급은 노동시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취업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다([그림 III-12] 참조). 3급의 자격은 사회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2급을 존치할 경우 과정형 이수자격에서 시험을 보는 검정형 자격으로 전환이 필요하나 과정형 유지가 필요하다면 자격의 질관리를 위하여 약 3.6~4.5 점(80%) 이상인 자만을 대상으로 자격을 발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III-12] 사회복지사 자격의 개선방향



3. 향후 보건복지 분야 자격제도 신설 방향

박종성 외(2010)는 국내의 자격현황을 살펴본 후 신설 가능한 자격증 현황을 살펴보고 신설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유망직업 선정 기준, 국가기술 자격선정 기준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의 연구진 협의회와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자격 신설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네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서비스 요구도(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국민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정도), 둘째, 직무전문성(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의 고유성 정도), 셋째, 능력인정 필요성(전문성 보유정도를 평가하여 인정할 필요성), 넷째, 일자리가능성(해당 직업분야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정도(취업·창업 포함) 등이다.

이러한 신설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보건·의료 분야 신설자격 20개 선정, 사회복지 분야 신설자격 14개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총 35개 자격은 전문가 협의회에서 모두 신설이 필요한 자격종목으로 결정되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84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신설자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문항 평균 3.5점 이상을 받은 자격종목은 언어치료사 자격이고, 3.0점 이상~3.5점미만의 점수를 얻은 자격은 해부병리사(3.40)와 운동처방사(3.26), 인공심폐사(3.25), 침술사(3.24), 알콜 및 약물중독상담사(3.23), 카이로프랙틱스(3.22), 외과수술보조사(3.13), 검안사(3.11), 호흡기치료사(3.09), 뜸치료사(3.0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신과 보조사와 마사지사, 약무관련 인허가 전문가, 금연관리자, 발치료전문가, 수술기구준비사, 일반약품판매사, 약무사무관리사, 약사보조사 등의 자격은 평균 3.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는 보건·의료 분야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자격신설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평균 4.0점 이상의 고득점을 얻은 자격으로는 학교사회복지사(4.16)와 의료사회복지사(4.13), 아동청소년사회복지사(4.04), 미술치료사(4.00) 등이 있었으며, 나머지 놀이치료사와 음악치료사, 교정사회복지사, 가족사회복지사, 장애사회복지사, 요양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서, 레크리에이션치료사, 군사회복지사, 재활용구 전문상담사 등도 모두 평균 3.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신설 논의가 향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주요국의 보건복지 분야 유망직업 및 자격제도 분석

제1절 미국

1. 미국의 자격제도 개요

미국의 자격제도는 주로 주(州)정부 단위로 이루어지며 각 주에서는 또 다시 각 전문단체가 자격을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각 주정부 간에는 자격별로 호혜 원칙을 두어 일정 형식이나 요건을 갖추면 유사 종목의 경우 서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영국 등의 유럽국가처럼 자격 수준이 연방단위에서 정해진 것이 없고 주정부 간에 응시자 학력 요건이나 소요 실무경력을 고려하여 상호 인정하며, 차이가 날 경우 의무 강습기간 등 일정한 조건을 부과한다. 미국의 자격분류는 크게 국가면허(licensure)와 민간자격(private certification)으로 구분된다. 면허는 가장 엄격하고 영향력이 강력한 것으로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주도로 개발되고 고용에 있어 자격증 요건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국가자격으로 특정한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주정부 단위의 면허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부문, 부동산, 화장품학(cosmetology) 관련 부문 등이 있고, 연방정부 단위로는 원자력 발전, 해양 관련 부문, 항공관제직

업 영역 등에 관련된 직업에 대한 면허가 있다.

민간자격은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자격검정을 민간기구(non-public)에 맡겨 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직함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직함보호만 가능하고, 일반 개인의 특정지식과 기술의 습득 정도를 나타내어 줄 뿐 일반인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면허는 개업이나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을 직접 보호할 수 있는 것인 데 비해, 민간자격은 일반 개인의 특정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정도를 나타내어 주는 능력인정형 자격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자격제도는 주로 민간부문 주도하에 운영되는 형태이다. 자율적이고 민간부문 주도적인 자격제도가 확립된 배경에는 정부에 의한 규제보다는 민간부문, 자치단체 등 자율에 의한 규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미국 특유의 정치적 배경과 아울러 고용평등에 관한 엄격한 노동법적 규제라는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역사와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모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국가를 이루고 있어 정부 주도에 의한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는 일차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 대신에 업계 연합, 전문인 단체와 같은 연합체가 활발하게 기능하여 자율규제의 핵심 주체가 되어 왔다. 그러나 자격부문에서 국가가 직접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보건, 의료 관련 부문이나 안전 부문의 영역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자격제도의 개발이나 통용 등은 업계의 필요에 따라 전문인 협회를 중심으로 민간영역에서 발전해 왔다. 자격제도는 건축, 의료 영역 등 사람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직종 중심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점차 서비스 영역 등 다양한 영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자격 현황

보건·의료·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미국 자격은 <표 IV-1>과 같이

우리나라에 있는 자격과 중복되는 종목도 있고, 일부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미국에는 존재하는 자격종목 등이 있다. 특히 사항으로는 한국에서는 법령에 의해 금지분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의 자격이 미국에서는 상당부분 자격종목이 시행 운영되고 있다.

<표 IV-1> 미국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종목

분야	자격종목
보건 ·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upuncture(침술) • Ambulatory Health Care(외래건강관리) • Art Therapists(미술치료사) • Cardiovascular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심장혈관전문기술자) • Chiropractors(지압사) • Clinical Consultants(임상병리사) •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임상병리 전문기술자) • CPR and First Aid Practitioners(CPR 및 응급처치사) • Dental Assistants(치과보조원) • Dental Laboratory Technicians (치과기공사) • Dentists(치과의사) • Dietitians and Nutritionists(영양사) • Dispensing Opticians(안경사) •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응급치료기술자) • Health Services Manager (건강서비스매니저) • Hygienists(위생사) • Hypnotists(최면학) • Medical Assistants(의학보조사) • Medical Illustrators(의학삽화가) • Medical Record Technicians(의무기록사) • Music Therapists(음악치료사) • Naturopathy(자연요법) •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s(핵의학 기술자) • Nursing Aides and Psychiatric Aides(간호보조 및 정신과보조) • Occupational Therapist(작업치료사) • Oriental Medicine Practitioners(한의학) • Orthopaedic Technologists(정형 전문의) • Orthoptists[정시(正視)훈련전문가] • Orthotics and Prosthetics(의료장구학) • Orthotists and Prosthetists(교정 및 보철 전문가) • Pharmacists(약사)

분야	자격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armacy Aides(약사보조사) • Physical Therapists(물리치료사) • Physician Assistants(의사보조사) • Physicians(의사) • Podiatrists(발병학: foot) • Practical Nurses(간호조무사) • Radiologic Technologists(방사선사) • Recreational Therapists[요양관리(치료)사] • Registered Nurses(간호사) • Respiratory Therapists(호흡기치료사) • Sonographers(초음파검사기사) • Speech-Language Pathologists and Audiologists(언어 및 청각치료사) • Surgical Technicians(외과의)
사회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dbirth and Child Care Assistants(보육보조사) • Counselors(상담원/상담사) • Human Services Workers(인적서비스 종사자) • Social Workers(사회복지사)

한국에서는 대체의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침술사, 지압사 및 각종 치료 관련 자격들이 신설금지 분야로 제한되어 있는 데 반하여, 미국은 침술(Acupuncture), 지압사(Chiropractors), 최면가(Hypnotists), 음악 치료사(Music Therapists), 자연요법사(Naturopathy), 미술치료사(Art Therapists) 등 대체의학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자격으로 형성되지 못한 자격종목의 예로서 외래건강관리(Ambulatory Health Care), 임상병리 전문기술자(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의학 삽화가(Medical Illustrators), 핵의학기술자(Nuclear Medicine Technologists), 요양관리치료사(Recreational Therapists), 정시(正視) 훈련전문가(Orthoptists), 발병전문의를(Podiatrists), 검안사(Optometrists)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아직 우리의 보건·의료 분야 직무가 분화되지 않거나 관련 전문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야의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에 비해 자격이 세분화되어 있거나 다양화

되어 있는 자격을 예를 들면, 치과보조원(Dental Assistants), 교정 및 보철 전문가(Orthotists and Prosthetists), 의사보조사(Physician Assistants), 의학보조사(Medical Assistants), 약사보조사(Pharmacy Aides)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와 달리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민간자격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는 각 자격별로 분명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유사한 자격이 특정분야에 중첩적으로 신설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많은 자격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서비스종사원(Human Services Workers), 보육보조사(Childbirth and Child Care Assistants) 등과 같이 최근 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가 증대되고 있는 자격은 미국에서 더 많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미국 내 자격의 직무내용과 직무전망, 응시수준 및 자격부여 기관 등을 살펴보면 <표 IV-2>와 같다.

<표 IV-2> 미국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부여의 개요(일부)

분야	직무명	직무내용	직무전망	관련 자격명	자격 부여 응시수준	자격부여기관	기타
보건 · 의료	의사 보조사 Physician Assistants	의사의 감독하에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며, 의사에게 업무를 위임받아 진단, 치료, 예방보건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함. 보건관리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병력을 조사하며, 환자의 치료/검사, 실험실 연구, X-레이 판독, 진단, 약 처방 등을 함. 환자들의 치료 상황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음 의사보조사의 고용은 보건서비스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비용감소가 강조될 것으로 보여 향후 2014년까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직업 중의 하나일 것으로 예상됨.	공인 의사 보조사 (P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 2년의 단과대학 및 의료분야에서 일한 경력 • 교육: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CPA • PAC(Physician Assistant-Certified) 	연봉 평균 :69,410달러 (2004년 기준)

분야	직무명	직무내용	직무전망	관련 자격명	자격 부여 응시수준	자격부여기관	기타
		기록·상담하고, 치료를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함.					
보건 · 의료	간호 보조 및 정신과 보조 Nursing Aides and Psychiatric Aides	병원, 간호 및 개인보호시설, 정신요양원 등에 수용된 신체적·정신적 환자, 부상자, 장애인, 노인 등을 돌보는 일을 도움. 맥박, 체온, 호흡을 체크하기도 하고, 간단히 처방된 운동을 도와주고, 환자의 방을 청결하게 유지시키며, 환자가 잠을 자거나 목욕하고 옷을 입히는 일 등을 수행함.	•매우 좋음. 대부분의 간호, 정신치료 및 가정보건 조력원의 고용은 2014년까지 다른 전체 직업의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가정 보건 조력원	• 연방법으로 제정된 정식 간호사가 주관하는 최소 75시간의 이론교육 및 실습 이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Home Care • NCPT1(Nationally Certified Psychiatric Technician, Level 1) • NCPT2(Level 2) • NCPT3(Level 3) • NCPT4(Leve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 평균 0.09달러 •중간 :5.59~12.09달러 •고용자 수 : 약 2,100,000명
보건 · 의료	심장 혈관 전문 기술자 Cardiovascular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심장 및 말초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의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함. 관혈심장학, 초음파심장검진 및 혈관기술의 세 분야를 담당함.	•보통 노령층의 심장질환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심혈관기사 및 기술공의 고용은 2014년까지 전체 직업의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Certified Cardiographic Technologist) • RCS(Registered Cardiac Sonograp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중사자, 자원봉사자, 학생 • 교육: 2년제 지역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Joint Review Committee on Education in Cardiovascular Credentialing Internatio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봉 평균 : 38,690달러 •중간 : 27,890~50,130달러 •고용자 수 : 45,000명 이고 용 (2004년)

분야	직무명	직무내용	직무전망	관련 자격명	자격 부여 응시수준	자격부여기관	기타
				RCS	교육: 2년제 지역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	Cardiovascular Credentialing International	
				Registered Vascular Specialist (CC)		Cardiovascular Credentialing International	
사회 복지	사회 복지사 Social Workers	소속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인간관계를 논의해 주고, 개인 및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함. 문제 가정, 실업, 직업 기술의 부족, 재정적 부실경영, 심각한 질병, 무능력, 물리적 학대, 원치 않는 임신, 반사회적 행위 등이 포함되며, 자녀나 배우자 학대를 포함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을 도와주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 사회복지사의 고용은 2014년까지 전체 직업의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ploma in Clinical Social Work(DCSW) Member, Academy of Certified Baccalaureate Social Workers Member of the Academy of Certified Social Workers School Social 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5년 이상의 실무경험 •교육: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2년 이상 •교육: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2년 이상 •교육: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2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Academy of Certified Baccalaureate Social Workers Academy of Certified Social Workers(ACSW)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자수: 약 562,000명 (2004년)

분야	직무명	직무내용	직무전망	관련 자격명	자격 부여 응시수준	자격부여기관	기타
				Speciali st	상	Workers	

3. 자격 신설 가능 종목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격 신설이 가능한 종목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자격을 세분화하여 좀 더 전문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자격으로 만드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전에 없던 분야의 새로운 자격을 만드는 것이다. 이때 유념할 점은 어떤 식으로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자격을 만드는 것은 관련된 규제의 완화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격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들 수 있는 자격 종목은 다음 <표 IV-3>과 같다.

<표 IV-3> 미국 사례에 근거한 국내 신설 가능 자격종목의 예

분야	신설가능 자격종목
보건 ·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upuncture(침술사) • Art Therapists(미술치료사) • Chiropractors(지압사) •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임상병리 전문기술자) • Dental Assistants(치과보조사) • Health Services Manager (건강서비스매니저) • Hygienists(위생사) • Hypnotists(최면학) • Medical Assistants(의학보조사) • Medical Illustrators(의학삽화가) • Music Therapists(음악치료사) • Naturopathy(자연요법) • Nursing Aides and Psychiatric Aides(간호보조 및 정신과보조) • Orthoptists[정시(正視)훈련전문가] • Orthotists and Prosthetists(교정 및 보철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armacy Aides(약사보조사) • Physician Assistants(의사보조사) • Podiatrists(발병학: foot) • Respiratory Therapists(호흡기치료사) • Speech-Language Pathologists and Audiologists(언어 및 청각 치료사)
사회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dbirth and Child Care Assistants(보육보조사) • Human Services Workers(인적서비스 종사자)

제2절 일본

1. 일본의 자격제도 개요

일본의 자격제도는 실시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되며, 근거법령의 유무, 행정의 관여, 자격의 성격 등에 따라 다시 업무독점자격, 의무배치자격, 명칭독점자격, 국가인정자격, 민간자격의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자격은 법령 등에 근거를 두고,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제도로 자격의 성격에 따라 자격의 종류를 업무독점자격, 의무배치자격, 명칭독점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자격은 주로 정부의 행정 분야의 안정성이나 신뢰성 유지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업무독점자격은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리사 등의 국가자격 외에 교원면허, 자동차면허 등의 각종 면허가 여기 해당한다. 단, 국가자격 가운데 ‘면허’는 특정업무·직업의 필요조건으로 취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원의 경우는 면허취득뿐만 아니라 필히 각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공립학교 교원채용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무배치 자격은 택지건물 거래주임자, 여행업무 취급주임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기업에 특정 자격자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변호사 등과는 달리 기업 대표자가 자격을 가질 필요가 없고, 구성원 가운데 자격자가 존재하면 된다. 또 자격자가 직접 업무행위를 맡아야 할

필요도 없다.

명칭독점자격은 정보처리기술자나 기능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무원 등과는 달리 개인의 기능차이가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분야는 아니므로, 그 자격이 없더라도 해당 직종에 종사할 수 있고, 자격유무가 직장에서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자격은 일반적으로 1급, 2급과 같이 지식, 기능의 수준을 분명하게 나누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일단 일정한 지식, 기능을 가진 사람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능력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므로 보유한 자격이 지식, 기능 평가의 척도가 된다.

민간자격은 국가인정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민간자격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정부의 관여 없이 민간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격제도이다. 여기에는 민간단체나 업계단체가 실시하는 것과 민간업계가 고용 노동자를 평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내검정제도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3,000종 가량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 같은 민간자격에 해당되지만 법령에 근거를 두고 민간단체나 업계에서 실시하는 자격 가운데 국가가 법령 등에 따라 인정하는 것으로 민간 기능심사사업인정제도 있는데, 이 제도는 현재 폐지되었다. 다만 이미 운영되는 있던 자격종목은 공적자격(국가인정자격)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 현황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일본자격은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표 IV-4> 참조). 그러나 민간이 참여할 수 없는 자격신설 금지분야는 국가자격으로 운영되는 자격 분야에 한하며,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 역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민간자격 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없고, 제3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

만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판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비교적 금지, 제한의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자격 중에서 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사, 의지장구사, 유도정복사, 침술사, 간호사, 언어청각사 등의 자격은 업무독점형 자격으로 구분되고, 사회복지사, 보육사 등은 의무배치형, 보건사, 영양사 등은 명칭독점형 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자격은 임상심리사, 케어시설관리사, 수화기능검정시험, 수화통역사, 진료정보관리사, 의료사무관리사 등이 있다.

<표 IV-4> 일본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종목 및 구분

분야	일본의 자격종목 및 자격구분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사(국가) ● 구급구명사(국가) ● 대중약 등록판매자(국가) ● 뜸사(국가) ● 라이프세이버(민간) ● 보건사(국가) ● 세포검사사(민간) ● 시력훈련사(국가) ● 안마마사지지압사(국가) ● 약제사(국가) ● 언어청각사(국가) ● 영양사(국가) ● 유도접골사(국가) ● 의료비서기능검정(민간) ● 의료사무관리사(민간) ● 의료사무원(민간) ● 의사(국가) ● 의사사무작업보조기능검정(민간) ● 의사컴퓨터기능검정(민간) ● 의지장구사(국가) ● 이학요법사(국가) ● 임상검사기사(국가) ● 임상공학기사(국가) ● 임상심리사(민간)

분야	일본의 자격종목 및 자격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요법사(국가) ● 적십자구급법구급원(민간) ● 적십자수상안전법구조원I, II(민간) ● 조산사(국가) ● 조제사무관리사기능검정(민간) ● 진료방사선기사(국가) ● 진료보수청구사무관리능력검정(민간) ● 진료정보관리사(민간) ● 치과기공사(국가) ● 치과위생사(국가) ● 치과의사(국가) ● 침술사(국가)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사(국가) ● 보행지도원(민간) ● 복지사무관리기능검정(민간) ● 복지사환경코디네이터 기능검정(공적) ● 복지용구전문상담원(공적) ● 사회보험노무사(국가) ● 사회복지사(국가) ● 서비스개조사 2급(민간) ● 수화기능검정시험(민간) ● 수화통역사(국가) ● 점자기능검정시험(민간) ● 정신보건복지사(국가) ● 차일드마인더(민간) ● 케어복지사(국가) ● 케어사무관리사(민간) ● 케어시설관리사(민간) ● 케어지원 전문원-케어 매니저(공적) ● 케어크라크기능인정시험(민간) ● 홈헬퍼(민간)

주: () 안의 내용은 자격의 성격을 표시한 것으로 국가와 공적, 민간자격으로 구분함.

일본에 있는 자격종목 중에서 한국에 없는 자격으로는 시력훈련사, 대중약 등록판매원, 조제사무관리사, 침술사, 뜸사, 복지용구전문상담원, 세포검사사 등이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자격이 대부분 기존 자격의 직무를 세분화하여 일자리 나눔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자격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자격종목 신설 시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자격종목의 세부적인 직무내용과 직무전망, 응시수준 및 자격부여 기관 등은 <표 IV-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V-5> 일본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자격 개요(일부)

분야	자격종목	자격구분	직무내용 및 전망	수험자격	시험내용
보건·의료	언어청각사	국가	후생노동장관 면허의 국가자격인 언어청각사는 음성·언어기능이나 청각에 장애를 가진 자의 기능회복을 돕는 역할을 함.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언어 훈련을 시작으로 하는 다양한 훈련, 이것에 필요한 검사나 조언, 지도·지원을 실시함.	① 대학 입학자격을 가지고 문부과학장관이 지정한 학교나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한 언어청각사 양성소에서 3년 이상 언어청각사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한 자 ② 대학, 고등전문학교, 문교연수시설나 양성소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하는 과목을 수료한 자로 문부과학장관이 지정한 학교나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한 언어청각사 양성소에서 1년 이상 언어청각사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한 자 ③ 외국에서 언어청각사 면허에 상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로서 후생노동장관이 ①, ②와 동등 이상의 지식 및 기능을 가진다고 인정한 자	기초의학, 임상의학, 임상치과의학, 음성·언어·청각의학, 심리학, 음성·언어학, 사회복지·교육, 언어청각 장애학 총론, 실어·고차뇌기능 장애학, 언어발달 장애학, 발성발어·부하 장애학, 청각장애학
보건·의료	뜸치료사	국가	쑥뜸을 피부 표면의 경혈에 놓고 태워서 열자극을 주는 온열요법을 수행함. 자격 취득은 용이하지 않지만 취득 후 침술인을 겸업하여 독립하여 개업하는 예도 많음.	대학입학자격을 가지고 문부과학장관이 인정한 학교나 후생노동장관이 인정한 양성시설(수업연수 3년 이상)에서 뜸사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한 사람 ※ 현저한 시각장애가 있는 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을 가지고 학교나 양성시설에	의료개론(의학사 제외), 위생학·공중위생학, 관계법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개론, 임상의학 총론, 임상의학 각론, 사회복지요법 의학, 동양의학 개론, 경락경혈개론, 뜸이론, 동양의학 임상론 ※ 단, 시각장애인은 다

분야	자격 종목	자격 구분	직무내용 및 전망	수험자격	시험내용
				서 5년 이상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면 시험을 볼 수 있음. ※ 침술사 시험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침이론이나 뜬이론 이외의 공통과목에 대해 한쪽의 시험을 면제함.	음 방법으로 시험을 인정함. ① 확대문자, 초확대문자, 점자에 의한 시험, ② 시험문제를 녹음한 테이프의 사용, 시험문제의 낭독의 병용에 의한 시험, ③ 조명기구, 독서보조도구, 점자 타이프라이터 등을 사용한 시험
보건 · 의료	침술사	국가	금, 은, 철 등의 금속 바늘을 이용해 인체 환부에 자극을 주는 치료법을 수행함. 침술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신경통이나 관절염 등의 통증완화에도 뛰어나 현대의료에 활용범위가 넓음. 후생노동장관의 면허를 받으면 개업할 수 있고 안정된 수입이 전망되는 건설한 자격임.	대학입학 자격을 갖고 문부과학장관이 인정한 학교나 후생노동장관이 인정한 양성시설(수업연수 3년 이상)에서 침술인이 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한 자 ※ 현저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입학자격을 가지고 학교 또는 양성시설에서 5년 이상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 필기: 의료개론(의학사 제외), 위생학·공중위생학, 관계법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개론, 임상의학 총론, 임상의학 각론, 사회복지요법의학, 동양의학 개론, 경락경혈 개론, 침이론, 동양의학 임상론 ※ 단, 시각장애인은 다음 방법으로 시험을 인정함. ① 확대문자, 초확대문자, 점자에 의한 시험, ② 시험문제를 녹음한 테이프의 사용, 시험문제의 낭독의 병용에 의한 시험, ③ 조명기구, 독서보조도구, 점자 타이프라이터 등을 사용한 시험
보건 · 의료	등록 판매자	국가	대중약품 등록판매자는 구입자의 상황을 관찰, 질문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역할	① 대학 및 전문학교에서 약학에 관한 전문과정을 수료한 자, ② 2006년 3월 31일 이전에 학교교육법에 근거하여 대학에 입학하여 해당대학에서 약학의 정규과정을	의약품의 본질, 의약품의 효력이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인체의 구조와 움직임, 약의 작용구조, 증상에서 본주된 부작용, 정신신경

분야	자격 종목	자격 구분	직무내용 및 전망	수험자격	시험내용
			할을 함. 구입자의 적절한 의약품 선택을 지원하며, 일반용 의약품의 판매 등에 대한 보건 위생상의 문제를 예방함.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③ 고교 및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이며, 1년 이상 약국이나 일반 판매업(도매일반판매업 제외), 약종상 판매업, 배치판매업의 실무에 종사한 자, ④ 4년 이상 약국 또는 일반 판매업(도매 일반 판매업을 제외한다), 약종상 판매업 혹은 배치 판매업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⑤ 위 ①~④와 동등 이상의 지식경험을 가졌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자	에 작용하는 약, 호흡기관에 작용하는 약, 위장에 작용하는 약, 배설과 관계되는 부위에 작용하는 약, 부인약, 한방처방제제·생약제제, 의약품의 판매업 허가, 의약품의 취급, 의약품 판매에 관한 법령 준수, 의약품의 적정사용정보, 의약품의 안전대책, 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의한 건강피해의 구제, 일반용 의약품에 관한 주된 안전 대책 등
보건 · 의료	시력 훈련사	국가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시력을 잃거나 시각기능에 장애를 입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훈련을 담당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회복훈련과 검사를 실시함. 이는 배려가 필요한 업무로 실제 자격취득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전문분야에서 간호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는 자격임.	① 대학입학 자격이 있는 자로 문부과학장관이 지정한 학교나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한 시력 훈련사 양성소에서 3년 이상 시력 훈련사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한 자 ② 대학, 양성소 등에서 2년 이상 수업하고 지정과목을 수료한 후에 ①의 학교, 양성소에서 1년 이상, 시력 훈련사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한 자 ③ 외국의 시력 훈련에 관한 학교나 양성소를 졸업했으며 외국에서 시력 훈련사 면허에 상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로 후생노동장관이 위 ①, ②와 동등 이상의 지식과 기능을 소유한다고 인정한 자	기초의학개요, 기초시력교정학, 시력검사학, 시력장해학, 시력훈련학
사회 복지	복지 용구 전문 상담원	공적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것도 보험급부 대상이므로 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소에는 2명 이상	누구라도 수강할 수 있음.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하는 '복지용구 전문 상담원 지정 강습회'의 강의와 실습을 총 40시간 수강

분야	자격 종목	자격 구분	직무내용 및 전망	수험자격	시험내용
			의 전문 상담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 음. 이에 복지기기 에 대해 적절한 조 언을 해줄 수 있는 자격자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복 지용구에 관한 깊 은 지식이 필요하 므로 자격 취득 후 에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한 강습회를 수강해야 함.		※ 요양 복지사, 의지장 비사(의족), 보건사, 간 호사, 준간호사, 이학요 법사, 작업요법사, 사회 복지사, 홈헬퍼2급 이상 의 자격 취득자 등은 강 습을 받지 않아도 복지 용구 전문상담원의 자 격을 인정함.

3. 자격신설 가능 종목

일본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일본은 국가의 전통적 특성에 적합한 자격종목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 IV-6> 참조). 국가 및 민간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자격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자격으로 운영되는 자격은 민간참여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에서는 대체의학으로 금지하고 있는 침술사, 뜸사 등을 일본에서는 국가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이 자격시험의 응시대상이 될 수 있는 데 반해, 일본의 경우는 안마·마사지 지압사 자격에 정상인도 응시할 수 있다. 즉, 대학입학 자격을 가지고, 문부과학장관이 인정한 학교 또는 후생노동장관이 인정한 양성 시설(수업연수 3년 이상)에서 안마·마사지 지압사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한 사람은 모두 응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현저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도 고등학교 입학자격을 가지고 학교 또는 양성시설에서 3년 이상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의 경우 안마사 자격으로 인하여 스포츠 마사지 등 민간자격이 금지분야로 설정되어 있어 자격 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자격제도는 관리·운영 면에서 서로 유사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V-6> 일본 사례에 근거한 신설가능 자격종목의 예

분야	신설가능 자격종목
보건 ·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약 등록판매자 • 뜸사 • 세포검사사 • 시력훈련사 • 안마·마사지지압사 • 언어청각사 • 의료비서기능검정 • 의료사무관리사 • 의료사무원 • 의사사무작업보조기능검정 • 의사컴퓨터기능검정 • 임상공학기사 • 조제사무관리사기능검정 • 진료보수청구사무관리능력검정 • 진료정보관리사 • 침술사
사회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지도원 • 복지사무관리기능검정 • 복지사환경코디네이터 기능검정 • 복지용구전문상담원 • 차일드마인더 • 케어사무관리사 • 케어시설관리사 • 케어지원 전문원-케어 매니저 • 케어사무원기능인정시험 • 홈헬퍼

제3절 소결16)

미국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은 한국에는 없는 다양한 자격들이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검안사, 약사보조사, 지압사, 의사보조, 의학기구 준비자, 발병전문의, 언어 및 청각치료사, 호흡기치료 기능공, 침술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등은 한국에는 없는 자격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법으로 ‘치료’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언어치료사나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등이 자격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 자격에 해당하는 직무가 필요할 경우 미술심리상담사나 언어재활 전문가 등의 형태로 변형되어 민간에서 자격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 중에서 한국에 없는 자격종목으로는 대중약 등록판매자, 뜸사, 세포검사사, 시력훈련사, 안마·마사지 지압사, 언어청각사, 의료비서기능검정, 의료사무관리사, 의료사무원, 의사사무작업보조기능검정, 의사컴퓨터기능검정, 임상공학기사, 조제사무관리사기능검정, 진료보수청구사무관리능력검정, 진료정보관리사, 침술사, 보행지도원, 복지사무관리기능검정, 복지사환경코디네이터기능검정, 차일드마인더, 케어사무관리사, 케어시설관리사, 케어지원전문원, 케어사무원기능인정시험, 홈헬퍼 등이 있다.

한국의 자격제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특성과 함께 상당 부분 일본의 자격제도를 참조하여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침술사나 뜸사 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자격으로 관리, 운영되어 오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침이나 뜸 등의 대체의학 금지분야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또 다시 합헌판정(대법원 판결- 2010. 7. 16.)이 내려졌다. 즉, 법원 판정 결과 침, 뜸 등 대체의학에 대하여 재판관 9명 중에서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으로 판정하였지만, 위헌 정족수에 필요한 6명을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났다. 그러나 위법으로 판정한 조대현 재판관 등 5명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16) 본 내용은 박종성 외(2010). “서비스산업의 자격연구(I)”를 재인용한 것임.

대해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대체의학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안마사 자격은 한국에서는 시각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인 데 반해, 일본에서는 일반인도 안마·마사지 지압사라는 자격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자격신설 시 한국에는 없지만 외국에는 있는 자격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국에서는 금지종목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격이지만 외국에서는 금지가 아닌 종목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설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7>은 미국과 일본의 자격을 비교한 것인데, 이들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두 나라 모두 대체의학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안마사, 지압사 등의 자격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기존 자격의 영역이 세분화되어 자격종목의 독점영역이 줄어든 대신 자격을 통한 일자리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약사와 약사보조사, 의사와 의사보조사 등이 일자리 나눔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미국과 일본 모두 언어 청각사 자격이 있어 이 분야 자격신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일본의 경우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자격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가자격인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인해 관련분야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받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 분야 자격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7> 한국, 미국, 일본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의 비교

분야	한국의 자격	미국의 자격	일본의 자격
보건·의료	간병사	-	-
보건·의료	간호사	Registered Nurses (간호)	간호사(국가)

분야	한국의 자격	미국의 자격	일본의 자격
		사)	
보건·의료	간호조무사	Practical Nurses (간호조무사)	-
보건·의료	응급구조사1·2급	CPR and First Aid Practitioners (CPR 및 응급처치사)	구급구명사(국가)
보건·의료	기본인명구조원	-	적십자구급법구급원(민간) 라이프세이버(민간)
보건·의료	수상인명구조 수상인명구조원	-	적십자수상안전법구조원 I, II(민간)
보건·의료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s(물리치료사)	-
보건·의료	방사선사	Radiologic Technologists(방사선사)	진료방사선기사(국가)
보건·의료	안경사	Dispensing Opticians (안경사)	-
보건·의료	-	Orthoptists[정시(正視)훈련전문가]	시력훈련사(국가)
보건·의료	안마사	Chiropractors(지압사)	안마마사지지압사(국가)
보건·의료	약사	Pharmacists(약사)	-
보건·의료	영양사	Dietitians and Nutritionists(영양사)	영양사(국가)
보건·의료	위생사	Hygienists(위생사)	-
보건·의료	의공기사	-	-
보건·의료	의공산업기사	-	-
보건·의료	병원경영관리자	-	-
보건·의료	병원경영컨설턴트	-	-
보건·의료	병원국제마케팅전문가 병원서비스매니저	-	-
보건·의료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병원코디네이터 병원코디네이터자격증 병원코디네이터전문가자격증	-	의료안내자격(민간)
보건·의료	병원행정사	-	의료사무관리사(민간) 의료사무원(민간)
보건·의료	-	-	의료비서기능검정(민간)
보건·의료	-	-	의사사무작업보조기능검정(민간)

분야	한국의 자격	미국의 자격	일본의 자격
보건·의료	병원행정실무	-	-
보건·의료	병원행정실무코디네이터	-	-
보건·의료	의료서비스코디네이터	-	-
보건·의료	보건교육사	-	-
보건·의료	보험심사간호사	-	-
보건·의료	소비자전문상담사1·2급	-	-
보건·의료	의료관리자	-	-
보건·의료	의료보험사	-	-
보건·의료	의료전자기능사	-	-
보건·의료	의료정보관리사	-	-
보건·의료	의무기록사	Medical Record Technicians(의무기록사)	-
보건·의료	의사	Physicians(의사) Surgical Technicians (외과외)	의사(국가)
보건·의료	의지·보조기기사	Orthotics and Prosthetics (의료장구학)	의지장구사(국가)
보건·의료	임상병리사	Clinical Consultants(임상병리사)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s/Technicians (임상병리 전문기술자)	-
보건·의료	임상심리사1·2급	-	임상심리사(민간)
보건·의료	자세교정사	-	-
보건·의료	작업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 (작업치료사)	작업요법사(국가)
보건·의료	전문의	-	-
보건·의료	정신보건간호사	-	-
보건·의료	조산사	-	조산사(국가)
보건·의료	치과의사	Dentists(치과의사)	치과의사(국가)
보건·의료	치과기공사	Dental Laboratory Technicians (치과기공사)	치과기공사(국가)
보건·의료	치과위생사	-	치과위생사(국가)
보건·의료	한의사	Oriental Medicine Practitioners(한의학)	-
보건·의료	한약사	-	-
보건·의료	한약조제사	-	-
보건·의료	-	Acupuncture(침술)	침술사(국가)
보건·의료	-	Ambulatory Health Care (외래건강관리)	-

분야	한국의 자격	미국의 자격	일본의 자격
보건·의료	-	Cardiovascular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심장혈관전문기술자)	체외순환기술자(민간)
보건·의료	-	Childbirth and Child Care Assistants(보육보조사)	-
보건·의료	-	Dental Assistants(치과보조원)	-
보건·의료	-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응급치료기술자)	-
보건·의료	-	Health Services Manager(건강서비스매니저)	-
보건·의료	-	Hypnotists(최면학)	-
보건·의료	-	Medical Assistants(의학보조사)	-
보건·의료	-	Medical Illustrators(의학삽화가)	-
보건·의료	-	Naturopathy(자연요법)	-
보건·의료	-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s(핵의학 기술자)	-
보건·의료	-	Nursing Aides and Psychiatric Aides(간호보조 및 정신과보조)	-
보건·의료	-	Orthopaedic Technologists(정형전문의)	-
보건·의료	-	Orthotists and Prosthetists(교정 및 보철전문가)	-
보건·의료	-	Physician Assistants(의사보조사)	-
보건·의료	-	Podiatrists(발병학: foot)	-
보건·의료	-	Respiratory Therapists(호흡기치료사)	-
보건·의료	-	Sonographers(초음파)	-
보건·의료	-	-	대중약등록판매자(국가) 가정상비약판매사(민간)

분야	한국의 자격	미국의 자격	일본의 자격
보건·의료	-	-	뜸사(국가)
보건·의료	-	-	보건사(국가)
보건·의료	-	-	세포검사사(민간)
보건·의료	-	-	약제사(국가)
보건·의료	-	-	유도접골사(국가)
보건·의료	-	-	의사컴퓨터기능검정(민간)
보건·의료	-	-	이학요법사(국가)
보건·의료	-	-	임상검사기사(국가)
보건·의료	-	-	임상공학기사(국가)
보건·의료	-	-	조제사무관리사기능검정(민간)
보건·의료	-	-	진료보수청구사무관리능력검정(민간)
보건·의료	-	-	진료정보관리사(민간)
보건·의료	-	-	임상고기압치료기사(민간)
보건·의료	-	-	투석기술인정사(민간)
보건·의료	-	-	인정보청기기능사(민간)
보건·의료	-	-	임상만성피로증후군 전문인정사(민간)
보건·의료	청각관리사 청능사 언어치료사(금지)	Speech - Language Pathologists and Audiologists(언어 및 청각 치료사)	언어청각사(국가)
사회복지	음악치료사(금지)	Music Therapists(음악치료사)	음악치료사(민간)
사회복지	미술치료사(금지)	Art Therapists(미술치료사)	-
사회복지	놀이치료사(금지)	Registered Play Therapist(놀이치료사)	놀이요법사
사회복지	예술치료사(금지)	예술치료사	예술요법사
사회복지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미) Recreational Therapists(레크리에이션 치료사) Board Certified Behavior Analysis(행동분석가)	행동요법사
사회복지	가정행복설계사	-	-
사회복지	직업상담사1·2급	-	-
사회복지	가족상담사	-	-

분야	한국의 자격	미국의 자격	일본의 자격
사회복지	건강가정사	-	-
사회복지	건강보험사무관리사	-	-
사회복지	건강보험청구심사자격증	-	-
사회복지	교정교회상담사	-	-
사회복지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	-	-
사회복지	도형상담사	-	-
사회복지	독서심리상담사	-	-
사회복지	미술심리상담사	-	-
사회복지	미술정서인지상담사	-	-
사회복지	발달심리자격증	-	-
사회복지	발달장애상담사	-	-
사회복지	발달진단평가사	-	-
사회복지	베이비시터	-	-
사회복지	보험심사평가사	-	-
사회복지	부모사랑양육사	-	-
사회복지	사회보험사	-	-
사회복지	사회복지모금전문가	-	-
사회복지	사회복지사1·2·3급	Social Workers(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국가)
사회복지	요양보호사1·2급	Recreational Therapists [요양관리(치료)사]	케어복지사(국가)
사회복지	상담사 상담심리사 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자격증 전문상담사 전문카운슬러 자격	Counselors(상담원/상담사)	-
사회복지	정신보건사회복지사1·2급	-	정신보건복지사(국가)
사회복지	정신보건임상심리사1·2급	-	-
사회복지	청소년상담사1·2·3급	-	-
사회복지	생활안전관리사	-	-
사회복지	성폭력상담사	-	-
사회복지	수화통역사	-	수화통역사(국가) 수화기능검정시험(민간)
사회복지	점역교정사자격증	-	점자기능검정시험(민간)
사회복지	사회서비스관리사	-	-
사회복지	실버재활운동사	-	-

분야	한국의 자격	미국의 자격	일본의 자격
사회복지	심리운동재활교육사	-	-
사회복지	심리장애상담사	-	-
사회복지	심리재활전문가	-	-
사회복지	아동미술심리상담사	-	-
사회복지	아동발달상담사 아동발달전문가	-	-
사회복지	아동상담사자격증	-	-
사회복지	요리심리상담사	-	-
사회복지	유아비디오증후군재활전문가	-	-
사회복지	웃음코디네이터	-	-
사회복지	인성·심리상담사자격증	-	-
사회복지	임상미술심리사	-	-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사	-	-
사회복지	재활레크리에이션 재활레크리에이션전문가	-	-
사회복지	재활태권도전문가	-	-
사회복지	전문보험심사청구사	-	-
사회복지	특수교육경영사	-	-
사회복지	특수체육치료사	-	-
사회복지	표현예술상담사(EAC)	-	-
사회복지	학교폭력상담사	-	-
사회복지	행복웃음코디네이터	-	-
사회복지	행복건설턴트	-	-
사회복지	호스피스전문봉사자	-	-
사회복지	IDK심리상담사	-	-
사회복지	-	Childbirth and Child Care Assistants(보육보조사)	-
사회복지	-	Human Services Workers(인적서비스종사자)	-
사회복지	-	-	보육사(국가)
사회복지	-	-	보행지도원(민간)
사회복지	-	-	복지사무관리기능검정(민간)
사회복지	-	-	복지사환경코디네이터 기능검정(공적)
사회복지	-	-	복지용구전문상담원(공적)
사회복지	-	-	사회보험노무사(국가)

분야	한국의 자격	미국의 자격	일본의 자격
사회복지	-	-	서비스개조사2급(민간)
사회복지	-	-	차일드마인더(민간)
사회복지	-	-	케어사무관리사(민간)
사회복지	-	-	케어시설관리사(민간)
사회복지	-	-	케어지원 전문원-케어 매니저(공적)
사회복지	-	-	케어크라크기능인정시험(민간)
사회복지	-	-	홈헬퍼(민간) 등
사회복지	-	-	건강심리사(민간)
사회복지	-	-	건강관리사(민간)
사회복지	-	-	케어 어텐드 서비스사(민간)
사회복지	-	-	의료복지환경어드바이저(민간)
사회복지	-	-	건강의료사회복지사(민간)

V. 정책 제언

보건복지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및 투자확대, 수요자 측과 공급자 측의 참여, 관련정책 간 연계 강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바탕으로 수급의 적정화, 질적 수준 제고, 접근성 확보, 개발양성 훈련, 효율적 관리 및 생산성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양질의 적정 보건복지 인력 공급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절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인적자원개발

1.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통한 보건복지 분야 양적 및 질적 측면의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보건복지 분야에서 양적인 측면의 인력수급 불일치는 주로 교육시장에서 배출되는 인력양성과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인력에 대한 정보부족에 기인한다. 반면, 보건복지 분야에서 질적 측면의 인력수급 불일치는 교육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 질적 수준과 산업현장에서 요

구되는 지식 및 숙련수준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는 모두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불일치에 따른 시장실패를 방지하고 인력수급의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보건복지 분야 유망직종 발굴

보건복지서비스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문인력에 의존적이며, 국가간의 장벽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보건복지의 복합적 욕구를 가진 인구계층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부양 및 사회적 보호, 질환과 장애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등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비하여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시장 확대 및 유치 경쟁에 성공적으로 보건복지 분야를 국제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새로운 유망직업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 분야의 적극적인 교육훈련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간병·재가복지·아동복지·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 인력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 확충된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해 임상실습 강화와 의료기관 간

연계 교육과정의 적극적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제기하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임상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특히 전공실무지식을 비롯하여 업무 수행 도중에 접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다양한 대안을 창의적으로 생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는 동일 직종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직종의 의료 인력과의 적절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협업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등은 교실이나 실험실이 아닌 실제 현장의 체험을 통해 체득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있어서 임상실습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상실습의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임상실습은 대학이나 해당 분야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과 담당자의 주도하에 전개되는지에 대한 평가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향후 담당하게 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체험 및 실습의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해당 분야별 표준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개발, 임상실습을 위한 교육훈련기관과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설정, 운영의 방법, 임상실습에 따른 학습자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한상근 외, 2006).

특히, 전공 실무지식을 비롯하여 업무수행 도중 접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다양한 대안을 창의적으로 생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해당 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다.

또는 동일 직종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직종의 의료 인력과의 적절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협업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등은 실제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체득하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상실습의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산업 분야 대학 졸업생의 현장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기관 등 산업계는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사회복지산업 인력양성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과 사회복지기관 간 연계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에 적극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산업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실무능력 및 현장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우며, 동시에 현장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4. 헬스케어와 관련된 인력양성

헬스케어와 관련된 인력양성 과정을 보면, 헬스케어는 헬스케어기기공학 분야와 헬스케어정보공학분야로 분리된다. 헬스케어기기공학 분야는 인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에 관한 연구를 하며, 헬스케어정보공학 분야는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관리 및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IT)을 응용하는 것으로, 창의적이면서 실용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즉, 글로벌 헬스케어 인력양성의 목적은 헬스케어 기기와 헬스케어정보의 융합 분야에 대한 창의적 사고와 인격적 소양을 갖춘 전문 인력 육성이다.

글로벌헬스케어전문가 인력양성 과정의 목표는 우수한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글로벌 헬스케어 고객들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제반 업무와 한국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전략적으로 담당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 육성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 육성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파트너들에 따라 다양하다. 첫째, 의료기관 에이전트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해외환자 진료 인프라 구축, 둘째, 의료기관은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기관의 다양한 수익 창출, 셋째, 국가는 국내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지명도 제고 및 해외진출·의료서비스·의료 기관의 국제화를 통한 국내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기할 수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기초영역(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이해, 해외의료 시스템 및 의료보험의 이해, 의료서비스의 마케팅), 둘째, 해외환자에 대한 이해 영역(외국인 환자의 문화적 배경, 외국인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국제의료서비스 소비자 행동론, 외국인 환자 촉진 전략), 셋째, 글로벌 의료경영역량 강화영역(글로벌 의료 서비스 운영관리, 의료시스템 네트워크의 이해, 고객관계 관리 및 사후관리, 외국인 환자의 의료보험 관리론, 글로벌 의료서비스의 품질관리, 국제의료법(의료사고유형 및 대응))이 있다.

제2절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인력양성 및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보건의료 분야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분야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 분쟁 등에 대한 의료법 개정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의료법 등 관련 제도 개선, 의료관광 원스톱 시스템 구축,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 외국 의료기관 설립제한 완화(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 등),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의료법인의 사업다각화 허용 등 제도적 개선사항 검토, 협력채널 구축 등이 요구된다. 또한 해외환자의 의료 및 부가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문 의료통역사, 의료지식을 갖춘 마케팅 전문가 양성도 요구된다.

2. 노동시장에 적합한 보건복지 분야 자격제도 도입 및 활용

보건의료분야는 고령화 추세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기존에 없는 많은 직업과 직종이 생성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 기술 발달로 사라지는 직무들도 등장할 것이다. 앞으로 보건의료 분야 자격종목은 이러한 직업들의 변화를 잘 반영하여 새로운 자격종목을 개발하여 이와 연계한 인력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격신설 및 기존 자격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박종성 외, 2010).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자격종목에 대한 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이나 자격종목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활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2, 3급 등의 자격도 기술변화,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사회적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적절하게 활용되고, 취업(일자리 등)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각 자격종목에 대한 심도 있는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통 5년마다 자격종목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재 실시하여 자격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출제기준을 개선하고, 필요 시 검정방법 등도 개선하여 자격의 시험내용이 산업현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일정한 주기로 직무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직무분석 주기가 일부 자격(치과기공사 등)은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져 모든 자격종목이 적정주기로 재직무 분석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신설제안 자격 각각에 대한 부처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자격종목 신설 제안된 자격종목은 모두 25개 내외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없으나 외국(미국, 일본) 등에는 있는 자격종목 또는 전문가들이 현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하기에 자격신설이 요구되는 직무의 자격 등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종목을 동시에 신설하기에는 정부차원의 부담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격신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신설 시 각각 자격종목에 대한 수요공급 조사 및 자격종목 신설을 위한 직무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서비스요구도 측면에서 우선 필요한 자격 등을 선정한다든지 부처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신설 시 기존자격과 직무영역 마찰 등을 줄이기 위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은 타분야의 자격과는 다르게 직무영역에 대한 마찰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의 특징은 직무영역 간 영역 다툼이 심하다는 특징(의사와 약사의 직무영역 다툼, 간호사와 간호조문사의 직무영역 다툼,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직무영역 다툼,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이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격신설 시 직무영역 마찰을 줄이기 위한 협의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설로 제안된 언어치료사 자

격, 놀이치료사 자격, 미술치료사 자격, 음악치료사 자격 등은 신경정신과 의사의 직무영역과 중복될 수 있고,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장애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과 중복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신경정신과 의사가 언어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의 직무를 모두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도 학교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장애사회복지의 직무를 모두 수행할 수 없다. 특히 학교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장애사회복지에 대한 교육과 경험이 없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격신설 시 기존자격의 직무영역을 고려하여 마찰을 줄이되, 시장에서 필요한 방향에서 자격신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자격종목이 설정,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자격은 국가자격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민간자격은 관련법에서의 활용정도가 낮아 국가자격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자격으로는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자격을 수용하기에는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 국가자격 신설 시 일반국민들은 취업보장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취업을 고려하여 국가자격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자격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력을 양성하면서 취업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따라서 꼭 국가차원에서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는 국가자격으로 접근을 하고, 민간차원에서의 인력도 필요한 분야는 민간자격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자격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책차원의 규제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자격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금지분야 자격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은 자

격명이나 직무내용에 ‘치료’, ‘요법’, ‘테라피’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의료법에 대한 무면허 의료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정하거나, 유사 의료행위 제한 사례(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심리치료사, 장애인치료사 등) 등을 통하여 민간자격 시장을 정책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여 ‘노인복지와 장애인 수발, 병간호 등의 직무 분야’에 대하여 민간에서 자격신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책차원의 규제(행정공무원들의 정책차원에서의 규제)로 인하여 그동안 국민에 대한 서비스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던 언어치료사 자격, 노인복지관련 자격 등이 민간차원에서 운영되다가 금지분야로 규제되어 민간자격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차원의 규제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민간참여 금지분야 자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의 신설, 통합, 폐지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자격 시장에서 자격종목의 경쟁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

참고문헌

- 강경중·이남철·전재식·윤여인·김환식(2008). 인적자원정책 혁신기반 연구·사업(2008) -핵심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성욱(2006). 의료서비스 개방 논의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제 포커스 93호.
- 권선진 외(1998). 재활전문인력의 현황과 자격제도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수·김미숙(2003). 전문직 자격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동(2009).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연계한 학과 특성화 방안. 한국폴리텍대학.
- 박종성 외(2010). 서비스산업의 자격 연구(1)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종성·김현수·김덕기·이영란·강정은(2008).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천수 외(2006). 보건의료 산업의 직업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변창욱 외 (2010). 인력수급전망을 위한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 연구. 산업연구원.
- 이남철 외(2009). 지식서비스 강국 실현을 위한 인적자원 형성에 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남철 외(2001). 국가 인력수급전망 연구(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상돈 외(2003). 국가인력수급 전망과 정책과제(Ⅲ).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상돈 외(200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모형 개발 및 인프라확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상돈 외(2009). 『주요 미래산업의 인력수급전망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상영(2003). 보건의료자원 수급 현황 및 관리정책 개선방안-의료 및 금융 부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희(2005). 세계 의료시장 변화와 의료산업의 진로. KIET산업경제, 76호, 49-64.
- 오영호 외.(2005). 의료기사인력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영호 · 이준협 · 지영건(2005). 『의료기사인력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4). 2004 보건산업실태조사 및 산업연관분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5). 『2009 미래의 직업세계 학과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Hecker, Daniel E.(2005). "Occupational employment projections to 2014". Monthly Labor Review,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Vol.128, No.11, pp. 70-101.
- OECD(2005). Health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aris, France: OECD Publications.

부록 1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 종목별 응시자격 기준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보건	간병사	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에서 해당종목관련교과목을 최소90시간이상이수하고수료한자
보건	간병사	1.만18세이상(자격기본법제18조결격사유가없는자) 2.자격제한없이본회자격과정을수료한자
보건	기본인명구조원	만18세이상십신이건강한자로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기본인명구조원교육과정을수료한자 -본협회와동등한교육과정을가진타교육기관의교육과정을수료한자
보건	병원경영관리자	가.20세이상으로고졸이상의학력을소지한자로서 나.병원경영업무관련분야3년이상종사자 다.병원경영관리와관련된일정기간이상의교육을이수한자
보건	병원경영컨설턴트	가.2년제대학이상졸업자/졸업예정이상의학력을소지한자로서 나.병원경영업무관련분야5년이상종사자 다.병원경영컨설턴트와관련된60시간이상의교육을이수한자
보건	병원국제마케팅전문가	병원국제마케팅진출희망자및관련업계종사자로,보건복지가족부에서주관하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위탁하여수행하고있는“병원국제마케팅전문가양성교육”의교육과정을이수한자
보건	병원서비스매니저	1.만18세이상자격기본법제18조결격사유가없는자 2.전문대학또는동등이상의학력이나기능을가진자 3.자격과정을수료하고자격시험에합격한자
보건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병원서비스 코디네이터 관련 3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보건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관련 등급의 교과목에 대하여 90시간 이상 수료한자
보건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간호 분야의 전공자로서 초대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자
보건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에서 해당종목관련교과목을 최소90시간이상이수하고수료한자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교육기관(대학 등)에서 30시간 이상의 병원코디네이터 과정을 수료한 자.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가.20세이상으로고졸이상의학력을소지한자로서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나. 병원코디네이터와 관련된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만 19세 이상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 이수자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1급: 병원코디네이터 2급 자격증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급: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서 병원코디네이터 전문 양성 교육기관에서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 대학의 의료분야 관련 학과 협회 인정 교과목 2학점 이상 취득한 자 ○ 협회 인정 교과목: 병원코디네이터(반드시 이수), 의료마케팅, 의료서비스론, 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병원행정학 ○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병원코디네이터 관련 4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병원코디네이터 전문 교육기관 30시간 이상 이수 및 수료한 자.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전문가 자격증	병원코디네이터과정 48시간 교육과정의 80% 이상 이수자 (결석과목 있을 시 자격증 발급 보류, 100% 출석자에 한해 자격증 발급됨)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국내 병원코디네이터 교육기관에서 2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수료증사본 첨부필) 본 협회 시험 부정 행위자로 3년이 경과된 자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제한 없음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가. 20세 이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나. 병원코디네이터와 관련된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보건	병원행정사	1.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상응하는 병원행정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익년도 2월 졸업 예정자 2. 협회 병원행정장기연수과정 이수자
보건	병원행정실무	병원행정실무 자격증 검정 관련 과목 80% 이수자
보건	병원행정실무 코디네이터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 이수자
보건	보협심사관리사	1. 1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갖춘 의료인으로 1급 자격과정 수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p>료자</p> <p>2.2급자격증을취득한후3년이상보험심사업무경력을 갖춘자로서1급자격과정수료자</p> <p>3.2010년1월1일이전에대한간호협회에서인증한교육기관에서시행한보험심사전문과정응수료한자</p> <p>*보험심사관리사1급의응시자격란의제3호는2012년12월31일까지효력을 갖는다.</p> <p>1.2급자격과정수료자</p>
보건	언어발달교육사	<p>1급:1급응시자격은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1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1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2급자격증소지자또는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한다.</p> <p>2급:2급응시자격은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2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2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3급자격증소지자또는전문학사이상(대학교재학생포함)의학력을소지한자로한다.</p> <p>3급:3급응시자격은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3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p>
보건	언어발달교육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본회의언어발달교육사2급소지자 전교육과정별이론,실기,실습포함90시간이상수강자 • 2급 -전교육과정별이론,실기,실습포함90시간이상수강자
보건	언어발달장애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1급응시자격은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1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1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2급자격증소지자또는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한다. • 2급:2급응시자격은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2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2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3급자격증소지자또는전문학사이상(대학교재학생포함)의학력을소지한자로한다. • 3급:3급응시자격은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3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
보건	언어발달지도사	언어발달지도사 2급 교육과정 수료자로 고졸이상자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보건	언어재활교육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1급응시자격은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 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1급양성과정을이수 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1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 2급자격증소지자또는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한다. • 2급-2급응시자격은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 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2급양성과정을이수 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2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 3급자격증소지자또는전문학사이상(대학교재학생 포함)의학력을소지한자로한다. • 3급-3급응시자격은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 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3급양성과정을이수 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
보건	언어재활교육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1급응시자격은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 의 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1급양성과정을이수하 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1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2 급자격증소지자또는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한다. • 2급:2급응시자격은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 의 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2급양성과정을이수하 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2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3 급자격증소지자또는전문학사이상(대학교재학생포 함)의학력을소지한자로한다. • 3급:3급응시자격은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 의 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3급양성과정을이수하 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
보건	언어재활지도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보건	의료보험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취득하고자하는자격증에상응하는병원행정에관한 학문을진공하는전문대학이상의학교를졸업한자또 는익년도2월졸업예정자 2.협회병원행정장기연수과정수료자
보건	의료서비스코디네이터	합격자공고일기준만20세이상인자 대학2학년이상재학중인자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의료정보관리사시험자격을받기위해서는최소한30 학점의의료정보관련과목을취득해야하며의료전산 학(12학점),의료정보(6학점),기초의학(9학점),병원 관리(3학점)의과목이수
보건	자세교정사	제한 없음
보건	청각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임상병리사면허증을소지한자로서청각관리사 교육40시간이상수료자(단,청각관리사2급자격증소 지자는8시간이상의추가교육수료자)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전문학사이상또는임상병리학전문학사취득예정자로서청각관리사교육32시간이상수료자
보건	청능사	<p>[준청능사]준청능사교육100시간이상수료자</p> <p>[청능사]청각학학사이상의학위소지자또는준청능사경력2년을포함하여청능치료경력5년이상이며청능사교육120시간이상수료자</p> <p>[전문청능사]청각학석사이상학위소지자로서청능사경력5년이상인자또는전문</p>
사회복지	가정행복설계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0세이상의남녀 2. 결혼생활10년이상 3. 3자녀이상의부모 4. 부모봉양자우대 5. 종교생활자우대
사회복지	가족상담사	<p>수련감독</p> <p>○가족상담관련분야박사학위를취득한자로서,가족상담사1급자격취득후,본협회가인정하는가족전문상담기관에서본협회가인정하는가족상담사수련감독자의감독하에2년이상가족상담실무에종사한자로서,소정의자격시험및자격심사를통과하여본협회가발급하는자격증을부여받은자</p> <p>○가족상담관련분야석사학위를취득한자로서,가족상담사1급자격취득후,본협회가인정하는가족전문상담기관에서본협회가인정하는가족상담사수련감독자의감독하에3년이상가족상담실무에종사한자로서,소정의자격시험및자격심사를통과하여본협회가발급하는자격증을부여받은자</p> <p>○가족상담사1급자격을취득한후,본협회가인정하는가족전문상담기관에서본협회가인정하는가족상담사수련감독자의감독하에4년이상가족상담실무에종사한자로서,소정의자격시험및자격심사를통과하여본협회가발급하는자격증을부여받은자</p> <p>○가족상담전공박사또는가족상담관련박사학위를소지하고대학에서15년이상재직한전임교수로서,가족상담분야에서학문적혹은상담실천적업적이현저하며,소정의자격심사를통과하여본협회가발급하는자격증을부여받은자</p> <p>○자격관리위원회의심사를거쳐가족상담사수련감독의자격수준에상응하는것으로인정할수있는국내외의가족상담분야의전문가자격증을취득한후1년이상가족상담실무에종사한자로서,소정의자격심사</p>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p>를통과하여본협회가발급하는자격증을부여받은자</p> <p>•1급</p> <p>○가족상담관련분야의박사학위를취득한후,본협회가인정하는가족전문상담기관에서본협회가인정하는가족상담사수련감독자의감독하에1년이상가족상담실무에종사한자로서,소정의자격시험및자격심사를통과하여본협회가발급하는자격증을부여받은자</p> <p>○가족상담관련분야의석사학위를취득한후,본협회가인정하는가족전문상담기관에서본협회가인정하는가족상담사수련감독자의감독하에2년이상가족상담실무에종사한자로서,소정의자격시험및자격심사를통과하여본협회가발급하는자격증을부여받은자</p> <p>○가족상담사2급을취득한후,본협회가인정하는가족전문상담기관에서본협회가인정하는가족상담사수련감독자의감독하에3년이상가족상담경력을가진자로서,소정의자격시험및자격심사를통과하여본협회가발급하는자격증을부여받은자</p> <p>○국내외에서가족상담사1급의자격수준에상응하는것으로인정할수있는자격증을취득하고,1년이상가족상담실무에종사한자로서,소정의자격심사를통과하여본협회가발급하는자격을부여받은자</p> <p>•2급</p> <p>○가족상담관련분야의석사과정(2학기수료이상)에재학중이거나이상의학력을소지한자로서,본협회가인정하는가족전문상담기관에서본협회가인정하는가족상담사(수련감독,1급)의감독하에6개월이상가족상담실무에종사한자로서,소정의자격시험및자격심사를통과하여본협회가발급하는자격증을부여받은자</p> <p>○가족상담관련분야의학사학위를취득한자로서,본협회가인정하는가족전문상담기관에서본협회가인정하는가족상담사(수련감독,1급)의감독하에6개월이상상담실무에종사한자로서,소정의자격시험및자격심사를통과하여본협회가발급하는자격증을부여받은자</p> <p>○가족상담비관련분야의학사학위를취득한자로서,가족전문상담교육기관에서필수교과목을포함한120시간의가족상담자교육을받고,본협회가인정하는가</p>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p>족전문상담기관에서본협회가인정하는가족상담사(수련감독,1급)의감독하에2년이상상담실무에종사한자로서,소정의자격시험및자격심사를통과하여본협회가발급하는자격증을부여받은자</p> <p>○전문학사학위를취득한자로서,가족전문상담교육기관에서필수교과목을포함한120시간의상담자교육을받고,본협회가인정하는가족전문상담기관에서본협회가인정하는가족상담사(수련</p>
사회복지	가족상담사	<p>•1급</p> <p>-상담심리,교육심리및사회복지관련학과졸업자나졸업예정자</p> <p>-본개발원또는유관교육기관및단체에서가족상담사2급또는이에준하는자격을취득한자로서상담및심리치료,가족상담사례연구,가족사회학,가족복지론등관련과목을150시간이상 이수한자</p> <p>•2급</p> <p>-대학에서관련학과졸업자나졸업예정자</p> <p>-본개발원이나유관교육기관및단체에서상담학개론,가족상담학,심리검사,성격심리학등관련과목을120시간이상 이수한자</p> <p>-만20세이상고졸이상자로서성별제한없이1.2항의해당자</p>
사회복지	건강보험사무관리사	<p>합격자공고일기준만18세이상인자</p> <p>고등학교3학년재학중인자(졸업예정자)</p>
사회복지	건강보험청구심사자격증	<p>[1급]</p> <p>2급자격소지자로서3년이상실무경력자</p> <p>보험심사업무/심사기관에서3년이상실무경력자</p> <p>[2급]</p> <p>고졸이상의학력으로만18세이상</p>
사회복지	교정교화상담사	<p>교정교화전문과정 이수한자(12주과정)</p>
사회복지	노인복지레크리에이션	<p>노인복지레크리에이션지도자1급취득한자.</p> <p>고등학교재학생이상,만17세이상인자.</p> <p>만15세이상인자.</p>
사회복지	노인복지체육	<p>노인복지체육지도자1급취득한자.</p> <p>고등학교재학생이상,만17세이상인자.</p> <p>만15세이상인자.</p>
사회복지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	<p>•<2급></p> <p>학력 : 고졸 / 다문화가정복지, 다문화가정심리상담 강화 이수자</p>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학력 : 고졸/다문화가정복지, 다문화가정심리상담 강좌이수자 전문강사> 전문강사과정 이수 및 자격연수과정 이수자
사회복지	도형 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 상담심리, 교육심리 및 사회복지 관련 학과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 본 협회 또는 본 협회와 협약된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도 형 분석 상담사 2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담(임상) 사례가 100건 이상(상담 사례 집계 출자) 과 소논문 제출자로 합격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한다. • 2급 - 본 협회나 협약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상담학 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성격심리학, 도형 분석 상담학 등 관련 과목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만 20세 이상 고졸 이상 자로서 성별 제한 없이 수업에 충실한 자.
사회복지	독서심리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강사: 전문강사과정 이수 및 자격연수과정 이수자 • 1급 취득 후 1년 이상 임상 현장 경험자. 강의 경력자 • 1급: 1급 과정 이수자, 교육수강 45시간 이상 수료한 자 • 2급: 고졸 이상, 2급 과정 이수자, 교육수강 45시간 이상 수료한 자
사회복지	독서심리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 대학원에서 독서 상담 및 문학 치료 또는 상담심리, 교육심리 관련 학과에서 석사 학위 취득자나 취득 예정자 - 본 개발원 또는 유관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독서심리 상담사 2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담 및 심리 치료, 독서심리 상담 사례 연구, 고급 심리 검사, 이상심리학 등 관련 과목을 1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급 - 대학에서 관련 학과 학사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본 개발원이나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독서심리 상담 개론, 발달적 독서심리 상담, 성격심리학, 심리 검사 등 관련 과목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만 20세 이상 고졸 이상 자로서 성별 제한 없이 1.2항의 해당자
사회복지	리딩아트 카운슬러	고졸 이상 리딩아트 카운슬링 과정 이수자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사회복지	미술심리상담사	미술 분야의 전공자로서 초대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자
사회복지	미술심리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미술심리상담또는상담심리,교육심리관련학과석사학위취득자나취득예정자 -본개발원또는유관교육기관및단체에서미술심리상담사2급또는이에준하는자격을취득한자로서상담및심리치료,이상심리학,미술심리상담방법론,통합예술매체기법론등관련과목을150시간이상 이수한자 • 2급 -대학에서관련학과졸업자나졸업예정자 -본개발원이나유관교육기관및단체에서미술심리상담,발달적미술심리상담,성격심리학,심리검사등관련과목을120시간이상 이수한자 -만20세이상고졸이상자로서성별제한없이1.2항의 해당자
사회복지	미술심리상담사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
사회복지	미술심리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에서해당자격종목관련교과목을 최소180시간이상 이수하고수료하였으며,분협의회동자격종목의2급자격을취득한자 • 2급:전문학사이상의학력소지자로,미술심리상담관련분야또는미술치료관련학회에서180~240시간이상 이수하여자격을취득한자이어야하고,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에서해당자격종목관련교과목을최소90시간이상 이수하고수료한자
사회복지	미술심리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에서관련학과졸업자나졸업예정자 -본기관이나유관교육기관및단체에서미술심리상담,발달적미술심리상담,성격심리학,심리검사등관련과목을60시간이상 이수한자 -만20세이상고졸이상자로서성별제한없이2항의 해당자
사회복지	미술심리상담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미술심리상담 전문가과정에서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	미술심리지도사	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에서해당종목관련교과목을 최소90시간이상 이수하고수료한자
사회복지	미술심리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고등학교졸업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 인정되는자로서본법인의미술심리지도사1급교육과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정을이수한자 •2급 고등학교졸업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 인정되는자로서본법인의미술심리지도사2급교육과정 정을이수한자
사회복지	미술심리지도사	1.만18세이상(자격기본법제18조결격사유가없는자 2.전문대졸업또는동등이상의학력으로사회복지사또 는사회복지관련시설종사자(사회복지학전공,관련기 관실무자우선)사회복지사 3.본회자격과정을수료한자
사회복지	미술재활지도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사회복지	미술정서인지상담사	•[1급] 1.2급자격을취득하고2년이상관련실무경력을갖은자 중1급관련교육과정을이수한자 2.사회복지또는관련학과(유아교육,교육학,심리학, 상담학등)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사학위과정이상 인자중1급관련교육과정을이수한자 3.자격검정위원회를통하여이와동등한경력이인정되 는자 •[2급] 1.고등교육법에의한전문대학이상인자로서2급관련교 육과정을이수한자 2.사회복지또는관련학과(유아교육,교육학,심리학, 상담학등)전공자중2급관련교육과정을이수한자 3.자격검정위원회를통하여이와동등한경력이인정되 는자
사회복지	발달심리자격증	발달심리전문가 1.필기시험:심리학과나관련학과의석사및박사학위 소지자로서소정의전문경력을쌓은후본학회에등록 한자 2.수련심사 1)발달심리학이나관련분야에서박사학위를받은자 로서,발달심리전문가자격시험에합격하고,본학회가 인정하는전문가나전문기관의감독아래에서소정의 수련을받은후,수련감독전문가의추천을받은자 2)발달심리학이나관련분야에서석사학위를받고본 학회가인정하는전문가나전문기관의감독아래에서3 년이상경력을가지고있고본학회주최워크샵48시 간이상 이수한자로서,발달심리전문가자격시험에합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p>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p> <p>3) 발달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p> <p>발달심리사</p> <p>1. 필기시험: 심리학이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발달심리학회 회원 또는 입회를 신청한 자(관련 학과에서 3년 이상의 학부 과정을 이수한 자, 학부 전공과는 별개로 관련 전공 대학원에서 3학기 과정을 이수한 자도 응시 가능함)</p> <p>2. 수련심사: 심리학이나 제2조에 명시된 관련 학과에서 3년의 과정을 수료한 후, 발달심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아래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p>
사회복지	발달장애 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응시자격-본 기관이 지정 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1급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수수료 증을 받은 자로 한다. 1급 양성 과정 지원 자격은 2급 자격 증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로 한다. • 2급 응시자격-2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 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2급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수수료 증을 받은 자로 한다. 2급 양성 과정 지원 자격은 3급 자격 증 소지자 또는 전문 학사 이상(대학교 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 한 자로 한다. 3급 응시자격-3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 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3급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수수료 증을 받은 자로 한다.
사회복지	발달진단평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① 대학원에서 심리학, 아동학, 특수교육학, 미술치료, 사회복지학 등 진단평가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자 중 진단평가 관련 분야에서 1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40시간 이상의 발달진단평가 연수 이수자 ② 발달진단평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협회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p>가주관하는40시간이상의발달진단평가연수이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발달진단평가사2급자격증을취득한자로서,본협회가주관하는30시간이상의발달진단평가연수이수자 ②대학에서심리학,아동학,특수교육학,미술치료,사회복지학등을전공하고진단평가관련분야에서1급이상의자격증을취득한자로서,본협회가주관하는30시간이상의발달진단평가연수이수자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발달진단평가사3급자격증을취득한자로서,본협회가주관하는30시간이상의발달진단평가연수이수자 ②대학에서심리학,아동학,특수교육학,미술치료,사회복지학등을전공하고진단평가관련분야에서2급이상의자격증을취득한자로서,본협회가주관하는30시간이상의발달진단평가연수이수자 ③4년제대학에서심리학아동학특수교육학,미술치료,행동치료,사회복지학등을전공하고아동및청소년관련기관에서3년이상종사한자로서,본협회가주관하는30시간이상의발달진단평가연수이수자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대학생및아동관련기관종사자,그외진단평가에관심이있는자로서,본협회가주관하는30시간이상의발달진단평가연수이수자
사회복지	베이비시터	<p>만18세이상인자로서학력,경력제한이없으며,다음의각호의1에해당하지아니하는대한민국국적을가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③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④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⑤기타부정행방범에의하여생활댄스지도자자격이취소된후2회시험이상경과되지아니한자.
사회복지	베이비시터	<p>만18세이상인자로서학력및경력에제한이없으며,다음각호의1에해당하지아니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③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집행이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면제된날부터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④급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⑤본원에서실시하는자격시험에서부정행위로인한처분을받았거나또는기타부정한방법에의하여자격이취소된후2회시험이상경과되지아니한자.
사회복지	베이비시터	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에서해당자격종목관련교과목을 최소100시간이상이수하고수료한자
사회복지	베이비시터	1.만18세이상(자격기본법제18조결격사유가없는자) 2.중등학교졸업또는동등이상의학력이나기능을가진자 3.본회자격과정을수료한자
사회복지	보험심사관리사	1.1년이상임상경력을갖춘의료인으로1급자격과정수료자 2.2급자격증을취득한후3년이상보험심사업무경력을갖춘자로서1급자격과정수료자 3.2010년1월1일전에대한간호협회에서인증한교육기관에서시행한보험심사전문과정을수료한자 *보험심사관리사1급의응시자격란의제3호는2012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갖는다. 1.2급자격과정수료자
사회복지	보험심사평가사	①보험심사평가사1급 • 종합병원이상에서3년이상보험심사업무경력자,심사평가원등심사기관에서3년이상심사실무경력자 • 2급자격소지자로서2년이상실무경력자 • 2급자격취득후1년이경과한자로서대학(평생교육원포함),의료기관,사이버교육,보험심사평가사협회등에서보험심사평가관련과목을6학점(72시간)이상 이수한자 ②보험심사평가사2급 • 만18세이상학력,경력제한없음
사회복지	부모사랑양육사	제한없음
사회복지	사회보험사	제한없음
사회복지	사회복지모금전문가	• 1급 1.2급자격을취득하고중1급관련교육과정을이수한자 2.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에서사회복지또는관련학과(유아교육,교육학,심리학,상담학등)를전공한자이거나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p>나2년이상관련실무경력을 갖춘자중1급관련교육과정 정을 이수한자</p> <p>3.자격검정위원회를통하여이와동등한경력이인정되 는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급 <p>1.고등교육법에의한진문대학에서사회복지또는관련 학과(유아교육,교육학,심리학,상담학등)를진공한자 로서2급관련교육과정을이수한자</p> <p>2.자격검정위원회를통하여이와동등한경력이인정되 는자</p>
사회복지	사회서비스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사회서비스관리사2급자격취득후2년이상실무 경력자,사회서비스관련대학박사학위이상재학자,기 타내용동등자 •2급-사회서비스종사자또는예정자,사회서비스관련 대학재학생,기타내용동등자
사회복지	상담사	<p>[1급~3급]</p> <p>관련등급의교과목에대하여90시간이상수료한자</p>
사회복지	상담심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 <p>1)상담관련분야의박사학위를취득한후본학회가인 정하는수련감독자의감독하에1년이상상담경력을 가진자</p> <p>2)상담관련분야의석사학위를취득한후또는상담비 관련분야석사학위취득자로서상담관련분야박사과 정에입학한후본학회가인정하는수련감독자의감독 하에3년이상상담경력을가진자</p> <p>3)상담심리사2급자격증을취득한후본학회가인정하 는수련감독자의감독하에4년이상상담경력을가진 자</p> <p>4)박사학위소지자로서자격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 쳐상담심리사1급의자격수준에상응하는것으로인정 할수있는외국의상담및심리치료분야의전문가자격 증을취득하고국내에서1년이상상담경력과본학회 정회원으로서1년이상활동실적을가진자</p> <p>5)대학의상담전공부교수이상또는이와유사한경력 의상담전공자의경우,자격검정위원회의심사에따라 특별전형할수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급 <p>1)상담관련분야의석사과정에재학중이거나그이상 의학력을소지하고본학회가인정하는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1년이상상담경력을가진자</p>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2)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2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자 4)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자
사회복지	생활안전관리사	1. 대학교졸업(안전관련학과) 및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자. 2. 사회중사업종에서 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자. 3.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련 연수를 16시간 이상 이수한자.
사회복지	성폭력상담사	• [1급] 2급 자격 취득자 및 상담심리계 대학교졸업자 • [2급]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사회복지	수화통역사	만 19세 이상인 자(시험 시행일 기준)
사회복지	스트레스관리사	1급-스트레스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로서 현직 실무경력 30시간 이상인자 2급-스트레스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로서 현직 실무경력 15시간 이상인자 3급-제한없음
사회복지	스트레스관리지도사	• 전문강사: 전문강사 과정 이수 및 자격연수과정 수료자 1급 취득 후 1년 이상 현장경력자. 강의경력자 • 1급: 1급 과정 이수자 및 2급 취득 후 6개월 현장경력자 교육수강 20시간 이상 수료한자
사회복지	스트레스관리지도사	• 2급-2급 과정 이수자. 교육수강 30시간 이상 수료한자 • 1급-1급 과정 이수자 및 2급 취득 후 6개월 이상 경력자 교육수강 30시간 이상 수료한자 전문강사- 전문강사 과정 이수 및 자격연수과정 수료자 1급 취득 후 1년 이상 임상현장경력자. 강의경력자
사회복지	스트레스지도사	• 전문강사 - 전문강사 과정 이수 및 자격연수과정 수료자 1급 취득 후 1년 이상 현장경력자. 강의경력자 • 1급 - 1급 과정 이수자 및 2급 취득 후 6개월 현장경력자 교육수강 36시간 이상 수료한자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급 -고졸이상, 2급과정 이수자.교육수강36시간이상수료한자
사회복지	스트레스코치 자격증	스트레스코치 양성과정 16시간 이수 자
사회복지	실버재활운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1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1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2급자격증소지자또는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한다. •2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2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2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3급자격증소지자또는전문학사이상(대학교재학생포함)의학력을소지한자로한다. •3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3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
사회복지	심리분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 : 대학원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2급 : 대학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세부사항 : 별첨참조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 2급자격취득자및상담심리계대학교졸업자 •[2급] 고등학교졸업이상자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2급취득후응시 •2급:본센터상담관련교육과정 이수자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1)대학원에서상담심리관련분야의박사과정을마친자중시험에합격하며자격관리위원회의의결을득한자 2)1급자격취득후관련업무에2년이상수련(종사자)중시험에합격하며자격관리위원회의의결을득한자 •1급 1)대학원에서상담심리관련분야의석사학위이상의학위를수여받은자중1급시험에합격한자 2)4년제대학에서상담심리관련학사학위를취득하여관련업무에2년이상수련(종사자)중1급시험에합격한자 3)준회원으로서3년이상자격을유지하며,심리상담사2급이상의자격을취득한자중1급시험에합격한자 •2급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1) 대학(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자 중 시험에 합격한 자 2)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교 및 상담기관에서 상담에 3년 이상 수련(종사)하고 있는 자 중 시험에 합격한 자 3) 전문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교 및 상담기관에서 상담에 5년 이상 수련(종사)하고 있는 자 중 시험에 합격한 자 4) 고졸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교 및 상담기관에서 상담에 7년 이상 수련(종사)하고 있는 자 중 시험에 합격한 자 5) 전문 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수련(종사)한 자 중 시험에 합격한 자 6) 학사 학위 이상자가 학회 및 분과에서 주관·인정하는 교육을 240시간 이상 받은 자 중 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 교육 심리 등 관련 학과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 본개발원 또는 유관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심리상담사 2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담 및 심리 치료, 상담 사례 연구, 고급 심리 검사, 이상 심리학 등 관련 과목을 1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급 - 대학에서 관련 학과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 본개발원이나 유관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상담 개론, 성격 심리학, 심리 검사, 집단 상담 학 등 관련 과목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만 20세 이상 고졸 이상자로서 성별 제한 없이 1.2항의 해당자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국공립 대학 평생 교육원에서 해당 자격종목 관련 교과목을 최소 270시간 이상 이수하고 수료하였으며, 본 협의 회 동 자격종목의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1급: 국공립 대학 평생 교육원에서 해당 자격종목 관련 교과목을 최소 180시간 이상 이수하고 수료하였으며, 본 협의 회 동 자격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2급: 국공립 대학 평생 교육원에서 해당 자격종목 관련 교과목을 최소 90시간 이상 이수하고 수료한 자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고졸이상의학력소지자가본대학에서개설하는소정의교육과정을이수하고실기수련과정인연수20시간의요건을충족한경우응시자격을부여함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 -대학원에서상담심리, 교육심리등관련학과졸업자나졸업예정자 -본기관또는유관교육기관및단체에서심리상담사2급또는이에준하는자격을취득한자로서상담및상담사례연구, 고급심리검사, 이상심리학등관련과목을200시간이상이수한자 •2급 -대학에서관련학과졸업자나졸업예정자 -본기관이나유관교육기관및단체에서상담개론, 성격심리학, 심리검사, 집단상담학등관련과목을120시간이상이수한자 -만20세이상고졸이상자로서성별제한없이2항의해당자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주2회 4시간 강의 3개월 과정을 80%이상 출석한자
사회복지	심리상담사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전문대이상관련학과졸업및졸업예정자또는심리상담사2급취득후3년이경과한자 •2급:제한없음
사회복지	심리장애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1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1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2급자격증소지자또는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한다. •2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2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2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3급자격증소지자또는전문학사이상(대학교재학생포함)의학력을소지한자로한다. •3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3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
사회복지	심리재활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1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1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2급자격증소지자또는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한다. •2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2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은자로한다.2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3급자격증소지자또는전문학사이상(대학교재학생포함)의학력을소지한자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3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
사회복지	심리재활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1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1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2급자격증소지자또는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한다. •2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2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2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3급자격증소지자또는전문학사이상(대학교재학생포함)의학력을소지한자로한다. •3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3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
사회복지	아동미술 심리상담사	1.아동미술심리상담사1급 -아동미술심리상담사2급자격증소지자 -1급교육과정을이수한자 2.아동미술심리상담사2급 -만18세이상전문대학이상졸업자및 재학중인자 기타동등학력이나기능을가진자
사회복지	아동발달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1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1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2급자격증소지자또는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한다. •2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2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2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3급자격증소지자또는전문학사이상(대학교재학생포함)의학력을소지한자로한다. •3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3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
사회복지	아동발달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1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1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2급자격증소지자또는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한다.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본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등에서 2급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로 한다. 2급양성 과정 지원 자격은 3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대학교 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한다. • 3급:본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등에서 3급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로 한다.
사회복지	아동발달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본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등에서 1급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로 한다. 1급양성 과정 지원 자격은 2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 2급:본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등에서 2급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로 한다. 2급양성 과정 지원 자격은 3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대학교 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한다. • 3급:본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등에서 3급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로 한다.
사회복지	아동상담사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본 법인의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2급: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본 법인의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	아동상담지도사	유치원 정교사, 보육교사 또는 관련 과목 이수자 및 유아교육, 보육교사, 재학생
사회복지	웃음코디네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2, 3급 자격 취득자로서 봉사활동이나 현장 경험 40시간 경력자 • [2급] 3급 자격 취득자로서 봉사활동이나 현장 경험 20시간 경력자 • [3급] 제한 없음
사회복지	웃음코디네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웃음코디 1급 자격 취득자로서 현장 실무 경험 30시간 이상인 자 • 2급-웃음코디 2급 자격 취득자로서 현장 실무 경험 15시간 이상인 자 • 3급-제한 없음
사회복지	웃음코디네이터	• 1급-2급 취득 후 행복 웃음실기, 필기 고사 60점 이상 합격자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행복웃음과목20시간이수자
사회복지	유아비디오증후군재활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1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1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2급자격증소지자또는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한다. • 2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2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2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3급자격증소지자또는전문학사이상(대학교재학생포함)의학력을소지한자로한다. • 3급:3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3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
사회복지	유아아동레크리에이션	유아아동레크리에이션지도자1급취득한자. 고등학교재학생이상,만17세이상인자. 만15세이상인자.
사회복지	인성·심리상담사자격증	-국방부(군):장교/부사관후보생,현역간부중본원교육이수자 -일반인:고졸이상자중본원교육이수자
사회복지	임상미술심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미술심리사2급 ○ 관련학과3학년(전문학사)이상인자로본법인이인정하는연수교육및임상실습을300시간이상이수하고,사례보고서1편을제출한다. ○ 비관련학과전문학사소지자중관련경력2년이상인자는자격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응시할수있음. • 임상미술심리사1급 ○ 관련학과학사이상인자,임상미술심리사취득후경력2년이경과한자로본법인이인정하는연수교육및임상실습을400시간이상이수하고사례보고서2편을제출한다. • 임상미술심리전문가 ○ 관련학과석사이상이며임상미술심리사1급취득후경력2년이경과한자로본법인이인정하는연수교육및임상수련시간을600시간이상이수하고사례보고서3편을제출한다. ○ 관련학과박사수료이상이며,관련학회에미술심리상담관련논문을1편이상게재한자는무시험전형으로응시가가능함.임상사례및슈퍼비전150시간이상을이수하고사례보고서3편을제출한다.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사	1.종합평가에있어과제물(Report,실습일지)을1편이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라도제출하지않을경우접수에상관없이수료불가능 2.전체교육의3/4이상출석하여야수료인정출석수미달일경우에는취득접수와관계없이자격취득불가
사회복지	자원봉사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본법인에서실시하는자원봉사지도사1급의교육과정을이수하고,2급자격취득후자원봉사1년(200시간)이상경력자 •2급:본법인에서실시하는자원봉사지도사2급교육과정을이수한자
사회복지	재활레크리에이션	재활레크리에이션지도사1급취득한자. 고등학교재학생이상,만17세이상인자. 만15세이상인자.
사회복지	재활레크리에이션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1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1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2급자격증소지자또는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한다. •2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2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2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3급자격증소지자또는전문학사이상(대학교재학생포함)의학력을소지한자로한다. •3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3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
사회복지	재활태권도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1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1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2급자격증소지자또는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한다. •2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2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2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3급자격증소지자또는전문학사이상(대학교재학생포함)의학력을소지한자로한다. •3급: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3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
사회복지	전문보험심사청구사	만 18세이상, 학력.경력 제한 없음
사회복지	전문상담사	[수련감독급] 만35세이상인자로서다음각항에 해당하는자 1.1급전문상담사자격을취득한후4년이경과한자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2. 다음각호에 해당하는자는 필기시험을 면한다(해당 분과 학회에 문의). (1)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전문기관에서 관련분야의 등급진
사회복지	전문카운슬러 자격	[1급] 전문카운슬러 2급 자격 취득 후 5년이 상경과한 자 [2급] 전문카운슬러 기본과정, 실무과정, 실습을 수료한 자
사회복지	점역교정사 자격증	• 1급 가.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이 상경과한 자로서 나.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시각장애인 관련기관의 점역교정업무 5년이 상의 경력자 • 2급 가.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이 상경과한 자로서 나.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시각장애인 관련기관의 점역교정업무 5년이 상의 경력자 • 3급 가. 20세 이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또는 나. 시각장애인 관련기관의 점역, 교정업무 3년이 상의 경력자
사회복지	특수교육경영사	• 1급: 본 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1급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로 한다. 1급 양성 과정 지원 자격은 2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 2급: 본 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2급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로 한다. 2급 양성 과정 지원 자격은 3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 학사 이상(대학교 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한다. • 3급: 본 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3급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로 한다.
사회복지	특수체육치료사	• 1급 본 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1급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로 한다. 1급 양성 과정 지원 자격은 2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 2급 본 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2급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분류	자격종목	응시자격
		<p>로한다.2급양성과정지원자격은3급자격증소지자또는전문학사이상(대학교재학생포함)의학력을소지한자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급 본기관이지정한평생교육법에의거설립된평생교육기관등에서3급양성과정을이수하고수료증을받은자로한다.
사회복지	학교폭력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2급자격취득자에한함 •2급:3급자격취득자에한함 •3급:청소년,교육,사회복지,상담,심리,사회등관련시설,단체,학부·원생및학부모,관련지도자등
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전문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1급자격취득자에한함 •1급:2급자격취득자에한함 •2급:청소년,교육,사회복지,상담,심리,사회등관련시설,단체,학부·원생및학부모,관련지도자등
사회복지	행복컨설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강사 -전문강사과정 이수 및 자격 연수 과정 수료자 1급 취득 후 1년 이상 현장 경험자. 강의 경력자 •1급 -1급 과정 이수자 및 2급 취득 후 6개월 현장 경험자 교육수강 36시간 이상 수료한자 •2급 -고졸 이상, 2급 과정 이수자. 교육수강 36시간 이상 수료한자
사회복지	행복컨설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급-2급과정 이수자. 교육수강 30시간 이상 수료한자 •1급-1급과정 이수자 및 2급 취득 후 6개월 이상 경험자 교육수강 30시간 이상 수료한자 •전문강사-전문강사과정 이수 및 자격 연수 과정 수료자 1급 취득 후 1년 이상 입상 현장 경험자. 강의 경력자
사회복지	호스피스전문봉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 18세 이상 자격 기본법 제 18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학력 제한 없이 본회 자격 과정을 수료 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주: 2010년 7월 기준임.

부록 2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 종목별 합격기준 예시

분류	자격종목	합격기준
보건	간병사	필기 :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획득한 자 실기 : 총점 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한 자
보건	간병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총점 100점에서 60점 이상 획득한 자
보건	기본인명구조원	이론 및 실기 총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보건	병원경영관리자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합격이며 최저 40점 이상 획득
보건	병원경영컨설턴트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합격이며 최저 40점 이상 획득
보건	병원국제마케팅전문가	(필기)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득점 (실기)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채점기준 100점 만점 기준 60%이상, 평가항목별 50%이상 득점
보건	병원서비스매니저	필기 :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획득한 자 실기 : 총점 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한 자
보건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획득한 자
보건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총점 60점 이상
보건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보건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3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함. (단, 3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과락임)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획득한 자.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전문가 자격증	필기, 면접 응대, 모의 면접 - 각각 80 점 이상 합격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병원코디네이터기본 100점 의료서비스 이해 100점 병원코디네이터실무 100점 (총점 300점 중 210점 이상)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1급] 필기 :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실기 :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2급] 필기 :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실기 :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단,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과락임)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50문항/100점 기준

분류	자격종목	합격기준
		70점 (절대평가)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합격이며 최저 40점 이상 획득
보건	병원코디네이터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보건	병원코디네이터자격증	각 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과락은 1개 과목이 40점 미만인 경우
보건	병원코디네이터자격증	필기 : 100점 만점 중 70점 (과락 없음)
보건	병원코디네이터자격증	[필기] 총점 100점 중 80점 이상 [실기] 총점 100점 중 80점 이상
보건	병원행정사	120점 만점의 60%(72점 이상)
보건	병원행정실무 코디네이터	50점/100문항 70점(절대평가)
보건	병원행정실무	60분간 과목 구분 없이 총 50문제 (객관식 4지선다)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과락 없음)
보건	보험심사관리사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보건	보험심사평가사	[1급] 필기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실기 : 70점 이상인 자 [2급] 필기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실기 : 60점 이상인 자
보건	언어발달교육사	<1급> -이론: 100점 만점에 70점 -실기: 100점 만점에 70점 <2급> -이론: 100점 만점에 70점 -실기: 100점 만점에 70점 *검정과목별 70점 이상 *4과목이상 과락이 없어야 함.
보건	언어발달교육사	1급 :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 2,3급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50점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함
보건	언어발달장애지도사	1급 :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 2,3급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50점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함
보건	언어발달지도사	총점 400점 중 240점 이상
보건	언어재활교육사	1급 -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분류	자격종목	합격기준
		2급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50점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한다. 3급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50점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한다.
보건	언어재활교육사	1급 :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 2,3급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50점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함
보건	언어재활지도사	1급 : 60분간 객관식 검정시험(70% 이상) 및 실습, 슈퍼바이저 5건 이상 2급 : 60분간 객관식 검정시험(70% 이상) 및 실습
보건	의료보험사	120점 만점의 60% (72점 이상)
보건	의료서비스코디네이터	1차 필기-각 과목별 40점 이상자(과락적용) 중에서 총점 평균 60점 이상자로 합격처리 2차 필기-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하고 각 과목별 40점 이상자(과락적용) 중에서 총점 평균 60점 이상자로 합격처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의료정보학 100점 의료전산일반 100점 기초의학 100점 병원관리 100점 (총점 400점 중 240점 이상) 전체 과목별 40점 이상, 과목당 60점 이상의 점수 이상인 자
보건	자세교정사	[필기] 평균 60점 이상 [실기] 채점요원 2인의 점수를 가중 평균하여 60점 이상
보건	청각관리사	1급 : 총점 100점 중 80점 이상 2급 :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보건	청능사	[준청능사] 필기, 실기 각각 60점 이상 [청능사] 필기, 실기 각각 60점 이상 [전문청능사] 청각학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청능사경력 5년 이상 인자 또는 전문청능사교육 240시간 이상 수료자로서 청능사경력 7년 이상인 자 / 8시간 이상의 전문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 이
사회 보장	건강보험사무관리사	[1차 필기] 각 과목별 40점 이상자(과락적용) 중에서 총점 평균 60점 이상자로 합격처리 [2차 필기]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하고 각 과목별 40점 이상자(과락적용) 중에서 총점 평균 60점 이상자

분류	자격종목	합격기준
		로 합격처리
사회보장	건강보험청구심사자격증	[1급~2급][필기/실기]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사회보장	보험심사평가사	[1급] 필기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실기 : 70점 이상인 자 [2급] 필기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실기 : 60점 이상인 자
사회보장	사회보험사	매 과목당 100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사회보장	전문보험심사청구사	임상이론 40점, 건강보험요양급여실무이론 60점(총점 100점 중 60점이상) 청구심사실기 외래 80점, 진료비 사후관리 외래 20점, 청구심사실기 입원 80점, 진료비 사후관리 입원 20점 (총점 200점 중 120점이상) => 총점 300점 중 180점이상
사회복지	가정행복설계사	평균 80점 이상
사회복지	가족상담사	<1급> 과목별 100점, 총점 400점 중 평균 70점 이상, 총점 280점 이상, 과목별 과락50점 (1문제당 4점) <2급> 과목별 100점, 총점 400점 중 평균 60점 이상, 총점 240점 이상, 과목별 과락40점 (1문제당 4점)
사회복지	가족상담사	가족상담사 수련감독 (주관식 5문항) - 과목당 50분간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가족상담사 1급 (객관식 20문항) - 과목당 50분간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가족상담사 2급 (객관식 20문항) - 과목당 50분간

분류	자격종목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사회복지	교정교화상담사	최종점수 60점 이상 합격
사회복지	노인복지레크리에이션	<p><전문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 :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50점, 노인복지레크리에이션게임 창작과 응용 50점 - 실기 : 스피치와 사회기법발표 50점, 노인복지레크리에이션 종목 창작지도 50점 총점 200점 중 120점 이상 <p><1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 : 노인복지레크리에이션리더십 25점, 노인 복지레크리에이션론 25점,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25점, 노인복지레크리에이션게임 창작과 응용 25점 - 실기 : 조별 창작 노인복지레크리에이션 발표 50점, 스피치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50점 총점 200점 중 120점 이상 <p><2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 : 노인복지레크리에이션리더십 20점, 노인복지레크리에이션론 20점, 프로그램 작성 20점, 여가사회심리학 20점, 야외활동과 게임 창작 20점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사회복지	노인복지체육	<p><전문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 : 프로그램기획 및 평가 50점, 노인복지체육게임 창작과 응용50점 - 실기 : 창작노인복지체육 발표 100점 총점 200점 중 120점 이상 <p><1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 : 노인복지체육리더십 25점, 여가노인복지체육론 25점, 프로그램기획 및 평가 25점, 노인복지체육게임 창작과 응용 25점 - 실기 : 조별 창작노인복지체육지도 발표 50점, 팀별 노인복지체육 창작발표 50점총점 200점 중 120점 이상 <p><2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 : 노인복지체육리더십 20점, 여가노인복지체육론 20점, 프로그램기획 및 평가 20점, 노인복지체육게임 창작과 응용 20점, 노인복지체육역할과 필요성 20점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사회복지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	2급: 60점 1급: 70점 전문강사: 연수 실습
사회복지	도형 상담사	1급 : 과목별 20점(필기4과목, 면접) 총점 100점 중

분류	자격종목	합격기준
		평균 70점 이상, 2급 : 과목별 20점(필기4과목, 면접) 총점 100점 중 평균 60점 이상,
사회복지	독서심리상담사	<전문 강사> 이론 : 5지선다형 50문제 100점 만점 70점 실기 : 강의시범, 시낭송과 프로그램 100점 만점 70점 <1급> 이론 : 5지선다형 50문제 100점 만점 60점 실기 : 시창작, 시화진 100점 만점 70점 <2급> 필기 : 1과목 5지선다형 50문제 100점 만점 60점 실기 : 시 낭송 100점 만점 60점
사회복지	독서심리상담사	<1급> - 과목별 100점 - 총점 400점 중 평균 70점 이상 - 총점 280점 이상, 과목별 과락50점(1문제당 4점) <2급> - 과목별 100점 - 총점 400점 중 평균 60점 이상 - 총점 240점 이상, 과목별 과락40점(1문제당 4점)
사회복지	리딩아트 카운슬러	필기고사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리딩아트카운슬링실기 (총점 100점 중 80점 이상)
사회복지	미술심리상담사	총점 70점 이상
사회복지	미술심리상담사	개론, 기법, 활용 60점 이상의 필기시험과 70점 이상의 서류심사 및 면접
사회복지	미술심리상담사	출석(20%) 필기(60%) 실기(20%) -총점 60점 이상
사회복지	미술심리상담사	3급 1) 아동 미술심리상담 100점2) 가족 미술심리상담 100점3) 색채심리 100점(총점300점 중 180점 이상) 2급 1) 아동 및 가족 미술심리상담 100점2) 미술심리진단 및 평가 100점3) 투사기법 100점(총점300점 중 180점 이상) 1급 1) 상담 및 심리의 이론과 기법 100점2) 미술심 리상담 사례 연구법 100점3) 정신병리의 이해 100점4) 미술심리진단 및 평가 100점5) 투사법 및 심리검사

분류	자격종목	합격기준
		100점(총점500점 중 300점 이상)
사회복지	미술심리상담사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사회복지	미술심리지도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획득한 자
사회복지	미술심리지도사	<p><1급> 미술심리이론 50문항 총점 100점 중 80점 이상 득점자 미술심리실제 : 미술기법을 활용한 활동 총점 100점 중 80점 이상 득점자</p> <p><2급> 미술심리이론 30문항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득점자 미술심리실제 : 미술기법을 활용한 활동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득점자</p>
사회복지	미술심리지도사	필기 :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획득한 자 실기 : 총점 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한 자
사회복지	미술재활지도사	1급 : 60분간 객관식 검정시험(70%이상) 및 실습, 슈퍼바이저 5건 이상 2급 : 60분간 객관식 검정시험(70%이상) 및 실습
사회복지	미술정서인지상담사	<p>[1급] - 평균 70%이상 유효답안을 작성한 경우 - 검정과목별로 40%이상의 유효답안을 작성한 경우 (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유효답안 40%미만인 경우는 불합격)</p> <p>[2급] - 평균 60%이상 유효답안을 작성한 경우 - 검정과목별로 40%이상의 유효답안을 작성한 경우 (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유효답안 40%미만인 경우는 불합격)</p>
사회복지	발달심리자격증	필기 : 각 과목 100점 만점에서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이고 모든 과목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수련심사 : 자격관리 위원회의 수련과정 평가 및 자격심사
사회복지	발달장애상담사	1급-이론: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실기: 최고 난이도 상담 능력을 평가한다. 2급-이론: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50점 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한다. 실기: 전문상담 능력을 평가한다.

분류	자격종목	합격기준
		3급-이론: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사회복지	발달진단평가사	100점 만점 기준에 70점 이상(전문가는 면접 시 과반수 이상 심사위원찬성)
사회복지	베이비시터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
사회복지	베이비시터	필기총점 100점 중 필기시험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실기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사회복지	베이비시터	이론시험에 응시하여, 총100만점 기준 60점 이상 획득한 자
사회복지	베이비시터	필기 :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획득한 자 실기 : 총점 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한 자
사회복지	부모사랑양육사	총 30문항 중 정답 문항 수 18문항 이상 점수로 환산시 60점 이상
사회복지	사회보험사	매 과목당 100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사회복지	사회복지모금전문가	1급 - 평균 60%이상 유효답안을 작성한 경우 - 검정과목별로 40%이상의 유효답안을 작성한 경우 (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유효답안 40%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2급 - 평균 70%이상 유효답안을 작성한 경우 - 검정과목별로 40%이상의 유효답안을 작성한 경우 (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유효답안 40%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사회복지	사회서비스관리사	필기(객관식)-평균 60%이상 유효답안 작성(과목별 50%이상) 실기(작업형)-과제 내용의 60%이상 완성
사회복지	상담사	[1급~3급]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사회복지	상담심리사	[1급~2급] 필기: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사정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결정함 자격심사(서류심사): 학회에서 요구하는 수련내용 (<표 2-6> 참조)을 필하였는지 판단 자격심사(면접심사): 평균 C 이상
사회복지	생활안전관리사	필기시험 60점 이상

분류	자격종목	합격기준
사회복지	성폭력상담사	상담의 기초이론, 유형별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관련법 및 지원체계 (각30문제) 60점 이상의 필기시험과 70점 이상의 서류심사 및 면접
사회복지	수화통역사	1차 필기시험 1.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득점하되, 4과목의 총득점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2. 1을 충족시킨 자로서 '한국어의 이해' 수화통역의 기초 2과목이 각각 60점 이상인 자 2차 실기시험 1. 3과목 모두 40점 이상 득점을 하되, 총득점 평균이 60점 이상인자 2. 1의 조건을 충족시킨 자로서 '음성통역'이 60점 이상인 자 3차 합격자연수 25시간의 교육 이수 확인 후 자격증 교부
사회복지	스트레스관리사	240점 중 168점 이상 (백분율 70점)
사회복지	스트레스관리지도사	전문강사 : 이론: 스트레스관리지도학 50문항 70점 이상 실기: 1시간 샘플강의 테스트 70점 이상 1급 : 이론: 스트레스지도학 50문항 60점 이상 실기: 1시간 샘플강의 테스트 60점 이상
사회복지	스트레스관리지도사	2급:100점 만점 60점(실기60점) 1급:100점 만점 60점(실기70점) 전문강사:100점 만점 70점(실기70점)
사회복지	스트레스지도사	<전문강사> - 이론 : 100점 만점에 70점 - 실기 : 100점 만점에 70점 <1급> -이론: 100점 만점에 60점 -실기: 100점 만점에 60점 <2급> -이론: 100점 만점에 60점 -실기: 100점 만점에 60점
사회복지	스트레스코치 자격증	스트레스코치 양성과정 16시간 이수 자
사회복지	실버재활운동사	1급 :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 23급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50점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함

분류	자격종목	합격기준
사회복지	심리분석사	과목별 100문제, 총 4과목, 400점 중 1급(280점 이상)2급(240점 이상) 합격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개론, 유형별기법,상담활용(각30문제) 60점이상의필기시험과70점 이상의 서류심사 및 면접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필기60점 이상 획득 후 면접80점 이상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전문가:경력,학위,논문,필기시험합격자 ※필기시험기준은1·2급과동일 1,2급: 각과목별과락(60점)이 없어야 하며,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두 과목 평균70점이상자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1급 : 필기시험 70점 이상 2급 : 필기시험 60점 이상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획득한 자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총점100점 중 60점 이상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1급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100점 중 각각60점 이상 획득한 자 *객관식50문항-100점 *주관식5문항-100점 *축어록100점 *집단상담90시간, 보고서작성 *축어록 5회 제출후 슈퍼비전 2급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100점 중 각각60점 이상 획득한 자 *객관식50문항-100점 *주관식5문항-100점 *축어록-100점 *집단상담30시간, 보고서작성 *축어록2회 제출 후 슈퍼비전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총점100점 중 60점 이상 -심리학개론50점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50점
사회복지	심리상담사자격증	평균 60점 이상
사회복지	심리장애상담사	1급 :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 2,3급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50점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함

분류	자격종목	합격기준
사회복지	심리재활전문가	1급 -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2급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50점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한다. 3급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50점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한다.
사회복지	심리재활전문가	1급 :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 2,3급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50점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함
사회복지	아동미술 심리상담사	1.아동미술심리상담사1급 - 실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필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2.아동미술심리상담사2급 - 실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필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사회복지	아동발달상담사	1급 -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2급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50점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한다. 3급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50점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한다.
사회복지	아동발달상담사	1급 :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 2,3급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50점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함
사회복지	아동발달전문가	1급 :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 2,3급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50점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함
사회복지	아동상담사자격증	1급 : 100점 중 80점 이상 합격 2급 : 100점 중 70점 이상 합격
사회복지	아동상담지도사	60분간 50문제(총 50문제) 70점 이상
사회복지	웃음코디네이터	[1급~3급] 필기: 400점 중 280점 이상 실기: 100점 중 70점 이상
사회복지	웃음코디네이터	120점 중 84점 이상 (백분율 70점 이상)
사회복지	웃음코디네이터	1급-필기(40분간 과목별 10문제씩 총 50문제,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실기(40분간 웃음기법, 웃음speech, 웃음스트레칭 시연 2급-실기(60분간 행복웃음표현기법,웃음퍼포먼스, 행복웃음커뮤니케이션 개인시연 및 그룹별 시연)
사회복지	유아비디오증후군재활전문	1급 :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

분류	자격종목	합격기준
	가	23급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50점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함
사회복지	유아아동레크리에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 : 프로그램기획 및 평가 50점, 유아아동레크리에이션게임 창작과 응용 50점 - 실기 : 스피치와 사회기법 발표 50점, 유아아동레크리에이션종목 창작지도 50점 총점 200점 중 12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 : 유아아동레크리에이션리더십 25점, 유아아동레크리에이션론 25점 프로그램기획 및 평가 25점, 유아아동레크리에이션게임 창작과 응용 25점 - 실기 : 조별 창작 유아아동레크리에이션댄스발표 50점, 스피치 및 커뮤니케이션능력 50점 총점 200점 중 12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 : 유아아동레크리에이션리더십 20점, 유아아동레크리에이션론 20점, 프로그램기획 및 평가 20점, 유아아동레크리에이션게임 창작과 응용 20점 유아아동레크리에이션역할과 필요성 20점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사회복지	인성·심리상담사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과제 건전한인성 20점 -2과제 불건전한인성 20점 -3과제 일반적기준의 인성 20점 -4과제 인성검사결과판독 20점 -5과제 상담기법 20점 (총 100점 중 60점 이상)
사회복지	임상미술심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미술심리사 2급 평균 60점 이상 *임상미술심리사 1급 평균 60점 이상 *임상미술심리전문가 평균 60점 이상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일지-20점 REPORT제출-40점 WORKSHOP(과제연구)-10점 평가시험-30점 100점 중 평균 71점 이상 합격
사회복지	자원봉사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 : 100점 중 80점 이상 합격 2급 : 100점 중 70점 이상 합격
사회복지	재활레크리에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 : 프로그램기획 및 평가 50점, 재활레크리에이션

분류	자격종목	합격기준
		<p>게임 창작과 응용 50점 - 실기 : 스피치와 사회기법 발표 50점, 재활레크리에이션종목 창작지도 50점 총점 200점 중 120점 이상</p> <p>- 필기 : 재활레크리에이션리더십 25점, 재활레크리에이션론 25점 프로그램기획 및 평가 25점, 재활레크리에이션게임 창작과 응용 25점 - 실기 : 조별 창작재활레크리에이션 댄스발표 50점, 스피치 및 커뮤니케이션능력 50점 총점 200점 중 120점 이상</p> <p>- 필기 : 재활레크리에이션리더십 20점, 재활레크리에이션론 20점, 프로그램기획 및 평가 20점, 재활레크리에이션게임 창작과 응용 20점 재활레크리에이션역할과 필요성 20점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p>
사회복지	재활레크리에이션전문가	<p>1급 -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2급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50점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한다. 3급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50점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한다.</p>
사회복지	재활태권도전문가	<p>1급 :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 2,3급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50점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함</p>
사회복지	전문보험심사청구사	<p>임상이론 40점, 건강보험요양급여실무이론 60점(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청구심사실기 외래 80점, 진료비 사후관리 외래 20점, 청구심사실기 입원 80점, 진료비 사후관리 입원 20점 (총점 200점 중 120점 이상) => 총점 300점 중 180점 이상</p>
사회복지	전문상담사	<p>[수련 감독급] 필기 : 100점 환산점수로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판정 수련과정 심사 : 제시된 수련과정을 100% 이수 시 합격</p> <p>[1급] 필기 : 80점 이상(100점 환산점수인 7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미만(100점 환산점수 60점 이상)이면서 백분위 20이상)</p>

분류	자격종목	합격기준
		60점 이상 70점
사회복지	전문카운슬러 자격	[1급] 70% 이상 / 사례 슈퍼바이저 5건 이상 [2급] 70% 이상 / 사례관리 5건 이상
사회복지	지역교정사자격증	총점100점중 70점 이상
사회복지	특수교육경영사	•1급 :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 •23급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50점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함
사회복지	특수체육치료사	•1급-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23급-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50점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한다.
사회복지	학교폭력상담사	•1급 필기 : 총100점 중 80점 이상 실기 : 64시간 이상 •2급 필기 : 총100점 중 70점 이상 실기 : 1.실습: 32시간 이상 2.심리검사(합·불 판단) •3급 필기 : 총100점 중 60점 이상 실기 : 심리검사(합·불 판단)
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전문강사	•전문가 필기 : 총100점 중 80점 이상 실기 : 1.발표-강의자료, 강의내용, 강의자세, 대상자 반응 등(총점100점 중 80점 이상) •1급 필기 : 총100점 중 70점 이상 실기 : 1.발표-강의자료, 강의내용, 강의자세, 대상자 반응 등(총점100점 중 70점 이상) 2.심리검사 (합·불 판단) •2급 필기 : 총100점 중 60점 이상 실기 : 1.발표-강의자료, 강의내용, 강의자세, 대상자 반응 등 (총점100점 중 60점 이상) 2.심리검사 (합·불 판단)
사회복지	행복건설턴트	•전문강사

분류	자격종목	합격기준
		- 이론 : 100점 만점에 70점 - 실기 : 100점 만점에 70점 • 1급 -이론: 100점 만점에 60점 -실기: 100점 만점에 60점 • 2급 -이론: 100점 만점에 60점 -실기: 100점 만점에 60점
사회복지	행복컨설턴트	2급:100점 만점 60점(실기60점) 1급:100점 만점 60점(실기70점) 전문강사:100점 만점 70점(실기70점)
사회복지	호스피스전문봉사자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획득한 자
사회복지	IDK심리상담사	1급 : 70점 이상 2급 : 60점 이상